

統一文化研究(下)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통치로 부터 벗어나는 민족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3·1독립운동, 상해임시정부로 맥맥히 이어져 오면서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적 여망과는 달리 국제정치의 제물이 되어 민족분단을 강요당하였으며, 이어 동서냉전체제가 자초한 동족상잔과 남북체제 갈등 속에서 어언 분단 반세기를 맞고 있다. 지난 반세기는 대한민국이 선진조국으로 향하는 영광의 장도였지만, 민족사적 견지에서 보면 같은 민족이 분열·대결하는 고통과 수난의 연속이었다.

분단조국의 통일은 천만이산가족들의 한 많은 비극을 청산하고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도적 견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민족 생존권 차원뿐만 아니라,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 속에서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민족적 용비를 기약하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될 시대의 민족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민족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국제정세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민족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빨리 선회하고 있다. 공산종주국 소련과 동구공산권이 이미 붕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20세기를 지배했던 동서체제경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일단락됨으

로써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이 명료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정세는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우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선차적 조치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이같이 국제정치적 요인을 외면할 수 없으면서도 민족적 슬기를 모아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민족 내부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21세기 민족의 발전과 응비를 기약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목표지향성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미 체제적 한계성이 노출된 이상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먼저 실현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완결시켜 가는 장엄한 도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완결시켜 가기 위해서는 실리추구 차원에서 비교적 빨리 시도될 수 있는 민족경제공동체로부터, 「남북연합」을 거쳐 하나의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마지막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순리이며, 이 과정에서 분단 반세기 동안 동서냉전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이 축적된 고질적 상호적대의식을 청산시키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활성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통일문화」의 창조가 민족공동체를 응집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문화」는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 가야 할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조국의 근대화·선진

화를 위하여 체제를 초월하여 공유될 수 있는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과 행태,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창조되어야 할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문화임과 동시에, 남북한의 현실적 냉전구조를 하나하나 탈피·개선시켜 가기 위한 당면 실천문화이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북한이 대남전략적 요인을 여전히 잉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공산체제의 붕괴에 따른 체제생존차원에서나마 민족주의·전통문화 쪽으로 통치이념을 변용시켜가는 경향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외개방경제정책과 대서방개방외교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북체제간 교류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민족정서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측면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분단 반세기를 맞는 현시점이야말로 「통일문화」 창조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민족적 노력을 경주할 적기로 판단하여 「통일문화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연차 계획으로 추진될 통일문화 연구의 제1차년도인 금년은 통일 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에 관한 이론적 기본틀 모색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민족문화공동체 형성이 지닌 의미와 위상을 정립하고, 통일문화창조를 위한 선결연구로서 우선 남북문화간의 이질화실태를 파악하고 그 동안 간헐적으로 추진된 남북문화교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통일문화 중에서도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남북한 인구구성비에서 큰 비중을 점하여 통일조국의 주요사회 구성원을 형성할 노동자와 여성의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잡았다. 이른바 「주체사상」에 따라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그리고 여성해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선전되어 온 북한사회에서의 노동자와 여성 문화의 실태를 규명하는 연구는 통일문화 연구를 위한 하나의 핵심 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문화 연구의 또한 측면으로서 분단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적 인간개조과정에서 이질화된 북한의 주민생활에서 과연 전통문화적 요인이 얼마만큼 잔존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순수문화연구는 사회과학 영역의 연구와 다른 전문연구영역으로 간주,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문화개념 정립을 위한 북한문화의 이질화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우선 최근 북한 문예정책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한정시켰다.

분단 상황하에서 다방면적인 문화교류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이질문화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충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통일 사례야말로 우리의 통일문화 연구에 결정적 교훈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론적 연구와 남북문화교류 경험의 분석을 토대로 통일문화 창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을 종합정리하였다.

이상 통일문화 연구를 통한 통일문제에의 접근 시도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제도통일·정치통일 위주로 진행되어 온 감이 있는 기존연구경향으로부터 새로운 연구방향의 지평을 여는 긍정적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 총 목 차 〉

〈상 권〉

- 統一文化의 概念 정립과 形成方向 연구 윤 덕 희
- 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민족통일 윤 경 태
- 통일문화연구의 방향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김 학 성
-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이현경·최대석

〈하 권〉

-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손기웅·길태근
- 남북한 여성 비교연구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 금 순
-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연구 주 강 현
- 최근 북한 문예정책의 비판적 연구
 -「주체문학론」을 중심으로- 김 재 용
-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김 영 준

차 례 (하권)

■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손기웅·길태근

I. 서 론	3
II. 북한 노동자문화의 형성과 분석틀.....	11
III.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과 노동자문화.....	47
IV. 북한의 노동자 문화	72
V. 결 론	137

[부록1: 북한 귀순자 대담문항-A]

[부록2: 북한 귀순자 대담문항-B]

■ 남북한 여성 비교연구

-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 이 금 순

I. 서 론	193
II. 여성의 사회적 역할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201
III. 여성의 경제적 역할	217
IV. 여성의 정치적 역할	246
V. 통일과 여성	268
VI. 결 론	283

■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연구 주 강 현

I. 머리말	297
--------------	-----

II. 북한의 문화정책과 전통문화적 요인	300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전통문화	300
2.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308
III. 각 생활분야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314
1. 의식주 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314
2. 명절풍습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334
3. 혼상제 풍습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340
4. 민속놀이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343
IV. 민족내부 통합과정에서의 전통문화의 전망	361

■ 최근 북한 문예정책의 비판적 연구

- 「주체문학론」을 중심으로 -

김재용

I. 「주체문학론」의 구성과 특징	373
II. 문학유산의 재평가.....	379
III. 창작 방법으로서의 주체사실주의	395
IV. 최근 북한문예정책의 문제점	404

■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김영준

I. 문제의 제기.....	411
II. 남북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413
III. 남북문화 교류·협력의 추이와 실태	424

IV. 남북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이념적·체제적인 구속성	440
V. 통일문화의 창조와 그 역사성	456
VI. 통일문화의 창조과정과 그 방향	473
VII. 결 론	499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손기웅·길태근*

I. 서론

II. 북한 노동자문화의 형성과 분석들

III. 북한 사회주의노동법과 노동자문화

IV. 북한의 노동자 문화

V. 결론

[부록1: 북한 귀순자 대담문항-A]

[부록2: 북한 귀순자 대담문항-B]

*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사업부 정치학박사)

길태근(전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사업부 사회학박사)

빈 면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Wir sind **das** Volk(우리가 바로 그 국민이다)!”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1989년에 동독의 주민들이 외쳤던 이 구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숙히 자리잡을 것이다.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고,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인민대중의 복지를 약속한 동독사회주의, 나아가 현존 사회주의에 대하여, 그 인민대중이 40여년간의 체험을 통해 형성한 근본적인 비판과 거부를 이 구호는 가장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계급이 없다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하여 억압과 빈곤의 틈바귀에서 몸사리던 인민대중이 이제 일어나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이들이 쟁취한 것이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희망에 의해 서독에의 『편입(Beitritt)』이 실현되었다. 비록 서독이 동독주민들의 이상향은 아니었을지라도 서독은 그들에게 좀더 많은 자유와 좀더 나은 생활을 약속하는 지향점이었다. 동독사회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결집한 그들은 서독을 새로운 체제로 택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 무엇이 억압과 폐쇄의 통제사회 속에서 그들을 결집시키고 일어나게 하였을까?, 그들은 동독사회주의에서

무엇을 기대하였고 무엇을 얻었던가?, 그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한반도에서 통일의 과정이 길고 짧음을 차치하고 분명한 사실은 통일된 사회의 성격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구성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주도세력으로서 남한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이러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고 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남한은 통일에의 유인력을 더욱 가지게 될 것이며,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을 그들의 지향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결집과 동력화의 계기와 가능성은 남한에서 사회전반적으로 민주주의와 복지가 관철되면 될수록 더 빨리 올 것이고 더 커질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등 제차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다른 한편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북한의 주민에 대한 이해이다. 지금 북한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며, 어떠한 생활속에 놓여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사회주의가 북한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며, 북한주민들의 현실상은 어떠한가? 그들이 북한사회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상의 생활양식은 어떠한가? 그들은 어떠한 사회를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동서독 통일의 주동력이 동독의 주민들이었다는 사실과 서

독의 사회를 그들의 지향점으로 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남북한의 통일방안으로 전제한다면, 결국 통일은 북한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남한사회를 그들의 지향점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주민들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이해하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그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의 핵심으로 규정되는 북한노동자들의 가치관과 행위양식, 즉 북한의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북한의 노동자문화에는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사회주의사회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노동자들의 가치관과 그것에 준한 행위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자문화는 북한사회에서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한 근로인민대중의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는 북한사회의 피지배계급의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노동자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첫째, 북한사회에서 노동자문화를 잉태하고 자라게 한 사회구조와 사상이념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의 노동자들은 어떠한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나타

나는 일상의 행위양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려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지배계급이 그들이 구축한 사회경제체제와 사상이념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규범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동계급의 문화』가 실제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즉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의 문화』와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 『노동자문화』를 내면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려는 작업이다.

한편, 북한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통해 남북노동자문화간의 차이를 밝혀주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남한사회의 노동자문화를 완성태로서가 아니라 남한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할 것으로 본다면, 통일한국의 노동자문화는 남한사회의 발전에 구조적으로 적합성을 갖는 노동자문화의 내용을 북한노동자문화와의 비교에 의한 보완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한국의 노동자문화형성에 대한 논의는 나아가 통일한국의 사회구성체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려는 작업과 결부된다. 따라서 북한노동자문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이 연구는 통일한국의 노동자문화, 그리고 통일한국의 사회구성체의 성격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는 이론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이 함께 사용되어

진다. 우선 노동자문화의 개념, 노동자문화를 발생시키는 사회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의 발생, 그리고 노동자문화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제2장)는 공식적인 1차문건과 2차연구결과들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공식적 문건으로 이루어진 규정들이 실제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연구가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가치체계·생활실태·행위양식, 즉 북한의 노동자문화를 공식적인 문건이나 간접연구결과로 추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북한노동자문화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이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이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이 연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장 북한의 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북한노동자문화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볼 제3장과 제4장에서 사용되는 1차자료는 귀순자의 증언, 그리고 북한의 단편소설과 영화이다. 귀순자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하여 증언을 할 때 귀순동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편견이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의 증언을 일반화하거나 객관화하여 그것을 토대로 북한의 현실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의식세계에 대한 증언은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첫째, 소수의 증언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귀순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을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둘째, 북한 거주시에 동일한 직업, 즉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귀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노동자생활시절에 가졌던 의식이나 행위양식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증언을 끌어내고 그 중에서도 공통점만을 추출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셋째, 귀순자들의 증언을 귀순자의 증언으로 교차확인을 거친 다음에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귀순자들의 증언에 대한 객관성을 좀더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귀순자로부터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대담시에 해당 분야별로 분석적인 대담문항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대담은 귀순자들에게 문항을 읽게하고 추가적으로 그 문항에 대한 의미를 전달한 후 귀순자들이 해당하는 문항에 그들의 의견을 쓰거나 증언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귀순자들이 부담없이 그들의 생각을 증언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증언을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사전에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편소설과 영화는 귀순자의 증언과 별개의 자료로서가 아니라 상호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귀순자의 증언을 소설과 영화에 나타나는 노동자의 내면세계와 행위양식, 그리고 북한의 현실태를 통하여 확인하고, 소설과 영화에 나타나는 그것들을 증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의 소설과 영화가 주제나 소재의 선정에서 정치성과

계몽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을 북한의 현실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예술적 분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생활과 의식세계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북한사회의 현실과 북한주민들의 의식세계를 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귀순자가 북한의 현실에 좀더 부합하다고 추천하는 영화들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작품들을 추가하여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소설의 경우에는 북한이 정책적으로 문학적 사실주의를 도입하였던 1980년대 이후의 작품중에서도 사실성이 돋보이는 것들만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 파악되는 북한의 현실과 북한주민의 내면세계에 대한 객관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상기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선 노동자문화의 개념을 자본주의사회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그것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의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노동계급의 문화』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히면서 북한노동자문화에 대한 연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자문화가 발생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발생되고 구조화되며 재생산되는 사회불평등현상과 그것에 의거한 계급의 발생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여본다. 이어서 사회주의사회의 보편성외에 북

한사회에서 불평등과 계급을 발생시켜 노동자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사회주의사회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노동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정립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노동자문화를 귀순자의 증언, 북한의 단편소설과 영화등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 우선, 제3장에서는 북한의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에게 규범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문화가 반영된 노동정책과 노동윤리를 성문화한 사회주의노동법을 귀순자의 증언을 통하여 평가해 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북한노동자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행위양식, 즉 노동자문화의 전반적인 윤곽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북한노동자문화의 현실태를 정신문화, 생산문화, 생활문화로 나누어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본다. 북한의 노동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체제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인성은 어떠한가?,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생활양식은 어떠한가? 등을 귀순자의 증언, 북한의 단편소설과 영화 등의 1차자료를 토대로 파악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의 논의가 요약된다.

II. 북한 노동자문화의 형성과 분석들

1. 노동자문화의 개념

사회구성원들간 가치의 공유문제에 대하여 사회학적 설명들은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입장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여 볼 때 그 하나는 주요한 사회제도들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파슨즈(T. Parsons)로 대표되는 사회학적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가치체계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사회내 단일한 가치체계의 보편성을 전제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규범적 동의의 정도만을 문제삼는다.

이러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시각은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위계적 질서, 즉 계급현상을 전제하고 그 위계에 속하는 구성원들에 따라서 현격하고도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여러가지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가치와 부르조아계급의 가치가 명확하게 대비되며, 각 계급성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생활양식, 그리고 행동유형이 다른 계급성원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¹⁾

1) 엥겔스(F. Engels)는 노동자계급과 시민계급을 “한 나라안에 존재하는 두개의 민족”으로까지 규정하면서 이 두계급은 언어·사상·관념·풍습·종교·정치에 있어서 전혀 공유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현백, 「노동자문화의 소시민화와 그 기원」, 『공동체문화』, 제2집(1984), p. 184에서 재인용.

노동자문화란 개념은 후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사회를 계급사회로 인식하고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잉태되고 틀을 갖추고 굳어져 온 노동자계급의 문화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양식에 의해 계급이 발생하고 자본가계급은 그들의 가치체계를 정치적, 사회적 규정의 형태로 제도적 질서 속에 유입하여 객관화시킴으로서 전체사회체계의 도덕적 준거틀로 규범화하여 사회내에서 관철하고자 한다.

한편,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측면에서 사회의 가치배분을 위한 결정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피지배계급으로 표현한다면 노동자는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하여 지배적 지위를 점유한 자본가계급의 가치체계와는 상이한 그들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자본가계급의 가치체계에 반응하면서, 즉 그것에 완전히 동의하거나, 완전히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적응적인 양식을 나타내거나, 혹은 체제불만적 양식을 보이거나 하면서 형성된 피지배계급의 가치체계와 그것에 준한 행위양식이 노동자문화이다.

보다 엄밀히 말해 노동자는 피지배계급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노동자문화는 피지배계급이 가지는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피지배계급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노동자이며, 피지배계급의

한편, 이 연구에서 한 사회내 사회구성원들간의 가치의 공유문제나,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계급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가치체계 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역사적 실재였다. 따라서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사회내 피지배계급의 보편적 가치와 행위양식을 이해하는, 즉 피지배계급의 문화를 이해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노동자문화는 노동자라는 집단적 존재의 자기표명으로서 그것은 노동세계, 가정, 지역사회 등 그들 생활의 지평층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태도, 습관, 그리고 신념과 가치관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문화는 “생산 및 생활양식에서 표출되는 노동자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²⁾

한편, 북한에서는 노동자문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노동자문화의 개념에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계급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우선, 문화에 대한 개념규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문화를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및 정신

2) H. Groschopp는 노동자문화를 “직업인으로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일과 작업장에 대한 세계관, 가치, 의식, 그리고 태도의 일체”라고 정의한다. *Zwischen Bierabend und Bildungsverein. Zur Kulturarbeit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von 1914* (Berlin: Dietz, 1985), p. 16. 그의 Gerhard A. Ritter, “Einleitung”, in: G.A. Ritter(ed.), *Arbeiterkultur* (Königstein/Ts., 1973), p. 1; Dieter Döwe, “Die Arbeitersängerbewegung in Deutschland vor dem Ersten Weltkrieg”, in: Ritter(1973), p. 122; Jürgen Kocka, “Arbeiterkultur als Forschungsthema. Einleitende Bemerkung”, *Geschichte und Gesellschaft*, 5(1979), p. 9; Peter N. Stearn, “The Effort at Continuity in Working-Class Culture”,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No. 4 (December, 1980), pp. 626-655; 정현백,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서울: 한길사, 1993); 선한승, 「노동자문화와 노동의식」, 임희섭/박길성(편), 『오늘의 한국사회』 (서울: 나남, 1993), pp. 129-149; Chin-yu Shih, “A Research Note on Worker’s Culture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24, No. 3(1994), pp. 370-384 참조.

적 재부의 총체”로 정의하고, 거기에는 “사회발전의 매 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도덕과 풍습 등의 발전수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문화는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된다”고 보고, 물질문화에는 “사회발전의 매단계에서 사람들이 이룩한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포함된다”고 한다. 반면, 정신문화는 “사람들의 정신생활분야에서 이룩된 모든 재부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문화를 크게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대별하는 한편, 물질문화는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노동생활과 소비생활의 환경과 조건을 개조하는 사업의 수준은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의 표현이며, 따라서 물질문화수준의 표시이다. 부의 생산환경, 노동생활의 환경을 개변하는 것은 생산문화이며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소비생활의 환경을 개조하는 것은 생활문화이다. 그러므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수준과 성과가 물질문명의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³⁾ 따라서 물질문화는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인식에 있어서의 특성은 문화중 정신문화와 정신문화의 계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정신문화를 의미한다”

3) 『사회주의문화건설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1-22.

고 하면서, 또한 정신문화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개화시키며 도덕의 진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정신문화는 물질문화에 비해 민족적 특색과 사회주의적 특성이 더욱 뚜렷하여 계급적 성격을 첨예화한다는 것이다.⁴⁾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계급사회에서 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띠며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전제하고, 문화는 그 계급적 성격에 따라 『선진계급의 문화』와 『반동계급의 문화』로 나뉘어진다고 본다. 그중 반동계급의 문화로서 착취계급의 문화는 “착취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민대중을 무저항주의와 비관주의에 빠뜨리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한다.⁵⁾

반면에 『노동계급의 문화』야 말로 “역사상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이며, “노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되며 노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화”라고 규정한다. 노동계급의 문화는 “노동계급의 계급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고 노동계급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화”로서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진보적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문학예술적 소양

4) 『백과사전 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808;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p. 365-366.

5) 양홍모, 「북한의 사회문화 연구」, 『북한학보』, 제10집(1986), pp. 109-120 참조.

을 갖출 수 있게 하며 건장한 체력을 가질 수 있게”함과 동시에, 또한 그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키고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문화가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 되고 여타의 모든 사회성원이 본받아야 할 규범적 문화로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⁶⁾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노동계급의 문화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제도의 창출과 발전이라는 혁명의 노정에서 전통적인 소위 봉건적인 문화, 그리고 부르조아사회의 낡은 문화와의 단절이라는 필요성과 혁명의 주도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문화가 사회주의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계급혁명적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문화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노동자의 자각과 의식의 성장에 의해 비교적 자생적으로 잉태되고 굳어져 온 가치관과 그것에 준한 행위양식이라면, 북한의 노동계급의 문화는 북한체제가 노동자들에게 의식적으로 내면화시키고자 하는 정형화된 가치관과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북한 노동계급의 문화는 그 담지주체가 북한의 노동자가 아닌 비자발적인 것으로서 실제 북한노동자의 가치관과 행위양식, 즉 북한의 노동자문화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6)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1985), pp. 78-89 참조.

결국, 북한의 노동자문화연구는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측면에서 가치배분을 위한 결정력을 가지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계급이 사회에 규범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문화』의 실제성을 검증해보는 작업이다. 북한체제가 노동자의 노동관행과 일상생활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요구하는 노동계급의 문화에 대한 북한노동자의 평가작업인 것이다. 노동자들이 체제가 요구하는 노동계급의 문화를 내면화하지 않고 편차를 보이는 노동자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요를 의미하며, 그것은 나아가 체제유지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북한의 노동자문화라고 할 때 노동자의 의미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공업부분의 직접적인 생산자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형식에 따라 광의의 노동자를 이른바 근로인민대중으로 지칭하며, 여기에는 공업부분의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는 물론 근로농민과 근로인텔리등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계속혁명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독재에서 독재권력을 소유하는 핵심계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노동자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사회의 객관적인 차이를 인정하여 공업부분의 직접적인 생산

자를 지칭하는 협의의 노동자개념을 노동자문화의 담지주체로 규정한다.⁷⁾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북한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자들 스스로 의식과 자각을 통해 형성된 노동자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탐구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 일반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북한사회주의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계급현상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북한체제가 사회전반에 규범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문화의 담지주체가 노동자 자신이 아니라 북한사회의 지배계급이며, 따라서 노동계급의 문화가 노동자 문화로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이론적 근거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노동계급의 문화와 노동자문화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경험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현상이 나타나며 노동자는 피착취계급으로 전락하여 피지배적인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

7) 북한의 사전에서 노동자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의 성원으로서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육체노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의 노동자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국영경영에서와 그리고 농업협동경영을 제외한 여러가지 협동경영들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사회주의하에서 협동농민도 생산수단에 대한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화될 때 노동자로 된다”고 하면서 협의의 노동자개념에서 농민을 제외하고 있다. 『문학예술사전』(1972), p. 366.

고, 따라서 북한노동자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착취계급의 가치관과 행위양식과는 편차를 보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논의에 앞서 우선 북한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현상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주의사회내에서 불평등현상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뿐만 아니라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회주의사회 일반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북한사회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계급발생을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회주의사회의 불평등구조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현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은 계급이다. 맑스주의에 의하면 계급은 특정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생산양식에 의해 발생하며, 사회계급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즉, 계급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생산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착취의 관계에 있으며, 서로 다른 생산양식하에서 착취의 형태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착취의 사회적 관계 자체는 지배와 피지배의 불평등한 관계를 사회내에 구성시킨다는 것이다.

계급이라고 하는 위계적 질서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불평등

은 생산양식에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생산양식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와 사회적 소유의 실현 - 을 가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소멸한 사회로 성격지워지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이 그리고 그에 따른 계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역사상 등장했던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났고, 그것은 또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렌스키(G. Lenski)는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사회주의사회들내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현상을 제시하였다.

렌스키는 사회주의사회내에서 구조화되었던 다양한 불평등 현상으로서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마다 그들이 『민주적 중앙집중제』를 주장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시민대중을 정치적으로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평등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생산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권위주의가 강력하게 대두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의 불평등을 들었다. 또한, 그는 맑스주의사회들의 실패로서 남녀간의 성적 불평등,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에 나타난 소득과 물질의 소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문화적 기회들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지적하였다.⁸⁾

한편, 콘라드(J.A. Konrad)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적 계급불평등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

8) 송복(편), 『사회불평등갈등론』, (서울: 전예원, 1986), pp. 252, 261-265 참조.

다. 그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물질적 부의 획득형태”라는 『소유』에 대한 교조적인 개념정의를 비판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생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역시 자연재의 『획득』이란 점에서, 그리고 소유를 획득과 동일시 하는 것은 소유의 두가지 서로 다른 사회적 차원, 즉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된 재화의 소유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유에 대한 정의가 오해의 우려가 있음과 동시에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콘트라에게 있어서 소유=획득 이라는 관점은 “처분권의 의미에서의 획득”과 “실제사용의 의미에서의 획득”간의 구분을 내포한다. 전자는 경제에 대한 처분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적 주체와 관련된 문제이며, 후자는 생산의 주체에 의해서 생산수단과 소비재화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양태에 관한 문제란 것이다. 따라서 콘라드에 의하면 사회주의국가의 모든 시민은 생산수단의 처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가 생산수단과 소비재화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용권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콘라드의 입장에서 본 사회주의적 소유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으로 평등한 처분권의 보장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형식적이고 법적인 관계일 뿐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처분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권의 활용이라는 문제, 즉 실제 사용이라는 의미에서 누

가 처분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불평등발생의 준거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사회에는 국민경제를 사실상 통제하고 개별 사회집단에게 생활수단을 분배하는 정치적 명령권을 가지는 생활수단의 분배담당자계층이 존재하였고, 그들이 그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기능하면서 생활수단의 피분배담당자계층, 즉 피지배계급과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였다는 것이다.⁹⁾

한편, 일련의 연구자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현상을 생산영역이외의 사회적 수준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그중 몇몇은 도시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현상의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파알(R. Pahl)은 도시사회내의 불평등현상이 도시사회의 사회구성체가 자본주의적이건 혹은 사회주의적이건 관계없이 공통적인 동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희소한 도시사회내 자원과 시설물에 대한 배분과 접근에는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되며, 따라서 자원과 시설의 배분과 통제를 담당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계층이 관리자집단으로서 지배적인 역할을 행사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⁰⁾

파알이 도시사회내 불평등이 사회내 생산양식의 유형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켈레니(I. Szelenyi)는 그

9) 안병영,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평등 문제」, 『연세행정논총』, 제9집 (1982), pp. 20-21.

10) R. Pahl, *Whose City?* (Harmonthworth: Penguin, 1977), p. 201.

것을 생산양식의 구조적인 결과물로 이해하였다. 예를 들어 켈레니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을 가진 도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현상은 바로 사회주의적 생산과 분배의 체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그것은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하의 『행정적 배분』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때 행정적 배분이란 자본주의경제의 『시장적 배분』방식을 대체한 것으로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하에 중앙의 권력의지나 중앙정부의 구상에 따라 주택과 토지의 사용용도, 그리고 투자의 지역·분야·배분의 결정등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정적 결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 행정적 배분을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사회내 불평등이, 나아가 계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¹¹⁾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체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원인이 동일함을 강조하는 파알과 불평등이 도시사회의 생산양식에 직결됨을 강조하는 켈레니의 견해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사회에서 관리와 배분을 담당하는 자가 관리자층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급불평등과 정치질서에 관심을 가진 파킨(F. Parkin)은 두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무엇보다 국가관료제와 정당의 역할을 지적한다. 즉, 관료들은 권리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그 과정에서 관료들이 사회내 주요집단으로 등장하게 된

11) Ivan Szelenyi, *Urban Inequalities under State Socialism*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3), pp. 4-9 참조.

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계급의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전위 임과 동시에 계급의식을 개발할 책임을 맡고 있는 정당이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파킨은 사회주의사회내 계층질서와 서구사회내 계층질서간의 대비점을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의 구조에서 찾고 있다. 서구사회는 다양한 제도적 영역들이 법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다원적 권력분포로 특징지워지지만, 사회주의사회는 당이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독점하며 어떤 중요한 제도에도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권위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질서 아래서 계급은 매우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으나, 후자의 환경 아래서는 그렇지 못하다. 시장에 토대를 둔 체제에서 보상분배는 주로 시장의 작용에 의하여 대개 지배계급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없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보상분배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매우 뚜렷이 『보이는 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분배가 주로 직접적인 정치기관들에 의해 결정되어 보상과 특권은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과 원리에 부합하는 집단이나 계층에게 할당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불평등의 원천이 주로 정치적이란 것이다.¹²⁾

파킨은 사회주의보상체제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12) R. Bahro, *Die Alternative: Zur Kritik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Hamburg, 1977), p. 114.

지식인층의 지위를 지적하였다. 재건의 단계나 사회주의 전 단계에서 당원층의 주요원천은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이었으나, 이후 지식인층은 그들의 전문관리적 역할과 기능적 역할을 통해 점점 더 당과 일체가 되어가면서 그들의 특권적 위치를 강화하게 된다. 그것을 통해 지배계급으로 발탁되는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자원의 관리와 배분에 대한 담당자적 역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¹³⁾

사회주의사회내 불평등에 관한 논의 가운데 질라스(M. Djilas)와 보스렌스키(M. Voslensky)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배계층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공산당관료중심의 지배적인 특권적 계층들을 각각 『새로운 계급(the New Class)』,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라고 칭하면서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 우선 질라스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새로운 착취자계급이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자원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 소유권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는 재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사람과 재화와 용역의 배분에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재산의 소유자라면서, 사회주의의 새로운 계급은 바로 재산계급으로서 지배계급이며 이들은 피지배계급에 의해 창출된 잉여가치의 착취를 통해 물질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고 말한다. 질라스는 새로운 계급을 “그들

13) 길태근/김원동(역), 『계급불평등과 정치질서』 (서울: 나남, 1988) 참조.

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독점 때문에 특권과 경제적 우위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들을 체제의 주요 수혜자인 전업적 정치가나 당관료들로 보았다.¹⁴⁾

한편, 보스렌스키는 소련사회의 인텔리겐차 가운데 『별도 부류』를 『지도자들』이라고 명하고 나머지 인민전체를 『피지도자들』이라고 지적한 다음, 행정관리계급인 이들 지도자들 집단을 하나의 계급이라고 규정하였다. 지도자들은 사회적 생산체계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생산수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노동조직 안에서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그들이 사회적 부 가운데 매우 큰 몫을 차지함으로써 소련사회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권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보스렌스키는 질라스의 새로운 계급이 소련에서는 노멘클라투라이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업적 경력이 아니라 정치적 경력으로 보았다. 이들은 행정가계급이며 국가재산의 집단적 소유자라는 점에서 착취계급이기도하다. 즉, 통치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착취하는 것이 노멘클라투라의 본질이라고 보스렌스키는 강조한다.¹⁵⁾

이상에서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사회내에서의 계급은 희소한 자원과 시설물에 대한 배분과 접근의 관리에 의해 일어나는 인간사회내 보편적인 불평등현

14) Milovan Djilas,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1962) 참조.

15) 홍순호(역), 『노멘클라투라』 (서울: 평민사, 1982) 참조.

상을 바탕으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사회 생산양식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재생산되는 불평등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둘째, 배분과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층이 바로 사회주의사회내 새로운 계급이며 이들은 주로 당관료로서 사회주의사회내 지배 계급으로 기능한다. 셋째, 지식인층이 그들의 전문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급에 연대해가는 반면, 일반노동자, 농민은 사회의 피지배계급으로 착취와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3.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노동자문화의 분석틀

가.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

사회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현상과 그것의 구조적 재생산은 북한사회주의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보편성외에도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사회는 시장경제의 기능이 전적으로 배제된 생산수단의 국유화, 철저한 계획경제, 그리고 중앙집중적 관리방식 등을 통해 엄격한 통제경제가 전일적으로 작용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사회부문 혹은 사회집단들의 세력관계나 집합적 이익들이 정책에 투영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일 뿐

이다. 따라서 체제의 원칙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행정적 배분에 의해 사회적 불평등은 구조화 된다. 즉, 북한사회는 김일성 1인에게 구현된 수령의 지침이나 현지도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독특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령-당·국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바로 행정적 배분에의 명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북한의 독특한 국가조직체계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의 국가조직체제는 북한사회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주체사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편제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지도사상』, 『지도이론』, 『영도방법』의 총괄적 체계로서 북한주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규정한다. 그중 주체의 영도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 이론,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전개된 영도원칙과 영도체계, 영도예술의 전일적 체계를 형성한다면서 북한주민의 조직적 일체화와 체계화를 추구하는 사회조직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영도체계는 나아가 김일성의 절대성을 사상의 중심에 둬으로써 당과 국가조직에 대해 우월적 위치를 가진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조직체제는 수령-당·국가-인민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된다. 수령-당·국가체제는 그 성격에 있어서 사회적 동원과 사회적 통제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획일적인 지도원리하에 수령의 위치가 당과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적 구조의 일방적인 행정적 배분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로 성문화한 것이 1972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한 실질적으로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조직체계의 수립이었다. 당과 국가기구의 권력구조가 일원화되어 당은 총비서에게 그리고 국가기구는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김일성이 당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맡게 되자 김일성 1인이 당과 국가를 초월한 수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것이다.

국가계획의 중앙집중적 일원화체제 속에서 계획의 포괄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강력하고 일원적인 행정적 배분을 위한 기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국가계획위원회』이다. 정부원의 각 부처는 수립된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가조직의 배분체계가 북한사회 특유의 강력하고 중앙집중적인 통제관리구조에 의해 획일화되고 일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방적인 행정적 배분은 주로 두가지 측면의 기준에 의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한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이 지시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한 전략적 목표란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가적 측면이다. 전략적 목표에 의한 배분은 전체사회의 조직화를 위한 것으로 주민의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동원적 배분』과 이러한 사회적 동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적 요인을 통제하는 『사회통제적 배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평가적 측면은 사회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적 기준이며, 그것은 『정치성』과 『기능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성은 이른바 당성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북한사회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권력이 일원화되어 있어 당에 대한 충성도는 곧 김일성일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주체사상의 철저성을 가늠하는 이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으로 얼마만큼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가는 결국 당에 대한 복종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성은 개인의 신분적 성격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출신성분에 따라 개인의 정치성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사회에서는 정치우위의 원칙이 확고하게 견지되고 있으며 정치성, 즉 사상과 성분이 모든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것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지고 있다.

정치성에 의한 북한주민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는 주민성분 조사사업에 의해 뚜렷이 드러난다. 맑스-레닌주의적 계급투쟁관이 바탕이 되어 사회주의이전 사회의 다양한 계급, 계층들을 북한사회주의체제에 부응하는 정치성을 기준으로 재구분하는 주민성분조사는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통제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반대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다. 북한은 주민성

분조사를 1958년에 중앙집중지도사업과 함께 시작한 이래 1967년부터 주민재등록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주민을 3계층 51개부류로 구분하였다.

성분분류작업에 따르면 북한의 전주민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3개의 계층으로 구별되고 있다. 우선, 전주민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계층은 사회주의이념이 추구하는 노동계급중심성에 따라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계급을 중심으로 항일혁명가가족과 한국전쟁참전피해자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당·정·군간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다른 계층과 분리되어 진학이나 승진, 배급과 거주지 등에 있어서 각종의 특혜를 받고 있다.

전체주민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동요계층은 이전의 생산양식에 있어서 소부르조아적 존재들과 월남자가족을 3개 부류로 분류하여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식의 측면에서도 분류하여 포함하고 있다. 동요계층에 속한 자들은 일부 극소수만이 핵심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대계층은 전체주민의 27%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상층계급에 속하는 부류들과 북한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적대적으로 행위한 자동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진학이나 노동당입당

에 있어서 봉쇄되고 다양한 탄압을 받고 있는 계층이다.¹⁶⁾

출신성분에 따라 구분된 계층적 위계가 반드시 다른 자원의 배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신성분은 대체로 북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다양한 직업·직위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은 당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적 배분이 당과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로서 신분의 상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당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역시 사상과 출신성분이다. 현재 조선로동당은 약 300만명의 당원을 가진 대중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원 자체가 특권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제4장 1절 「가」 참조). 입당은 철저히 당자체의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당원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정치적 활동이다. 노동당규약의 입당절차에는 「입당보증인이 피보증인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정치활동을 잘 알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치성에 의한 충원자격의 제한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16) 통일원, 『92 북한개요』 (1992), pp. 267-268.

17) 이성봉,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분석」, 서진영(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II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1), p. 168; 『주체의 인텔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 207.

평가적 측면에서 다른 하나의 기준이 『기능성』이다. 북한 사회에 있어서 각각의 직업과 직종들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특성들은 원칙적으로 위계적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것이어서 혁명의 완수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각 직업, 직종은 기능별 중요성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위계지위져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 특성에 따라 행정적 배분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내에서도 직업과 직종의 기능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지식인층, 즉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가 행정적 관리자계층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정치성에 의해 판정된 양질의 인력으로서 좀더 상위의 위치에 있는 직업, 직종에 배치되는 것이다. 정치성이 직업과 직종의 기능적 중요성에 의해 충원되는 구조속에 투입되는 기준이라면, 거꾸로 직업과 직종은 기능성에 의해 이미 위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정치성에 의해 선별된 인력의 충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북한의 사회주의공업화과정에서 점차 그 기능적 중요성이 더해 가는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그들을 이른바 신중간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이념상 핵심계급인 노동자, 농민 등의 계급성원들보다 사실상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

다.¹⁸⁾ 실제 북한에서 직업별인구구성 가운데 신중간계급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신중간계급의 비율은 1946년 말에 6.2%에 불과했던 것이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에는 거의 17%에 이르게 될 정도로 성장하였다.¹⁹⁾

근로인테리로 불리는 신중간계급은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장하였다. 북한사회의 권력 엘리트집단에 진입하는 사회적 상승이동이 근로인테리출신인 전문관료집단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원과 노동당의 30-40%, 정치국 정위원의 50%, 후보위원의 70%가 전문관료출신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의 직업별 출신성분의 구성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대의원들의 직업성분별 구성비를 보면 노동자와 농민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사무직과 전문직출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의원 중에서 박사, 교수를 포함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제6기에는 40.4%, 제7기에는 49.4%, 제8기에는 56%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 제9기에는 64.5%를 차지하고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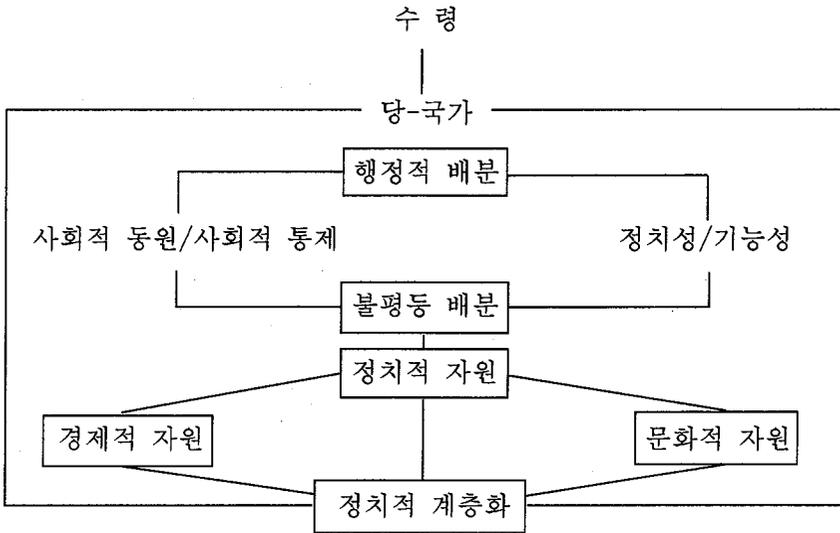
18) 북한사회에서 신중간계급에 해당하는 직업집단은 주로 근로인테리로 불리는 사무원이며 사무원이외에도 고급간부의 일부가 포함된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과정』 (1991), p. 381.

19) Nicholas Eberstadt & Judith Band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 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 S. Bureau of the Census, 1990) 참조.

20)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자료집』 (1988) 참조.

공업화의 결과 사무직과 전문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직종이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져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신중간계급은 당·정의 간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주민들에 비해서도 많은 물질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림 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적 계층화의 모델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1〉이다. 수령-당·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적 배분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동원』과 『사회적 통제』란 전략목표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성』과 『기능성』의 평가적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자원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가에 따라 나머지 자원의 배분도가 결정되어진다. 정치적 자원의 배분에는 당원과 비당원의 요소, 당내에서도 보다 핵심적인 위치의 요소, 김일성일가와의 근접성의 요소 등이 고려되어진다. 정치적 자원의 우월한 확보는 곧 정치적 배분의 담당자계층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따라서 배분의 담당자가 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자원의 사용과 접근은 동시에 확보되는 것이다. 반면, 사회전체적으로는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불평등은 정치적 자원의 확보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적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성 - 사상과 성분 - 에 의해서 위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를 『정치적 계층화(Political Stratification)』라고 말할 수 있다. 구조화된 계층체계에서 상층의 성원들은 당연히 당과 국가의 행정적 관리자계층이 되며 이들이 북한사회내에서 지배계급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시행되는 행정적 배분은

다시 정치적 계층화현상을 재생산해내게 되는 것이다.²¹⁾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는 사회주의사회 생산양식에 내재한 보편성과 주체사상에 기반하여 수령-당·국가란 획일적인 조직체계에 의한 주민의 동원과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성과 기능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일방적인 행정적 배분이란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에 의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둘째, 행정적 배분을 담당하는 당관료들이 북한사회에서 지배계급으로 기능하고 있다. 셋째, 근로인테리들이 그들의 전문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신중간계급으로 부상하여 지배계급에 연대하고 있다. 넷째, 그 결과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이념상 핵심계급인 노동자, 그리고 농민은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하였다.

나. 북한노동자문화의 형성

북한사회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불평등한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각 성원의 가치체계, 즉 지배계급의 가치체계와 피지배계급의 가치체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지배계급의 가치체계이다. 북한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사회주의사회 보다 독특한 주

21) 길태근,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델구성」, 『북한연구』, 제5집 2호(여름, 1994), pp. 144-164;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주민의 가치체계』(1993.12), pp. 39-45; 박형중, 「'사회주의공업화'와 북한지배체제의 형성」, 『북한연구』, 제4집 2호(여름, 1993), pp. 158-174 참조.

체사상 혹은 김일성유일사상이 다양한 사회적 동원과 통제
 기제들에 의해 주조되면서 각 계층성원들에게 강요되고 있
 다. 따라서 지배계급이 사회전반에 걸쳐 규범적으로 관철시
 키고자 하는 가치체계의 핵심항목들은 주체사상의 이데올로
 기적 내용들과 그것에 기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원칙들
 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북한의 독특한 교육체계와 교육내용
 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입된다. 예를 들어 북한사회의 지배계
 급이 노동자에게 내면화시키고자 하는 지배적 가치체계는 주
 체사상에 투철함과 동시에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어 맡겨진 계
 획과 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동자
 가 수용하여야 할 원칙과 행위양식은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피지배계급의 가치체계로서 그것은 북한사회에서 행
 정적 배분의 피담당자계층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행정적
 배분의 관리자 혹은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당과 국가의 핵
 심적 지위의 사람들에서부터 이들의 정책결정을 실행하면서
 권력을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근로인테리를 제외한 일반 노
 동대중들이 가진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
 는 이미 일방적인 행정적 배분의 기제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
 원과 통제에 의해 엄격하게 정형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배
 계급의 가치체계이외의 다른 가치체계가, 즉 지배계급의 가
 치체계에 적응하지 않거나 혹은 불만적인 가치체계가 존재할

수 없는 특수한 사회로 볼 수 있다.

북한사회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체제이데올로기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북한사회내에 정치적 계층화가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규제가 극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일반 노동대중들의 일상적인 불평불만조차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시켜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배계급의 가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표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계급없는 사회를 표방한 사회주의사회에서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한 노동대중이 전적으로 지배계급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지배계급인 노동대중은 지배계급의 가치체계와 상이한 가치관과 신념을 최소한 내면에는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문화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차등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피지배계급의 생활방식은 지배계급의 그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대중은 노동법에 구현된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노동원칙과는 다른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작업장과 일상생활에서는 지배계급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행태와 생활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가 계급사회임에 비추어 지배계급이 사회 전반에 관철하고자 하는 가치체계외에 피지배계급의 가치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지배계급은 그들의 가치체계와 그것에 근거한 행위양식을 함의하는 피지배계급의 문화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피지배계급의 핵심을 이루는 노동자계급의 가치관과 행위양식, 즉 노동자문화는 피지배계급의 가치관과 그것에 근거한 행위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피지배계급의 문화의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노동자문화는 북한사회에서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의 핵심이고, 실제적으로는 피지배계급에 불과한 노동대중 가운데 그 핵심을 이루는 노동자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이다. 북한의 노동자문화에 대한 탐구는 노동자가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준하여 그들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행위양식을 보이는가를 연구하는 것인 한편, 그것들이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에게 규범적으로 관철시키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문화』와는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또한, 피지배계급의 문화 전반을 가늠해 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 북한노동자문화의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북한의 노동자문화형성에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의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주체사상을 유

일지배이념으로 하는 정치적 통치구조가 핵심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의 실제적 의미가 노동자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사회경제구조적 변수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전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적소유의 폐지를 가져온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하여 계급없는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주인으로서의 노동자들이 그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지, 생산수단의 공식적인 소유자로서 생산과정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결과물의 배분에 참여하고 있는지, 노동과정에서 침해받지 않고 자주성과 창발성을 낼 수 있는지 등 모두가 의문이다. 북한의 노동자가 생산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배분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면, 그들은 국가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단순한 직접생산자에 불과한 지위에 놓여 있을 뿐인 것이다.

한편, 노동자문화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사상이념체계와 이에 따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이다. 북한의 노동자문화는 사회주의사회의 보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에서 체계화된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이념을 토대로 한 전체주의적 주민동원체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유일한 사회구성원리이며 주민동원과 통제의 단일한 준거로 되고 있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북한은 노동계급문화의 건설이 당과 수령의 영도하에 혁명적

균중노선을 견지하면서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주민성분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회적 성분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정치적 감시와 통제에 의해 주민들이 관리되고 동원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적 계층화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공식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주인으로서의 노동자지위는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노동자문화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상적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주체사상이 사회전반적으로 북한노동자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문화형성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 반영되어 있는 생산과 노동관리의 원칙과 노동윤리 및 노동관행이다. 사회주의노동법에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토대로 한 계획경제정책을 반영하는 생산정책과 관리정책의 원칙이 담겨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노동자가 생산현장에서 가져야 할 품성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상의 생산과 노동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노동의무를 다하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장이 약속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동원하는 강제규정과 노동자보호규정으로 구성된 사회주의노동법의 적용실태는 실제적인 노동자생산문화현실의 이해에 필수적이며, 나아가서는 노동자의 일상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에는 전통문화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는 연속성을 가지고 변화하며, 특히 가치문화는 혁명적 사회변화에도 지속성을 가지며 느린 속도로 변화한다. 오랜시간에 걸쳐 내면화되고 축적된 문화적 내용과 형식은 민족적 정서로 결정화되어 독특한 역사성을 갖는 민족문화를 형성한다.

북한은 사회주의문화를 도입하면서 전통문화를 정치적으로 계획적으로 파괴하였다. 전통문화를 봉건적 잔재로 규정하여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에 장애요소로 판단한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친족의 개념을 말살하였다. 그리고 세시풍속과 종교생활에도 전통문화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규범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전통문화의 뿌리는 잔존하였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북한은 전통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발전과 주체사상의 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면서도 그것을 현실화 하는데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수용하거나 복구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북한이 문화건설의 원칙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낸다”는 것으로 설정한 것과 과도기 사회주의사회에서 계속혁명을 통한 끊임없는 계급투쟁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해준다.

특히,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내부적으로 경제가 침

체되는 동시에 김정일세습체제의 확립을 위한 사회통제강화의 필요성이 요청되던 1980년대에 전통문화의 회복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유일사상과 국가권력의 의인화를 더욱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온정주의를 강화시켰다.²²⁾ 북한은 온 국민이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고 선전하고,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부친과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김일성을 『아버이』로 호칭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유기체적 개념을 토대로 한 가부장주의는 부모에 대한 복종, 나아가 김일성수령에 대한 복종으로 유도되며 권위주의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게 한다. 한편, 가부장주의는 정치조직의 양식에도 반영되어 국가기관의 권력집중과 국가의 시혜적 기능의 강조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부장적 권위주의라는 문화적 토양은 신민사회를 발달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 속에 아버지수령의 신민이 되는 인성을 내면화하게 하였다.²³⁾

또한, 북한은 사회의 혁명화를 위해 가정을 하나의 중요한 기지로, 거점으로 파악하여 사회주의적 인간의 생산을 위해서 가정의 강화를 꾀하였다.²⁴⁾ 그리고 가족의 성원에 대한 온

22)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가족법윤리를 중심으로」, 『행정사연구』, 제1호(1993), pp. 173-18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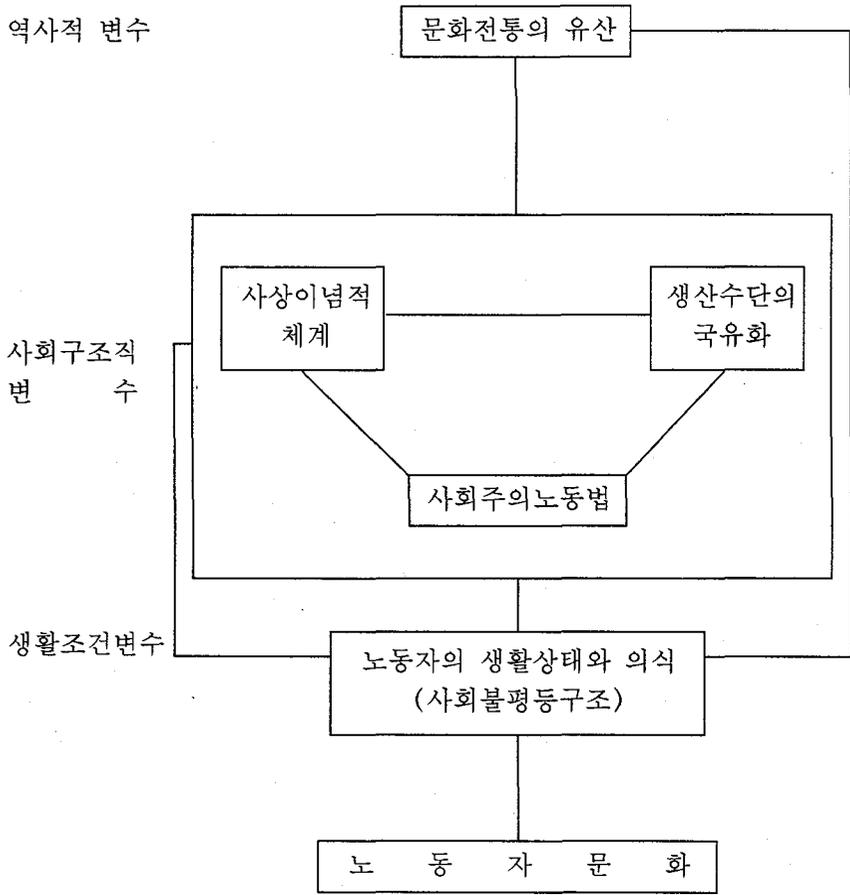
23)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25-30 참조.

24) 최흥기, 「북한의 가족제도」,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397.

정주의를 강조하면서, 온정주의가 하나의 가족으로 선전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였다. 결국,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온정주의는 권력의 집중과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이루기 위한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가 노동자문화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 노동자문화의 형성에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란 경제적 관계와 주체사상을 유일지배이념으로 하는 정치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구조속에서 나타난 지배계급이 북한노동자들에게 규범적으로 관철하려는 노동계급의 문화를 성문화한 사회주의노동법이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불평등의 구조속에서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생활상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계급의 문화와 편차를 보이는 노동자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전통문화적 요소는 사회구조 전반에 - 특히 사상이념체계에 -,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상태와 의식에 기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북한의 노동자문화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노동자문화의 분석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 이러한 분석틀을 염두에 두고 다음장에서는 노동자문화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 북한 노동자문화의 분석모델



Ⅲ. 북한 사회주의노동법과 노동자문화

1. 북한 사회주의노동법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을 필두로 동년 6월 24일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제정하였고, 이어 7월 30일에는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률을 연달아 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 노동법의 기본법인 이른바 『사회주의노동법』을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하였다.²⁵⁾

사회주의노동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토대로 한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정치사상적으로는 주체사상을 반영하여 북한의 경제관리방식과 생산정책, 노동관리정책 등에 관한 제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지켜야 할 노동윤리, 노동규율, 노동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사회주의노동법은 북한의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규범적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할 『노동계급의 문화』

25) 북한의 노동법은 사회주의노동법과 북한형법의 제18장 노동법령 위반에 관한 죄부분 및 사회주의헌법의 관련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형법부분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26) 법무부, 『북한법연구 6: 노동법』(법무부법무실, 1987); 장석은, 『북한의 노동정책』(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6) 참조.

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한편, 노동계급의 문화에 복종하는 댓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북한노동자의 평가는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노동계급의 문화가 실제 어떠한 모습의 노동자문화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된다. 다음에서 총 8장 79개조문으로 구성된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하여 북한노동자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²⁷⁾

2.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귀순 북한노동자의 평가

현실적으로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북한노동자의 직접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한으로 귀순한 구 북한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토대로 북한노동자문화의 전반적인 윤곽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담의 대상으로는 가장 최근에 귀순한 인사중 북한 체제시에 노동자로 근무한 8명을 선발하였다. 대화를 통해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노동자들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을 장별, 조문별

27)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평가에는 기술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을 밝히고 있는 제5장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향상』의 총 7개조항(제46조에서 52조까지)이 노동자문화의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져 제외되었다.

로 분석하여 대담문항을 만들었다(부록 1: 대담문항-A 참조). 대담은 문항을 읽게한 후 그 문항에 대한 의미를 귀순자에 전달하고, 귀순자는 문항의 해당하는 난에 그들의 의견을 쓰거나 증언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귀순자들이 좀더 부담없이 그들의 생각을 증언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담문항과 대담이 사회주의노동법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귀순자들의 견해를 존중하기 위하여 대담의 분석에 있어서 가능한 한 그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음은 각 장, 각 조문별로 대담과 증언을 통해 귀순노동자가 밝힌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그들의 평가이다.

가. 사회주의노동의 기본원칙

〈질문A-1〉에서 〈질문A-12〉는 북한에 있어서 노동의 개념, 노동의 의무, 노동에 있어서의 집단주의원칙, 그리고 노동에 대한 국가적 보장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힌 노동법 제1장 『사회주의노동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질문A-1〉은 노동법 제1조와 제6조에 기초한 물음으로 ‘북한에서 노동자들은 모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가?’²⁸⁾란 질문에 대하여 응답에 응

28) 노동법 제1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그리고 제6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을 기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 8명의 귀순자들은 긍정반, 부정반의 의견을 보였다. 혁명의 주체세력으로서 노동자들이 나라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A-2〉 역시 노동법 제1조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조국의 번영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응답 역시 반반으로 나뉘고 있어, 사회주의 과업의 수행을 위해 노동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점은 〈질문A-3〉의 응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행복보다 조국의 번영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일한다는 사고는 집단주의에 연결되는 것이며 〈질문A-3〉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노동법 제3조에 기초하여 ‘북한의 노동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자각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에 대하여 〈질문A-2〉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4명중 1명을 제외한 3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질문A-2〉와 〈질문A-3〉에 걸쳐 3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노동자들의 일부분은 집단주의원칙을 받아들이고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법 제4조에 기초하여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들이 자기 능

력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A-4〉의 응답에서도 3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질문A-1〉에서 〈질문A-4〉까지의 응답을 통하여 북한노동자들의 일부분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스스로 나라와 국가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집단주의의 정신아래 국가를 위해 어느 정도 열심히 노동하고 있음을 귀순자들이 밝힌 것이라 본다면, 사회주의노동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나머지 질문, 즉 〈질문A-5〉에서 〈질문A-12〉까지의 답변을 통해 귀순자들은 북한당국이 노동자들에게 보장한 기본원칙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충실히 일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러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법 제5조에 명시된 노동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과연 북한의 현실과 부합하는가를 묻은 〈질문A-5〉에 응답자들은 한결 같이 부정하고 있으며, 그중 5명은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직업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 부과되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 나간다」고 약속한 노동법 제7조의 현실성을 물은 〈질문 A-6〉에 대하여도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직업과 직종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가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는가?’를 질문한 〈질문 A-8〉에는 한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물은 〈질문 A-9〉에는 모두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으며, 두 질문 모두에서 반이상이 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노동의 결과물이 생산주체인 노동자에게 투하된 노동량에 비례하여 정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보호에 관한 노동법 제12조에 기초한 〈질문 A-10〉 - ‘국가는 노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을 보호하여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주는가?’를 물은 〈질문 A-11〉에 대하여 귀순자들은 전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이상이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생산보다 노동의 보호를 우선한다는 노동법 제53조는 규정으로만 남아 있으며,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법 제8조의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사실인가를 묻은 〈질문A-7〉에는 한명을 제외한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고등중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역시 의무교육의 시행실태를 묻은 〈질문A-49〉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질문A-12〉는 노동법 제12조의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규정의 사실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여기에는 3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답변한 3명 모두는 증언에서 북한에서의 빈약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약품실태를 거론하면서 질문가운데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란 항목은 유보하면서 긍정적으로 답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무상의료혜택의 여부를 묻은 〈질문A-56〉과 〈질문A-57〉에 대하여 7명과 6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감안한다면, 〈질문A-12〉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귀순자들도 ‘선진적이란’ 항목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질적 측면을 제외한 무상의료혜택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북한노동법 제2장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는 노동은

권리이기에 앞서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작업에 충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약자에 대하여는 양보조항을 두고 있다. 〈질문A-13〉에서 〈질문A-18〉까지는 이러한 노동법 제2장의 현실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만 16세 미만의 소년노동을 금지한 노동법 제15조의 실천성 여부를 묻은 〈질문A-13〉에 대하여 귀순자들 모두는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북한에서 노동은 만 16세부터 임을 알 수 있다.

노동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이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단축되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A-14〉에 대하여 귀순자들은 반씩 서로 엇갈린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답한 4명중 3명은 전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노동강도에 상관없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증언하였다. 예를 들어 제일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탄광노동자로 일한 귀순자 황광철은 단축노동은 커녕 추가보수없이 하루 8시간반씩 일하였다고 하며, 운전수로 일한 귀순자 최명학 역시 1시간에서 3시간까지의 추가노동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공장기업소에서 순수노동시간으로서의 8시간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강연, 학습등 작업시간외 집단적 모임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되고 있다(제4장 2절 「가」 참조). 이러한 사실은 〈질문A-26〉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역시 노동법 제16조에 규정된 「3명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사실인가를 묻은 <질문A-15>에 대하여 귀순자들은 5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하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한 귀순자는 “여자노동자는 무조건 봐준다”고 증언한 반면, 부정적으로 대답한 귀순자 한명은 “아이를 5명 가져도 노동시간은 똑 같다”고 상반된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작업장에 따라, 작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어린이를 가진 여자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질문A-16>에서 <질문A-18>은 노동자들이 충실히 자각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다. 노동법 제20조의 노동자들은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사실인가를 묻은 <질문A-16>에 대하여 두명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증언을 통해 그 이유로서 원료, 자재 등이 제때에 공급되고 있지 않거나 전기사정으로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들었다.

노동법 제21조에 기초하여 ‘노동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법 제22조에 근거한 ‘노동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계와 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이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A-17>과 <질문

A-18)에 대하여 귀순자중 각각 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질문A-16)에서 <질문A-18)까지의 응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질문A-1)에서 <질문A-4)까지의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노동자들의 일부분은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있으며, 맡겨진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노동자의 태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귀순자들이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 사회주의노동조직

<질문A-19)에서 <질문A-27)까지는 노동법 제3장 『사회주의노동조직』에 기초하여 노동조직의 원칙으로서 군중노선, 노동계획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노동력의 최대이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등에 대한 귀순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노동법 제26조를 반영하여 ‘노동조직에서 군중노선이 노력을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인가?’를 물은 <질문A-19)에 대하여 3명은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을, 그외 부정적인 반응을 한 5명중 3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질문A-3)에서 살펴본 집단주의원칙에 이어 군중노선도 비록 소수이긴 하나 북한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29) 군중노선에 의한 노동동원운동에 관하여는 김광동, 「북한의 공장내 노동단체활동과 노동동원」, 『북한연구』, 제2집 4호(겨울, 1991), pp. 149-156 참조.

〈질문A-20〉과 〈질문A-21〉은 노동법 제27조에 대한 귀순자들의 견해를 물은 것으로 ‘나라의 노력원천과 수요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가장 현실적인 노동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인가?’란 〈질문A-20〉에는 3명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북한에서 국가가 위와 같이 가장 현실적인 노동계획을 작성하고 있는가?’를 물은 〈질문A-21〉에는 2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귀순자 ⑥과 ⑧은 양질문에서 국가가 가장 현실적인 노동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국가라고 응답한 반면, ②는 국가가 가장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그것이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 두질문을 통해 북한에서의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노동계획, 나아가 계획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질문A-32〉에서도 잘 나타난다. 노동법 제42조를 근거로 ‘북한에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노동정량을 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란 물음에 2명만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 제28조와 30조를 반영한 ‘북한에서 국가가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 사이의 노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가?’

를 물은 〈질문A-22〉, 그리고 ‘북한에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노동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 기능수준에 맞게 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가?’란 〈질문A-23〉에 대하여 각각 2명을 제외하고 전부가 부정적인 평가 - 특히 〈질문A-23〉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 를 내렸다. 한편, 〈질문A-23〉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2명도 질문중 ‘희망’이란 항목을 배제하고 답변하였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따라서 〈질문A-5〉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계획은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립되며, 여기에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질문A-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자는 그러한 국가의 현실적 역할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법 제31조는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 등을 꾸려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A-24〉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북한에서 잘 꾸려져 있는 가를 물은 것으로 응답자중 5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질문A-25〉는 「노력낭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480분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노동법 제32조를 반영한 질문으로 응답자중 6명이 480분 노동시간이 완전히 이용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노동

의 질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 480분 노동이 이용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2명도 480분이 질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질문에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법 제16조(〈질문A-14〉 참조)와 33조에 규정되고 있듯이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8시간노동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문A-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한 〈질문A-26〉의 응답에서도 나타나듯이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추가보수 없는 추가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앞에서 노동자가 부분적으로나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언 - 〈질문A-1〉에서 〈질문A-4〉, 그리고 〈질문A-16〉에서 〈질문A-18〉 - 도 질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달성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내부적 원인, 즉 노동자가 질적으로 내용있는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행태에 대한 귀순자의 상반되는 증언은 노동자로 일하였던 귀순자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다소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노동자가 질적인 노동이 아니라 『시간때우기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문항을 통한 귀순자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제4장 2절 「나」 참조).

노동법 제33조를 반영하여 ‘북한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가?’를 물은 〈질문A-26〉에 대하여 귀순자들중 4명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그 나머지는 8시간이상을 노동하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이는 〈질문A-14〉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노동법 제36조를 반영하여 ‘북한에서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일군들도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동안 생산노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있는가?’를 물은 〈질문A-27〉에 대하여 4명이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관리일군들에게 주어진 노동이 원칙적으로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의 〈질문A-23조〉에서 〈질문A-27〉까지를 통하여 볼 때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동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조직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원된 노동자들이 투하하는 노동의 질은 낮아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라.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노동법 제4장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에서는 노동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제37조)를 원칙으로 하여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 생활비를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분배에 있어서 정치사상의식을 강조하고 생활비등급제를 국가가 제정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계

층화가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로서의 노동정량사업에서는 균중노선을 견지하고 있다(제41조).

〈질문A-28〉에서 〈질문A-30〉까지는 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약속한 분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묻은 것이다. 노동법 제37조에서는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북한에서는 위의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지 같은 급수일 경우에만 위의 조항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음을 〈질문A-28〉은 보여주고 있다. 즉, 같은 노동에 대하여 같은 급수일 경우에만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8명중 6명이 응답하였다.

한편, 노동법 제38조를 반영하여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A-29〉에 대하여는 5명이, 그리고 노동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일을 잘한 노동자들이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받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A-30〉에 대하여는 6명이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국가가 법률로 정한 배분이 잘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노동정량사업에서 균중노선을 규정한 노동법 제41조를 반영하여 ‘노동정량사업에서 무엇보다 균중노선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가장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인가?’를 묻은 〈질문A-31〉에 대하여 3명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질문A-19〉에서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균중노선을 따르고 있으나, 다수는 균중노선이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법 제45조에는 국가는 「전반적으로 노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조항의 사실여부를 묻은 〈질문A-33〉에 대하여 귀순자 6명이 부정적이었으며, 그중에서 4명은 동조항이 전적으로 현실과 일치하지 않다고 밝혔다. 〈질문A-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과 직종간에 노동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공업노동자와 농업노동자간에, 그리고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간에 생활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과 직종간의 차별성, 그리고 그것과 결부하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차별에 대하여는 제4장 1절 「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마. 노동보호

노동법 제6장 『노동보호』에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는 국가의 다짐이 반영되어 있다(제53조). 이러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질문A-34〉는 노동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으로 여기에 대하여 6명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질문A-35〉는 「건설 및 설계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는 노동법 제57조가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있는가를 묻은 것으로 여기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반씩 엇갈렸다. 〈질문A-36〉은 노동법 제58조에 기초하여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귀순자의 답변 역시 긍정반 부정반을 보였다. 〈질문A-37〉은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노동법 제59조의 실천성여부를 묻은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는 5명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상의 응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노동보호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질문A-11〉과 〈질문A-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질문A-39〉에서 〈질문A-45〉까지를 통해 나타나듯이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도, 내용있는 의료혜택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질문A-38>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 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한 노동법 제60조의 현실성 여부를 묻은 <질문A-38>에 한명을 제외한 귀순자 전부가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생산에 앞세운다는 국가의 다짐은 노동력의 최대이용을 위한 노동자관리의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비용을 수반하는 질적인 노동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노동과 휴식

<질문A-39>에서 <질문A-45>까지는 노동자들에게 휴식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는 노동법 제7장 『노동과 휴식』에 대한 귀순자들의 견해를 묻은 것이다.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란 노동법 제62조를 반영한 <질문A-39>에 대하여 6명이 부정적인 답변을, 그리고 ‘노동자들은 하루노동시간이 끝나면 휴식을 취하며,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노동자들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를 묻은 노동법 제63조를 반영한 <질문A-40>에 대하여 역시 6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노동법 제64조에 근거한 ‘노동

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가?’를 질문한 〈질문A-41〉에 대하여도 6명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상의 질문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함은 물론, 일요일의 휴식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등 노동법이 정한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노동법 제64조의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날」이란 규정의 사실성 여부를 묻는 〈질문A-42〉에 대하여는 5명이 질문중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날 - 『국가명절』과 『최대의 명절』 - 에만 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제4장 3절 「나」참조). 그리고 노동법 제64조를 반영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노동자들을 노동시킨 경우에는 한 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A-43〉에 대하여 4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노동법 제65조에 기초한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A-44〉에는 1명을 제외한 7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또한, 노동법 제66조에 근거한 ‘여성노동자들은 정기 및 보충 휴가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 산후휴가를 받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A-45〉에는 전원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질문A-39〉부터 〈질문A-4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질

문A-10)과 <질문A-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자들은 평일에는 추가적 노동을 통해, 그리고 일요일노동을 통해 휴식에 대한 권리를 일상적으로는 보장받고 있지 못하지만, 명절날의 휴식, 휴식일로 정해진 날의 노동에 대한 대휴, 그리고 정기휴가 및 산전산후 휴가 등의 보장으로 최소한의 휴식은 보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노동의 이용을 위한 관리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휴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질문A-46>에서 <질문A-57>까지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약속한 노동법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에 대한 귀순자들의 견해를 통해 북한노동자들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노동법 제69조를 반영한 ‘노동자들이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받고 있는가?’란 <질문A-46>에 대하여 3명만이 그것도 ‘문화적’이란 문항을 제외한 살림집과 합숙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귀순자 황광철은 증언을 통하여 합숙은 모르나 문화적인 살림집을 보장받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법 제70조를 반영한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은 쌀 값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가?’를 물은 <질문A-47>에 대하여 귀순자들중 7명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모두는 증언을 통해 공급받는 식량이 풍족한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 답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제4장 3절 「가」참조). 〈질문A-46〉과 〈질문A-47〉을 통해 북한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과 식량만을 국가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법 제71조에 의거한 ‘노동자들의 어린이들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지고 있는가?’란 〈질문A-48〉에 대하여 6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질문A-24〉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노동력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법 제72조의 사실성 여부를 묻고 있는 〈질문A-49〉 -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자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시켜주며 그들은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는가?’ - 에 대하여 귀순자 전원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질문A-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고등중학교까지이며, 대학교로의 진학에는 본인의 능력외에 사상과 성분, 가족의 배경과 인맥등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제4장 1절 「가」참조).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는 노동법 제73조의 현실성을 묻은 〈질문A-50〉에 대하여 5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경우에 연로연금을 준다」는 노동법 제74조의 사실여부를 질문한 〈질문A-51〉에 대하여는 7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북한에서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는가?’를 묻은 노동법 제75조를 반영한 〈질문A-52〉에는 5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노력일을 주며 산전 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주는가?’란 노동법 제76조를 반영한 〈질문A-53〉에는 전원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노동법 제77조에 근거한 〈질문A-54〉 -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연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우는가?’ - 에 대하여는 7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그리고 노동법 제78조에 기초한 〈질문A-55〉 - ‘국가는 노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주는가?’ - 에 대하여는 6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제79조를 반영한 〈질문A-56〉 - ‘국가

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주는가?’ - 에 대하여는 7명이, 그리고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요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고 있는가?’를 물은 〈질문A-57〉에는 6명이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질문A-56〉과 〈질문A-57〉에 대한 답변은 〈질문A-12〉에 대한 응답보다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질문A-12〉의 응답자가 질문중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란 항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질문A-46〉으로부터 〈질문A-57〉에 걸친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노동자들은 최소한도의 식생활과 주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며, 고등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 무상의료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노동에 따른 연금도 보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은 국가가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배풀고 있다는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의 실제적 내용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노동자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³⁰⁾는 국가가 노동자의 문화생활을 위해 질적으로 내용있는 사회, 국가적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30) 노동법 제68조.

아니다. 노동력의 관리와 노동의 지속적인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에 의해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혜택은 단지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시켜줄 따름이다.³¹⁾ 이러한 사실은 제4장의 논의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북한의 지배계급이 규범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귀순자들의 평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북한노동자문화의 전반적인 윤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나라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가를 위하여 노동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부정적이다.

둘째, 집단주의의 원칙과 균중노선이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는 집단주의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균중노선이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노동자들의 일부분은 노동계획, 나아가 계획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31) 북한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는 오정수,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북한연구』, 제2집 4호(겨울, 1991), pp. 158-173; 김연중,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6』 (1991), pp. 267-348; 김영중, 「북한의 복지행정정책」, 『북한연구』, 제3집 3호(가을, 1992), pp. 168-184 참조.

러나, 실제 북한에서 국가가 현실성 있는 노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넷째, 노동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보장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고가 노동자들간에 내면화되어 있다.

다섯째, 노동자들은 하루 최소 8시간 노동을 시간적으로는 채우고 있으나, 질적으로 효과적인 생산적 노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노동자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8시간노동, 노동에 대한 배분, 노동에 대한 휴식과 노동보호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일곱째, 노동의 최대이용을 위한 노동자관리란 차원에서 탁아시설,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과 식량, 연금과 의료혜택이 보장되고 있으나, 그 질적 내용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시켜줄 따름이다.

북한의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조망을 바탕으로 다음장에서는 귀순자의 증언, 북한의 영화와 단편소설 등의 직·간접자료를 통해 노동자문화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IV. 북한의 노동자문화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귀순자들의 평가를 통하여 북한의 지배계급이 관철하고자 하는 노동계급문화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북한노동자문화를 귀순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편소설과 영화 등의 1차 자료를 통하여 좀더 상세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제2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문화를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구분하고, 또한 물질문화를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장에서도 여기에 준하여 노동자의 의식, 가치관들을 살펴보는 노동자의 정신문화, 그리고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문화를 살펴보는 노동자의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순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여기서도 활용되는 기반자료는 귀순자와의 대답으로 나타나는 증언이다. 대답의 주요대상은 전장과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시에 노동자로 근무한 8명이다. 그리고 주제별로 대답을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역시 분석적인 대답문항을 준비하였다(부록 2: 대답문항-B 참조). 대답은 문항을 읽게한 후 그 문항에 대한 의미를 귀순자에 전달하고 귀순자는 문항의 해당하는 난에 그들의 의견을 쓰거나 증언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른 세 가지 대답을 유도한 문항에 대한 분석의 경우, 그 응답간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적된 응답항목의 빈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항목에 가중치를 두었다. 즉, 지적된 세가지 항목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3점, 2점, 1점을 주어 지적의 반복에 따른 항목의 빈도수와 더불어 우선순위에 따른 비중을 응답의 분석에 함께 고려한 것이다.

한편, 증언의 분석에 있어서 증언간에 나타나는 공통점만을 추출하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귀순자들의 증언을 귀순자의 증언으로 교차확인을 거친 다음에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귀순자들의 증언에 대한 객관성을 좀더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순자들이 좀더 부담없이 그들의 생각을 증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기 위하여 대담의 분석에 있어서 가능한 한 그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8명의 대담자와 귀순자의 증언도 노동자문화의 분석에 함께 참고 하였다.

한편, 북한의 단편소설과 영화는 귀순자의 증언과 별개의 자료로서가 아니라 상호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귀순자의 증언을 소설과 영화에 나타나는 노동자의 내면세계와 행위양식, 그리고 북한의 현실태를 통하여 확인하고, 소설과 영화에 나타나는 그것들을 증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소설과 영화의 선택에 있어서는 귀순자들이 북한의 현실을 좀더 부합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작품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소설의 경우에는 북한이 정책적으로 문학적 사실주의를 도입하였던 1980년대 이후의 작

품중에서도 사실성이 돋보이는 것들만을 선별하였다.

1. 노동자의 정신문화

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평가 - 〈질문A-6〉과 〈질문A-33〉 - 를 통해 북한에서는 직업과 직종간에 노동의 차이와 생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규정되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이 직업에 따라 사람을 대조하여 차별하는 직업차별의식이 있는가?’라는 포괄적인 〈질문B-1〉에 귀순자들은 모두 그렇다 - 「정말 그렇다」 3명, 「대체로 그렇다」 5명 - 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사회에서 직업에 따라 사회적 위신의 불평등이 존재하여 노동자가 무시당하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B-2〉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4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4명이 「대체로 그렇다」고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양질문을 통해 북한에서는 직업차별의식이 있으며, 그 가운데 노동자는 북한사회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간에도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육체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B-3〉에 대하여 3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1명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육체노동자들과 정신노동자들 간에는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어 육체노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가?’를 묻은 〈질문B-4〉에는 2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3명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가까운 기술노동간에 차별의식이 존재하는가?’를 묻은 〈질문B-5〉에는 2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2명이 「대체로 그렇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 그리고 단순육체노동과 기술노동간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편소설에서도 노동자가 조롱당하는 북한사회의 직업간 사회적 위신의 불평등이 지적되고 있다. 소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노동자의 아들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자 까맣게 때문은 아들의 새끼손가락이 아들애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 노동자의 모습이라고 부끄러워 하는 아버지의 심리가 그려지고 있다.³²⁾ 또한, 소설 『두자매의 편지』, 『우리 이웃들』, 『분수령』, 『우리의 행진곡』, 『날바다 위에서』, 『삶의 향기』, 『계승』 등에는 정신노동자와 지식인에 대

32) 리성덕,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청년문학』(1992.4), pp. 70-72.

한 부러움이 잘 나타나고 있다.³³⁾ 한편, 소설 『뼈꼭새가 노래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왜 영익동무처럼 애써 공부하고 자기가 하는 육체노동을 기술노동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이런 총각에게 딸이나 누이동생을 맡기기를 주저할 사람은 우리 농장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나부터도 이런 총각이라면 춤추며 딸을 맡기겠다 말이요”³⁴⁾와 같은 내용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가까운 기술노동에 대한 차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³⁵⁾

또한, 육체노동간에도 차별의식이 있다. 영화 『평범한 사람』의 한 장면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자신을 제외하고 가족이 모두 당원인 전동기운전공으로 근무하는 한 노동자가 당원이 되기 위해 입당신청서를 쓰고 있다. 이때 아버지가 들어오자 그는 아버지에게 이제 운전공을 그만 두겠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묻는 아버지에게 “아 입당을 해도 뼈젓하게 하고 싶어요”라면서 자신이 비행사, 의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용해공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33) 고을룡, 「두자매의 편지」, 『청년문학』(1990.12), pp. 30-31; 김금숙, 「우리 이웃들」, 『청년문학』(1990.3), pp. 10-11; 김충국, 「분수령」, 『청년문학』(1989.6), p. 50; 리강철, 「우리의 행진곡」, 『청년문학』(1990.7), p. 32; 김령철, 「날바다 우에서」, 『청년문학』(1990.6), pp. 42-45; 정현철, 「삶의 향기」, 『조선문학』(1991.11), p. 45; 장수근, 「계승」, 『청년문학』(1991.7), p. 25.

34) 리태운, 「뼈꼭새가 노래하는 곳」, 『조선문학』(1990.3), p. 34.

35) 서재진, 「통일한국의 계급문제」,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1993), pp. 113-135 참조.

한편, 〈질문B-3〉, 〈질문B-4〉, 〈질문B-5〉에 대하여 귀순자 모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은 증언자의 대부분이 육체노동자출신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인색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육체노동자들은 정신노동직업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B-6〉에 대하여 한명을 제외한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정신노동에 대한 선호의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노동자의 정신노동에 대한 선호의식과 정신노동자의 육체노동에 대한 차별의식은 〈질문B-7〉과 〈질문B-8〉에 대한 응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육체노동을 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정신노동자의 자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가?’를 묻은 〈질문B-7〉에 2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6명이 「대체로 그렇다」로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정신노동을 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육체노동자의 자녀와 결혼하기를 원할때 이를 반대하는가?’란 〈질문B-8〉에 3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3명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딸이 간석지건설장의 노동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담고 있는 단편소설 『어제와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³⁶⁾

육체노동자가 정신노동직업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36) 윤리태, 「어제와 오늘」, 『조선문학』(1991.6), p. 40.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도 잘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을 물어본 〈질문B-9〉에 대하여 당·보위부·안전부 등 소위 권력일군이나, 의사, 혹은 자유로이 외국을 출입할 수 있는 외교관이나 자유로 왕래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외화벌이, 그리고 운전수로 귀순자들은 적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북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란 〈질문B-10〉에도 응답자들은 의사, 군부대 외화벌이 지도원, 부기원(계산원), 사무원, 당일군, 운전사나 의사, 무역업무 등으로 답변하고 있다. 한편, 두질문에서 운전수로 대답한 귀순자 두명은 그 이유를 자동차운전수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여 상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 싣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뭇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이 있는 한 좀더 선망되는 직업을 획득하려는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 북한노동자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육체노동자가 정신노동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다고 보인다. 이점은 ‘북한의 육체노동자들은 정신노동직업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가?’를 물은 〈질문B-11〉에 대하여 5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2명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부모들은 비록 자신은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자식들만은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질문B-12〉와 〈질문B-13〉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노동자부모들은 자식의 출세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B-12〉에 답변자 모두가 그렇다 - 「정말 그렇다」 2명, 「대체로 그렇다」 6명 - 고 응답하였으며, ‘노동자부모들은 자식의 출세를 위해 자식의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는가?’ 를 물은 〈질문B-13〉에 2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4명이 「대체로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의 출세를 위해 교육을 강조하는 부모의 심정은 “정택아 피나게 배우는 사람만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애써 공부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큰 다음에는 그런 건달군이 배겨날 자리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에서 잘 나타난다.³⁷⁾ 그외 『뼈꾸기가 노래하는 곳』, 『높은 산마루』 등의 단편소설에도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³⁸⁾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적 신분의 결정과 변화는 무엇보다 정치성, 즉 사상과 성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37) 리화, 「인간의 수업」, 『조선문학』(1989.7), p. 39.

38) 리태윤, 「뼈꾸기가 노래하는 곳」, p. 27; 신락선, 「높은 산마루」, 『청년문학』(1990.9), p. 40.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귀순자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육의 정도」, 「인맥과 가족의 배경」, 「사상과 성분」 세 가지 중에서 북한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적어보라는 〈질문B-14〉에 대하여 응답자 6명중 4명이 「사상과 성분」-「인맥과 가족의 배경」-「교육의 정도」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나머지 2명이 「인맥과 가족의 배경」-「사상과 성분」-「교육의 정도」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성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 가족적 배경과 인맥이 추가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과 성분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영화 『보증 제1부: 생명의 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원석해와 허진성 두 노동자가 과거의 사상적 배경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거나, 당원이 되지 못하다가 어머니와 같은 조선로동당의 은혜로 인정받게 되고 입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일제시대때 지주집안 출신인 원석해는 30년간 기사로서 열심히 노동하여 당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개발한 시설물이 폭발하게 됨에 따라 식료품공장경비원으로 철칙되어 실의의 나날을 보낸다. 이때 그의 기술이 다시 필요하게 된 당이 다시 한번 같이 일할 것을 권유하자 그는 “성과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일이 실패할 때 원인 규명중 가장 큰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

의 과거” 라면서 필요하면 쓰고 실패하면 가차없이 과거를 트집잡아 버리는 당을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용접공 허진성은 6·25 당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미군에 의해 남쪽으로 끌려간 할아버지 때문에 월남가족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과거의 사상과 성분도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한 당의 노선에 따라 그는 25년간 충실스런 노동자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가 어머니와 같은 당의 은혜로 입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리자 허진성은 당의 은혜로움에 통곡을 한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딸과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직 정식당원이 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함께 연필을 잡고 아들의 가족사항난중 아버지한테 “조선로동당원”이라고 쓴다. 또한, 영화의 장면중에는 허진성의 딸 허혜성과 장래를 약속한 인철이 혜성 아버지의 사상성분때문에 출세를 하지 못할까 두려워 관계를 끊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영화는 북한에서 사회적 신분의 결정에 정치성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외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당원이 된다는 것이 곧 특권계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신분상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는 전술한 논의 - 제2장 3절 「가」 - 를 확인하고 있다. 둘째, 미군에 의해 끌려간 이산가족이 있는 가정을 월남가족으로 낙인찍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면, 자진월남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 대한 신분적 차별은 더욱 심할 것이란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질문B-14〉에서 사상과 성분외에 인맥과 가족적 배경도 사회적 신분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귀순자 백영길은 이러한 사실을 “간부들과의 사업이 우선이다”라며 신분의 결정에 정치성에 더하여 인간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관계형성에서 여러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북한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이 바로 기사자격증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자기의 희망과는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직장을 배치받는 데 반하여, 대학 졸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귀순자 박창환은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면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인맥과 가족적 배경이 작용한다. ‘육체노동자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가족적 배경이 없으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가?’란 〈질문B-15〉에 5명이 「정말 그렇다」 그리고 2명이 「대체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영화 『보증 제1부: 생명의 기사』의 한 장면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에틸렌 연합기업소의 어느 당비서가 대학추천명단을 당책임비서에게 건넨다. 이를 읽어 본 당책임비서는 당비서가 능력위주로 추천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문건위주로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직도 “안면거래가 사회풍조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과 성분, 즉 정치성에 의한 계층구분, 그리고 그것에 의한 신분의 결정으로 인한 소외감은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잘 나타난다. 어성일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지난 과거는 어떻든 간에 본인만 당에 충실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균중노선이다”라고 교육을 받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증언하였다. 김태범은 북한의 노동자들은 “간부는 평생 간부이고 노동자는 평생 노동자이다. 상놈의 신세는 언제가도 상놈의 신세이다. 신분제로 말미암아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사상과 성분, 가족적 배경과 인맥의 상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회적 출세를 위해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귀순자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세가지를 적어 보라는 <질문B-16>의 답변에서 한명을 제외한 모두가 「공부 열심히 해라」를 들고 있는 것은 이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단편소설 『삶의 자격』은 북한에서 출세를 하려면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균경영위원회 간부로 일하는 주인공의 삼촌이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아무 자격이래두 있어야지 당장 일부터 시키겠

소? 지금이야 대학졸업증 없이 어디에 가서 제구실을 하는 줄 아오?”라면서 주인공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³⁹⁾ 또한, 단편소설 『여름』에 나타나는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를 덜 고생시키구, 가정생활도 더 운택이 나게 하려면 대학에 빨리 갈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외국에 실증이 나도록 다녀야 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 박혀야지 한 뉘 탄광에 몸을 잠겼대야 탄부라는 말밖에 더 들겠습니까”⁴⁰⁾란 내용도 대학에 가는 것이 안락한 생활과 높은 사회적 위신을 획득하기 위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결혼도 사회적 지위의 상승 혹은 최소한 지위의 유지를 위해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질문B-17〉은 잘 보여준다. 「장래성」, 「건강」, 「외모」, 「집안」, 「직업」 중에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적으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배우자의 「직업」(빈도-7, 가중치-14)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있으며, 이어 배우자의 「장래성」(빈도-4, 가중치-11)과 「집안」(빈도-4, 가중치-9)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평범한 사람』의 한 대목도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배경이 실제 큰 고려사항이 됨을 잘 보여준다. 대학을 나온 전동기기사로서 앞날이 유망한 청년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인철에게 인철의 매형이 관리국장의 딸을 소개해 주려하나 이

39) 윤경찬, 「삶의 자격」, 『청년문학』(1990.10), p. 29.

40) 장동일, 「여름」, 『조선문학』(1991.5), p. 32.

미 인철에게는 장래를 약속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은숙이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매형은 인철에게 “배경이 드르르한 처녀들이 다리고 쌓였는데 하필 과부의 딸을 고르다니”라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배경도 중요하다는 것을 타이르고 있다.

이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는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며 차별의식에 의해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북한노동자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자의식과 실제 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간에도 차별이 있다. 셋째, 육체노동자는 정신노동직업을 부러워하고 정신노동으로 전환하고 싶으나 그 현실적인 가능성은 적다. 신분의 상승에는 무엇보다 정치성, 즉 사상과 성분이 고려되고 여기에 가족적 배경과 인맥이 작용한다. 넷째, 노동자로 일하는 부모는 자식의 출세를 위해 자식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다섯째, 결혼에서도 사회적 지위의 유지나 상승이란 측면에서 배우자의 장래성과 집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나. 경제수준에 대한 의식

북한은 그들의 사회가 공산주의 전단계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시기로서의 사회주의사회임을 들어 『노동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결정된 임금기준에는 경노동보다는 중노동이, 중노동 가운데서도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동일한 직종 가운데서도 숙련도나 생산성등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하여 임금수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점은 〈질문A-28〉에 대한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소득차이를 임금수준의 불평등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사회에서의 지배계급, 즉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들과 피지배계급인 일반노동자간에 커다란 소득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60-70원 수준인데 반하여, 당과 정무원부장급이 300-350원, 정무원부부장급과 도인민위원장급이 250-300원, 도인민위부위원장 및 군인민위원장급이 170-200원의 월소득을 받는다.⁴¹⁾ 귀순자 김태범은 부친이 군행정위원장으로 재직시 230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적 위치에 있는 당·정기관 간부가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하위 단체장급의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당·정의 간부에게 우월한 배분을 한다는 것은 소득구조에 있어서도 정치적 계층화가 이루어져 불평등이 나타

41) 통일원, 『'92북한개요』 (1992), p. 286;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분석』 (국토통일원, 1984) 참조.

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소득불평등을 북한노동자들은 인식하고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B-18>을 통해 귀순자들이 스스로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위치를 적게하였다. 그리고 그것과 월소득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B-19>를 통해 자신과 가구전체의 월소득을 물었다. <표 1>은 귀순자가 밝힌 자신과 가구의 월소득을 나타낸 것이며, <표 2>는 그것을 귀순자가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1> 귀순자의 월소득과 월가구소득

귀순자	본인소득	가 구 소 득
①	60원	160원(부 연금 20원, 모 80원)
②	150원	270원(모 120원)
③	250원	650원(부 연금 20-30원, 형 탄광노동 250원, 누이 탄광노동 70-80원)
④	68원	248원(부 연금 15원, 모 여관책임자 55원, 동생 전기기술자 60원, 동생 실험공 55-60원)
⑤	60원	100원
⑥	40-60원	80-100원
⑦	80-90원	160-170원(처 배우 70-80원)
⑧	70-80원	175원(부 연금, 처 교양원 40원)

〈표 2〉 귀순자 자신의 경제적 지위 평가와 월소득

본인소득(원)	가구소득(원)	자신의 경제수준 평가
150, (68)	270, (248)	(A) ← 아주 잘 사는 층
70-80, 80-90	160-170, 175	(B)
60	160	(C) ← 중간정도
40-60, 60, (250)	80-100, 100, (650)	(D)
		(E) ← 아주 못 사는 층

〈질문B-18〉에 대하여 8명중 3명이 아주 못사는 층에, 1명이 중하층에, 2명이 중간층에,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중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같이 4명이 중간이하의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외에는 귀순자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여 어떠한 공통점을 추출할 수 없다.

그러나, 〈질문B-18〉에 대한 응답을 〈질문B-19〉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보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소득이 250원이고 전체가구소득이 650원에 달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아주 못사는 층에 속한다고 증언한 ③과 68원의 소득으로 중간 이상의 층에 속한다고 증언한 ④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경제적 수준과 자신의 월소득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대략 70-90원 정도이면 경제적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0원이하이면 아주 못 사는 층으로,

그리고 60원에서 70원 정도이면 중하층에 속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반면에 90원 이상이면 스스로를 중상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북한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60-70원이라는 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인 북한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의 소득과 자신이 평가한 경제적 위치를 비교하여 보면 아주 못사는 층으로 생각하는 귀순자의 월가구소득은 100원 이하, 중하로 생각하는 귀순자의 월가구소득은 100원에서 160원 사이, 그리고 중간정도라고 생각하는 귀순자의 월가구소득은 160원에서 175원 사이, 그리고 중간이상의 경제적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귀순자는 그 이상의 월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월평균 70-80원의 소득과 160-170원정도의 월가구소득을 가지는 경우 스스로 경제적으로 중관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④의 경우 본인소득이 68원에 불과하면서도 자신이 중상위층에 속한다고 증언한 것은 248원에 달한다는 그 가족의 총소득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는 소득구조에 있어서도 정치적 계층화가 이루어져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가 소득에서도 우월한 배분을 받고 있다. 둘째, 월평균소득이 60-70원인 북한의 노동

자는 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그러나 월평균소득이 60-70원으로 아주 못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10-20원을 더 받는 북한의 노동자가 스스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과 월평균소득이 70-90원으로 일반노동자보다 10-20원을 더 받는 노동자가 스스로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북한의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당·정기관의 간부들, 즉 경제적 상류층과의 엄청난 격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자들은 경제적 수준에서 하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라 할 것이다.

다. 체제에 대한 인식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국가의 보장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장한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은 법적 규정에만 존재하고 현실 노동자들에 의해 체감되고 있지 않음을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귀순자의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북한체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질문B-20〉를 통해 ‘북한사회가 땀흘린 만큼 보상받고 있는 사회인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8명중 6명

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체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란 측면에서만 귀순자들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질문B-21〉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귀순자들이 북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세가지를 순서대로 택하여보라는 질문에 「우상화, 세습 체제」(빈도-6, 가중치-13)와 「인권탄압」(빈도-5, 가중치-13)이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뒤를 「경제적 낙후」(빈도-5, 가중치-9)가 잇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묻은 〈질문B-22〉에 대한 응답에서 3명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그리고 2명이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북한체제가 주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응답에서 2명이 「김일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들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북한이 자유와 인권을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자립적인 사회주의국가인가?’ 라고 묻은 〈질문B-23〉에 대하여 모두가 부정적으로 대답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의 자유와 인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는지 세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지적하라는 〈질문B-24〉에서 「상품의 공급량확대」(빈도-6, 가중치15)에 이어 「정치적 민주화」(빈도-4, 가중치-9)와 「의사표현의 자유」(빈도-4, 가중치-7)의 순으로 대답되고 있는 것도 억압되고 있는 북한사회에 대한 귀순자들의 반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노동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B-25〉의 응답에서 전부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귀순자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활하였던 북한사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긍지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생활은 힘들었고 자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속에서도 즐거움은 있었고 무엇인가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은 〈질문B-26〉에 대하여 3명을 제외하고 5명이 긍정적으로 - 「적극 찬성한다」 2명, 「대체로 찬성한다」 3명 -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후 북한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래서 북한은 초기 몇년동안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중대한 오류가 범해졌다”라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은 〈질문B-27〉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 「적극 찬성한다」 4명, 「대체로 찬성한다」 2명 -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두질문의 응답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은 북한이

초기 사회주의기치아래 이룩했던 성과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귀순자들이, 나아가 북한주민들이 가지는 김일성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김일성은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다. 김태범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북한경제가 나빠진 이유가 김일성의 실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간간부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국가적인 중간간부인 시당 및 도당간부, 당중앙위 간부, 기업소지배인 및 당비서, 직맹위원장, 사로청위원장 등은 그들의 기득권 유지, 즉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현지지도시에 시찰지역에 집중적으로 쌀, 기계 등의 물자를 공급하여 김일성이 북한의 실상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중간 간부들의 잘못이며, 봉쇄상황 속에 놓인 김일성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무오류성에 대한 이들의 시각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유일사상과 수령의 절대성이 얼마나 북한주민들 사이에 내면화되어 있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⁴²⁾ 〈질문B-22〉에서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몰락 이후에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유

42) 최경구/유문무, 「북한의 주체이념과 사상교육」, 『아세아연구』, 제34집 2호(1991), pp. 45-84;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로서 2명이 「김일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적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태범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인민학교 시절부터 모든 북한 주민에게 교육되어 북한 어느 주민을 붙잡고 물어봐도 주체사상을 줄줄 외울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유치원생도 김일성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데, 귀순후 만난 남한의 아이들은 대통령의 이름조차 몰라 깜짝 놀랐다는 황광철의 증언은 북한의 사상교육실태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한편, 김일성을 주민들이 따르는 이유로서 최명학은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하였으며, 6·25전쟁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였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편, 북한에서 김일성은 흠모의 대상이며 아버이 같은 너그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반면 김정일은 무조건 따라야 할 공포의 대상이라고 여긴다고 박수현은 증언하고 있다. 김태범에 따르면 김정일은 권력을 틀어쥐기 위하여 자기 측근들을 권력의 요직과 주요 기업소에 앉혔고 그 과정에서 선배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인물로 북한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평일을 해외로 쫓아내고부터 야심가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의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 등으로 북한주민들간에 김정일에 대한 비난의식은 상당히 높으나 단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주민들은 북한정부나 오진우까지는 비판할 수 있으나 - “오진우 때문에 인민군대가 못먹는다”고 비판 -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낙후 속에서도 김일성의 무오류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만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북한은 끊임없는 사상교육을 시키고 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한 이후 북한은 실직되고 생활고에 쪼달리는 이들 국가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만을 골라 북한의 언론방송매체에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나라가 무너지면 모두 저렇게 거지가 된다고, 자본주의의 식민지가 된 국가의 딸로가 저런 것이라며 선전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민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있다. 또한, 여기에 김정일의 공포독재정치가 추가되어 북한주민들은 감히 불만을 표출할 수 없이 따르고 있다고 귀순자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변화는 북한의 주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두만강의 경계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던 어성일의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을 두만강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옷차림의 변화를 보고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하여 북한은 중국이 일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외국의 빛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교육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비난은 삼가하고 있다고 황광철은 말한다. 또한, 어성일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오랫동안 해 온 나라도 영도자를 잘못 만

나면 나라가 망한다며 소련에 대해서는 후계자계승을 잘못하여 나라가 망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하여는 아무리 큰나라도 혁명 2세 계승을 잘못하면 나라정책이 갈팡질팡해진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노동자는 북한사회가 땀흘린 만큼 보상을 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또한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억압되고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셋째, 그러나 북한의 노동자는 북한이 초기 사회주의건설기에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다. 넷째,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경외심과 그의 무오류성이 노동자들의 사고에 내면화되어 있다. 다섯째, 국가정책의 잘못은 김일성의 실정때문이 아니라, 중간간부들의 잘못에 있다는 생각이 노동자들간에 일반화되어 있다.

라. 개인이기주의

식량 등 물자가 부족하여지고 경제난이 심화되자 북한노동자들간에, 나아가 북한주민들간에 제몫챙기기경향이 일어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물교환의 차원을 넘어 이득추구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상거래행위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4장 3절 「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사회주의노동법의 평가에서 북한노동자들의 다수가 집

단주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논의에 근거하여 이와 대립되며 현재 북한주민간에 확산되어가고 있는 개인이기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⁴³⁾

북한에서는 개인이기주의가 집단주의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다.⁴⁴⁾ 따라서 북한에서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 하는가 하는 것이 생활의 가치척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사상교육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곳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이기주의가 표출되고 있다. 영화 『보증 제1부: 생명의 기사』에서 연합기업소내 간부의 관료적 행위를 비판하는 대사 - “어째서 술한 책과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열변도 토하고 하는데 왜 우리 청년들 속에서 개인이기주의자가 계속 생깁니까?” - 를 통해 개인이기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 『평범한 사람』에서는 전동기사고가 일어나자

43) 「개인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북한에서 집단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개인이기주의」가 사회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44)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 97.

위로부터의 문책을 두려워한 중간간부들이 전동기관리자에게 전동기가 낡아서 일어난 사고로 은폐하고 전동기를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관리자는 “사람들이 어찌면 이렇게 천층 만층일까. 저하나 무사할 생각을 하다니”라면서 자기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간부들의 개인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개인이기주의적 경향은 단편소설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소설 『상상봉』에서는 다른 집 아이들이 아무 직장에나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자기 딸이 산골 오지의 개발현장에 자원하자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고 안타까워 하는 아버지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⁴⁵⁾ 또한, 소설 『사랑과 언약』에서는 공장수리공으로 일하다가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마친 후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남편과 공장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아내를 통해 부부간에 나타나는 집단주의와 개인이기주의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⁴⁶⁾ 한편, 개인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소집단이기주의도 지적되고 있다. 소설 『사랑의 길』에서는 모심기에서 이웃한 분조끼리 서로 돕지 않는 분조본위주의의 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⁴⁷⁾

개인이기주의적 경향은 개인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수확물과 협동농장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지에 면하여 거주하는 일반주택가구와 농촌거주가구

45) 전택철, 「상상봉」, 『청년문학』 (1991.11), p. 22.

46) 이정수, 「사랑과 언약」, 『청년문학』 (1990.12), pp. 19-24.

47) 장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 (1991.4), pp. 11-12.

는 30평정도의 텃밭을 가질 수 있다. 박수현의 증언에 따르면 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옥수수가 손바닥만 하다면 개인의 텃밭에서 수확되는 옥수수는 팔뚝굵기만 하다는 것이다. 박수현은 북한주민들은 마음속으로는 개인이기주의적이거나 그것을 사회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라며, 통일후 개인이기주의가 허용되면 극도의 개인이기주의가 표현될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이기주의는 무엇보다 사회에 일반화된 제몫챙기기경향과 음성적으로 일반화된 상거래행위와 그것에 의한 이득추구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상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추구가 북한주민들간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본주의화되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생산수단만 국유화되었을 따름이지 개개인들은 자본주의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인성도 자본주의에 상응하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스스로 체험해 보았거나 경청한 바를 기준하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지 24개의 항목중에 세가지를 택하여 보라는 <질문B-28>의 답변에서 증언자들은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압도적으로 (빈도-5) 들고 있으며, 이어서 「부지런하다」(빈도-3)와 「개인주의적이다」(빈도-2)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증언자들이 귀순후의 생활을 토대로 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지 동일한 24개의 항목중 세가지를 택

하여 보라는 〈질문B-29〉의 대답으로 응답자들은 절대적인 비율로(빈도-8) 「돈을 벌려고 한다」를 들고 있으며, 이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빈도-3), 「책임감이 강하다」(빈도-3), 「개인주의적 이다」(빈도-3)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질문 B-28〉와 〈질문B-29〉를 비교하여 볼 때 남북한 주민들의 공통적인 성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한다」와 「개인주의적 이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인성은 바로 자본주의사회에 부합하는 것이다.⁴⁸⁾

이상에서의 논의로 북한사회에서도 주민들 개개인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적 속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과 따라서 북한주민이 자본주의체제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일후 어떤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B-30〉에 대하여 5명이 자본주의체제를 지적하고 나머지 3명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통일이후 한반도에 구축되어야 할 체제의 형태가 자본주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8) 이러한 견해는 남북한간의 가장 큰 대립이 북한의 집단주의적 가치와 남한의 개인주의적 가치간의 충돌이라고 보는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차재호,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한국심리학회,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p. 17; 이장호,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 회복」,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집 3호(1993), pp. 115-125 참조.

한편, 귀순자들이 통일이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질문B-31>에서 알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빈부의 격차」, 「실업문제」, 「지역격차」, 「물가문제」, 「주택문제」, 「개인주의」 등의 분야가 통일후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물음에 경제는 크게 성장할 것이며, 정치적 민주화도 진전될 것이고 물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대답하였다. 반면에 개인주의는 크게 심화될 것이고 실업문제와 빈부의 격차가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며 지역격차와 주택문제도 악화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축으로 하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귀순자, 북한노동자, 나아가 북한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의식하고 있건, 의식하고 있지 못하건간에 그들의 인성과 삶의 태도가 자본주의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하여 자본주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북한노동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귀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이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로서 자본주의는 남을 착취하여 하루 벌어 10일 먹고 사는 남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자기 위주의 체제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크고 직업이 있으면 근심없이 살 수 있으나 실업자가 되면 문제라고 배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

본주의란 극소수 자본가만 잘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라고 북한에서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귀순자들과 같이 자본주의의 실상을 피부로 느껴볼 수 없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자본주의의 장점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⁴⁹⁾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 등 물자가 부족하여지고 경제난이 심화되자 북한노동자들간에, 나아가 북한주민들간에 제몫챙기기경향이 일어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상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추구는 주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또한 돈을 벌려고 하고 개인주의적인 주민들의 인성도 자본주의에 부합한다. 넷째, 이러한 주민 개개인의 자본주의화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극히 부정적이다.

마. 전통문화적 요소

앞에서 북한은 사회주의문화를 도입하면서 전통문화를 파괴하였으나 내외의 어려움속에서 전통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즉, 경제발전, 그리고 주체사상과 권력세습의 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

49) 통일한국의 체제이념에 관하여는 황병덕, 「통일조국의 이념」, 『통일문제연구』, 제5집 3호(가을, 1993), pp. 90-123 참조.

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온정주의를 다시 강조하였던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전통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남아 있고 변화하였는가를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질문B-16〉을 통하여 북한의 노동자가정내에는 전통적 예의범절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을 물은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웃어른 못시기」, 「형제간의 우애」, 「인간애」 등을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가족간에 사랑과 정으로 뭉쳐진 끈끈한 유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귀순자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가족성원 가운데, 특히 부모가 정치사상적으로 불온한 발언을 하였을 경우 이를 가족이 권력기관에 고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증언자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결같이 부인하였다. 다만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무런 의식 없이 부모의 말을 외부에 전했다가 부모가 잠혀간 예는 있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확산되어가는 개인이기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웃간에 서로 돕는 정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남북한의 여러 사회적 상황을 서로 비교해보라는 〈질문B-32〉의 응답으로 귀순자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생활용품의 구입」, 「개개인의 결정권」, 「자아실현」, 「사회적인 상승 가능성」,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한 반면, 「민생치안」, 「단결 및 공동체 의식」, 「가족의

일체감, 「상부상조」 등의 측면에서 북한이 우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통제사회로서 범죄의 발생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실제 범죄의 발생은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⁵⁰⁾, 남한사회가 북한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는 「단결 및 공동체 의식」, 「가족의 일체감」, 그리고 「상부상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미풍양속이라 할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개인이기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결핍되어가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그곳에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반세기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내에 온존하고 있는 전통문화는 서로 유사하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언어」와 「전통관습」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은 〈질문B-33〉에 「언어」항목에는 응답자 모두가 - 2명이 「매우 비슷함」 그리고 6명이 「다소 비슷함」 -, 그리고 「전통관습」항목에는 1명을 제외한 전부가 - 5명이 「매우 비슷함」 그리고 2명이 「다소 비슷함」 - 남북한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녀관계를 질문한 〈질문B-34〉를 통하여 오늘날 젊은 북한노동자들의 개방적인 성문화를 엿볼 수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과 증언을 종합해 보면 8명중 7명의 귀순자들

50) 서용석, 「북한사회의 범죄」, 『아세아연구』, 제35집 1호(1992), pp. 49-85 참조.

은 북한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할 때 혼전 성관계는 무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였다. 황광철은 북한에 “동태는 보다 더 흔하게 여자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여자가 많아 여자들은 남자들을 잡기 위해 꼭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인구중 남녀의 구성비는 100.1:100.0이며, 특히 연령이 적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4세의 연령에서 남녀의 비율은 106.1:100, 25-29세의 연령에서는 104.7:100의 비율로 남자가 많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⁵¹⁾ 따라서 귀순자의 증언은 여성수가 많아서라기 보다 군복무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에 상대적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의 젊은 노동자들의 성문화가 그렇게 개방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애와 결혼은 별개인가?’를 묻은 〈질문B-35〉에 대하여 2명을 제외한 6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귀순자들도 연애를 하여 혼전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거의 결혼으로 연결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자에 대한 정조관념은 강하게 가지면서 결혼전에 즐길만큼 즐기자는 심리가 젊은 남성노동자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도 한다.

51) 손봉숙/이경숙/이은숙/김애실,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나남, 1992), pp. 180-183.

한편, 북한에서는 가족계획이 강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이 하나가 좋다, 둘은 많다, 셋은 너무하다”란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김태범은 증언하고 있다. 이상 성문화에 관한 논의는 모두 남성인 귀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어 그것이 북한노동자전체의 성문화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는 개인이기주의적 경향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가족간의 유대, 그리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이 남아 있다. 둘째, 전통문화 전반적으로는 남북한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셋째, 북한의 젊은 노동자들, 적어도 남성노동자들은 다소 개방적인 성문화를 보이고 있다.

2. 노동자의 생산문화

북한의 노동자문화중 정신문화에 대한 분석에 이어 여기서는 물질문화, 즉 북한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일상을 보내며, 어떠한 행위양식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생활양식은 어떠한가를 각각 『노동자의 생산문화』와 『노동자의 생활문화』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노동자의 하루일과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노동자의 하루일과를 알아보았다. 〈질문B-36〉는 북한에서의 노동자시절 귀순자들의 일상생활을 시간별로 적어보라는 것이다. 질문에 응한 8명의 귀순자들의 하루일과는 직업과 작업장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공장기업소에서의 노동일과는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그들이 직접 작성한 일과표를 토대로 재구성해보면 북한노동자들의 하루일과는 〈표 3〉과 같이 진행된다고 여겨진다.

〈표 3〉 북한노동자의 일과표

시 간	일 과
05:00 - 06:00	
06:00 - 07:00	기상
07:00 - 08:00	출근, 30분간 독보회, 일일총화
08:00 - 09:00	오전작업 시작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오전작업 종료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오후작업 시작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오후작업 종료
17:00 - 18:00	일일 및 생산개정총화
18:00 - 19:00	강연, 학습, 혹은 주생활 총화
19:00 - 20:00	
20:00 - 21:00	퇴근 후 휴식, 인민반
21:00 - 22:00	
22:00 - 23:00	
23:00 - 24:00	

독보회는 통상 오전작업시작 전에, 그리고 일일총화는 오전작업시작전 그리고/혹은 오후작업종료후에 진행된다. 소요되는 시간은 신문읽기 등을 통한 당선전과 사상교육을 하는 독보회가 약 30분, 일일총화는 경우에 따라 1분에서 1시간까지 다르다. 그리고 공장직맹위원장이나 공장회관관장이 주연사로 등장하는 강연회는 일주일에 1-2회씩 보통 저녁 7시부터 9시사이에 약 한시간반 정도 진행된다. 그외 일주일에 한번에 걸쳐 김일성 및 김정일동지 혁명역사학습과 정치학습이 역시 약 한시간반 정도 진행된다. 또한, 주생활총화는 토요일 혹은 수요일에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공장기업소에서는 일과근무후 거의 매일 각종 집회와 학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이것을 마치고 귀가하여 저녁을 먹는다. 한편, 노동자들은 퇴근 후에도 보통 10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인민반에 참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1가구에 1명씩 대체로 가구의 세대주가 참석한다. 인민반은 약한시간반 정도 진행된다.⁵²⁾

나. 노동자의 노동실태

북한은 노동자들에게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며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여 노력낭비를 없애고 480분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는 한편,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어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³⁾ 그리고 그것을 각종 집회나 사상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각종 대중매체가 동원되는데 공장기업소내의 상영소에서 집단적으로 관람되는 영화도 그러한 도구중의 하나이다.

영화 『전환의 해』는 당명에 무조건 복종하여 시키는 대로 노동하는 것이 노동자의 의무임을 잘 선전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1956년 북한이 한창 복구사업중일 때 어느 한 제철공장에서의 얘기이다. 일본인들이 3만톤을 생산하던 압연기계로 - 기계가 일제인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 쓰던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 6만톤을 생산한 노동자들은 다음해의 생산목

52) 인민반에 관하여는 알렉산드르 제빈,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제37집 1호(1994), pp. 141-159 참조.

53) 사회주의노동법 제1, 20, 32조 참조.

표로 8만톤을 책정받는다. 그러나, 김일성이 다시 9만톤을 생산할 것을 지시하자 노동자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때 작업반장인 주인공은 “우리 당에서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는 타산을 앞세워 본적이 없다.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도는 그 다음에 찾는게지”라면서 노동자들의 분발을 유도해 낸다. 그리고 노동자의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 주는 김일성에 대해 끝없는 감사와 충성을 바쳐야 함을 선동하자 노동자들은 휴가도 반납하고 일에 매달린다.

또한, 영화 『평범한 사람』에서의 한 장면도 김일성수령을 위해서 분발하여 노동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레일을 만드는 조강공장에서 전동기가 고장나자 전동기관리인은 “수령님은 전동기 하나에도 그토록 걱정을 놓지 못하시는데” 이렇게 또 고장이 났다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는 나 같은 당원이 천이면 뭘하고 만이면 뭘하냐”면서 어떻게든 전동기를 꼭 고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는 아들을 깨워가면서 밤늦게까지 수리에 매달린다.

그러나,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평가 - 특히 〈질문A-25〉 -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자들은 질적으로 효과적인 생산적인 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더욱 뚜렷해진다. 귀순 후 남한에서의 노동자생활을 눈여겨 본 백영길, 김길송은 남한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투하하는 노동강도는 북한의 그것보다 3배나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영길은 북한에

서는 죄수들도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 남한처럼 일하면 『노력영웅칭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70일전투, 200일전투 등의 노력경쟁운동도 며칠이 지나면 시들해져 시간만 때우는 일상이 반복되어 노동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 황광철은 200일전투에서 계획의 절반도 이루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어성일도 북한에서의 노동자들은 능률위주의 노동이 아니라 시간때우기노동이었다며 작업의 질에 대해서는 무심경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면 〈질문B-28〉의 응답과 배치되어 보인다. 귀순자들에게 스스로 체험해 보았거나 경청한 바를 기준으로 하여 북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가를 항목중에 세가지만 고르라는 질문에 귀순자들은 「돈을 벌려고 한다」(빈도-5)에 이어 「부지런하다」(빈도-3)를 두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노동자들이 부지런하다는 것이 노동현장에서 질적으로 효과적인 노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A-3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적인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성있는 효과적인 노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운다는 양적인 의미에서, 혹은 노동현장을 벗어난 일상생활에서의 부지런함 - 예를 들어 생활문화에서 살펴 볼 자유시간에 집안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빼들러 장마당에서 거래행위를 하는 등의 부지런함 -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시간때우기노동외에도 북한의 노동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작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편소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소설 『복무자』는 휴식날 일하라는 작업반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딸의 집 방문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한 여성노동자를 묘사하고 있다.⁵⁴⁾ 또한, 소설 『긴등벌』에서는 배가 아프다는 구실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소에 남아 쉬면서 동료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한 운전수의 행태를 그리고 있다.⁵⁵⁾ 그외 소설 『첫 메아리』에서는 분조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노동자의 행태가,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는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거나 할머니제사라면서 작업장에 늦게 나타나는 등으로 노동을 기피하는 노동자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작업의 태만은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노동현장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⁵⁶⁾

한편, 북한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하지 않는 반면, 남한의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귀순자들의 이러한

54) 변창률, 「복무자」, 『청년문학』 (1992.1), p. 29.

55) 김삼복, 「긴등벌」,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 (평양: 문예출판사, 1988), p. 243.

56) James Scott는 이것을 “일상생활형의 저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이라고 표현한다. 그의 책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5);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pp. 99-102 참조.

증언의 이면에는 이들이 풍요로운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외에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점은 <질문B-37>와 <질문B-38>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남한에 오는 북한인들이 남한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은 <질문B-37>에 대하여 6명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를 직접 적어보라는 <질문B-38>의 응답으로 새로운 사회체제, 새로운 생활방식외에 남한에서의 노동강도가 북한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귀순자 한명은 나아가 만약 북한노동자들이 남한식으로 일하게 된다면 자본가의 착취를 강조한 북한의 교육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할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노동자는 평균 8시간의 일과노동외에 각종 집회, 학습, 강연을 통해 사상교육을 거의 매일 받는다. 둘째, 북한노동자는 질적으로 생산성있는 노동을 하기보다 시간때우기노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엄격한 통제와 규율속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작업을 기피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남북한간의 노동강도의 차이가 귀순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3. 노동자의 생활문화

가. 노동자의 의·식·주생활

북한노동자의 생활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노동자들의 의·식·주생활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에서 식생활은 식량배급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량의 배급도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당정치국원, 당중앙위비서, 중앙당부장, 제2호위부(김정일호위담당)소속 군관·사진사·재봉사, 김정일서기실요원 등은 백미 8백g,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맥주, 야채, 담배 등이 최고급으로 가정에 매일 공급된다. 중앙당부부장, 부총리, 제1호위부(김일성호위담당)소속 군관 등은 식량(1일 7백g, 백미:잡곡=7:3), 육류, 맥주, 야채, 담배 등이 주 1회 단위로 각 가정에 풍족하게 배달된다. 또한, 당중앙부서지도원, 책임지도원, 과장 등은 월공급량인 식량(1일 7백g, 백미:잡곡=6:4), 육류 4kg, 생선 10kg, 야채, 기름, 담배 30갑 등이 2주에 1회씩 분할공급된다.⁵⁷⁾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정의 간부와 상층의 특권계급들은 식량배급에 구애받고 있지 않으며,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위세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식료품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나머지 대상자들은 각 직급종류 5종에 따라 각 직장에

57) 1994년 8월 9일 통일원이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북한의 인권실태』(1994년 8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 재인용).

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지정된 공급소에서 식료품을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식량의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된다. 배급제가 확실하게 기능하고 있었던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들은 쌀과 옥수수가 3:7의 비율로 섞인 식량을 하루에 600-700g 배급받았다.⁵⁸⁾ <표 4>는 그것을 보여준다.⁵⁹⁾ 그러나, 일반노동자들에게 대한 식량공급은 당국이 정한 배급량에 의해 한정되어 있어 항상 식량이 부족하였다. 부족한 식량은 장마당을 통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여 충당해야 하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식생활현황이 어떠한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4> 1인당 1일 식량배급량

연 령	0-4세	5-14세	15세이상 일반노동자	15세이상 중노동자, 군인	15세이상 병·노약자
배급기준량	300	500	700	800	400
73년이후 전쟁 비축미 월 4일 분 공제	260	433	607	695	347
87년이후 절약 미 10%공제(식 량사정악화시)	234	390	547	624	324

58) 통일원 정보분석실, 『시사정보 94-22』(1994.10).

59) 통일원, 『'92북한개요』(1992), p. 280.

현재 북한주민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가지를 택해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보라는 〈질문B-39〉에 대하여 귀순자들은 압도적으로 「풍요로운 식생활」(빈도-7, 가중치-19)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으며, 이어서 「생활수준의 상승」(빈도-4, 가중치-8)과 「남북한의 통일」(빈도-3, 가중치-6)을 차례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가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B-40〉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식생활 개선」(빈도-7, 가중치-19)을 절대적인 과제로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식생활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 식생활의 어려움은 식량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영화 『군당지도원』에는 추수가 한창 진행중인 들판에서 한 군당지도원이 기러기를 잡아 배를 가르다. 그리고 주위에 몰려든 일군들에게 한 마리의 기러기가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낱알을 먹어치우는지 아느냐면서 김일성의 식량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달아보지 못했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달아보셨습니다. 낱알 실어들이기가 걱정되신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농장에 나오시어 몸소 별판의 기러기를 잡으시고 목안에 들어있는 벼알을 달아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한마리의 기러기가 단번에 20g씩 먹는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한알의 낱알도 허실되지 않게 벼단을 빨리 끌어들여야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생활은 〈질문B-24〉의 응답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에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세가지를 택해 우선순위대로 적어보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엇보다 「상품공급량 확대」(빈도-6, 가중치-15)를 귀순자들은 지적하였다. 또한, ‘남한으로 온 북한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높은 생활수준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자유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B-41〉에 대하여 6:2의 비율로 응답자가 「자유」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들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전후하여 북한사회가 어느 정도 변하였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B-42〉에 대하여 2명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3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 본 〈질문B-43〉에 8명중 7명이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하고 있는 점도 어려운 북한의 경제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급격히 나타나고,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김정일의 전시적인 경제정책 등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북한의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게 한 계기를 귀순자들은 한결같이 1989년 평양에서 개

최되었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하 평축)으로 보고 있다. 평축을 위해 외화, 생산물자는 물론 비축해 두었던 물자와 식량마저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대회 이후 공장가동율이 급감하고 국가로부터의 물자와 식량공급이 급감하였다는 것이다. 귀순자 박수현은 평축 이후 북한의 사정을 북한주민들은 “13차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식량사정이 악화된 계기가 된 것은 1984년 남한에서 수재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구호양곡을 보낸 이후였다고 최명학은 말한다. 북한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빠듯한 식량을 남한으로 보낸 그 해에 흉년이 들어 북한에서는 비축해 두었던 비상식량마저 소모하게 되었다. 그후 국가로부터의 공식적인 식량공급이 줄어들었고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치루어진 평축은 식량과 물자를 더욱 결핍시켰다. 노동자에게 배급되던 식량중 쌀비율이 1할 줄어들고 옥수수도 없어서 귀순자 김영성은 도토리밥을 먹었다고 한다. 만성적인 식량난이 심화되어 1992년 8월에는 자강도와 양강도에서 배급이 몇개월 중단되었고, 1993년 8월에는 제3의 공업도시인 함흥시에도 배급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양에서도 때때로 배급을 거르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⁶⁰⁾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암거래가 성행하게 되고 식량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는 식량, 즉 강냉이가 곧

60) 통일원 자료분석실, 『시사정보 94-22』(1994.10).

돈이라고 한다. 국정가격 6천인 강냉이 1kg이 장마당에서는 가을철에는 5-6원, 식량부족이 더욱 심해지는 7-8월에는 15-20원까지 한다고 한다. 그리고 1kg당 국정가격이 7-8원인 쌀은 35원정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방도를 모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물자가 결핍되고 식량과 물품공급이 줄어들자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기몫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북한의 노동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부족한 식량과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교환할 물품이 필요하였고 따라서 노동자들 사이에 『물품빼돌리기』가 북한에 성행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물품을 빼들려 - 특히, 연간 가동기간이 짧은 공장기업소에서는 가동기간중에 집중적으로 - 그것을 장마당에서 교환하거나 팔아서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조달한다. 노동자들은 빼들린 물품을 모아두었다가 뇌물을 주어 병원진단서를 끊어 병가 - 뇌물의 정도에 따라 3일에서 10일사이의 병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를 얻거나,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장마당에서 팔거나 교환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화한다고 한다. 특히, 도시노동자들은 물건을 가지고 식량사정이 좋은 농촌에 가서 식량과 교환하여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하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통행허가증은 역시 뇌물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귀순자 박수현은 “북한에서는 뇌물로 안되는 것이 없

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박수현은 거의 모든 노동자가 이러한 빼돌리기의 방법으로 국가에서 도적질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물자난이 심하게 되자 빼돌리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귀순자들도 밝히고 있다. 탄광에 근무하면서 탄을 배낭에 조금씩 빼들었던 황광철은 이러한 『배낭치기』를 작업반장들은 눈감아 주었다고 한다. 그는 모아두었던 탄을 달구지에 실어 장마당에서 강냉이와 교환하였다고 한다. 공장에서 빼들린 물건을 판 돈으로 식량을 샀었다는 박수현은 “공장물건을 가져가 버려도 죄의식은 없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뒷거래를 주민들은 범죄라기보다 생활의 지혜에 가깝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⁶¹⁾

빼돌리기가 말단 하부노동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북한사회내의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증언은 뒷받침해 준다. 최명학에 따르면 공장에서 국영상점에 공급하기 위하여 신발 100켤레를 생산하였다면 공장간부, 간부의 친인척, 간부와 결탁한 상점 등에 의해 일차적으로 빼돌리기가 이루어지고, 이어 노동자들에 의한 빼돌리기가 이루어져 상점에 도착하는 신발은 12켤레 정도 뿐이라고 한다. 최소한 생산품의 80% 이상이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61) 통일원 자료분석실, 『시사정보 94-22』(1994.10).

식량 등 물자가 부족하여지자 북한주민들간의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박수현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는 그래도 식량을 서로 나눠 먹는 경향이 있었으나, 90년 이후에는 거의 그러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식량인심이 박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자부족의 상황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제몫챙기기경향과 결부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이기주의를 확산시켰다. 최명학은 북한에 “쌀떡이 넘쳐나면 인심이 후하다”란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개인이기주의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식량과 물자의 결핍이란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일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태범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집에서 죽물을 먹으면 여자가 우둔하기 때문이며, 강냉이를 먹으면 여자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식량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고지식해서는 못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식량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중의 하나가, 특히 여자가 당에서 시키는대로 따르는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장마당을 통하건 어찌하였든 간에 식량을 구입하여야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여자가 식량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남자는 여자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풀이겸해서 싸움을 한다는 것이다.

한때 강냉이를 구경하기 힘들었던 평양주민들도 이제는 예

의가 아니다. 김태범에 따르면 1989년 이전에 다른 지역이 쌀과 강냉이를 섞어 먹을 때 평양에는 강냉이를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1989년부터 평양주민들도 강냉이를 먹기 시작하여, 시베리아에서 일하다 92년에 평양을 다시 찾았을 때 평양에도 강냉이의 비율이 훨씬 많아졌다고 한다.

식량사정의 악화로 북한주민들은 영양가를 생각하기는 커녕 배불리만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최명학에 따르면 북한에서 간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간식의 원료가 거의 식량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는 실정에 간식의 생산은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과일은 장마당에서 사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생활필수품의 국가공급이 줄어들자 주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장마당을 통해 구입한다. 공식적인 유통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비공식적 유통구조인 장마당이 현재 생존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장마당에서는 담배, 술, 공업제품 등 국가공급물품을 제외한 물품 - 예를 들어 농·수산물이나 집에서 생산한 계란 등 - 의 거래만 허용되고 있으나, 현재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술, 담배, 돼지고기, 신발, 양말, 의류 등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허용된 물품외의 거래행위는 암거래로 불법이며 처벌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군에서 배운 유격전식으로 유동장마당을 형성해가며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 박수현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백영길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장마당에는 견본품만 들고 나가서 흥정을 한후 실제 거래는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백영길은 장마당이 없으면 북한주민들은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최명학에 따르면 생필품의 약 80%, 그리고 식량의 약 60%를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의 가격은 국정가격의 약 10배정도인데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전당포격인 『수매재생산점』의 가격에 기준해 장마당의 가격이 설정된다고 한다. 하루에 한갑씩 장마당에서 암거래로 담배를 사서 피웠던 최명학에 따르면 국정가격 30전인 보통담배가 장마당에서는 3원, 그리고 국정가격 50-60전인 좋은 담배가 10원까지 거래되었다고 한다. 황광철에 따르면 국정가격이 500원인 TV가 장마당에서는 3000원에서 6000원까지 한다고 한다.

박수현에 따르면 이러한 상행위는 1984년경부터 중국교포가 친지방문을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보따리장사를 시작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해산물, 인삼등 각종 물품을 중국교포에 팔 경우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손에 쥐 수 있음을 알게된 북한주민들은 생산물을 국가에 바치기 보다 빼돌리거나 훔쳐 이들 상인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거래행위에 눈을 뜨게 되었고, 더욱 악화된 경제사정 속에서 이러한 상행위는 더욱 성행하게 된 것이다.

식량과 기본생활품의 부족에 기인하여 비정상적 유통구조가 활성화되었다면 뇌물수수가 현재 북한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파행적인 생활행태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수수는 현재 북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다. 뇌물을 주어 병가를 얻거나 통행증을 발급받는 외에 외화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는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사회보장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보장자가 될 경우 식량배급은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 따라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노동자들은 뇌물을 써 사회보장자가 되어 상행위와 외화벌이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한 귀순자는 인사담당자에게 장마당에서 외화벌이로 번 돈 중 6000원을 주고 구입한 TV를 뇌물로 주어 군복무를 3년 만에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뇌물수수는 북한사회에서 하나의 일상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질문B-40〉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북한정부가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세가지를 택해 우선순위대로 적어보라는 질문에 「식생활 개선」(빈도-7, 가중치-19)에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기강확립」(빈도-5, 가중치-9)이 두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노동자들이 어떠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주의노동법 제69조에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북한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자가소유의 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공급한다.⁶²⁾ 공급된 주택의 거주자는 주택의 사용권만을 가지되 주택에 대한 처분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의 행정적인 배분에 있어서 뚜렷한 계층화현상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즉, 주택의 배정이 사회적 계층과 성분에 따라 엄격하게 불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주하는 주택만 보더라도 거주자의 지위와 신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⁶³⁾

특호로 분류된 단독고급주택은 60평이상의 넓은 공간에 고급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채광시설이 양호하게 건립되어 있으며, 냉·온방장치 및 수세식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특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당과 정무원의 부부장급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들과 군대의 소장이상 고위간부들이다. 4호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신형고층아파트는 중앙당과 정무원의 고급간부를 비롯해 대학교수, 문인, 작가, 간부급연예인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호와 4호주택은 상류급주택으로 전체주택의 약 15%를 차지하며 주로 평양, 원산, 청진 등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다.

62) 귀순자 김성의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 일부 인정되었던 개인 주택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한다. 주택부의 통제에 따라 비우려면 언제라도 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4.8.10.

63) 김문조/조대엽, 「북한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아세아연구』, 제35권 1호 (1992), pp. 41-42.

중류급으로 구분되는 3호와 2호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 방 2개 정도에 부엌, 화장실, 창고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지방도시의 경우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아파트는 대체로 방 2개, 부엌, 수세식화장실, 창고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중류급주택에 거주할수 있는 계층은 중앙당 및 행정부서의 지도원급이상 국장급, 시·군·구역 당·정기관의 간부, 2급이상 공장기업소부장, 직장장, 각 대학 평교원, 기타 교육·문화·보건기관의 중앙간부들이다. 중류급주택은 전체주택의 약 25%정도로 주로 평양과 주요 지방도시에 건립되어 있다.

하류급으로 분류되는 1호주택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집단주택, 농촌지역의 초가, 농촌문화주택 등을 망라하고 있다. 도시집단주택의 경우에는 방 1-2개, 부엌 1개로서 공동변소,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주로 일반노동자, 탄광노동자, 사무원 등이다. 1호주택은 전체주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⁶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행정적 배분에 의해 주택의 불평등분배가 뚜렷이 위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구조가 엄격한 통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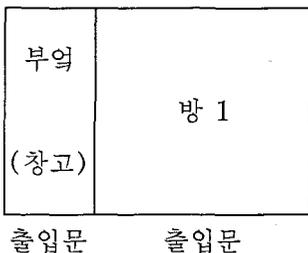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평가문항중 <질문A-46>을 통해 노동자들이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간만을 보장받고 있음

64) 통일원, 『'92북한개요』 (1992), p.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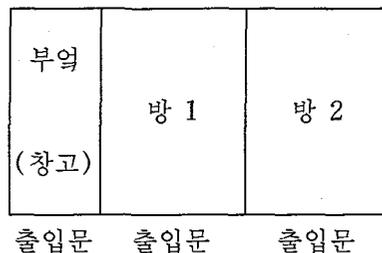
을 알았다. 주택의 공급현황, 주택의 구조, 거주인수 등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귀순자들에게 〈질문B-44〉를 통하여 그들이 북한 거주시에 살았던 주택의 구조와 거주인수를 적어보라고 하였다. 귀순자들은 대부분 방 1-2개의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거주가족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3명에서 8명까지 다양하였다. 한편, 주택의 구조는 귀순자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중 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귀순자들의 아파트와 주택중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도식화한 것이 〈그림 3〉, 〈그림 4〉, 그리고 〈그림 5〉이다.

〈그림 3〉은 김길송의 가족이 36년간 7명의 식구가 살던 방 1칸의 집이며, 〈그림 5〉는 그의 가족이 1988년에 처음으로 공급받은 공장소속 아파트의 구조이다. 〈그림 4〉는 황광철의 가족 6명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생활한 단층 연립주택의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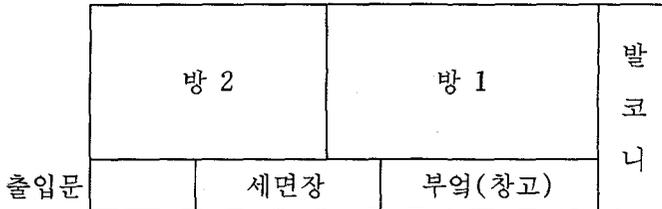
〈그림 3〉 단층 연립주택



〈그림 4〉 단층 연립주택



〈그림 5〉 공장소속 아파트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식량과 물자공급, 그리고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공급감소로 격심한 식량부족과 물자부족을 겪고 있다. 둘째, 부족한 식량과 물품을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물품빼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 셋째, 식량과 물자의 부족은 노동자들간에 제몫챙기기경향을 일으키면서 개인이기주의성향을 확산시키고 있다. 넷째,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유통경로인 암시장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다섯째, 물품빼돌리기와 더불어 뇌물수수가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의 노동자들은 국가가 공급해주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현황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평가항목 가운데 〈질문A-12〉, 그리고 〈질문A-50〉에서 〈질문A-57〉까지의 응답을 통하여 북

한에서는 노동자에게 연금, 무상의료혜택등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질적으로 보잘 것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귀순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 제74조에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 노동연한을 가진 경우에 연로연금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법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직장 근무경력이 20년이상이 되면 매월 25원의 현금과 1일 3백g의 식량을 배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B-19〉에 대한 귀순자 ①과 ④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약속된 연금 25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15원 혹은 20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귀순자 박창환의 증언에 의하면 그나마의 연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들에게는 1일 2백g 정도의 식량만 공급되고 있으며, 이들도 가내작업반이나 생산반에서 생산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⁵⁾

노동법 제12조와 79조에는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무상치료와 무상의료혜택을 보장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들이 기본임금의 1%씩을 『사회보장비』의 명목으로 공제당하고 있어 전적으로 무상의 의료혜택이 이루어지고

65) 국회 정보위원회에 안기부장이 밝힌 보고내용 (1994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에서 재인용).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의료시설의 질도 매우 열악하고 설비와 약품류가 절대부족한 실정이다. 시설과 의약품이 부족한 가운데 의료혜택도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방북 일본인은 증언을 통하여 당원의 진료카드는 붉은 색이고, 비당원의 진료카드는 푸른색으로서 당원에 대한 의료봉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⁶⁶⁾ 따라서 연금과 의료혜택 등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사회보장이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노동자의 여가활동

1992년 4월 9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제3장 『문화』 및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는 북한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⁶⁷⁾ 노동자의 여가활동은 자유시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질문A-10〉, 〈질문A-11〉, 〈질문A-14〉, 〈질문A-26〉, 그리고 〈질문A-39〉에서 부터 〈질문A-44까지〉까지 등을 통해 북한노동자들은 시간외 추가노동, 일요일노동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휴식과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과 노동의 이용을 위한 노동관리란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휴식 - 직업과 직종에 따라 한달에 2-3회의 휴일, 정기휴가 및 명절휴가 - 만

66) 『조선일보』, 1994.8.10.

67) 통일연수원, 『1994 북한이해』 (1993), pp. 291-315 참조.

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귀순자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탄광노동자로 일했던 황광철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았던 관계로 한달에 3일 휴일과 일년에 28일간의 휴가를 얻었으나, 다른 직종의 경우 한달에 2일정도 밖에 휴일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운전수로 근무했던 박창환도 한달에 2일을 쉬었으며 1년에 정기휴가를 15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가 이러한 최소한의 휴식이나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수로 일했던 최명학은 3년동안 정기휴가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휴일외에 일을 하지 않는 날로 명절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명절은 『국가명절』과 『최대의 명절』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국가명절에는 1월 1일 설날, 3월 8일 부녀절, 5월 1일 노동자날, 8월 15일 조국해방기념일, 9월 9일 공화국창건기념일,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 그리고 12월 27일 헌법절날이 포함된다. 한편, 최대의 명절은 4월 15일 김일성생일과 2월 16일 김정일생일을 말한다.

노동자들이 자유시간을 가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여가생활을 보내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노동자들은 여가시간에 주로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8시간의 하루노동과 이어지는 집회, 강연 등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은 퇴근후 불과 몇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질 뿐이다. 이 여가시간을 노동자들은 주로 TV를 보면서 보낸다. 평일과 휴

일의 평균 TV시청시간을 물은 〈질문B-45〉가 보여주듯이 보통 평일의 경우에는 2시간정도 TV를 시청하며, 휴일에는 그 이상의 시간을 TV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각 가정이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TV 보급율은 약 30% 정도이고, TV가 없는 경우에는 귀순자 여성일의 경우 합숙소에서, 그리고 김길송의 경우 친구집에서와 같이 공동시청을 한다. 한편, 화학연합기업소 탄산소대공장 부문사로청위원장으로서 현금마련이 가능했던 백영길은 장마당에서 TV를 구입하였으며, 김태범의 경우 철칙되기 전 한때 정무원 간부로 근무했던 부친이 당으로부터 TV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들이 즐겨보았던 TV프로그램은 〈질문B-46〉가 보여주듯이 외국영화였다. 박수현의 증언에 의하면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가 붕괴하기 전에는 주로 이들 국가의 영화가 일주일에 2-3회 방영되었으나, 이들 사회의 변화 후에는 쿠바영화가 주로 방영되며, 그외에 간혹 중국영화가 방영된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디오를 통해 기타 서방의 외국영화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민군 복무시 호위총국의 일원으로 김일성궁전 경비사령부에 근무했던 박수현은 본 영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의 제목을 물은 〈질문B-47〉에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들었다.

그외 노동자들이 본 영화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으로 월북한 최덕신 그리고 윤이상, 최흥희 등을 소재로 한 「민족과

운명」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특이롭다. 특히, 영화 속에 나오는 남한가요 「홍도야 울지마라」는 오늘날 북한주민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남한 유행가가 되었다고 귀순자 황광철은 증언하였다. 한편, 신상옥이 북한체제시 춘향전을 재각색한 영화 「사랑 사랑 내사랑」은 여자의 속옷고름을 푸는 장면이 담겨 있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귀순자들은 말하고 있다. 성적 표현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북한사회에서 조그마한 성적 표현이라도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시간을 가졌을 때 즐겨 한 일을 묻은 〈질문B-48〉과 자유시간을 함께 하였던 단체의 이름을 묻은 〈질문B-49〉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유시간을 가졌을 경우 일체의 사설단체의 조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주로 직장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하였다. 이들은 주패놀이(카드놀이의 일종)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혼자서 시간을 보낼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집안일 - 나무패기나 잡일 - 을 하거나 모자랐던 수면을 취하고 있다.

술을 마시는 경우 술의 구입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배경이 있으면 국정가격으로 상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장마당에서 구입하거나 집에서 만든 밀주를 마신다고 한다. 백영길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에 강냉이 10kg을 가져다 주면 10l들이 술 20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술은 종류에 따라 장마당 가격이 3원, 6원,

12월 등으로 다양하나, 국정가격 80전인 술 1병의 장마당가격은 10원 정도라고 한다. 황광철과 최명학, 그리고 박창환은 보통 3일에 한번씩 강냉이로 집에서 만든 술을 집에서 마셨으며 김치나 두부김치를 안주로 하여 먹었다고 한다.

북한가정에서 라디오의 보유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대개의 경우 각 가정에는 스피커만 연결되어 있어 필요시에 틀어 듣는다. 하루의 평균 라디오 청취시간을 묻은 〈질문B-50〉과 즐겨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묻은 〈질문B-51〉의 응답으로 귀순자들은 라디오와 거의 무관하게 생활하거나 하루 1시간 정도 청취한다고 하며, 보도 혹은 노래프로그램을 즐겨 들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라디오는 전기식으로 되어 있어 전파방송을 수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황광철은 중국장사군으로부터 반도체라디오를 구입하여 KBS사회교육방송을 청취하였다고 하며, 동방송의 북한생활에 대한 방송내용이 북한의 실상과 거의 일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노동자들이 주로 읽는 신문은 로동신문이었다(〈질문B-52〉). 그러나, 노동자들은 로동신문을 직접 받아 읽을 수 없으며, 독보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전달 받거나 공적으로 비치된 것을 읽는다.⁶⁸⁾ 그리고 지방에 거주할 경우 각

68) 신문은 노동당의 하급간부 이상부터 집에서 구독할 수 있으며, 당간부에게는 보통의 신문외에도 타블로이드판 8페이지로 된 『참고신문』과 오전과 오후 2차례 『비밀신문』이 배달된다. 계층에 따라서는 외국의 사건도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통일원 정보분석실, 『시사정보 94-22』(1994.10).

도일보도 자주 접한다고 하였다. 즐겨 읽었던 잡지가 무엇인가를 물은 〈질문B-53〉에는 응답자 5명중 3명이 「천리마」를 지적하고 있어 천리마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활자매체임을 알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소설을 질문한 〈질문B-54〉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고전소설(홍길동전, 임궫정), 현대소설(벗, 메아리, 민들레, 등대), 탐정소설, 그리고 외국소설의 번안물(로빈슨 크루소, 톰소야의 모험) 등이 다양하게 읽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명학은 소설 『먼길』이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에 반하여 『메아리』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즐거웠던 운동을 질문한 〈질문B-55〉의 응답으로 축구와 탁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어 별다른 부대시설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 종목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질문한 〈질문B-56〉에서 답변에 응한 6명 전부가 하모니카와 피리를 학교시절에 배워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타도 개인적으로 연습하여 다룰 수 있다고 3명이 대답하였다.

즐거 부르는 노래를 질문한 〈질문B-57〉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도 「도라지」, 「아리랑」, 「노들강변」 등의 전통민요가 이질적인 체제하에서도 여전히 애창되고 있는 동일한 문화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외 「경사났네」, 「최진사댁 셋째딸」, 「독도는 우리 땅」 등의 남한가요가 북한주민들

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남한가요 한두곡 정도는 부를 수 있다고 백영길과 황광철은 증언하였다. 남한가요의 전파는 중국교포에 의해 밀반입된 테이프를 통해서, 혹은 남한의 대북방송의 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백영길에 따르면 남한노래가 은밀히 유포되자 당국은 『행처불명의 노래를 부르지말데 대하여』란 지시로 금지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의 북한주민들이 널리 애창하는 북한가요로서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휘파람」을, 그리고 혁명가요로서는 「동지애의 노래」를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노동자는 법이 정한 휴식과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둘째, 노동자는 여가시간에 주로 TV를 보며, 그의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 셋째, 신문은 주로 로동신문을 간접적으로 읽으며 잡지로는 천리마를 읽는다. 그의 외국소설의 번안물도 읽는다. 넷째, 사회적으로 성적표현이 금지되어 영화내의 조그마한 성적표현도 노동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킨다. 다섯째, 북한의 노동자들도 전통민요를 여전히 애창하며, 남한가요도 한두곡 정도는 부를 수 있다.

V. 결 론

북한의 노동자들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 노동과 건설의 주인이다. 계급이 없다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그들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인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하였다. 북한사회에서의 계급발생은 구조화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기인한다. 희소한 자원과 시설물에 대한 배분과 접근의 관리에 의해 일어나는 인간사회내 보편적인 불평등현상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사회 생산양식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구조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주체사상에 기반하여 주민의 동원과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성과 기능성을 기준으로 수령-당-국가란 획일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일방적으로 가치를 배분하는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이 복합되어 사회적 불평등은 구조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문화』는 북한사회에서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의 핵심이고, 실제적으로는 피지배계급에 불과한 근로대중의 핵심을 이루는 노동자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이다. 따라서 노동자문화는 지배계급이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규범적으로 내면화시키고자 하는 정형화된 가치관과 행위규범, 즉 『노동계급의 문화』와는 편차를 보일 수 밖에 없다. 통제와 억압으로 엄격하게 정형화된 북한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 속에서 노동자

가 지배계급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불평등한 배분에 의해 차등적으로 결정되어지는 노동자의 생활방식이 지배계급의 그것과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투철하여 수령을 어버이로 받들고 당·국가에 복종하며 집단주의원칙과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어 맡겨진 계획과 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될 것을 북한의 지배계급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동계급의 문화와는 편차를 보이는 북한노동자의 실제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탐구하는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는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 피지배계급 전반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가늠해보는 작업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귀순 북한노동자와의 대화, 북한의 영화와 단편소설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북한 노동자 문화에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시도하였던 작업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노동자들의 일부분은 나라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집단주의원칙과 군중노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식과 실제 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는 차이가 있어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다수의 노동자들은 집단주의와 군중노선이 노동의 결과를 정

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적절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자들은 북한사회가 땀흘린 만큼 보상을 해주는 사회, 정치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이 초기 사회주의건설기에 이룩한 성과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경외심과 그의 무오류성이 노동자들의 사고에 내면화되어 있다. 국가정책의 잘못은 김일성의 실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간간부들의 잘못에 있다는 생각이 노동자들간에 일반화되어 있다.

셋째, 노동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 속에서도 북한의 노동자들은 정치적 계층화에 의해 구조화된 소득불평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못사는 계층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지배계급, 즉 경제적 상류층과의 엄청난 격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넷째, 노동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보장한 것들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은 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노동을 하기 보다 시간때우기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엄격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작업에 태만하거나 작업을 기피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식량과 물자공급, 그리고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공급감소로 격심한 식량부족과 물자부족을 겪고 있으며, 국가가 공급해주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서 물품을 빼돌려 비공식적 유통경로인 암시장을 통해 식량과 필수품을 충당하고 있다. 물품빼돌리기, 그리고 그와 더불어 뇌물수수가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섯째, 식량과 물자가 부족하여지고 경제난이 심화되자 북한노동자들간에, 나아가 북한주민들간에 일어나는 제몫챙기기경향, 그리고 음성적으로 일반화된 상거래행위와 그것에 의한 이득추구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체제에 의해 집단주의원칙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교육되는 이기주의가 개인간에 집단간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상거래행위의 확산을 통한 북한노동자 개개인의 자본주의화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극히 부정적이다.

일곱째, 개인이기주의적 경향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가족간의 유대, 그리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의식이 북한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여기에는 유교적인 전통문화요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북한 문화정책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여덟째, 북한의 노동자들은 추가노동, 근무시간외 사상교육 등으로 일상적으로는 법이 정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력 관리란 차원에서 최소한의 휴식과 휴일만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국가적으로 약속된 사회보장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따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자들은 김일성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지배계급이 규범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문화와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노동자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문화가 노동계급의 문화와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질서 전반에 대한 정당성부여에 있어서의 동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지배적인 사회적 지위, 생산과 각급의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의 배제, 열등한 가치의 배분과 그것에 의한 차별적인 생활방식 등으로 인하여 북한노동자들의 소외감과 불만은 높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 사회구조적 지위와 역할의 피규정성에 더하여 경제난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는 노동자들이 유일한 세계관이며 이념적 토대인 주체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유일사상의 축이었던 김일성이 없는 현재 그러한 동요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이 결국 북한의 주민이 남한사회를 그들의 지향점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한편, 북한 근로대중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그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대중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그들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는 통일한국의 노동자문화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일한국 사회구성체의 내용, 성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남한사회의 발전에 구조적으로 적합성을 가지면서 북한노동자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보완되는 노동자문화를 형성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자본주의를 건설할 때 남한은 통일에의 유인력을 더욱 가지게 될 것이며,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을 그들의 체제로 택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 가치관과 그것에 바탕을 둔 행위양식은 오랜시간에 걸쳐 내면화되고 축적되며, 연속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변화한다. 통일한국의 노동자문화 역시 서서히 형성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따라서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주요한 탐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노동자문화형성을 위한 장·단기 전략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 문

A. 단행본과 논문

-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자료집』 (1988)
- 길태근,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델구성」, 『북한연구』, 제5집 2호(여름, 1994), pp. 144-164
- 길태근/김원동(역), 『계급불평등과 정치질서』 (서울: 나남, 1988)
- 김광동, 「북한의 공장내 노동단체활동과 노동동원」, 『북한연구』, 제2집 4호(겨울, 1991), pp. 149-156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문조/조대엽, 「북한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아세아연구』, 제35권 1호(1992), pp. 1-48
- 김연중,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6』 (1991), pp. 267-348
-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분석』 (국토통일원, 1984)
- 김영중, 「북한의 복지행정정책」, 『북한연구』, 제3집 3호(가을, 1992), pp. 168-184
-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과정』 (1991)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주민의 가치체계』 (1993)
- 박형중, 「사회주의공업화와 북한지배체제의 형성」, 『북한연구』, 제4집 2호(여름, 1993), pp. 158-174
- 법무부, 『북한법연구 6: 노동법』 (법무부법무실, 1987)
-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가족법윤리를 중심으로」, 『행정사연구』, 제1호(1993), pp. 173-187
-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서용석, 「북한사회의 범죄」, 『아세아연구』, 제35집 1호 (1992), pp. 49-85
- 서재진, 「통일한국의 계급문제」,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1993), pp. 113-135
-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선한승, 「노동자문화와 노동의식」, 임희섭/박길성(편), 『오늘의 한국사회』 (서울: 나남, 1993), pp. 129-149
- 손봉숙/이경숙/이온죽/김애실,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2), pp. 180-183
- 송복(편), 『사회불평등갈등론』, (서울: 전예원, 1986)
- 안병영,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평등 문제」, 『연세행정논총』, 제9집(1982), pp. 18-34

- 알렉산드르 제빈,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제37집 1호(1994), pp. 141-159
- 양홍모, 「북한의 사회문화 연구」, 『북한학보』, 제10집(1986), pp. 107-131
- 오정수,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북한연구』, 제2집 4호(겨울, 1991), pp. 158-173
- 이성봉,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분석」, 서진영(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II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1)
- 이장호,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 회복」,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집 3호(1993), pp. 115-125
- 장석은, 『북한의 노동정책』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6)
- 정현백, 「노동자문화의 소시민화와 그 기원」, 『공동체문화』, 제2집(1984), pp. 179-238
- 정현백,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서울: 한길사, 1993)
- 『주체의 인테리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차재호,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한국심리학회,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pp. 1-17
- 최경구/유문무, 「북한의 주체이념과 사상교육」, 『아세아연구』, 제34집 2호(1991), pp. 45-84
- 최흥기, 「북한의 가족제도」,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통일연수원, 『1994 북한이해』 (1993)

통일원, 『'92 북한개요』 (1992)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제출 보고서: 조선일보, 1994.8.10)

통일원 정보분석실, 『시사정보 94-22』(1994.10)

홍순호(역), 『노멘클라투라』 (서울: 평민사, 1982)

황병덕, 「통일조국의 이념」, 『통일문제연구』, 제5집 3호(가을, 1993), pp. 90-123

B. 사전과 신문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백과전서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조선일보』, 1994.8.10

『조선일보』, 1994.8.28

II. 영문

Bahro, R., *Die Alternative: Zur Kritik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Hamburg, 1977)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1962)

Dowe, Dieter, “Die Arbeitersängerbewegung in Deutschland vor dem Ersten Weltkrieg”, in: Gerhard

- A. Ritter(ed.), *Arbeiterkultur* (Königstein/Ts., 1973), pp. 120-132
- Eberstadt, Nicholas/Judith Band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 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 Groschopp, H., *Zwischen Bierabend und Bildungsverein. Zur Kulturarbeit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von 1914* (Berlin: Dietz, 1985)
- Kocka, Jürgen, "Arbeiterkultur als Forschungsthema. Einleitende Bemerkung", *Geschichte und Gesellschaft*, 5 (1979), pp. 1-25
- Pahl, R., *Whose City?* (Harmonthworth: Penguin, 1977)
- Ritter, Gerhard A., "Einleitung", in: Gerhard. A. Ritter (ed.), *Arbeiterkultur* (Königstein/Ts., 1973), pp. 1-14
- Scott, James,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5)
- Shih, Chin-yu, "A Research Note on Worker's Culture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24, No. 3 (1994), pp. 370-384
- Stearn, Peter N., "The Effort at Continuity in Working-Class Culture",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No. 4 (December, 1980), pp. 626-655

Szelenyi, Ivan, *Urban Inequalities under State Socialism*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3)

III. 북한 영화

- 『군당지도원』
- 『민족과 운명』
- 『보증 제1부: 생명의 기사』
- 『사랑 사랑 내사랑』
- 『전환의 해』
- 『평범한 사람』

IV. 북한 단편소설

- 강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1991.4)
- 고을룡, 「두자매의 편지」, 『청년문학』(1990.12)
- 김금숙, 「우리 이웃들」, 『청년문학』(1990.3)
- 김령철, 「날바다 우에서」, 『청년문학』(1990.6)
- 김삼복, 「긴등별」,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
(평양: 문예출판사, 1988)
- 김충국, 「분수령」, 『청년문학』(1989.6)
- 리강철, 「우리의 행진곡」, 『청년문학』(1990.7)
- 리성덕,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청년문학』(1992.4)
- 리정수, 「사랑과 언약」, 『청년문학』(1990.12)

- 리태윤, 「삐걱새가 노래하는 곳」, 『조선문학』(1990.3)
리화, 「인간의 수업」, 『조선문학』(1989.7)
변창률, 「복무자」, 『청년문학』(1992.1)
신락선, 「높은 산마루」, 『청년문학』(1990.9)
윤경찬, 「삶의 자격」, 『청년문학』(1990.10)
윤리태, 「어제와 오늘」, 『조선문학』(1991.6)
장동일, 「여름」, 『조선문학』(1991.5)
장수근, 「계승」, 『청년문학』(1991.7)
정현철, 「삶의 향기」, 『조선문학』(1991.11)
전택철, 「상상봉」, 『청년문학』(1991.11)

[부록 1]

북한귀순자 대담문항-A

대담대상자(가나다순): 김길송, 김태범, 박수현, 박창환, 백영길,

어성일, 최명학, 황강철 (총 8명)

대담일시: 1994년 11월 1일 - 11월 4일

대담장소: 민족통일연구원

다음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_____에 직접 해당하는 대답을 써 넣어 주
 시거나,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질문A-1> 북한에서 노동자들은 모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나라
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다.

- | | | | |
|-------|-------|-------|-------|
| (A) | (B) | (C) | (D) |
| 정말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아니다 |

①-B, ②-D, ③-C, ④-C, ⑤-C, ⑥-B, ⑦-B, ⑧-B

<질문A-2> 북한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행복보다 조국의 번영과 사회
주의혁명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힘써 일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C, ③-C, ④-C, ⑤-B, ⑥-B, ⑦-B, ⑧-B

〈질문A-3〉 북한의 노동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자각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D, ③-C, ④-C, ⑤-B, ⑥-B, ⑦-C, ⑧-B

〈질문A-4〉 북한에서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D, ③-C, ④-D, ⑤-D, ⑥-C, ⑦-B, ⑧-B

〈질문A-5〉 북한의 노동자들은 각자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D, ③-D, ④-D, ⑤-D, ⑥-C, ⑦-C, ⑧-C

〈질문A-6〉 북한에서는 중노동과 경노동, 공업노동과 농업노동,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 노동의 본질적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D, ③-C, ④-C, ⑤-D, ⑥-B, ⑦-C, ⑧-B

〈질문A-7〉 북한의 모든 노동자들은 국가의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B, ③-B, ④-B, ⑤-D, ⑥-A, ⑦-B, ⑧-A

〈질문A-8〉 북한에서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D, ③-C, ④-C, ⑤-D, ⑥-D, ⑦-C, ⑧-B

〈질문A-9〉 북한에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정확히 실시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D, ③-C, ④-C, ⑤-D, ⑥-D, ⑦-D, ⑧-C

〈질문A-10〉 북한은 노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을 보호하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국가이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C, ③-C, ④-C, ⑤-D, ⑥-D, ⑦-D, ⑧-C

〈질문A-11〉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C, ③-D, ④-C, ⑤-D, ⑥-D, ⑦-D, ⑧-C

〈질문A-12〉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이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B, ③-C, ④-C, ⑤-C, ⑥-A, ⑦-C, ⑧-A

비고: 긍정적인 응답은 문항중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 항목을 제외한 답변임

〈질문A-13〉 북한에서 노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따라서 노

동현장에서 16세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은 금지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A, ②-A, ③-A, ④-A, ⑤-A, ⑥-A, ⑦-A, ⑧-A

〈질문A-14〉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은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단축된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D, ④-C, ⑤-D, ⑥-D, ⑦-B, ⑧-A

〈질문A-15〉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A, ③-D, ④-C, ⑤-C, ⑥-D, ⑦-B, ⑧-B

〈질문A-16〉 노동자들은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수행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B, ③-C, ④-D, ⑤-C, ⑥-D, ⑦-C, ⑧-B

〈질문A-17〉 노동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B, ③-C, ④-C, ⑤-C, ⑥-B, ⑦-B, ⑧-B

〈질문A-18〉 노동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계와 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이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B, ③-C, ④-C, ⑤-C, ⑥-B, ⑦-B, ⑧-B

〈질문A-19〉 노동조직에서 군중노선이 노력을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C, ③-C, ④-D, ⑤-D, ⑥-D, ⑦-B, ⑧-B

〈질문A-20〉 나라의 노력 원천과 수요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가장 현실적인 노동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A, ③-D, ④-C, ⑤-C, ⑥-A, ⑦-C, ⑧-B

〈질문A-21〉 북한에서 국가는 위와 같은 가장 현실적인 노동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C, ③-C, ④-C, ⑤-D, ⑥-B, ⑦-C, ⑧-B

〈질문A-22〉 북한에서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 사이의 노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C, ③-C, ④-B, ⑤-C, ⑥-C, ⑦-C, ⑧-B

〈질문A-23〉 북한에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 기능수준에 맞게 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D, ③-D, ④-B, ⑤-D, ⑥-C, ⑦-B, ⑧-C

〈질문A-24〉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

원, 아동병동, 편의시설 등이 잘 꾸려져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C, ③-C, ④-B, ⑤-C, ⑥-B, ⑦-A, ⑧-B

〈질문A-25〉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의 480분 노동시간이 완전히 이용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B, ③-A, ④-B, ⑤-C, ⑥-A, ⑦-B, ⑧-B

비고: 긍정적인 답변은 노동의 질적 측면이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만 답변임

〈질문A-26〉 북한에서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C, ③-D, ④-B, ⑤-C, ⑥-D, ⑦-A, ⑧-B

〈질문A-27〉 북한에서는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일군들도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동안 생산노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B, ③-D, ④-B, ⑤-C, ⑥-D, ⑦-C, ⑧-B

〈질문A-28〉 북한에서 노동자들은 성별, 연령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A, ②-C, ③-A, ④-B, ⑤-B, ⑥-A, ⑦-D, ⑧-B

비고: 긍정적인 응답은 문항에 「같은 급수」를 첨가하고 한 답변임

〈질문A-29〉 북한에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A, ②-B, ③-C, ④-C, ⑤-D, ⑥-D, ⑦-D, ⑧-A

〈질문A-30〉 북한에서는 일을 잘한 노동자들이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D, ③-C, ④-C, ⑤-C, ⑥-D, ⑦-C, ⑧-B

〈질문A-31〉 노동정량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균중노선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가장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C, ③-C, ④-B, ⑤-C, ⑥-A, ⑦-C, ⑧-B

〈질문A-32〉 북한에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노동정량을 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C, ③-C, ④-C, ⑤-C, ⑥-D, ⑦-B, ⑧-B

〈질문A-33〉 북한에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자, 사무원, 농민간의 수입과 생활수준이 고르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D, ③-C, ④-C, ⑤-D, ⑥-D, ⑦-D, ⑧-B

〈질문A-34〉 북한에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C, ③-C, ④-C, ⑤-C, ⑥-C, ⑦-C, ⑧-B

〈질문A-35〉 북한에서 건설 및 설계기관과 해당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B, ③-D, ④-C, ⑤-D, ⑥-C, ⑦-A, ⑧-B

〈질문A-36〉 북한에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B, ③-D, ④-C, ⑤-D, ⑥-B, ⑦-B, ⑧-B

〈질문A-37〉 북한에서는 여성들에게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B, ③-A, ④-C, ⑤-D, ⑥-B, ⑦-A, ⑧-B

〈질문A-38〉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가 보장되고 있으

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가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B, ③-C, ④-C, ⑤-D, ⑥-C, ⑦-C, ⑧-C

〈질문A-39〉 북한에서는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B, ③-C, ④-B, ⑤-D, ⑥-C, ⑦-D, ⑧-C

〈질문A-40〉 북한의 노동자들은 하루노동시간이 끝나면 휴식을 취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노동자들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A, ③-B, ④-C, ⑤-D, ⑥-D, ⑦-D, ⑧-C

〈질문A-41〉 북한의 노동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A, ③-B, ④-C, ⑤-D, ⑥-D, ⑦-D, ⑧-C

〈질문A-42〉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

①-C, ②-A, ③-B, ④-B, ⑤-D, ⑥-A, ⑦-C, ⑧-B

비고: 긍정적인 응답은 문항중 「일요일」항목을 제외한 답변임

〈질문A-43〉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노동자들을 노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A, ③-B, ④-C, ⑤-D, ⑥-A, ⑦-C, ⑧-B

〈질문A-44〉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B, ④-B, ⑤-B, ⑥-D, ⑦-B, ⑧-B

〈질문A-45〉 북한의 여성노동자들은 정기 및 보충 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 산후휴가를 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A, ②-A, ③-B, ④-B, ⑤-A, ⑥-A, ⑦-A, ⑧-A

〈질문A-46〉 북한에서 노동자들은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
을 보장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B, ③-D, ④-C, ⑤-D, ⑥-D, ⑦-B, ⑧-B

비고: 긍정적인 응답은 문항중 「문화적인」 항목을 제외한 답변임

〈질문A-47〉 북한에서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은 썩
값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B, ④-B, ⑤-A, ⑥-C, ⑦-A, ⑧-B

〈질문A-48〉 북한에서 노동자들의 어린이들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지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B, ③-A, ④-B, ⑤-D, ⑥-B, ⑦-B, ⑧-B

〈질문A-49〉 북한에서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자자녀들
에게 의무교육을 시켜주며 그들은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
교에서 무료로 공부한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A, ②-A, ③-A, ④-B, ⑤-A, ⑥-A, ⑦-B, ⑧-B

〈질문A-50〉 북한에서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노동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A, ③-A, ④-C, ⑤-B, ⑥-A, ⑦-C, ⑧-B

〈질문A-51〉 북한에서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노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연로연금을 준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A, ②-A, ③-B, ④-B, ⑤-A, ⑥-B, ⑦-D, ⑧-A

〈질문A-52〉 북한에서는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준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D, ②-A, ③-B, ④-C, ⑤-D, ⑥-B, ⑦-B, ⑧-A

〈질문A-53〉 북한에서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노력일을 주며 산전 산후 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준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B, ④-B, ⑤-B, ⑥-B, ⑦-B, ⑧-B

〈질문A-54〉 북한에서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연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키운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A, ③-B, ④-B, ⑤-B, ⑥-B, ⑦-B, ⑧-B

〈질문A-55〉 북한에서는 노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A, ③-B, ④-B, ⑤-C, ⑥-B, ⑦-B, ⑧-B

〈질문A-56〉 북한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A)	(B)	(C)	(D)
-------	-------	-------	-------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C, ④-B, ⑤-B, ⑥-A, ⑦-B, ⑧-A

〈질문A-57〉 북한에서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요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C, ④-B, ⑤-B, ⑥-A, ⑦-C, ⑧-A

[부록 2]

북한귀순자 대담문항-B

대담대상자(가나다순): 김길송, 김태범, 박수현, 박창환, 백영길,

어성일, 최명학, 황강철 (총 8명)

대담일시: 1994년 11월 1일 - 11월 4일

대담장소: 민족통일연구원

다음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_____에 직접 해당하는 대답을 써 넣어 주
 시거나,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질문B-1〉 북한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업에 따라 사람을 대조하여
 차별하는 직업 차별의식이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A, ④-B, ⑤-A, ⑥-B, ⑦-B, ⑧-B

〈질문B-2〉 북한 사회에서는 직업에 따라 사회적 위신의 불평등이 존
 재하여 노동자가 무시당하고 있다.

(A)	(B)	(C)	(D)
-------	-------	-------	-------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A, ②-B, ③-A, ④-B, ⑤-A, ⑥-A, ⑦-B, ⑧-B

〈질문B-3〉 북한의 육체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B, ③-A, ④-C, ⑤-A, ⑥-A, ⑦-C, ⑧-C

〈질문B-4〉 북한의 육체노동자들과 정신노동자들간에는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어, 육체노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B, ③-D, ④-B, ⑤-A, ⑥-A, ⑦-C, ⑧-C

〈질문B-5〉 북한에서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가까운) 기술노동간에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A, ②-B, ③-D, ④-C, ⑤-A, ⑥-B, ⑦-C, ⑧-C

〈질문B-6〉 북한의 육체노동자들은 정신노동직업을 획득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A)	(B)	(C)	(D)
-------	-------	-------	-------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B, ③-B, ④-B, ⑤-B, ⑥-B, ⑦-C, ⑧-B

〈질문B-7〉 북한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정신노동자의 자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B, ④-B, ⑤-A, ⑥-B, ⑦-B, ⑧-B

〈질문B-8〉 북한에서 정신노동을 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육체노동자의 자녀와 결혼하기를 원할 때 이를 반대한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C, ④-B, ⑤-A, ⑥-B, ⑦-A, ⑧-C

〈질문B-9〉 북한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세가지를 적어주십시오.

- ① 외국에 드나드는 직업, 의사, 외화벌이
- ② 의사, 보위부, 안전부
- ③ 자동차 운전자, 안전원, 의사
- ④ 외교일군, 당·보위부·안전부(권력일군), 상업일군
- ⑤ 당간부, 행정간부, 급양부분, 상업부분, 외화벌이
- ⑥ 당간부, 보위일군, 안전일군
- ⑦ 운전자, 배우, 교원

⑧ 무역일군, 당간부

〈질문B-10〉 귀하가 북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순위대로 세가지를 적어주십시오.

- ① 의사, 안전원
- ② 군부대 외화벌이 지도원, 당간부, 의사
- ③ 부기원(계산원)
- ④ 당간부, 사무원, 출장원
- ⑤ 당일군, 운전수
- ⑥ 운전수, 의사,
- ⑦ 무역업무

〈질문B-11〉 북한의 육체노동자들은 정신노동직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 | | | | |
|-------|-------|-------|-------|
| (A) | (B) | (C) | (D) |
| 정말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아니다 |

①-A, ②-A, ③-A, ④-B, ⑤-A, ⑥-B, ⑦-A, ⑧-C

〈질문B-12〉 북한의 노동자 부모들은 자식의 출세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 | | | | |
|-------|-------|-------|-------|
| (A) | (B) | (C) | (D) |
| 정말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아니다 |

①-A, ②-A, ③-B, ④-B, ⑤-B, ⑥-B, ⑦-B, ⑧-B

〈질문B-13〉 북한의 노동자 부모들은 자식의 출세를 위해 자식의 교

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C, ②-A, ③-A, ④-C, ⑤-B, ⑥-B, ⑦-B, ⑧-B

〈질문B-14〉 북한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A) 교육의 정도

(B) 인맥과 가족의 배경

(C) 사상과 성분

기타 (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① C-B-A, ② B-C-A, ③ C-B-A,

⑤ C-B-A, ⑥ C-B-A, ⑧ B-C-A

〈질문B-15〉 북한의 육체노동자의 자녀들은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족적 배경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①-B, ②-A, ③-A, ④-B, ⑤-A, ⑥-A, ⑦-A, ⑧-C

〈질문B-16〉 귀하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육시키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가지를 적어주십시오.

① 예의도덕(웃어른 모시기), 공부, 노동잘하기

② 어른에 대한 공경, 배우자는 탐구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 ③ 거짓말을 하지 마라, 겸손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 ④ 건강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정서 도덕교육
- ⑤ 배워야 한다,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
간 서로 의좋게 살아야 한다
- ⑥ 공부 잘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일 잘해야 한다, 웃사람 말
씀을 잘 들어라
- ⑦ 참다운 인간애, 도덕
- ⑧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 해라, 어른을 공경히 모셔라

〈질문B-17〉 북한에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A) 장래성
- (B) 건강
- (C) 외모
- (D) 집안
- (E) 직업

- ① B-A-E, ② A-E-D-B-C, ③ C-E-D, ④ E-C-B,
- ⑤ B-D-E-C-A, ⑥ E-D-B, ⑦ A-E-D, ⑧ A-D-C

〈질문B-18〉 경제생활 측면에서 귀하는 북한에서 어디쯤 위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A) ← 아주 잘 사는 층
- (B)
- (C) ← 중간정도
- (D)
- (E) ← 아주 못 사는 층

①-D, ②-B, ③-E, ④-B, ⑤-E, ⑥-E, ⑦-C, ⑧-C

〈질문B-19〉 북한에서 귀하의 한달 평균수입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귀댁의 전체 가구평균수입은 얼마였습니까?

- ① 본인소득: 60원 전체 가구소득: 160원(부 연금 20원, 모 80원)
 ② 본인소득: 150원 전체 가구소득: 270원(모 120원)
 ③ 본인소득: 250원 전체 가구소득: 650원(부 연금 20-30원, 형
250, 누이탄광노동 70-80원)
 ④ 본인소득: 68원 전체 가구소득: 248원(부 연금 15원, 모 여관
책임자 55원, 동생 전기기술자 60원,
동생 실험공 55-60원)
 ⑤ 본인소득: 60원 전체 가구소득: 100원
 ⑥ 본인소득: 40-60원 전체 가구소득: 80-100원
 ⑦ 본인소득: 80-90원 전체 가구소득: 160-170원
(처 배우 70-80원)
 ⑧ 본인소득: 70-80원 전체 가구소득: 175원(부 연금, 처 교양원 40
원, 부 행정위원장 재직시 230원)

〈질문B-20〉 「북한사회가 땀흘린 만큼 보상받고 있는 사회이다」라는 견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A) | (B) | (C) | (D) |
| 적극 | 대체로 | 대체로 | 적극 |
| 찬성한다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반대한다 |

①-D, ②-D, ③-D, ④-C, ⑤-D, ⑥-D, ⑦-D, ⑧-C

〈질문B-21〉 귀하가 북한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세가지
를 택해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A) 평등
 - (B) 인권탄압
 - (C) 호전성
 - (D) 자주적 외교
 - (E) 민족주의
 - (F) 이상화, 세습체제
 - (G) 주체사상
 - (H) 경제적 낙후
 - (I) 비개인주의적 상부상조
- 기타(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 ① G-H-I, ② B-F-G, ③ B-F-H, ④ F-H-G,
 ⑤ F-H-B, ⑥ G-H-F, ⑦ B-A-I, ⑧ B-F-A

〈질문B-22〉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김일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
 - (B) 경제생활의 만족
 - (C) 이념적 통일성(주체사상)
 - (D)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
 - (E)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
- 기타(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 ①-E, ②-E, ③-D, ④-E, ⑤-D, ⑥-A, ⑦-C, ⑧-A

〈질문B-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자유와 인권을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자립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A)	(B)	(C)	(D)
적극	대체로	대체로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①-D, ②-C, ③-C, ④-C, ⑤-C, ⑥-D, ⑦-D, ⑧-C

〈질문B-24〉 북한에 어떤 변화가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가지를 택해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A) 상품공급량 확대
 - (B) 신문과 잡지의 선택 가능성
 - (C) 자유로운 여행
 - (D) 사적 소유의 자유
 - (E) 의사표현의 자유
 - (F) 여가시간
 - (G) 자유로운 TV 시청
 - (H) 연금생활의 안정성
 - (H)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
 - (J) 의료보험
 - (K) 생필품 가격안정
 - (L) 정치적 민주화
 - (M) 평등한 학교교육의 기회
 - (N) 직업선택의 자유
 - (O) 사회질서의 유지
 - (P) 도로교통의 안전
 - (Q) 전세가격의 안정
 - (R) 민생치안 유지
- 기타(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 ① A-C-E, ② H-K-E, ③ C-H-A, ④ A-L-D,
 ⑤ A-H-L, ⑥ L-A-K, ⑦ A-C-E, ⑧ L-E-N

〈질문B-25〉 북한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A)	(B)	(C)	(D)
정말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 ①-C, ②-D, ③-C, ④-C, ⑤-D, ⑥-D, ⑦-B, ⑧-D

〈질문B-26〉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의 생활은 힘들었고 자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즐거움은 있었고 무엇인가 달성할 수 있었다.』

(A)	(B)	(C)	(D)
적극	대체로	대체로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 ①-B, ②-A, ③-A, ④-B, ⑤-C, ⑥-D, ⑦-D, ⑧-B

〈질문B-27〉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후 북한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래서 북한은 초기 몇년 동안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그후 중대한 오류가 범해졌다.』

(A)	(B)	(C)	(D)
적극	대체로	대체로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 ①-A, ②-B, ③-D, ④-A, ⑤-A, ⑥-A, ⑦-D, ⑧-B

〈질문B-28〉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귀하가 스스로 체험해 보았거나 경청한 바를 기준하여 다음 항목중 세가지를 택하여 주십시오

- | | |
|-----------------|--------------------|
| (A) 돈을 벌려고 한다 | (N) 관료주의적이다 |
| (B) 명예욕이 강하다 | (O) 부지런하다 |
| (C) 비판적이다 | (P) 자부심이 강하다 |
| (D) 편안함을 추구한다 | (Q) 불평 불만이 많다 |
| (F) 잘 믿지 않는다 | (R) 정치에 관심이 많다 |
| (G) 개방적이다 | (S) 친절하다 |
| (H) 상부상조한다 | (T) 개인주의적이다 |
| (I) 책임감이 강하다 | (U) 경솔하다 |
| (J) 활동적이다 | (V) 성실하다 |
| (K) 신앙심이 깊다 | (W) 겸손하다 |
| (L) 소심하다 | (X) 화해적이고 침착하다 |
| (M) 검소하다 | (Y) 음울하고 의기소침하다, |
- 기타(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 ① A-B-R, ② F-N-R, ③ A-K-Q, ④ A-O-Q,
⑤ B-A-P, ⑥ O-V-T, ⑦ N-O-P, ⑧ A-L-T

〈질문B-29〉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귀하가 스스로 체험해 보았거나 경청한 바를 기준하여 다음 항목중 세가지를 택하여 주십시오

- | | |
|-----------------|-----------------|
| (A) 돈을 벌려고 한다 | (N) 관료주의적이다 |
| (B) 명예욕이 강하다 | (O) 부지런하다 |
| (C) 비판적이다 | (P) 자부심이 강하다 |
| (D) 편안함을 추구한다 | (Q) 불평 불만이 많다 |

- (F) 잘 믿지 않는다
- (G) 개방적이다
- (H) 상부상조한다
- (I) 책임감이 강하다
- (J) 활동적이다
- (K) 신앙심이 깊다
- (L) 소심하다
- (M) 검소하다
- (R) 정치에 관심이 많다
- (S) 친절하다
- (T) 개인주의적이다
- (U) 경솔하다
- (V) 성실하다
- (W) 겸손하다
- (X) 화해적이고 침착하다
- (Y) 음울하고 의기소침하다,

기타(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 ① A-D-Q, ② A-I-T, ③ A-I-T, ④ A-I-K,
 ⑤ A-R-O, ⑥ A-O-D, ⑦ A-D-Q, ⑧ A-B-T

〈질문B-30〉 귀하는 통일후 어떤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A) 자본주의체제
- (B)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
- (C) 사회주의체제

기타(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 ①-A, ②-B, ③-A, ④-A, ⑤-A, ⑥-B, ⑦-A, ⑧-B

〈질문B-31〉 귀하는 통일후 다음 각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될 것이다	다소 개선될 것이다	마찬 가지일 것이다	다소 악화될 것이다	크게 악화될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	③④	⑤⑥	⑦	①②⑧	

경제성장	②⑤⑥⑦	①③④		⑧	
빈부격차		②⑤⑦		④	①③⑥⑧
실업문제		③		①②⑤⑦	④⑥⑧
지역격차		⑤	⑥	④⑧	①③
물가문제	⑤	②④	①	⑧	③⑥
주택문제		①⑦	④⑤	②⑧	③⑥
개인주의			④	⑤⑧	①②③⑥ ⑦

〈질문B-32〉 다음 항목을 한번 검토한 후, 과연 어떤 사항이 남한
혹은 북한에서 더 우세한지 판단해 주십시오.

항목: 북한 우세 / 동일 / 남한 우세

- | | | | | |
|----|-------|---|-------|---------------|
| 1 | (A) | C | (B) | 생활용품의 구입 |
| 2 | () | | () | 개개인의 결정권 |
| 3 | () | | () | 자아실현 |
| 4 | () | | () | 사회적인 상승 가능성 |
| 5 | () | | () | 노인생활보장 및 연금 |
| 6 | () | | () | 환경보호 |
| 7 | () | | () | 상부상조 |
| 8 | () | | () | 노동자의 경영참여 |
| 9 | (A) | C | (B) | 의료보장제도 |
| 10 | () | | () | 일자리 보장 |
| 11 | () | | () | 청소년 놀이공간 |
| 12 | () | | () | 사회정의 |
| 13 | () | | () | 빈민 및 소외계층 구제책 |

- 14 (A) C (B) 남녀평등
- 15 () () 정치에 대한 관심
- 16 () () 가족의 일체감
- 17 () () 민생치안
- 18 (A) C (B) 단결 및 공동체의식

비고: 「북한우세」와 「남북한 동일」을 응답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10-A, 15-A, 16-A, 17-A, 18-A / 9-C
- ② 7-A, 13-A, 14-A, 15-A, 16-A, 17-A, 18-A / 9-C
- ③ 5-A, 7-A, 9-A, 12-A, 13-A, 15-A, 16-A, 17-A, 18-A
- ④ 7-A, 9-A, 10-A, 14-A, 17-A, 18-A / 8-C
- ⑤ 6-A, 7-A, 9-A, 13-A, 16-A, 17-A, 18-A
- ⑥ 6-A, 7-A, 9-A, 10-A, 15-A, 16-A, 17-A, 18-A
- ⑦ 4-A, 7-A, 8-A, 10-A, 15-A, 16-A, 17-A, 18-A
- ⑧ 5-A, 6-A, 9-A, 10-A, 13-A, 14-A, 16-A, 17-A, 18-A / 3-C

〈질문B-33〉 귀하는 다음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난에 O 표시 해 주십시오.

	매우 비슷함	다소 비슷함	다소 다름	매우 다름
언어	⑦⑧	①②③④⑤⑥		
전통관습	②③⑤⑥⑦	①④		⑧

〈질문B-34〉 북한의 젊은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A) 그렇다 (B) 아니다

- ①-A, ②-A, ③-A, ④-A, ⑤-A, ⑥-B, ⑦-A, ⑧-A

〈질문B-35〉 북한의 젊은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연애와 결혼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

(A) 그렇다 (B) 아니다

①-B, ②-B, ③-B, ④-B, ⑤-B, ⑥-B, ⑦-A, ⑧-A

〈질문B-36〉 북한에서 노동자시절 귀하의 일상생활을 시간별로 적어 주십시오.

비고: 응답은 제4장 2절 「가」 참조

〈질문B-37〉 남한에 오는 북한인들이 쉽게 적응하리라 보십니까?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A) 쉽다 (B) 어렵다 (C) 잘 모르겠다.

①-A, ②-B, ③-B, ④-B, ⑤-B, ⑥-B, ⑦-A, ⑧-B

〈질문B-38〉 적응하기 힘들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적어 주십시오.

②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보다 3배정도 일을 더 하기 때문에

④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⑤ 직업선택을 스스로 해야하고, 남한사람들이 3배정도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⑥ 새로운 체제에서 생활방식, 작업기계, 작업방식을 새롭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⑧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이 힘들것, 특히 노동강도

〈질문B-39〉 귀하는 다음 항목중 북한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일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세가치를 택해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A) 서방지역으로의 여행 자유화
- (B) 언론, 사상의 자유
- (C) 생활수준의 상승
- (D) 해외이주의 자유
- (E) 휴전선장벽과 철조망의 제거
- (F)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금지
- (G) 남북한의 통일
- (H) 직업선택의 자유
- (I) 풍요로운 식생활
- (J) 소련 및 중국에 종속된 상황의 지양
- (K)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
- (L) 환경보호
- (M) 보다 많은 여가시간
- (N) 안락한 주택

기타(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 ① I-N-H, ② G-E-C, ③ I-H-A, ④ I-C-B,
 ⑤ I-G-H, ⑥ C-I-N, ⑦ E-I-G, ⑧ I-C-B

〈질문B-40〉 귀하는 북한 정부가 현재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가지를 택해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A)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
- (B) 정치적 민주화
- (C) 경제성장
- (D) 해외여행의 자유화
- (E) 식생활 개선

- (F) 물가안정
- (G) 부정부패 척결 및 사회기강 확립
- (H) 환경오염문제 해결
- (I) 북한내 여행의 자유화
- (J) 주택문제 해결

기타(직접 써 넣어 주십시오) _____

- ① E-J-G, ② G-E-A, ③ B-D-I, ④ E-C-A,
 ⑤ E-G-C, ⑥ A-E-C, ⑦ E-F-G, ⑧ E-G-B

〈질문B-41〉 남한으로 온 북한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높은 생활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A) 높은 생활수준
- (B) 자유

- ①-A, ②-A, ③-B, ④-A, ⑤-B, ⑥-A, ⑦-A, ⑧-A

〈질문B-42〉 귀하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전후하여 북한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많이 변했다
- (B) 약간 변했다
- (C) 거의 변하지 않았다
- (D) 전혀 변하지 않았다

- ①-B, ②-D, ③-D, ④-C, ⑤-B, ⑥-C, ⑦-D, ⑧-B

〈질문B-43〉 만약 북한이 변했다면 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북한정부의 정책변화

휴일 7-10 시간

9 시 부터 22 시 까지

〈질문B-46〉 북한에서 귀하께서 즐겨 보신 TV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① 외국영화, 만화, 드라마
- ③ 주로 뉴스만 들었음
- ④ 외국영화(소련동구), 새로 나온 영화, 음악무용공연
- ⑤ 드라마, 새로 나온 영화, 스포츠
- ⑥ 예술영화, 드라마, 가요무대

〈질문B-47〉 북한에서 귀하께서 보신 영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목을 세가지 적어 주십시오.

- ① 007나를 사랑한 스파이, 명령 027호
- ② 님을 위한 교향시(광주사태), 가야금에 깃든 사연, 홍길동전
- ③ 민족과 운명, 어머니의 소원, 어느 한 해안도시에서(탐정영화)
- ④ 17일 동안에 있던 일(소련), 사랑 사랑 내사랑(춘향전을 신상옥이 각색), 깨끗한 손으로(루마니아)
- ⑤ 은비녀, 길, 철길따라 천만리, 민족과 운명
- ⑥ 우리집 문제-목은 내가 치겠소(북한영화), 자유로 간 다섯용사-이리-별동대(외국영화)
- ⑦ 민족과 운명
- ⑧ 도라지, 사랑의 노래, 만병초

〈질문B-48〉 북한에서 귀하께서 자유시간을 가졌을 때 즐겨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① 나무패기, 잠자기
- ② 음악감상, TV-비디오 구경

- ③ 도서관에서 세계기록집 읽기
- ④ 시내구경, 주패놀이(카드놀이)
- ⑤ 친구들과 음주, 영화관람, 연애
- ⑥ TV 혹은 영화감상, 체육활동
- ⑦ 체육활동, 한달 3-4회 음주
- ⑧ 자전거 드라이브, 집일

〈질문B-49〉 북한에서 귀하께서 자유시간을 함께 즐겼던 단체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 ① 같은 작업반
- ② 속도전 청년돌격대와 오락회, 명절날 김일성광장에서 단체춤
- ③ 같은 소대원과 음주
- ④ 일체 비조직적인 사설단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므로 주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함
- ⑤ 동창들끼리 묶은 단체, 직장친구

〈질문B-50〉 북한에서 귀하께서 하루에 들으신 평균 라디오 청취 시청시간은 어느 정도였으며,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 ① 전혀 못듣고 어쩌다 몇번 들음
- ② 평일 2 시간 0 시 부터 2 시 까지
휴일 3 시간 19 시 부터 22 시 까지
- ③ 평일 2 시간 22 시 부터 24 시 까지
- ④ 각 가정에 라디오가 거의 없고 스피커가 있음 - 거의 들지 않음
- ⑤ 평일 1 시간 5 시 부터 6 시 까지
휴일 2 시간 7 시 부터 9 시 까지
- ⑥ 평일 20 분 6 시 부터 6:20 시 까지

- 휴일 1 시간 7 시 부터 8 시 까지(스피커)
- ⑦ 평일 1 분 5 시 부터 6 시 까지
- 휴일 3 시간 9 시 부터 11 시 까지
- ⑧ 휴일 1-2 시간 18 시 부터 20 시 까지

〈질문B-51〉 북한에서 귀하께서 즐겨 들으신 라디오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② 남한방송-통일열차 달린다, 보천보 전자음악단, 왕재산 경음악단
- ③ KBS사회교육방송
- ④ 밤 늦은 시간에 나오는 소설낭독, 새로 나온 노래보급시간, 보도시간
- ⑤ 보도, 노래, 방송극
- ⑥ 보도, 노래
- ⑦ 보도

〈질문B-52〉 북한에서 귀하께서 즐겨 읽으신 신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① 로동신문
- ② 로동신문-평남일보
- ④ 로동신문-평양신문-평남일보
- ⑤ 로동신문-평북일보
- ⑥ 로동신문-도일보
- ⑦ 로동신문
- ⑧ 로동신문

〈질문B-53〉 북한에서 귀하께서 즐겨 읽으신 잡지는 무엇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② 청년생활
- ③ 세계기록집-세계지리상식
- ④ 천리마-청년문예-군인생활
- ⑤ 천리마-만화
- ⑧ 천리마-시대(조총련계 잡지)

〈질문B-54〉 북한에서 귀하께서 읽으신 소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목을 세 가지 적어 주십시오.

- ① 벗, 세기와 더불어, 일본탐정소설
- ② 홍길동전, 로빈슨 크루소, 먼 남쪽바다
- ④ 톰소야의 모험, 부활, 임궏정
- ⑤ 벗, 1932년, 세기와 더불어
- ⑥ 문어의 측수-바늘귀(탐정소설), 메아리-전선멀리(중편), 임궏정-홍길동전
- ⑧ 임궏정, 민들레, 등대

〈질문B-55〉 북한에서 귀하께서 가장 즐기신 운동은 무엇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① 축구-탁구
- ② 태권도-탁구
- ③ 수영
- ④ 축구-탁구
- ⑤ 권투-탁구-철봉-평행봉
- ⑥ 축구-탁구
- ⑦ 축구
- ⑧ 농구-탁구

〈질문B-56〉 북한에서 귀하께서 다룰 수 있었던 악기는 무엇이었습니다?
 까? 있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 ① 하모니카, 피리, 기타
- ② 하모니카, 피리
- ④ 손풍금(아코디언), 하모니카, 피리, 기타, 단소
- ⑤ 하모니카, 피리, 기타
- ⑥ 관악기, 하모니카, 피리, 나팔
- ⑧ 하모니카, 기타

〈질문B-57〉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가요의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동 요 : ① 백두산은 높은산, ② 어머니, ③ 우리교실, ④ 뿔티
이다-해안포진지-설맞이 노래-소년단 행진곡, ⑥ 은하수

일반가요 : ① 휘파람-도시처녀 시집와요, ② 내이름 묻지마세요-
휘파람-돌격대 제복, ④ 사랑 사랑 내사랑-경사났네 ⑤ 휘
파람, ⑥ 꽃파는 처녀-피바다-동지애의 노래

김일성, 김정일 찬양 가요 : ① 높이 모셨네, ② 그이의 미소-사
향가, ③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④ 김일성화-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당중앙찬가,
⑤ 잊지말자 우리우정, ⑥ 김일성장군의 노래-지도자동지의
노래, ⑧ 축복의 노래

혁명가요 : ① 붉은 기를 지키리라, ② 동지애의 노래, ③ 결사전
가, ④ 적기가-인민군가, ⑤ 동지애의 노래-민족과 운명, ⑥
혁명마, ⑧ 조선의 별

민 요 : ① 도라지-밤타령, ② 도라지-아리랑, ③ 돈돌다리, ④
아리랑, 능수버들, 노들 강변, ⑤ 바다의 노래, ⑥ 도라지-노
들강변, ⑦ 양산도-도라지-금강산, ⑧ 노들강변

빈 면

남북한 여성 비교연구

-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

이 금 순*

- I. 서 론
- II. 여성의 사회적 역할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I. 여성의 경제적 역할
- IV. 여성의 정치적 역할
- V. 통일과 여성
- VI.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빈 면

I. 서 론

민족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차원의 남북한 통합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되어 왔다. 지난 50여년간의 분단기간동안 남과북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살아오면서, 양 사회간의 이질화는 정치·사회 및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분단 상황이 끝난 후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사회문화적 갈등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후 예기되는 다양한 사회문화갈등의 한 요소로 여성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 독일사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분단시대 양 체제내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상이한 인식으로부터 파생될 것이다. 오랜 민족 분단은 남북한의 여성의 삶에도 커다란 차이를 가져왔으나, 남북간 상호이질화중에서 여성의 이질화는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이질화는 매우 심각하며, 이는 거의 모든 사회가치체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만 한다. 다시말해 남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하에서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규정해왔는가라는 문제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리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국가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층이, 여성(특히 동독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와 양육에 관한 제도적 변화가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의 통일로 양육제도가 자본주의화됨에 따라 동독 여성의 경우는 실제적인 실업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서독 여성의 경우도 동독 남성노동력의 진출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의 통일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여성실업과 잠재적 실업은 여성의 일반적 지위하락으로 연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의 경우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남한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구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뒤떨어져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의 통일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구조적으로 저해할 위험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하겠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성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지당하게 될 때 예기되는 갈등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곧바로 전체 사회 문제로 발전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은 단순한 정치체제통합이나 경제체제통합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동일한 생활양식과 삶의 유형을 지닌 사회문화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이 민

족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통일후 민족이 공유할 통일문화가 단순한 문화통합(동질성회복) 측면을 넘어서 민족문화(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이어야 한다면, 통일문화 형성과정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문화 형성의 기초작업으로, 남북한 여성정책과 여성 사회참여(경제활동, 정치참여)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사회내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통일후 여성문제를 둘러싼 사회문화 갈등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통일후 제반 사회문화 갈등이 여성문제와 복합되어 심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 여성들의 공동노력으로 이해와 상호신뢰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민족화합을 앞당길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통일이 남북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는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이 민족 통일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이 본질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 사회 체제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자세히 비교검토해 볼 것이나 이는 양 체제의 단순한 우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보고 요망되는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성별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은 사적영역(가정)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내 여성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가 어떤 양태로 이루어 지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여성의 전반적인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등 가능한 모든 측면들을 고려해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역할이 서로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의 위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회참여는 경제활동에의 참여, 정치 및 정책결정에의 참여, 기타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및 비공식부문에의 참여를 포함한 넓은 뜻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과 정치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성원으로서 노동을 통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명예)을 얻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평등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양성 평등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1)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서울: 나남,1992), pp. 39-40.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현실상 공식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가정외 취업으로 인한 여성의 이중적 부담을 간과한 것도 아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활동과 함께 정치참여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가정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성이 정책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공정히 반영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이상에 있어서 여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은 여성의 지위(status)이다. 지위(status)나 위치(position)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흔히 정치학에서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힘의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베버식의 힘의 개념은 거의 모든 여성학자들이 배격하는 계층적 지배(hierarchical dominance)를 전제로 한다. 대신 여성학자들은 이를 자아결정(self-determination), 자율(autonomy),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강조하는 힘의 개념으로 대치한다.²⁾ 이러한 개념의 힘은 자기의 잠재력과 목적

2) Berenice Carroll, "Peace Research: The Cult of Pow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 1972; Jane S. Jaquette, "Power as Ideology: A Feminist Analysis," in *Women's Views of the Political World for Men*, Stiehm, ed.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1984); Hartsock, *Money, Sex and Power* (New York: Longman, 1983).

을 실현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지위는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참여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지위는 사회참여와 연관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여성의 사회참여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과 정치참여이다. 이는 단순한 참여율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어떤 양태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동시에 점검해 볼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참여 실태를 분석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한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또한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참여과정에서의 평등과 더 나아가 사회참여에 의해 받는 혜택에서의 평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인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삶을 조명해 보기 위해 양체제의 여성정책을 검토해 보고, 그것을 기초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여성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치

3) Magaret E. Leahy,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Status of Women: A Comparative Study of United States, Mexico, Soviet Union and Cuba*. (Boulder, Co.: Rienner, 1986), p. 20.

구조)의 역할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이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가족의 국가 의존도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족을 통해서 국가는 여성의 생산과 재생산(사회적노동, 가사노동, 출산, 양육, 성, 결혼)을 통제하고 있다.⁴⁾ 성별분업체계에 기초한 현가족제도하에서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주워져 있기 때문에, 남성과 비교할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국가체제에 뿌리 박혀있는 가부장제가 사회 전반에 내재화되어, 여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다시 말하자면, 성별 역할분리는 여성의 역할을 사적영역(가정)에 제한시키면서, 공적영역에서의 참여를 배제하여왔다. 거의 모든 국가는 남성주도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들이 가부장제에 기반하여 지배계급인 남성의 이해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리라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국가의 자율성(state autonomy)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eda Skocpol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는 두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이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지만, 때로는 질서 유지를 위해 지배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개혁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⁵⁾ 이런 맥락에서 여성 정책의 개

4) Mary Ruggie, *The State and Working Wom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5) Theda Skocpol, "Political Response to Capitalist Crisis: Neo-Marxist Theories of the State and the Case of the New Deal," *Politics and Society*, 10, 1980, pp. 155-201.

선여지도 논의될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연구배경을 논의하고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양 체제내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이론적 인식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고찰하기 위하여 남북한 여성정책을 비교하게 된다.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살펴보고, 각 체제내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본다. 이 과정에서 여성 정책의 목표와 실제적 영향력을 비교 조명해 볼 것이다.

3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와 이에 따른 혜택이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남성과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직종별 여성비율(수평적 분포), 직위별 여성비율(수직적 분포), 임금구조 및 근로조건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위를 고찰한다.

4장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논하게 된다. 이는 여성이 국가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함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선거율, 공직점유율, 당원비율, 여성단체활동 등을 검토해 본다. 남북한 사회의 상이한 정치체제를 고려하여, 일정한 항목에 대한 단순비교가 아닌 실질적인 정치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남북한 여성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예기되는 여성문제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여성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결론을 담게 된다.

II.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통일한국의 국가정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자유민주주의, 평등, 복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성불평등 문제는 인간성 존중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차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꼭 풀어야만 하는 과제인 것이다. 성불평등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래 성차별(Sexism)은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현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으며, 1975년 유엔의 〈세계 여성의 해〉 선포와 함께 성차별 제거는 인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성차별이란 생물학적인 성을 기초로 하여 여성(혹은 남성)집단이나 여성(혹은 남성) 개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편견이나 차별을 뜻한다. 즉 남성과 여성이 각 성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믿음(고정관념)으로서 개인의 생활·의식과 제반 사회제도 및 문화·이데올로기에 내면화되어 성차별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남녀에게

다른 유형의 관심과 가치평가 기준에 근거한 이분법적인 성역할을 부여하였다. ‘여성다움’의 신화 즉 “모든 여성은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신화가 사회성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가정안으로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성차별적 신화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주입되고 유지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 예로서 2차대전 당시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여성은 모든 종류의 직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후 참전병사들의 복귀와 함께 다시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라는 신화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은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해 추구하는 인간성의 존중, 정의, 합리주의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별 불평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안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 사회에서 여성의 전반적 위치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특정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그 사회가 여성의 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위치)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적영역(가정)에서 여성의 책임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식도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는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고정된 역할 즉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영역에서의 여성 역할을 분리하여 조명할 필요는 없다. 남북한 사회가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 사회가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남북한 사회의 특수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인 기본틀과 함께 남북한 정부가 유지해온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여성

남한사회가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사유재산)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운용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을 준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생활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개인적 선택은 자유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사회성원간의 불평등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여 왔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역할을 기본적인 체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제한하며 이론상 자유주의 체제의 운영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하리라는 전제위에서 성별 불평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과 상품의 시장교환을 전제로 하며 인간의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가치는 이용가치(use value)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이용가치는 있을지언정 교환가치가 없다는 의미에서 평가절하되며, 이는 공적영역에서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직접 연결된다.

자본주의이전에 가정은 생산장소였으며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상품 생산영역이 가정에서 공적 생산영역으로 이전되었고, 여성의 가정에서의 육아책임은 여성을 생산영역에서 소외시켜왔다. 이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예측과 동시에 남성의 지배(Patriarchy)를 강화하였다.

자본주의 출현이전에도 가부장제는 존재하였지만, “자본주의는 가부장제의 가장 발전된 단계이다”고 정의될 수 있다.⁶⁾ 여성의 가정주부화가 자본의 이해에 부합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무보수 가족노동자 역할과 노동력의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이 노동자의 생계유지선 이하의 임금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의 축적을 증대시킨다. 더욱이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간헐적인 저임금 취업은 여성을 산업 예비군

6) Azizah Al-Hibri, “Capitalism: An Advanced Stage of Patriarchy.” Lydia Sargent, *Women and Revolution: A Discussion of the Unhappy Marriage and Feminism* (Boston: South End Press, 1981).

화하여 여성노동력의 평가절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현실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축적과 분배의 문제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기본의도야 어떤 것이든 경제적 불평등(빈곤)의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복지정책은 경제 및 사회 평등을 이루기위한 노력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변형시키려는 국가의 의도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지국가 형성의 요인을 살펴볼 때, 복지정책은 생산의 문제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도 남성을 개인 노동자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가족중심의 양육자로 인식하여 양성에 대해 다른 기준하에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⁷⁾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가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체계에서 고정된 여성의 성역할에서 파생하는 불리한 입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동원되면서 여성 자신들의 사회참여 의식도 고양되었고, 또한 가정경제측면에서 여성의 소득활동 필요성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출산이나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 가정

7) Jill Quadagno, "Race, Class, and Gender in the U.S. Welfare Sta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5, No. 1, Feb. 1990, pp. 11-28.

의 문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가. 남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남한사회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국가가 여성 부문을 독자적인 정치영역으로 상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여성을 위한 단기정책들이 펼쳐지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정책이라는 구호의 차원에서 여성행정이 이루어졌을 뿐 총체적이며 종합적인 여성정책은 실질적으로 부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미군정내 ‘보건후생부’내에 ‘부녀국’이 설치되어 여성동원 측면의 선거계몽 운동과 좌익 여성단체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는 남한 여성운동의 관변화와 어용화의 근간이 되어왔다. 3, 4 공화국 기간에도 여성정책이 국가 당면과제의 하부개념으로 ‘부녀 새마을운동’과 같은 정부시책에 의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여성동원이 계속되어 왔다.

1973년 이래 ‘범여성가족법촉진회’ 중심의 가족법 개정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남한정부의 여성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정책 등장의 실질적인 배경으로는 여성노동 시장구조의 변화와 여성대중의 의식성장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 여성 노동력의 양적 성장과 기혼여성 취업의 확대 등 여성노동 시장구조의 변화와 생산직에서의 여성노동력 확보난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

다. 둘째,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여성노동운동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여성대중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셋째,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의식 증대와 함께 1983년 여성문제 전문연구원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여성관련행정기구인 '정무 제2장관실'이 발족되게 되었다.

증가된 여성노동 참여와 여성노동력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국가가 남녀고용평등법(1987), 영유아보육법(1991)제정 등 여성노동력 활용문제에 현실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나. 이러한 법들의 한계는 실질적인 적용시 범위설정의 문제와 처벌규칙의 취약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들 법 적용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정책이 국가의 단기적 필요와 과시적인 효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의 근본요인에 대한 해결보다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한시적 미봉책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 가족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여성관련법안들이 부권 위주의 가부장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한 예로 가부장적 성문화가 지배하는 매매음과 향락문화의 문제를 사회전체 구조적 문제와 연계하여 파악하여야 하나 이런 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60년대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여성운동이 1975년 유엔의 '세계여성의 해' 선포와 함께 구체화되면서 남한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남한은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에⁸⁾ 가입하였고 「2천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과 같은 유엔이 제시한 남녀평등정책의 기준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남녀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왔으나 실제적으로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낮은 실정으로 실질적인 평등실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여성정책 추진이 요망된다.

2. 사회주의체제하의 여성

북한사회가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는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생산수단 소유의 사유재산제라고 규정하고 사유재산(계급) 철폐를 통해 전면적인 평등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혁명의 목표로 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하의 모든 관계는 실제상 금전-상업관계에 종속되며, 개인의 상태는 생산관계에서 개인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과 생산수단을 작동하는 노동의 대가로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가의 이윤 축적을 위한 노동자의 잉여노동 착취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의 인간의 노동은 노동자에게 인간성을 부여하는 자유로운 생산행위(즉 자아실현)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인간의 소외를 낳게 한다는 것이며 여성 노동의 소외도

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남성노동자와 같은 맥락에서 인식된다. 이러한 비인간적 생존의 실상에서 노동계급의 적대감이 혁명으로 발전되어 자본계급을 타도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사적소유와 착취의 폐지 및 공동소유의 확립은 모든 소외와 착취 및 다양한 상태의 억압(여성을 포함한)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여성문제에 대하여 맑스 자신은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투쟁의 생산관계를 강조하였고, 여성의 억압과 여성해방에 대한 엥겔스와 레닌의 이론에 남녀평등의 이념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여성억압의 기원은 사적소유의 생산관계에서 사유재산보존과 상속을 위한 일부일처제의 출현에서 부터라는 것이다.⁹⁾ 즉 원시시대의 자연스런 성별분업이 잉여의 발생, 사적소유, 계급의 출현 등으로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으로 전화하게 되었으며, 일부일처제의 출현은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즉 원시적 자연발생적 공동소유에 대한 사적소유의 승리에 기초한 가족형태”라는 것이다.¹⁰⁾ 원시공동시대 여성의 가사활동은 남성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었으나 가부장적 일부일처제의 개별가족 출현과

9) Frederick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ew York: Penguin, 1985).

10) 위의 책, p. 128.

함께 집안살림은 그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와 무관한 부차적이며 '사사로운 일'로 전락하게 되었다. 사적소유하의 일부일처제는 여성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게 하고 여성의 종속을 강화시켜 대외적으로 여성의 충분한 사회참여를 박탈하게 되었다. 결국 여성의 억압은 계급의 억압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원인이 가족에서의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이라는 적대관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해방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폐지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와 연관되며, 사적소유의 폐지는 남성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동등한 일부일처제로 변혁시켜 여성해방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는 생산수단이 공유화 되면 개별가족이 더이상 사회의 경제단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사사로운 집안살림이 사회적인 산업으로 되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이 공공사업으로 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에 상호간의 애정이외에는 아무런 동기도 작용하지 않게 되며, 경제적 지배의 단순한 결과인 남성들의 지배는 경제적 지배의 소멸과 함께 자연히 소멸된다고 설명한다.

레닌의 여성해방이론은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맑스의 사적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엥겔스보다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성억압에 대해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오직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또한 진정한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여성의 해방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레닌은 여성해방을 두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첫번째 단계로는 여성을 열등한 상태로 억눌러 놓았던 법률들을 제거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 형식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두번째 단계는 여성을 개인적 가정분위의 소비경제로부터 해방시켜 대규모 사회적 소비경제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사회주의 생산관계하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은 노동을 통해서만 생존하고, 또한 노동활동을 통해서만 자신을 실현하는 평등한 구조가 창출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레닌에 따르면 여성해방의 핵심적인 조건은 여성들의 사회적 생산노동에의 완전한 참여와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여성해방에 대한 관심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여성억압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일면적으로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상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의 억압과 종속의 근원적인 기반인 성별분업을 생산관계에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위한 해결정책도 생산관계의 변화 이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이상화, “사회주의 이념과 남녀평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사회주의 여성정책의 역사를 보면 사회주의국가에서 여성 취업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입장과 여론은 맑스-레닌주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기보다는 경제정책이나 고용정책의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취업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가족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의 취업활동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시기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어느 시기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현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생산관계가 성립되었지만, 전반적인 성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역할의 규정이 여성해방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기본 인간관은 각 개인의 인간성 발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간 개인으로서의 발현보다는 가족내에서 여성역할을 기본으로 한 인간성 실현으로 규정한다. 즉 재생산(임신, 출산, 양육)을 일방적으로 여성의 당연한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의해 야기되는 여성역압의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주의 역사에서 남녀평등의 문제는 주로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사회주의 이론자체에 남녀평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이론틀이 결여되어 있다. 엥겔스와 레닌의 이론은 경제적 의존으로 인

한 억압과 예속을 정확하게 분석해냈으나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및 인간 재생산의 문제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 역시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요구된다.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위기감에서 현실사회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으나, 여성문제는 중심적인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나. 북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북한사회는 1945년 정권수립과 함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여 왔다. 사회주의 혁명정권 수립방법으로 “자산소유의 불평등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와해하고, 가부장적 전통에 바탕을 둔 상부구조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청산”¹²⁾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 가족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여성해방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김일성은 여성문제 해결을 통해 남성이 가장 중심의 봉건적 사회경제질서를 청산하는 대신 여성을 새로운 정치적 지지기반세력으로 건국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치적 동원 필요성에 더하여 해방이후 북한인구가 대량 월남한 결과 초래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하고

12)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5-16.

있다.¹³⁾

1946년 3월에 발표된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서 토지분배의 원칙을 「가족수와 그 가족내의 노동능력을 가진 자 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같은 해 6월 공포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노동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회주의 근로여성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조건을 갖추었다. 이에 더하여 1946년 7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9월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을 발효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청산하고 여성해방과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해방을 위한 법적 조치와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왔다. 여성노동력을 사회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탁아소나 유아원 건립을 통한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여 1945년 11월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을 창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사상적 혁명화와 계급교양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해방직후 몇 년동안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해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그 이후 40년을 통해 수행된 제반 여성정책 전체보다 질이나 양에 있어 더 다양하고 철저”¹⁴⁾했던 것으로 평가가

13) 위의 책.

14)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p. 78.

되기도 하지만, 전쟁이후 북한의 정책변화를 보면 초기의 여성해방을 표방하던 정권의 의도에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은 이중적인 여성정책을 취하여 왔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표방하면서 가사 및 가정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준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부장제를 환원하기 시작하였다.

전후복구과정과 사회주의 경제건설과정에서 여성의 노동계급화정책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정책에 따라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문제를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보다는 계급론적으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¹⁵⁾ 즉 실제로 북한 여성의 경제참여가 특정직업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결과(임금 및 사회적 인식도)도 남성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이중적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동시에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여성정

15) 위의 책, p.41.

책으로 명목상의 여성해방과 여성의 실제적인 삶에는 많은 괴리가 있어왔다.

주체사상을 통한 김일성유일체제 확립과정과 김일성의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기본원리에서 선회하여 가부장제를 부활시키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들어 북한 사회가 경제적 침체를 맞게 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치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을 도입하여 가부장적 국가관을 강화하여 왔다.¹⁶⁾ 이 기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여성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가구소득의 감소와 여성의 남성의존도가 심화되었고 남성가장들의 제반 사회적불만을 가정내에서 회색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로 여성의 재가정화가 진행되었다.¹⁷⁾ 또한 동시에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생활과 연계시켜 이용하려는 발상으로 가내작업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력동원등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역할 강화는 가부장적인 정책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기존원칙과 실질적으로 모순된다.

본장에서 논의된 일반적인 이론을 기초로 3, 4장에서는 남북한의 현실을 고찰하고자 한다.

16)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81.

17)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p. 61.

III. 여성의 경제적 역할

본장에서는 남북한 여성의 경제참여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중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양성평등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양 사회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남북한 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고 서로 다른 경제개발(산업화)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각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구조안에서 여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논할 때 여기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물론 여성은 가사노동을 통해서 가계에 보탬을 주고 전체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점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경제참여를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참여 과정에서 문제(자유와 평등)와 경제참여에 따른 혜택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여성의 경제참여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점과 여성의 경제참여가 직종별, 산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의 직종별 산업별 분포도에 따른 직종분리 정도, 직위별 여성비율(수직적 분리)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또한 여성이 경제참여를 통해서 실제로 얻게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하는 점도 분석해 볼 것이다. 경제참여에 따른 혜택은 임금 및 사회적 명예 등을 중심으로 남성과 대비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남한 여성의 경제참여 실태

남한이 수출지향적, 노동집약적인 산업화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던 1960년대 초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괄목할만큼 증대되었다. 남성의 참여율은 실제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60년 28.6%에서 1992년 47.6%로 증가하였다. 80년대 초반 경제불황기를 제외하고는 남한에서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다. 1990년 기준, 남한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홍콩의 46.6%, 필리핀의 47.5%, 싱가포르의 48.4%와 비슷한 47%였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연령별 여성취업율이 분명한 M자 곡선을 나타낸다. 즉 20-24세와 45-49세의 연령대 여성의 취업율이 가장 높다. 또한 주목할 점은 15-19세 여성의 취업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과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미혼여성 취업율을 앞지른 것이다. 1989년 남한여성의 취업은 1차산업에 21.6%, 2차산업에 29%, 3차산업에 49.4%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한국산업구조변화 - 농업분야

축소와 제조 및 서어비스 분야의 성장 - 를 반영한다. 여기서 산업화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1970년 30만에서 1990년 110만에 달했다. 이를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세분해 볼 때, 1970년대말까지는 정부의 노동집약적 산업화 정책 때문에 경공업분야 여성의 취업이 증가되었다. 이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은 1971-1975년에는 연 11.1%로 1976-1980년에는 연 7.3%씩 증가해왔으나 1980년대초부터는 남한 경공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경공업분야 여성 취업증가율이 1981-1985년간 1.2%로, 1986-1990년간 1.1%로 둔화되었다.¹⁸⁾

반면 중화학공업분야 여성의 취업증가율은 23.0%(1971-1975), 12.5%(1976-1980), 3.7%(1981-1985), 6.4%(1986-90)로 경공업분야 여성취업율보다 훨씬 높았다.¹⁹⁾ 따라서 제조업분야에 종사하는 총 여성중 경공업종사 여성의 비율은 1970년 80%에서 1990년 58%로 격감하였다. 그러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은 경공업분야에서는 식품가공, 방직 및 의복과 같은 제조업에 중화학분야에서는 고무제조업과 전기 및 전자분야에 집중되어있다.

고용지위별 여성취업 분포를 검토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

18) 한국여성개발원, 「제조업부문의 성별고용비율변화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1).

19) 위의 책.

율이 1960년 5.2%에서 1990년에는 56.7%로 증가하였다.²⁰⁾ 반면 가족종사자 비율은 1960년 81.4%에서 1990년 24.6%로 현격히 감소했다. 여성의 고용안정율이 점차 증가되어 왔으나(1970-48.7%, 1990-77.2%) 남성과 대비하여 볼 때 많은 여성이 아직도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²¹⁾ 더욱이 최근에는 일용직과 임시직에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1989년 통계에 따르면, 일일고용 시간제 및 임시근로자 비율은 전체 여성취업자중 3.2%인 54,476명이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나 일일 고용여성근로자의 59.3%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수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은 파출부, 간병인, 판매영업직, 공사장보조, 요리사, 통역, 번역, 배달부, 은행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다. 여성들은 기계 및 금속분야를 제외한 제조업분야에서도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여성실업자의 17%가 시간제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더 자세히 검토해보면 40-54세 여성실업자중 53.8%와 30-34세 여성실업자의 36.4%가 시간제 취업을 원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24세 미만 여성실업자의 6%만이 시간제취업을 선호한다. 이는 기혼여성의 현실적인 가사책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내노동자로서의 여성 취업은 국제자본주의하의 여성 노동력의 불평등과 착취를 나타낸다.

20) 한국 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91」(서울: 여성개발원, 1991).

21) 위의 책.

1988년 일본의 경우 가내노동자의 수는 약 997,000명이었으며, 그들중의 대부분(93.6%)은 여성이었다. 남한의 경우에는 가내노동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며, 한 서어베이 연구는 연구대상 기혼여성의 5.4%가 가내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가내노동의 주요형태는 자수, 액세서리 조립, 인형제작, 전기부품의 단순조립, 마늘까기와 같은 음식물 손질 등이다. 하청업체를 통한 가내노동의 특징은 임금이 대개 작업물량으로 정해지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세금과 노동규칙을 의도적으로 피하기위해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의 부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임시직, 시간제, 용역노동, 영세하청업체 등 비정규직 취업에 따른 고용 불안정은 심각한 문제이며, 헌법과 노동법에 용역노동은 중간착취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지만, 최근 남한정부는 파견법제정을 통해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노동의 고용불안정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조직력을 급감시켜 여성노동자의 평생, 평등노동권 실현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제체제에 따른 남한의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고무(신발), 섬유, 봉제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으며, 남한에 투자해왔던 선진국 자본도 철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산업조정에 따라 가장 피해를 입는 층은 노동집약적 경공

업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해 온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런 실직여성노동자들은 직업훈련을 통한 이직, 실업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개 가내하청, 영세공장에 취업하거나 서어비스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실업(해고)자에 대한 해결대책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훈련생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노동참여 혜택은 명예와 물질적 보상(임금)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알기 위해서는 여성이 어떻게 직업 구조에 통합되었는가 및 여성이 직업적 보상을 받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가 산업화와 더불어 더 많은 여성이 가정밖의 취업을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남한여성의 경제적지위와 평등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노동참여로부터 얻는 혜택은 물질적인 보상(임금)과 영예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업구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직업평등)와 일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과 대비하여 여성의 직종분리 정도와 임금구조를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 직종의 성격과 직장내에서 그들의 지위는 여성의 경제참여 지위를 나타내는 한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많은 국

가의 경우에 여성의 취업은 특정종류의 직종에 제한되어있다. 직종내 성별 분리(sex segregation)는 수평적인 것(horizontal)과 수직적인 것(vertical)으로 분석될 수 있다. 1980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서유럽과 북미의 경우에 여성은 비서나 타자수직의 92%, 간호사나 산파의 88%, 가정부의 92%, 청소부의 80%를 차지 한다.²²⁾ 이러한 종류의 직종분리는 남한의 경우에도 명백히 나타나, 간호사와 가정부의 99%가 여성이다. 직종분리는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업분야가 기술, 지위, 직업안정성과 임금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여성이 한정된 특정직업 분야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International Standard Category of Occupations (ISCO) 직종군(1자리수 분류)에 의해 구분되는 비교분리지수를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물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직업군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전문직의 경우에도 의료인군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의사직, 기술직과 간호사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나, ISCO 2자리수 및 3자리수 분류에 따른 직업별 성별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수평적 직종분리 분석이 결과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직종간

22) United Nations, *The Economic Role of Women in the ECE Region* (New York: United Nations, 1980).

성별차별에 대한 귀중한 평가자료가 될 것이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관례에 따르면 직종차별의 정도는 직종분리 지수(occupational segregation index)로 측정되는데 이 지수는 전체노동력시장의 여성비율과 특정직업군에서의 여성비율간의 관계로 계산된다. 한국의 경우 표 3.2를 이용하여 각 직업군에 대한 여성대표지수(coefficient of female representation)을 산출하면 표 3.1과 같다.

여기서 기본단위(1.00)는 무격리(non-segregation)을 나타내며, 특정직업분야에서의 여성의 지분이 전체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지분과 일치함을 나타낸다. 반면에, 과소분포(underrepresentation)는 1.00이하 지수로 과밀분포(overrepresentation)는 1.00이상의 지수로 표시된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여성은 행정, 생산 및 농업직에 underrepresentation을 나타내고, 반면에 서어비스직, 사무직, 판매직, 전문직에는 overrepresentation을 갖는다.²³⁾ 표 3.1에 나타난 직종분리의 정도에서 우리는 남한의 주목할만한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남한여성의 경우 농업 및 관련 분야에 overrepresentation을 보이고 사무직, 전문-기술직에 underrepresentation이 두드러진다. 최근에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이 전체고용시장에서의 여성비율을 능가하기 시작했으나,

23) Pippa Norris, *Politics and Sexual Equality: The Comparative Position of Women in Western Democracies* (Boulder: Rienner, 1987), p.65.

표 3.1. 주요 직업군에서의 여성대표지수(CFR)

연도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직	농-임- 수산업	생산- 운수장비	격리도
1960	0.62	0.64	0.20	1.16	1.40	1.07	0.54	0.71
1961	n.a.	n.a.	n.a.	n.a.	n.a.	n.a.	n.a.	n.a.
1962	n.a.	n.a.	n.a.	n.a.	n.a.	n.a.	n.a.	n.a.
1963	0.70	0.38	0.33	1.30	1.40	1.10	0.58	0.77
1964	0.64	0.39	0.30	1.33	1.21	1.17	0.61	0.76
1965	0.58	0.38	0.29	1.34	1.02	1.11	0.59	0.76
1966	0.65	0.06	0.35	1.14	1.83	1.11	0.75	0.91
1967	0.58	0.11	0.33	1.23	1.32	1.13	0.68	0.81
1968	0.61	0.02	0.41	1.21	1.30	1.12	0.68	0.78
1969	0.64	0.03	0.44	1.14	1.48	1.17	0.69	0.81
1970	0.65	0.10	0.49	0.96	1.63	1.19	0.68	0.93
1971	0.63	0.04	0.46	1.12	1.61	1.15	0.63	0.85
1972	0.50	0	0.47	1.16	1.53	1.18	0.63	0.89
1973	0.66	0.10	0.47	1.11	1.51	1.11	0.73	0.78
1974	0.62	0.13	0.52	1.12	1.58	1.11	0.72	0.78
1975	0.66	0.08	0.57	1.11	1.57	1.13	0.70	0.77
1976	0.64	0.10	0.60	1.12	1.52	1.10	0.78	0.72
1977	0.73	0.22	0.66	1.12	1.47	1.12	0.81	0.64
1978	0.79	0.22	0.73	1.11	1.48	1.16	0.77	0.63
1979	0.84	0.16	0.80	1.13	1.46	1.16	0.75	0.61
1980	0.84	0.13	0.86	1.14	1.52	1.15	0.72	0.64
1981	0.81	0.05	0.88	1.16	1.51	1.15	0.70	0.66
1982	0.84	0.06	0.87	1.18	1.49	1.13	0.69	0.66
1983	0.84	0.06	0.87	1.21	1.53	1.10	0.71	0.66
1984	0.88	0.08	0.87	1.22	1.58	1.12	0.70	0.68
1985	0.91	0.09	0.88	1.19	1.57	1.12	0.71	0.65
1986	0.92	0.09	0.92	1.19	1.54	1.12	0.72	0.62
1987	0.92	0.08	0.92	1.17	1.50	1.12	0.76	0.59
1988	0.95	0.07	0.94	1.15	1.51	1.12	0.74	0.57
1989	0.99	0.11	0.95	1.15	1.51	1.11	0.76	0.55
1990	1.04	0.10	0.99	1.16	1.50	1.12	0.74	0.60

n.a. 자료이용불가 표 3.2.를 이용하여 계산함.

표 3.2. 주요직업군에서 여성의 비율

연도	총계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관련직	판매직	서비스 직	농-임- 수산업 관련직	생산- 운수장비 운전자
1960	28.6	18.4	18.4	5.6	33.3	39.9	30.5	15.4
1961	n.a.	n.a.	n.a.	n.a.	n.a.	n.a.	n.a.	n.a.
1962	n.a.	n.a.	n.a.	n.a.	n.a.	n.a.	n.a.	n.a.
1963	34.9	24.5	13.3	11.6	45.3	48.7	38.4	20.1
1964	34.3	22.1	13.5	10.4	45.7	41.4	38.3	20.8
1965	34.8	20.2	13.2	10.0	46.7	35.5	38.7	20.4
1966	31.0	20.3	1.9	11.0	35.3	56.7	34.4	23.2
1967	35.0	20.2	3.9	11.7	43.1	46.5	39.6	23.8
1968	36.3	22.1	0.9	14.8	44.0	47.2	40.7	24.6
1969	35.1	22.5	1.2	15.6	40.0	52.0	41.0	24.1
1970	34.9	22.8	3.5	17.0	33.4	56.8	41.5	23.9
1971	36.7	23.0	1.5	17.0	41.1	59.1	42.3	23.1
1972	36.4	18.5	0	17.0	42.3	55.8	43.2	23.0
1973	37.8	25.0	3.7	17.8	42.1	57.2	42.0	27.7
1974	37.2	23.0	4.7	19.4	41.7	58.7	41.4	26.9
1975	36.7	24.3	2.8	21.1	40.7	57.8	41.4	25.8
1976	38.4	24.6	3.7	23.1	43.0	58.4	42.6	30.0
1977	37.1	27.2	8.3	24.5	41.6	54.4	41.6	29.9
1978	38.1	30.2	8.2	27.7	42.2	56.5	44.2	29.2
1979	38.5	32.4	6.3	30.7	43.4	56.4	44.6	29.0
1980	38.3	32.1	4.9	33.1	43.7	58.1	43.9	27.7
1981	38.2	31.1	2.0	33.6	44.2	57.7	43.8	26.7
1982	39.1	32.8	2.4	34.1	46.0	58.2	44.0	27.1
1983	39.2	33.2	2.2	34.2	47.3	60.0	43.3	27.7
1984	38.4	33.8	2.9	33.5	46.8	60.6	42.9	26.9
1985	39.0	35.4	3.7	34.5	46.3	61.2	43.7	27.5
1986	39.8	36.7	3.6	36.6	47.4	61.2	44.6	28.6
1987	40.4	37.3	3.3	36.9	47.2	60.8	45.2	30.9
1988	40.1	38.2	3.0	37.5	46.0	60.7	44.8	31.1
1989	40.7	40.5	4.5	38.9	47.2	61.3	45.3	31.0
1990	40.7	42.5	4.1	40.1	47.4	60.9	45.7	30.2

n.a. 자료이용불가 출처: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Geneva: ILO)

아직도 대다수의 전문-기술직이 간호사나 국민학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남한의 경우 성별 직종분리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니나, 행정 및 관리직에 있어서 여성비율은 싱가포르(24.3%), 홍콩(15.9%), 대만(10.6%)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여성의 사무직종 underrepresentation은 여성이 사무직에 적합하다는 가정을 고려할때 주목할 만하나 사무직종이 저보수의 직종으로 하락됨에 따라 남성들이 사무직종을 꺼리게 된 것이다. 직종분리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여성이 계속해서 특정직종 소위 “여성직종”에 집중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수평적 직종분리는 남성과 여성간 임금차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종분리가 완화되는 측면도 있으나, 아직도 성별 직종분리는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주목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화된 서구국가들의 직종분리 유형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직종분리와 함께 중요한 변수인 성별 수직적 분리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수직적 차별은 부분적으로 가장 명예로운 직종에서의 남녀비율로 측정될 수 있다. 직업명예 지표를 개발하고 다양한 직종을 단일 위계질서하에 등급을 정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Treiman의 60여개국에 대한 비교 연구는 각 직업군에 주워지는 상대적인 명예에 대해 많은 사회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²⁴⁾ 고지위 명예직 종에는 대학교수 (100을 기준으로할때 지수 78), 물리 및 생명과학자(66), 의사, 치과의, 수의사 및 약사(60), 건축가, 엔지니어 및 관련 기술직(56), 행정 및 관리직종(64)이 포함된다.²⁵⁾ 이런 직업들은 거의 전문직, 행정 및 관리직분류에 포함된다. 그러나 ISCO 분류에 따르면 전문직도 간호사 및 의사, 유아원 교사 및 대학교수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소직업군으로 세분된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이러한 상세한 직업군에 대한 성별 통계자료는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1980년 UN 보고서 통계를 빌리면,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은 건축가 및 엔지니어의 12%, 물리 및 생명과학자의 37%, 의사, 약사 및 치과의사의 33%, 대학교수의 36%, 관리자의 18%를 차지한다. 남한의 경우는 아직도 이러한 평균 수치에 훨씬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남한 여성은 대학교수의 10%, 의사의 14%, 치과의사의 13%, 약사의 56%를 차지하고 있다.²⁷⁾ 물론 이들 직업군에 여성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약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구 선진국 평균의 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수직적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24) D.J. Treiman,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25) 위의 책

26) United Nations, The Economic Role of Women in ECE Region (New York: United Nations, 1980).

27)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91.

은 명예직종에서의 여성비율 뿐 아니라, 특정 산업분야내에서의 직위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80%이상이 단순생산직이며 전문 기술직에서 1%, 사무직에 15%수준으로 수직적 차별이 현저히 나타난다.

양성 경제적 불평등은 임금구조에서 가장 현격히 드러난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동일한 일에 대한 대가로 남성보다 30-40% 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점차 줄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하고 있다. 1991년 남한여성은 남성 임금의 53.5%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UN자료에 따르면 비교국가들중 최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⁸⁾ 남한여성의 임금수준은 1982년 (45.1%)까지는 1970년(46.5%)수준 이하로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며, 이는 70년대 여성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정책이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지만 남한 여성의 임금은 아직도 남성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별 여성임금 수준을 검토해보면 사회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광업이 가장 낮다. 직업군별 여성임금은 행정 및 관리직(784,562원)이 가장 높고, 전문기술직(396,219원), 사무직(257,478원), 판매직(236,031원), 서비스직(236,031원),

28) United Nations, *Women: Challenges to the Year 2000*, (New York: United Nations, 1991), p. 44.

생산직(209,650원) 순이다.(1989년 기준) 양성간 임금격차는 여성직종의 단순반복적 성격, 낮은 평균연령, 여성근로자의 저학력 수준과 짧은 근무경력, 제한된 승진기회, 불평등한 임금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동일학력자에 대해서도 남성은 행원, 여성은 여행원으로 직급을 분리하여 다른 호봉을 적용하고, 업무에서도 여자는 창구업무, 남자는 영업업무로 분리하여 여성에게 승진 및 교육에서 차별을 두고 있었다. 최근 여성 노동운동의 결과로 여행원제가 폐지되었으나, 기업들은 직종별코스제를 통해 노동자들을 성별, 학력별로 분리하는 새로운 고용차별인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여성근로자들은 세대주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자녀학자금보조나 주택자금보조와 같은 특별수당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이분론적 사고관, 즉 남편이 가족부양자라는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들어 제조업분야에서는 여성노동력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근로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노동시간이다. 1988년 남한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22.3시간이었으나(191.9시간-정상근무, 30.4시간-특별근무), 일본의 경우는 161.1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수의 여성근로자가 취업해있는 섬유·의복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1.7시간이다.²⁹⁾ 여성의 경제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환경 요인 중에서 직장

29)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91.

내 성폭력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이 성의 도구로 인식되는 남성중심의 성문화가 여성의 고용상의 불평등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까지 남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증가되어 왔지만 여성의 평등성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여성노동력이 이용되어왔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남한 여성들은 아직도 판매나 서서비스 직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므로 더 많은 여성들이 높은 보수직에 뛰어들어야 한다. 또한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여성 취업에 대한 부정적 문화요소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성의 일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들을 뿌리뽑는데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여성의 경제참여 실태

북한 여성의 경제참여 실태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표방하여 왔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소유원칙을 바탕으로 국가가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하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화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노동과정을 통해서만 필요한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에 따른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사라지며 남녀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노동을 통해서만 자신을 실현하는 평등한 구조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성원으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노동할 의무를 지니고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주의적 근로여성이 되게 된다.

표 3.3. 북한의 성별 노동력 변화

연 도	전종업원수 (천명)	남자(천명)	여자(천명)	여성비율(%)
1953	628	463	165	26.3
1956	850	680	170	20.0
1957	-	-	-	20.0
1958	-	-	-	29.0
1959	1,459	948	511	35.0
1960	1,506	1,014	492	32.7
1961	1,609	1,073	536	33.3
1962	1,865	1,214	651	34.9
1963	1,924	1,228	696	36.2
1964	2,092	1,287	805	38.5
1971	-	-	-	45.5
1976	-	-	-	48.0
1988	-	-	-	49.0

자료: 김애실, “여성의 경제활동”,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2), p. 187.

북한여성의 경제참여는 북한사회 전체의 경제정책에 의해 변화하여 왔기 때문에 북한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제도 수립에 필요한 경제건설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권의 초기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미비로 말미암아 사회성원의 노동동원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농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여성들이 농업생산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³⁰⁾ 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농촌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했고, 공업생산노동에도 여성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가두여성,³¹⁾ 가정부인들이 건국노동에 참가했다. 북한의 성별노동력 변화에 관한 통계를 보면, 1953년 전체노동력중 여성의 비율은 26.3%를 차지한다.

여성들을 농업 및 공업 생산노동에 동원하는 사업은 6.25 전쟁중에 더욱 강화되었다. 여성들은 후방의 공고화와 전쟁승리를 위한 식량증산에 조직동원되었다.³²⁾ 또한 전쟁기간동안 공장, 기업소의 생산노동에도 여성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 6.25 전쟁후 복구건설에 노동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남성노동력의 부족으로 여성노동력을 동원시켰으며, 농업집단화 과정에서도 여성노동력이 강제로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 동원은 “여성로력을 광범히 인입함

30) 조선로동당출판사(1979), 김일성저작집(2), p. 214.

31) 가두여성이란 도시나 노동지구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여성을 지칭한다.

32)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 86-87.

으로써 우리의 로력전선을 보충하며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상업·채신·보건·문화·교육 등 기관에서 사무보는 일에 여성로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그들의 노무를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상 편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무기관에서 남성로력을 여성로력으로 교체하여 그들을 생산직장으로 돌릴 것이다.”는 1953년 8월 김일성의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한 로력문제의 해결대책”에 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³³⁾ 1953년부터 농업집단화가 완료되는 1958년까지 농촌여성들의 노동참여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여성노동력의 증대는 1차 5개년계획(1957-61)과 외부 경제원조의 격감으로 노동력 강화를 통한 생산증대 방안으로 실시된 1957년의 ‘천리마운동’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

195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집에 있는 노동자, 사무원 부양가족여성들의 생산노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에 따라 매개 군마다 한 개이상 지방산업공장 설치가 추진되었고 1980년에는 매 군마다 평균 18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을 갖게 되었다.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여성들(가정주부들)을 더 많이 지방산업부문에 진출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산업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중 압도적 다수는

33) 위의 책.

여성이었다.

또한 여성들의 생산노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공업기업소들과 경공업공장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배치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공업과 경공업을 한지역에 배치하여 중공업기업소의 부양가족들과 여성들을 경공업공장의 생산노동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력의 효과적 이용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고착화되어 여성 고급기능공이 증가되어 제품의 질과 생산이 높아지고 종업원을 위한 제반 부대시설면에서 많은 자금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공장운영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³⁴⁾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 (1962년 2월에 채택된 내각명령 제3호, 1967년 10월에 채택된 내각명령 70호)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⁵⁾ 이에 따르면,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더 많이 진출시키기 위하여 녀성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남성로력을 다른 힘든 부문으로 돌리고 여기에 녀성로력을 배치하도록”하여 방직공장의 수리공, 양수기운전공, 관리일꾼, 공장, 기업소의 통계원, 부기원, 경리원과 같은 자리에 여성을 배치하고 “탄광, 광산, 임업, 수산업등 어렵고 힘든 부

34) 위의 책, pp. 95-96.

35) 위의 책.

문에” 청장년을 배치한다는 것이다.³⁶⁾ 또한 이러한 노력은 1983년 8월 김정일의 지시에서도 강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여성들을 특정직종(흔히 여성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것으로 간주되는 직종)에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를 심화시켜 왔다. 그리하여 여성은 경공업부문과 단순사무직, 서어비스(상업편의봉사)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는 남자로 형상하지만, 농민은 언제나 여성이 벼단을 안고 있거나 낫을 들고 있는 것으로 형상하고 있다”³⁷⁾에서도 성별 직종분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970년에 들어서 6개년경제계획(1971-76)기간동안에 나타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3대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직장을 떠나게 되고, 기존 기혼여성들의 비취업율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한 여성노동력의 유실방지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가족법 9조에서 남18세, 여17세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결혼연령을 남30세, 여28세 이상으로 장려하고, 각종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 정치적 사상교육 강화, 가정의 혁명화 등 여성을 노동계급화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36) 위의 책.

37) 위의 책, p. 98.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여성들을 부역 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결정이후, 1971년 10월 7일 여맹 제4차대회에서 김일성이 「여성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1978년 4월 사회주의 로동법에서 노동의 의무를 명시해 강제노력동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할 수 있게 제반조건을 보장해 주도록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가내 작업반과 가내협동조합을 조직토록 하여 55세 이상의 여성을 비롯한 부양가족의 유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⁸⁾

1980년대에 들어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분야에 관해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4년 이른바 「8.3 인민소비품 생산확대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에 따르면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유희로력으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가내작업반의 활동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유희노동력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여성노동력의 동원을 의미한다. 가내작업반 강화정책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

38) 김선옥외,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p. 64.

다. 북한은 2차 7개년계획(1978-84)을 추진한 이래 경제성장율이 2%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1980년 후반에 들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혼여성의 실업율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이 직업노동에서 제외되는 것이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측면과 이들 기혼여성이 가내작업반 활동에 유입되었기 때문에³⁹⁾ 이들을 순수한 실업인구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시장경제 제도로 인해 여성들이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직업노동에로의 강제적인 동원 필요성도 저하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여성노동정책에서도 여성의 ‘산업예비군화’ 현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경제구조에서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기혼여성의 직업노동 참여도가 규정되게 된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예비군’인 기혼여성들이 실제상에 있어서 직업노동이 아닌 지원봉사대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여맹조직을 통한 당의

39) 박순옥, “소문없이 큰일 하는 가내작업반,” 「조선여성」, (1980. 10), pp. 39-40; 본사기자, “인민생활의 참된 주부담계,” 「조선여성」, (1986. 2), pp. 26-27; 한복희, “소문없이 큰일 한 녀성들:평성시 두무동 가내작업반녀성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여성」, (1986. 3), pp. 31-32.

교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⁴⁰⁾

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성별 직종격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이 제시하는 표준분류방식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여성의 구체적인 직업별 비율에 대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북한 중앙통계국의 직업분류방식을 보면, 1)국영농장 및 기업소의 육체노동자 2)공무원 및 관리직 3)협동농장 농장원 4)협동단체공장 및 기업소의 육체노동자로 나누고 있어 세계 보편적인 분류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비교의 자료로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1987년 여성비율은 국영기업소노동자 57%, 공무원 16.8%, 농장원 25.3%, 협동기업소노동자 0.9% 등으로 나타난다.

1958년 7월 19일에 공포한 “인민 각 경제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에는 교육 및 보건부문에 여성비율이 평균 60%이상, 기타에는 30%이상으로 제고시키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반드시 여성들을 배치시킬 것이라고

40) 김성룡, “그들은 탄부의 심정으로 산다:석탄전선을 도와나선 문덕군 안주노동자구안의 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979. 2), pp. 28-29; 강영희, “우리도 주인이랍니다: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는 정주군 읍가두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979. 5), p. 45; 박순옥, “우리는 지원자가 아니다: 해산시건설에 펼쳐나선 <충성의 7.3녀성지원대> 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980. 2), pp. 34-35; 박순옥, “부전령의 선로공안해,” 「조선녀성」, (1980. 7), pp. 31-33; 강영희, “순천땅에 세차게 타번지는 지원의 불길,” 「조선녀성」, (1988. 4), pp. 18-19; 본사기자, “우리녀성들은 2000일 전투에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자,” 「조선녀성」, (1988. 3), pp. 17-18.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육 및 보건부문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여성노동력은 ‘개별적 특성에 맞게’ 배치한다는 내각결정은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이 중화학공업 중점육성이며 이를 위해 남성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노동력의 역량을 ‘가볍고 쉬운일’에 적당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직종분리 현상이 똑같이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초 북한여성 인력은 경공업(70%), 인민교사(35%), 농업부문(60%)에 집중되어 있다.

1963년 북한의 29만 4천명의 전문가 및 기술자중 여자는 4만 3천명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총 135만명 중 37%에 달하는 50여만명이 여성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의 전문가 및 기술자의 직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다.

북한 여성의 임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27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 37조에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임금지급방식에는 크게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가 있으며

도급지불제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에게 적용되며 작업반단위의 노동기준량과 생산량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정량은 1년 단위로 재조정하나 실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을 통해 기준량을 높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력 수탈의 방법이 되어왔다. 정액지불제는 의사,교사,사무원에게 적용되어 직능과 급수에 따른 임금차이가 있다.⁴¹⁾

노동에 대한 보상은 임금이외에 연합가급금, 기술가급금, 지하, 항해 가급금, 유해 가급금 등이 있고 식량, 부식, 의복, 공산품 배급권같은 현물 대가도 있다. 공식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여성의 평균임금은 월70원선으로 계층별 임금수준의 하위에 속한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의한 것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계급,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직종, 보다 손쉬운 작업장에 비숙련노동자로 집중 배치되어 그에 따른 낮은 보수를 받는 직종 분리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1979년 9월 김일성은 「전국 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로동을 고착시키며 전문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대를 이어 한가지 직종에 정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직종간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노동력 구조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

41) 김선옥 외,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p. 94-96.

하는 섬유산업이다. 농촌협동농장 등에서는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지배인이나 관리위원장의 비율이 높지만 관리직 전체에서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다.

북한여성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개인의 직업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노동력배치에 따라 규정된다. 정권초기에는 비교적 직장이동이 용이했으나,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노동력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력의 배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노동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의 각 분야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결정하면, 노동성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⁴²⁾ 중앙으로부터의 노동력배치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196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의 유일적 지도하에 도, 시, 군 노동행정기관들이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모든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면 우선 정무원이 도별로 배치하고, 도인민위원회가 가정성분, 사상, 학업성적, 재학중의 정치활동 참가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 군 및 부서 배치를 하게 된다.⁴³⁾ 명목상으로는 노동력의 배치시에 성에 따른 차별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여성에게 적당한 직장에 배치한다는 식의 배려적인 조치가 실제로는 여성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42) 현승일, 「북한산업경영체계의 전개」, p. 136.

43) 김태일, 「북한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59.

낮은 층에 편중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자면, 84호 내각결정과 남녀노동력 재배치과정에서 제시된 배치의 기준은 여성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체질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의 적성”에 배치하고, 남성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성 능력차이에 따른 성별분업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여성들을 각 부문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초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⁴⁴⁾ 또한 경제구조가 악화되자 기혼여성을 가정으로 복귀시켜 상황에 따라 보조노동력으로 동원시켜온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요약하면 북한은 정권초기에 노동력 부족에 의해 여성노동력의 동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가사의 사회화를 진행시켜왔다. 그러나 주체사상 확립이후에는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해방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

3. 남북한 비교

본장에서는 남북한 여성의 경제참여 실태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남북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왔으나 여성들의

44)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노동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많은 공통점을 지녀왔다.

첫째, 양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는 1960년대 수출산업화정책을 국가성장 전략으로 상정하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하면서 미혼여성들의 노동력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경공업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산업구조가 재편되게 되고, 남한사회 전체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학생의 진학율이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학령기 미혼여성의 취업율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대신 기혼여성들의 경제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혼여성 취업자를 앞지르게 되었다. 북한사회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하에서 “노동을 통한 평등의 실현”을 표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사회성원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노동할 의무를 지니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기 때문에 노동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어왔다.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라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면서 여성의 경제참여는 가속화되었고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여성들의 가내작업반과 가내협동조합조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북한 여성들은 사회노동에 참여하여 왔다.

둘째, 양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증가되어 왔으나 여성취업이 특정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성별직종분리 현상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남한여성의 취업은 노동집약적인 산

업(섬유, 신발, 전자조립)분야와 단순사무직, 판매직, 서서비스직에 몰려 있으며, 전문·행정직의 여성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또한 전문직여성의 경우에도 국민학교 교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북한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흔히 여성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직종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왔기 때문에 여성취업은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 단순사무직, 서서비스(상업편의봉사)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특정 직종내에서도 고위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대부분 여성이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

셋째, 양 사회 모두 명목상으로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앞에서 언급한 성별 직종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993년 현재 남한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57.3%에 그치고 있으며 북한여성의 경우 최근의 정확한 통계수치는 나와 있지 않으나 계층별 임금수준의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남북한의 여성 노동정책을 보면 여성의 노동력을 다분히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경제구조에서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기혼여성의 참여도가 규정되게 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여성은 '산업예비군'으로 인식되어 왔다. 남한 기혼여성의 취업상태를 보면 임시직이나 시간제취업 등과 같은 불안정고용의 비율이 높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1980년대들어 경제상태가 악화되자 기혼여성을 재가

정화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가내작업반이나 노력동원 등의 형식으로 활용하였다.

IV. 여성의 정치적 역할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는 국가가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회참여의 한 요소이다. 국가정책은 실질적인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며, 거의 모든 정치체제가 성평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남북한 정치체제에서의 단순 수치비교가 아닌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순한 투표율 검토뿐 아니라 양사회의 정치체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의 여성비율을 살펴본다. 또한 여성들이 여성단체운동 등을 통하여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남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남성과 동일한 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가입권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평등권을 명시하였다. 1945년 해방직후 남한에서는 한국여성국민당이 여성들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이 “여성만의” 정당은 유엔의 신탁통치에 대항하기 위해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1946년에는 4명의 여성들이 임시정부의 제헌의원으로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여성대중의 정치적 각성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여성개인의 남자지도자에 대한 공헌과 관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정치참여, 즉 선거참여율과 공직점유율로 측정되어진다. 역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진 남한 여성의 선거참여율은 남성과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으나,⁴⁵⁾ 보다 더 적극적 의미에서의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력기관에서의 여성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45) 역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3%미만의 차를 보인다.

표 4.1. 역대 국회의원중 여성의 비율

국 회	총의원수	총 여성의원수	직선 여성의원수	국회내 여성의원 비율	국회내 직선 여성의원 비율
1대	200	1	1	0.5	0.5
2대	210	2	2	0.9	0.9
3대	203	1	1	0.5	0.5
4대	233	3	3	1.3	1.3
5대	233	1	1	0.4	0.4
6대	175	2	1	1.1	0.6
7대	175	3	1	1.7	0.6
8대	204	5	0	2.5	0
9대	219	12	2	5.5	0.9
10대	231	8	1	3.5	0.4
11대	276	9	1	3.3	0.4
12대	276	8	2	2.9	0.7
13대	299	6	0	2.0	0
14대	299	6	1	2.0	0.3
합계	3233	67	17	2.0	0.5

자료: 손봉숙, 「남북한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서울: 한국여성 정치연구소, 1990), p. 5.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표 4.1이 보여주듯이 현 14대 국회까지 여성의원 비율은 0.4 - 5.5%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된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은 0 - 1.3%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의원들의 대다수가 전통적 여성직업출신으로 남성 권력자들의 임명에 의해 국회에 진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들의 국회진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⁴⁶⁾ 첫째, 남한 건국초기 여성의 정치활동이후에는 남성우위의 정치체제가 확립되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 정치에 적극적인 여성의 수가 줄어 들었으며, 소수의 여성정치인들의 활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일반여성들의 정치의식고양과 직결되지 못하였다.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선거과정에서 금권, 흑색선전, 폭력 등으로 타락된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여성지도자들이 지역구를 통한 국회진출 보다는 직능대표제인 전국구를 통한 국회진출을 선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남성위주의 정치관행속에서 여성은 공천이나, 정치자금조달, 정보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여성후보들의 경력과 사회적 지명도가 남성후보와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져 사회저명인사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소선거제의 취약점과 관련되어 있

46)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1), p. 218.

다. 셋째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부장적인 인식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원내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⁴⁷⁾ 첫째 여성의원의 수가 지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성의원들의 원내활동은 전분야에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여성의원들은 전통적인 여성 관심사인 특정분야, 예를 들어 육아, 교육, 건강, 의료, 문화 등과 관련된 입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였다. 둘째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들과 비교할 때 원내활동이나 지위에 있어서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지 못한다. 여성의원들은 국회내에서 “소수이며 주변집단”의 위치에 처해 있으며, 핵심적인 지위(국회의장, 부의장, 원내총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서 배제되어 왔다. 셋째 여성의원들의 의원활동의 정보와 협조창구인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와같은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성이 소수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다.

1991년 실시된 지방자치를 위한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은 122명(총 입후보자 10120)이 출마하여 40명(총 의원수 4303)이 당선되었으며,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3명(총 입후보자수 2877)이 출마하여 8명(총 의원수 866)만이 당선되었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

47) 손봉숙,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서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0), pp. 38-40.

전에 전념하는 생활정치를 다루는 곳인 만큼 여성들의 진출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0.9% 수준으로 국회내에서의 여성의원원의 비율보다 더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정책 집행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부처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비교할때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실시로 여성들의 공무원 진출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3년 현재 행정부내 공무원 총수는 884,033명인데, 그중 여성공무원은 234,907명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의 30.3%, 지방공무원의 20.0%를 차지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사무관급)이상의 일반직 여성국가공무원은 210명으로 전체의 1.6%이며, 5급이상 일반직 여성지방공무원은 200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⁴⁹⁾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권에서 여성의 비율은 매 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직급으로 보면 아직도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법권에서는 1980년까지 30여년 동안 여성법조인은 10명 미만이었으며, 1981년 300명을 선발하던 사시 23회 이후 여성법조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1993년 현재 아

48) 총무처 연보 1993, p. 160.

49) 위의 책, p. 162. 행정부소속 공무원중 여성인원을 살펴보면, 일반직 1급 공무원(총 69명)의 경우 여성은 전무하며 2급(총 380명)중에는 3명, 3급(총 561명)에는 8명의 여성공무원이 있다.

직도 여성법관은 46명(전체 1,113명), 여성검사는 6명(전체 91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활동 즉 여성의 정당활동 및 여성단체활동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여성의 정당활동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정당들이 특정정치이념을 중심으로 결성·유지되어온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당 최고지도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당조직에 여성은 선거운동과정에서 동원되는 평당원수준에서는 참여하고 있으나 당직자중의 여성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남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다수의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후원하에서 운영되었다. 따라서 제도권내의 여성운동은 1959년에 발족한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⁵⁰⁾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중상층여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면서 정부의 정책을 선전·교육하거나, 간접적으로 정부와 상호협조 관계를 통해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여 왔다.⁵¹⁾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단체들은 시기에 따라 정부시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여협은 1959년 12월에 기존의 25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이다. 자세한 상황은 「여성단체현황」, 서울: 여성개발원, 1986. 참조.

51) 각 여성단체들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회원의 친목·자질향상(23%),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봉사(17%), 국제친선(13%), 여성의 지위향상(11%), 여성의 의식화교육(11%), 보건향상(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책 참조.

부녀새마을운동⁵²⁾, 소비절약 저축운동, 자원봉사 활동, 가족계 획실천운동 등을 추진했다. 제도권밖에서의 여성운동은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산업화 일선에서 주역으로 일해온 여성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성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⁵³⁾ 즉 성의 불평등이 사회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여성문제 해결을 단순히 여성의 지위향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사회구조의 모순 속에서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여성단체들은 기층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성단체간의 연대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여성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농민,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 전업주부)에 따른 각기 다른 운동의 방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설적인 연대구조의 필요성에 따라 1987년 여성운동의 구심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창립되었다.⁵⁴⁾ 여연의 활동은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성차별 철

52)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부인회이다.

53) 1983년 이후 여성평우회(1983.6), 여성의 전화(1983.6),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1984.4), 또 하나의 문화(1984.12) 등 진보적 이념을 가진 여성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어, 가부장제의 철폐와 민주화를 위한 다각적인 여성운동을 모색하여 왔다.

54) 여연은 “여성운동 세력간의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 나가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을 쟁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 기사연, 1994), p. 342.

페운동과 기층여성의 지원 뿐 아니라 민주화 문제 및 민족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왔다. 여연은 기존 정부후원의 여성단체들과는 달리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제도권 밖에서의 비인습적(unconventional) 정치참여를 하여왔다. 제도권 밖에서의 성명 발표, 강연회 개최, 시위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대중들의 정치적 참여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권내의 여성단체들, 즉 여성단체협의회하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들도 여성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 하였다. 남한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다양하여지고 여성일반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치제도권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⁵⁵⁾ 아직도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의 정치적 위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북한은 1946년 7월 30일에 선포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1조와 제2조에 여성의 정치적 평등(남성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을 규정하였고 1946년 9월 14일 발표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제1조에서는 “녀성은

55)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들의 분열과 대다수 여성들의 무관심으로 여성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온 실정이다.

남성과 같이 지방(도·시·군·면·리) 및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며 또 위원에 피선될 권리를 가진다. 녀성은 남성과 같이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적 정치평등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라는 문제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정권초기에 토지개혁과 인민위원회 구성 등 사회개조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운동조직이 주장하던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일부일처제, 문맹퇴치, 동일노동 동일임금)를 수용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수립과 함께 여성의 혁명화, 계급화를 목표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조정해 왔다. 또한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라는 명분아래 정치부문에서 여성동원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며 이를 통하여 당노선과 국가정책을 철저히 지지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여성지지세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은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여성정치사회화의 실상을 살펴보면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정치체제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어 왔다. 북한 여성들의 정치교육은 주로 지도자(김일성과 김정일)가 제시하는 모범적인 여성상을 전체 여성의 표본으

로 교육해 왔다. 북한 여성의 학습대상인 모범적인 여성으로
 는 김일성의 어머니였던 강반석과 김일성의 아내이며 김정일
 의 어머니였던 김정숙을 들고 있다. 강반석은 “경애하는 수
 령 김일성동지의 어머님이시며 우리나라 녀성해방운동의 위
 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⁵⁶⁾로, 김
 정숙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
 용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
 명가”⁵⁷⁾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은 본인 자신이 공
 산주의 혁명가로 생활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혁명가의 아
 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전통적인 여성의
 덕목(순종과 헌신)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교육된다.

여성정치화 정책의 한 형태인 사회주의 경쟁운동은 모두
 공산당에서 시작되었다. 당이 정책적으로 특정운동을 결정하
 고 하급기관에 명령을 내리면 당 하부단체들은 그 명령을 무
 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쫓기대회나 충성결의모임을 갖도록 해
 결의사항을 채택하여 왔다.

북한사회에서 유일한 여성 전국조직은 조선민주녀성동맹이
 다. 남한 사회와는 달리 여성만의 단체가 하나뿐인 이유는
 첫째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할 수 있기 위해
 서, 둘째 그것이 여성대중의 조직적 단결과 통일의 중요한

56) 「백과전서 1」,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 139.

57) 위의 책, p. 713.

담보가 되기 때문에, 셋째 대중조직의 분산성과 대중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넷째 당 밖의 모든 여성을 빠짐없이 조직에 묶어 세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⁵⁸⁾

여성의 정치사회화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주축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여맹의 정치사회화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1기(1945-56)에는 공산주의 여성으로서의 개조를 위한 강조기로서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을 창당하고 조선노동당의 직접적 지도아래 전여성을 교육, 단결시키기 위한 여성조직으로 11월 11일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시키게 되었다.⁵⁹⁾ 1946년 5월에 열린 조선민주녀성동맹 제1차대회에서 7개 강령으로는 (1) 여성들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의 정권수립을 위해 총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2)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분투하고, (3)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4)조선문화의 향상과 정치경제의 건전한 분투를 위하여 경주하고, (5)여성의 문맹퇴치와 생활개선에 적극참여하며, (6)여성의 국가적 옹호를 요구하며, (7)봉건적 도덕인습과 미신타파를 위해 투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채택되었다.⁶⁰⁾ 위의 강령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조선민주녀성동맹

58) 근로단체 원칙참조. 사회과학출판사편. 영도체계. 지평, pp.180-181. 기사연. 「분단50년의 구조와 현실」에서 재인용. p. 346.

59)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반제반봉건혁명과업 수행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여성해방 추구라는 여성들의 요구가 결합되면서 창립되었다.

60) 김선옥 외.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p. 185.

초기에는 인민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여성의 사회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해 여성동원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제2기는 1957년부터 1971년까지로 구분하여 여성의 공산주의 사상혁명 강조기라고 볼 수 있다. 1957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을 경제발전에 투입하였고,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한 여맹의 중점사업으로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 여성의 사상적 혁명화,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었다. 1961년부터 전국어머니대회와 어머니학교를 개설하여 여성의 사상개조와 가정의 사상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68년부터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하면서 가정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여성들을 가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아래 ‘밥공장’ 및 ‘반찬공장’들을 건설하였다. 즉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셋째, 제3기(1972-현재)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여성 확립기이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면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하고 북한사회전체의 주체사상화를 추구하였다. 북한식의 독자적 사회주의를 구축한다는 명분아래 주체사상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세습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이었다.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점령을 목표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온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텔리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맹은 여성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텔리화를 담당하였다.⁶¹⁾

1976년 여맹30주년 기념보고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교양, 강반석여사 따라 배우기,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집단주의 정신의 교양, 어머니학교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정상 운영하여 모든 어머니를 주체형의 공산주의 어머니로 교양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여맹의 3대혁명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북한 여성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도덕적 의리로, 육친적 사랑이 동지적 사랑으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도덕적 의무”⁶²⁾로 교육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여맹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 가정의 혁명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가정을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하나의 혁명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설정하여 가정에서 여성들은 혁명의 후대인 어린이를 공산주의자로 양육하고 남편에게 순종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표 4.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70년대 후반이래 여맹조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

61) ‘여성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는 1971년 10월 여맹 제4차대회의 김일성 연설에서 제기되었다.

62) 리경혜, 「여성문제해결 경험」, p. 162.

직에서 가두여성과 전업주부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⁶³⁾

표 4.2. 조선민주녀성동맹 맹원수

(단위:만명)

년 도	1945	1948	1960	1965	1971	1977	1984	1988
맹원수	40	220	250	273	273	260	250	20

자료출처: 손봉숙, 「여성과 정치참여」, 손봉숙외 『북한의 여성생활』, p. 251.

이와 같은 여맹조직의 개편으로 여맹의 역할이 전체여성에서 가두여성과 전업주부 중심의 정치사상교육으로 전화되고 유희노동력 동원의 측면이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모든 여성이 일종의 정치조직인 근로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맹의 축소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⁶⁴⁾

북한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권력기관과 근로단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의 지표로 이용되는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조선로동당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사법부·입

63) 1983 제5차여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은 종전과는 달리 다른 사회단체에 가입한 여성들의 여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64) 기사연,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p. 348-349.

법부의 상위에 군림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사회기관, 단체, 직장에 각기 당 위원회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체인 로동당에 입당하는 데는 원칙적으로는 제약이 없다. 18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출신성분과 사회주의 건설에의 참여도에 따라 입당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당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같이 일반적으로 당성과 가정환경 혹은 직장에서의 노력영웅 등의 경력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여성지도자들에게 여성의 권익을 대변·옹호하는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임무를 주로 한다.

전체 조선로동당원중 여성당원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 있지 않으나 대략 최고인민회의나 지방인민회의 여성대의원의 비율과 비슷한 20-25%가량이 되리라 추정된다.⁶⁵⁾ 일반당원중 여성의 비율은 커다란 의미가 없으며,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결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의 여성비율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구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 중앙위원회의 로동당내에서의 위상을 고려할때 당 중앙위원회내에서의 여성비율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심기관인 당 중앙위원회내 여성의 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65) 손봉숙.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 p. 58.

표 4.3. 로동당 중앙위원회 여성위원 수

당 대 회	당대표자 총 수	여성 정위원	여성 후보위원
1차 (1946. 8)	801	2(42)	-
2차 (1948. 3)	990	2(69)	-
3차 (1956. 4)	916	2(71)	-
4차 (1961. 9)	1157	2(85)	4(50)
5차 (1970. 11)	1734	8(117)	6(55)
6차 (1980. 10)	3220	10(169)	19(122)
7차 (1990)*	-	8(115)	-

자료: 손봉숙,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서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0), p. 28. *는 전현준 외,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116.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에서의 여성대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은 중앙당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입후보자의 비율이 결정되며 그대로 당선되어 왔다.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을 포함한 제 사회단체·정당, 국가기관 기업소의 종업원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추천회의에서 추천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⁶⁶⁾ 이는 여성조직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남한의 국회의원과는 달리 전문 직업 정치인이라기보다 1년에 1-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가

66) 이계만, 「북한국가기관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2), p. 64.

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 본래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며, 중앙당이 대의원 입후보자를 지역, 계급 분포, 여성비율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정해진다. 표4.4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여성대의원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거의 20%선은 유지하여 왔다.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대의원 비율이 22-33%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⁶⁷⁾

표 4.4. 최고인민회의 여성대의원 비율

기 별	총 대의원수	여성수 (여성비율)
제 1 기 (1948)	572	68(12.06)
제 2 기 (1957)	215	27(12.55)
제 3 기 (1962)	383	35(9.13)
제 4 기 (1967)	457	73(15.97)
제 5 기 (1972)	541	113(20.88)
제 6 기 (1977)	579	121(20.8)
제 7 기 (1982)	615	121(19.8)
제 8 기 (1986)	655	138(21.1)
제 9 기 (1990)	687	138(20.1)

자료: 손봉숙,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서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0), p. 22.

67) 손봉숙,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 p. 24.

여성의 근로단체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연령과 직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 청년동맹(만14세-30세), 조선직업총동맹(만30세이상의 노동자와 사무원), 조선농업근로자동맹(만30세이상의 농업노동자), 조선민주녀성동맹(타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만18세-만55세 여성) 등과 같은 근로사회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1개이상의 근로단체에 참여하여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어 왔다. 근로단체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자발적 조직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질적인 사상교양조직으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당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명분상 이는 사회적 집단이 개인 생명의 원천이며, 집단의익 가운데 개인의 이익도 포함되며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집단이 발전하는 조건이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근로단체중 여성만이 참여하는 조직은 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1983년 조직개편이래로 여맹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

본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여성의 정치참여는 김일성 유일지도체계를 강화하고 전체 사회를 주체화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정치참여(당,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근로단체)는 공산당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북한 여성들의 정치참여율은 남한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고위직에서의 여성비율은 높지 않다.

3. 남북한 비교

본장에서는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 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정치참여를 투표율과 권력기관에서의 공직참여 등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투표율은 남성과 대비하여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없다. 권력기관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분석해보면, 북한 여성들의 참여율이 남한 여성에 비하여 높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위직에서의 여성비율은 남북한 모두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즉 남한의 경우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2%수준이며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0.9%로 극히 저조하나, 북한의 경우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여성대의원은 평균 20%를 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으로 북한 여성의 정치적 역량이 남한 여성의 10배 이상이라고 결론짓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최고인민회의나 지방인민회의는 지도부(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인준하는 기관으로 입법부인 남한사회의 국회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회원(평균5%)의 비율이 보다 더 나은 측정의 대상일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북한 여성도 형식적인 정치참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행정부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보면, 남한 여성의 비율이 매 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직위면에서 하위급직에 집중되어 있는 수준이다. 직접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급이상 공무원중 여성비율은 1993년 현재 1.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무위원중 여성의 비율도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정무제2장관과 시기에 따라 한두명의 여성장관이 임명되었으나 이들의 임기는 한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의 정무원에도 부총리와 부장급에 평균 한두명 정도의 여성이 계속 진출해 왔다.

여성정치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대부분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류층여성이며 북한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여성 정치인들이 김일성가계와 연관되어 있었다.⁶⁸⁾ 이러한 점에서 여성정치인들이 여성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정치인들의 실제적인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정치활동을 살펴보면 여성정치인들은 정치권내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서 소외되어 왔다. 남한 여성국회의원들의 경우 원내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원내총무 등은 차지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여성위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68) 손봉숙,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 p. 59.

소수인 여성의원의 원내활동도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여러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의 경우 여성정치인의 공식적(수치적) 대표성과 실질적 역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대의원이 독자적인 행동권과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다는 당과 상부의 명령에 따른 형식적인 업무수행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며, 오랜 기간 정치일선에서 활약해온 극소수의 여성정치인들이 특별히 사회교육분야나 여성관련부서에 집중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여성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남한여성의 단체활동은 초기에는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정부의 시책을 적극 홍보·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여성노동운동과 여성문제를 사회구조 속에서 해결하고자 한 여성운동권의 영향으로 80년대 중반이래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행하여져 왔다. 또한 남한 여성단체들이 서구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들을 재고하기 시작하였고, 유엔이(세계 여성의 선포)와 함께 계속해 온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남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로서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조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사회가 완벽한 성평등을 실현하였다는 국가적 사상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저항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바람직한 여성상에 제시된 것처럼 국가와 당의 명령에 따라 사회에 대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부장적인 윤리에 충실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 유일한 여성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도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동원·여성사상교육조직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압력단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현재 상태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V. 통일과 여성

오랜 분단기간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한의 이질화로 인한 사회문화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실질적인 통일로 가는 길이며, 남북의 체제통합 못지 않게 중요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이다. 통일이후 예기되는 사회문화 갈등중 여성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은 일반적인 사회문화 갈등과는 달리 쉽게 은폐될 수 있으며, 사회문제가 아닌 사사로운 개인가정의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며, 특히 가정의 문제는 곧바로 국가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거론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들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사회전체의 발전에 커다란 한계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남북한 여성의 실제적인 사회참여 실태를 바탕으로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이후 제기될 새로운 여성문제의 양상을 논의해 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의는 사회구성원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하여 양성간의 관계를 상호대립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여성의 발전이 사회전체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1. 통일과 여성문제

일본에 의한 식민시대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한반도의 분단은 오랜 기간동안 우리 민족구성원 전체의 삶에 근본적인 위협과 장애가 되어 왔다. 이러한 민족구성원간의 불행한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통일은 민족전체의 발전을 위해 절실한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에서 남북의 군사적인 대결구조가 지속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군사적 가치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려는 군사주의 문화가 확대되어왔다.⁶⁹⁾ 이러한 과정에서 권위의 집중화, 위계화, 규율 강화, 획일화 등을 강조하면서⁷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와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따라서 남한 사회 전반에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 “권위에 대한 복종, 경쟁에서의 승리, 대화와 타협보다는 물리적인 힘을 통한 문제 해결, 적에 대한 정복논리”⁷¹⁾가 사회의 중심 가치관으로 확산되면서 전통적으로 강자로 규정되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정당화되었다.⁷²⁾ 또한 주목할 점은 분단 상황이 사회적으로 성역할 분리를 자연스럽게 강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남녀의 공사역할분리는 남성의 국방의 무와 이에 따라 그 안에서 보호자 남성을 위로하고 보호받는 일은 여성의 몫으로 이분함으로써 가부장적 성역할 분리가 정당화되어왔다.

또한 권위주의 문화가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심화되

69) 김정수, “분단, 그리고 여성의 삶,” 사무직 여성, 9호, pp. 74-83.

70) 최장집, “제3세계의 군사화와 평화,”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서울: 법문사, 1989), p. 136.

71) 김정수, “분단, 그리고 여성의 삶”, p. 80.

72) 전통적 가부장제하에서는 권력과 무력, 물질을 소유한 집단은 남성들이었고 여기서 소외된 여성들은 남성들의 지배와 힘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 당하였다. 자세한 참조사항은 이호재, “한국사회의 군사주의 문화와 여성,” 기독교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집 「여성·평화」, 1991.

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봉건적 왕권사회의 관료조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종족조직과 유사한 정치체제로 이어졌다.⁷³⁾ 정당조직이 개인(남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문중조직의 형태로 유지되면서 여성은 이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며, 국가의 법률과 제도 등도 남성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왔다. 권위주의적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수동적 존재로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이 무시되기 쉽다.

‘전쟁’을 늘 염두에 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적과 동지로 구별하고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힘을 사회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적은 단순히 대립·경쟁하는 관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복하여 없애야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폭력이 정당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되었고 이러한 폭력이 사회에 일상화되게 되었으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구타와 성폭행으로 이어져 왔다. 군사문화 하에서 가부장적인 남녀의 이중적 성윤리가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자본상업주의의 매춘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의 성 상품화가 극대화 되면서 여성은 점차 공식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사적인 존재로 소외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분단의 아픔은 비단 남한 여성들만이 겪어 온

73) 가부장제하에서는 개인의 기본 관계는 부계시조나 특정조상인 한 남성개인으로 귀착되며 이러한 남성중심의 종족조직에서 여성은 혈통계승을 위한 자손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예측될 뿐이다.

것은 아니다. 북한 여성의 경우도 남북의 대결구조하에서 민족해방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인 정복의 대상으로 남한을 인식해온 정치체제하에서 남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희생이 되어왔다. 남한이라는 적과의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둔 사회체제에서 북한의 경우도 분단상태를 빌미로 한 권위주의는 사회전체에 확산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하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의 사용은 정당화 되었으며 일반화 되어왔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 사회에서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강화시켜 왔으며, 여성들의 삶에 근본적인 제약의 구조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단의 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요망된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먼저 남북이 대결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양 사회성원들이 깨닫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 체제내에서의 분단적 사고가 청산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회가 체제의 목적을 위해서 ‘사회공동의 적’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하며 한 사회가 다른 한 사회를 정복하려는 의도도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민족의 멸망으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여성이 분단으로 인해 받는 아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민족이 하나로 되어야 하는 통일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연합회가 주도

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⁷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남북한 여성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남북한 여성간의 교류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여성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서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⁷⁵⁾ 현실적으로 공식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제3국(중국이나 일본)에서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남북한 여성들이 서로의 인식의 차를 좁혀 궁극적으로 전체 민족의 통합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주역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좁게는 통일 이후의 남북한 여성들의 발전에, 더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통일 과정에 여성이 배제될 경우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통일 한국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오랜 분단기간 동안의 양 사회의 이질화로 말미암아 통일 이후에 겪게될 사회문화 갈등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통일은 사회문화 갈등을 최소화하여 내적 통합을 이

74) 남북한 여성과 일본여성들이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동경, 평양, 서울에서 회의를 가져 왔으나, 최근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대립으로 중단된 실정이다.

75) 우리민족하나운동은 남북한 여성 뿐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여성들(민단과 조총련)이 참여하여 주로 일본에서의 문화행사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넓혀 가고 있다.

루어 내야만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화 갈등중 여성을 둘러싼 제반문제들이 예상되며, 여성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문화갈등의 한 양태는 통일이전 양 사회내에서 바람직한 여성의 상을 어떻게 규정하여 왔는가 하는 점에서 연유된다. 독일과 예멘과 같은 분단국의 통일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볼 수 있다. 통일 독일과 통일 예멘에서 통일은 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었으며, 전반적인 여성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통일 국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반도의 경우에도 통일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이다. 통일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는 통일후 여성이 겪게 되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통일이후 여성이 받는 어려움은 독일의 경우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가시화된다. 분단기간 동안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유지해오던 두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경제체제를 이루는 경우 구조적인 재편이 요구된다. 경제재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한정된 취업기회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 기회는 더욱 더 제한을 받게 되어 남성대비 여성의 실업율은 더 악화되게 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의 실업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남성은 가족의 부양책임자로 인식하며 여성은 남성에 의해 부양되며 가정이라는 일터가 있다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은 해고의 1순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제약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여성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육아제도와 사회복지 측면의 약화를 들 수 있겠다.⁷⁶⁾ 독일의 경우에는 구동독 여성들은 자본주의화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와 정부육아시설의 폐쇄에 따라 실업과 잠재적 실업이 증가되었으며, 구서독 여성의 경우도 구동독 남성노동력의 유입으로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증가되었다.⁷⁷⁾

여성의 실업이 증가할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의 재가정화가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내 여성의 지위 약화를 통해 사회적 불안요소의 확산을 예방하려고 노력할 것이며,”⁷⁸⁾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의 책임을 가정으로 재전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76) 단적인 예로서는 독일의 경우에 통일후 더 많은 여성들이 불임시술을 받았다는 보고로, 이는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비관적인 직업전망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77) Marilyn Rueschemeyer. ed., *Women in the Politics of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Armonk: Sharpe, 1994). 1992년 6월 현재, 동독지역내 실업자의 63.6%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재훈련과정에 있거나 조기은퇴한 은폐된 실업자를 포함한다면, 이 지역의 총여성 실업자는 2백만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목할 점은 많은 수의 실업자가 편부나 편모인 점이다.

78)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p.68.

점들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일이후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체제로의 전환기동안에 나타났던 여성들의 여성단체나 정치영역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통일이후 현저히 줄어 들었다. 독일여성들의 정치참여 하락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동독여성들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제도, 즉 새로운 의료체계, 새로운 보험체계, 변화하는 교육체계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기회가 우선적으로 가족부양자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취업상황에서, 기업관리자들 뿐 아니라 여성자신들도 취업기회에서 여성이 배제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동독여성들이 과거에 국가가 여성정책을 주도하던 기간에 느꼈던 정치참여의 불필요성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여성들이 보여준 공공정치에의 참여열기는 사라지고 공식여성단체 조직의 효율성을 의심하면서 회원의 수자도 격감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시간의 낭비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멘의 경우에는 통일이후에 전통 이슬람교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의원이

통일이전 남예멘의 6명에도 못 미치는 2명만이 선출되었다.⁷⁹⁾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의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지위 하락과 연계되어 여성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직후에 여성이 자녀를 돌보며 가정에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언론매체에서 수차례의 공개토론이 진행되었다.⁸⁰⁾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여성들의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즉 구서독의 일부 보수지역에서는 가족내의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선호하였고 일부 동독 여성들도 자녀들과 가정에 머무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들은 통일독일에서 온 종일 가정에 있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자녀가 3세미만일 경우에는 취업시간을 줄이거나 자녀들과 가정에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업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직업활동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었다.⁸¹⁾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예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일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79) 총 51명의 여성이 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구 남예멘 지역에서 2명의 여성만이 승리하였다.

80) Marilyn Rueschemeyer. *Women in the Politics of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81) 위의 책, 1990년 가을에 Institute for Applied Social Research(Bad Godesberg)가 16세이상 60세미만의 143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3%만이 전업주부를 이상적인 직업이라고 응답했고 58% 여성이 직업이 있는 주부를 가정에 있는 엄마들 못지 않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여성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으며, 통일후 우리 사회가 겪게될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예멘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나, 통일후 여성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약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통일한국의 경제재편과정에서 취업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여성의 실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실업을 사회문제측면에서 회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의 의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일에 대한 자본주의 사고하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가정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이 주변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의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하고 고착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여성취업에 대한 여성자신들의 인식에서도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부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공식적인 노동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양 사회가 지니고 있는 민족의 전통회복을 시도할 경우 남북한사회에 공통적으로 잔존

하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삶을 위한 고려가 아니며 민족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후 민족이 공유해야 할 가치체계로서의 통일문화는 단순한 전통문화에의 복귀가 아니라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충분히 고려된 전통의 창조적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하락되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남북한 여성들간의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갈등을 들 수 있다. 남한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증가해 왔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나, 남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명목적인 사회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러한 사회참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부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경우라기 보다는 동원에 의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여성의 경우 당과 지도자가 제시한 여성상을 학습하도록 강요당하면서 여성들 자신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의 사회가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된 사회라는 사상교양에 따라 여성들이 그들의 문제점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로 북한이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차단하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북한 여성들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한 여성자신들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하에서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문화가 통일한국의 경우의 경우 확산·심화될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권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산된 경우와 많은 저개발 제3세계국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매춘과 같은 비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여성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사회바탕 위에서는 여성 사회참여를 기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파생할 것이다. 또한 퇴폐적 향락주의 문화가 만연할 경우 한 국가내에서 여성간의 계층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민족내부의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2.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통일을 민족전체의 발전과 여성의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통일이 민족사회 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사회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입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차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여성정책은 어떤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여성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전체적인 국가사회의 구도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사회참여는 개인의 자유이며 권리인 것이다. 또한 개인은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참여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의무적인 쪽으로 증대시키기 보다는 여성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사회참여를 원할 경우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구조적인 성별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성원 재생산 역할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육아의 과정들을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국가사회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탁아의 문제는 논할때 아이자신의 어머니만이 가장 바람직한 탁아책임자라고 여기는 사회의식에서 벗어나서 국가나 사회단체가 운

영하는 공공탁아시설을 늘려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유아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녀교육에서도 지나치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할 경우 자칫 편협적이고 자기가족중심적으로 되기 쉬우며 바람직한 사회성원으로 키워내기 어렵게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정경제 형편상 부부가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기층가정에서의 탁아문제들도 고려하여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측면에서 탁아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여성정책은 사적인 영역(가정)과 공적인 영역(사회)가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들이 더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은 특정여성은 특정남성에 의해 부양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전통적인 가족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사정상 전통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정도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의 발전이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가는 명목상의 선언적 양성평등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성을 근거로한 차별을 시정해야만 한다. 이는 성차별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실정과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려는 국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남북한이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여성문제를 둘러싼 사회문화 갈등을 최소화하며 통일이 여성발전과 전체민족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우리민족이 공유해야할 통일문화(민족구성원의 가치체계)의 형성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의 기초작업으로서 남북한 여성정책과 여성의 사회참여(경제참여, 정치참여)실태를 살펴보면서 양 사회내 여성의 위치를 조명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공적영역에의 참여(사회참여)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서로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양성 평등관점에서 볼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여성의 경제참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남한사회에서는 1960년대이래 노동집약적.수출지향적 산업화정책의 영향으로 여성 특히 미혼여성의 취업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사회전체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여학생의 진학율이 높아지면서 학령기(15-19세) 미혼여성의 취업이 감소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여성취업자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미혼여성을 앞지르게 되었다. 남한 여성의 경제참여는 특정직업분야 즉 판매직, 서어비스

직, 단순사무직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행정직에서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사회적 명예도가 높은 직업(의사, 교수, 변호사 등)에서의 여성비율 또한 선진국의 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직업분포에 있어서 직종별분리(수평적분리)와 직위별분리(수직적분리)가 명백히 나타나며 노동의 대가로 받게되는 임금에서도 성별격차가 나타난다. 현재 남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평균임금의 57.3%이다. 이는 물론 여성의 취업이 저임금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임금결정이 남성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자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사고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또한 주목할 점은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에서 여성은 실질적인 차별을 받아왔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차별의 소지가 많이 잔재해 있다.

북한여성의 경제참여는 사회주의 노동원칙에 따라 여성의 노동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정권초기부터 남성과 평등한 조건에서의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여성의 노동계급화·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취업이 현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노동력은 전쟁과 인구남하로 인한 북한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이후 북한의 경제침체가 시작되자 일차적으로 여성실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여성은 다

시 ‘가정주부’로 환원되어 보조적인 노동력으로 가내작업반이나 노력동원에 이용되어 왔다. 남녀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성도 전직종에 취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되는 특정 직종에 집중배치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취업은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 단순사무직, 서어비스(상업편의 봉사)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직종내에서도 여성은 대부분 하위직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별직종분리의 결과로 명목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은 계층별 임금수준의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남한의 여성은 투표율에서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공직 권력기관에서의 공무담임율에서는 남성과 비교하여 현격히 낮은 실정이다. 남한 여성단체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면 70년대말까지는 정부의 후원하에서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지원하면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였으나 여성노동운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단체들이 근본적인 성차별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아직 강력한 이익단체로 성장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남한사회 전체의 권위주의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노력도 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북한여성은 정권초기부터 정권안정화를 위한 기본세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여성의 혁명계급화정책에 따라 여성의 정치사상교육이 계속되어 왔다.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원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참여를 통해 여성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된다. 권력기관에의 참여율을 보면 당과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중 여성비율은 평균 20%를 넘는 수준이나 실제 정치적 실권을 갖는 당 중앙위원회와 같은 고위직에서 여성비율은 평균 5%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북한의 여성단체활동을 보면 유일한 여성조직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당의 외곽조직으로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동원·여성사상교육조직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단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위와 같은 남북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실태분석을 통하여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예기되는 여성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민족분단은 민족전체에게 아픔이었으나 특히 여성에게는 근본적인 삶의 제약으로 남아 왔다. 분단상황으로 인해 양 사회에 구조적으로 정착된 군사주의·권위주의 문화가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사회 모두 남녀의 역할분리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며, 여성을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노동력의 공급자로 인식하는 바탕위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 여성이 분단의 아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민족이 하나되어야 하는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남북한 여성이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양 사회의 분단적 사고를 극복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이 민족사회의 발전과 여성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즉 여성에게 평등한 사회참여의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구조적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독일과 예멘 통일은 통일이 전반적인 여성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각기 다른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성실업이 증가하고 여성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감소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남북한의 경우는 양 사회 모두 가부장제 전통이 사회구조속에 잔재하는 실정이므로 통일후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제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두 사회가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며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약을 받게 되고 여성의 재가정화가 강요되게 될 때 예기되는 사회갈등은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로 남지 않으며 사회전체의 갈등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

에 민족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성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남북한 여성들 자신이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참여는 여성의 선택에 의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정도의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발전이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국가는 명목상의 양성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시정해야만 한다.

또한 남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여성이 서로의 위치와 문제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목할 점은 남북한 여성이 통일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경우 여성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정책이나 제도에서 실질적인 여성의 평등과 자유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근로여성신문사. 「조선여성들이 걸어온 수난의 력사는 되풀이 될수 없다」. 평양: 근로여성신문사, 1974.

-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 민중사, 1994.
- 김선옥 외.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여성관련 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 김정숙. 「여성과 정치」. 서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0.
- 남인숙. 「남북한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서울신문사, 1992.
-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서울: 동아일보사, 1993.
-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북한연구소. 「북한가족법과 가족실태」. 서울: 북한연구소, 1991.
- 사회과학출판사. 「여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나남, 1992.
-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1.
- _____. 「남북한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 서울: 학림사, 1991.
- 어윤배. 「북한여성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3.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 이영자 외. 「성평등의 사회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3.

- 이태영. 「북한여성」. 서울: 실천문학사, 1988.
-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의 현장」. 서울: 백산서당, 1987.
- 한국여성연구회 외. 「여성노동자와 임금」. 서울: 동녘, 1991.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91」.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1.
- _____. 「제조업부문의 성별고용비율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1.
- 황일청 편.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서울: 나남, 1992.
- Leahy, Magaret.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Status of Women: A Comparative Study of United States, Mexico, Soviet Union and Cuba*. Boulder: Co., Rienner, 1986.
- Rueschemeyer, Marilyn. *Women in the Politics of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Armonk: Sharpe, 1994.
- Ruggie, Mary. *The State and Working Wom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United Nations. *Women: Challenges to the Year 2000*. New York: United Nation. 1991.

2. 논 문

강영희. “우리도 주인입니다: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는
정주군 읍가두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여성」,
(1979. 5).

_____. “순천땅에 세차게 타번지는 지원의 불길.” 「조선녀
성」, (1988. 4).

김성룡. “그들은 탄부의 심정으로 산다: 석탄전선을 도와나선
문덕군 안주로동자구안의 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
여성」, (1979. 2).

김애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이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회 제8차 학술대회 자료, 1991.

김정수. “분단, 그리고 여성의 삶.” 사무직 여성. 한국여성인
우회. 9호.

리경혜. “광범한 녀성들의 사회적 진출.” 「조선녀성」, (1991.
3)

_____. “남녀평등의 권리를 안겨주시어.” 「조선녀성」,
(1991. 4)

_____.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해주시려고.” 「조선녀
성」, (1991. 2)

리재숙. “녀성해방위업을 위하여: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주시려고.” 「조선녀성」, (1991. 6).

박순옥. “소문없이 큰일 하는 가내작업반.” 「조선녀성」,

(1980. 10).

_____. “우리는 지원자가 아니다: 해산시건설에 떨쳐나선
〈충성의 7.3여성지원대〉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여성」,
(1980. 2).

_____. “부전령의 선로공안해.” 「조선여성」, (1980. 7).

본사기자. “우리여성들은 2000일 전투에서 높은 충성심을 발
휘하자.” 「조선여성」, (1988. 3).

_____. “인민생활의 참된 주부답게.” 「조선여성」, (1986.
2).

이경숙.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성의 역할.”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10. 27.

이은숙. “중국의 현대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 숙명여자
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편. 「중국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이효재. “한국사회의 군사주의 문화와 여성.” 기독교 평화 연
구원 연구총서 2집. 「여성·평화」, 1991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
구소 주최 통일 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조 은. “산업화와 여성의 임노동화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변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_____. “남녀고용평등시대와 가정.” 대한가정학회 세계 가정
의 해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4. 30.

조 형. “북한사회체제와 가부장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체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한복희. “소문없이 큰일 한 여성들:평성시 두무동 가내작업 반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여성」, (1986. 3).

Carroll, Berenice. “Peace Research: The Cult of Pow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6, 1972.

Skocpol, Theda. “Political Response to Capitalist Crisis: Neo-Marxist Theories of the State and the Case of the New Deal.” *Politics and Society*. 10. 1980.

빈 면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연구

주 강 현*

- I. 머리말
- II. 북한의 문화정책과 전통문화적 요인
 -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전통문화
 - 2.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 III. 각 생활분야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 1. 의식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 2. 명절풍습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 3. 혼상제풍습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 4. 민속놀이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 IV. 민족내부 통합과정에서의 전통문화의 전망

* 경희대 강사

빈 면

I. 머리말

민족분단 이후, 남과 북이 헤어져 살아온지 반백년이 되었다. 같은 민족이 내부교류도 없이 50여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다. 그러함에도 엄혹하게 격리된 조건 속에서도 전통문화적인 특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각각의 생활 속에 전통문화적인 측면이 어느정도 전승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향후 내부통합의 공통분모 확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통적인 문화적 전통성이 이어지고 있다면 민족사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가령, 연변의 동포들이 모국어와 민족풍습을 전승시키고 있으므로 해서 상이한 조건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적 공통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점과 같은 이치다.

그동안은 북한사회의 이질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사회에 온존하고 있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들은 애써 간과되어 왔다고 본다. 북한사회가 남한사회같은 개방사회가 아닌 이상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요소가 많을 터인데도 정작 문제를 보는 시각은 정반대였다. 북한생활에서의 전통적인 요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사전 전제로서 문화에서의 전통적인 요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점검해보기로 한다.

1) 전통문화란 전제 속에는 이미 유구한 역사를 거쳐오며

이어받은 민족문화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한민족처럼 단일민족 구성체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온 경우에는 전통문화란 곧바로 개별민족의 민족문화단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생활에서의 전통문화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패러다임이 곧바로 북한생활에서의 민족문화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변성을 열어놓고 있다. 흔히 전통문화라는 범주가 민족문화라는 범주와 혼동되거나 중첩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여기서 생겨난다.

2) 전통문화도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 점이다. 시대가 변화면 어떤 문화도 변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통이라고 규정한 가치규범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해방 이후에 줄곧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온 북한의 사회적 조건에서 과거 사회에서의 전통문화적인 규범들이 그대로 온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발전경로를 걸어온 남한사회에서도 역시 과거 사회에서와 같은 규범의 전통문화는 이미 자기 자리를 잃은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전통문화적인 요소들은 문화적 우성(優性)으로서 그 생명력이 연연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3) 전승이 이루어진 어떤 전통문화도 현재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전통문화는 복고적인 취향만은 아니다. 가령, 음식문화에서 여전히 과거에 먹던 김치와 밥을 즐기고 숟가

락과 젓가락문화를 향유한다고 하여 아무도 복고적인 것으로 보질 않는다. 일단 생활 속에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란 극히 현실적이고 당시대적이란 점이 망각되어서는 아니된다.

4) 어떤 전통문화적인 요소들도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가장 탈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는 문화적인 요소도 실상 정치적인 측면을 은폐하는 채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북한사회처럼 어떤 목표치를 세워두고 인간적 사회적 개조를 추진해온 사회에서 전통문화적인 요소라고 예외가 아니다. 민속놀이에 대한 보존전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거의 굿이나 무당 같은 신적 요소들은 일체 엄금한데서 보듯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하는 북한생활에서의 전통문화적인 요인들도 위와 같은 사전전제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에서는 전통문화라는 명칭을 아예 쓰지 않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민족문화, 혹은 민족적 양식, 민족문화유산, 민족생활풍습 같은 용례를 쓰고 있다.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연 연이 이어지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이들은 문화적 우성으로서 변화발전된 사회적 조건에 부합되게 적응되어 온 것으로 간주하여 마땅하다. 동시에 오늘의 북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들도 바로 현실적인 문화라는 것이다. 현실적이기에 북한사회의 문화건설방략과 일치되게

나타나고있다.

북한생활에서 전통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 문화정책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서 쉽게 분석되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의도하면서 전통문화를 대하는 정책적 입장을 규명해보면 위로부터 어떻게 전통적인 요소들이 관철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이 분석될 것이다. 이는 주체사상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검토하는 작업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각각의 생활분야에서 전통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 사례를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생활속의 전통문화적 요인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영역은 매우 복잡다단하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생활을 위시하여 명절, 놀이, 혼상제생활 등에 국한시켜 분석하기로 한다.

Ⅱ. 북한의 문화정책과 전통문화적 요인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전통문화

북한사회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으로 살자!’,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민족제일주의’, ‘민족적 형

식과 사회주의적 내용' 따위의 다양한 슬로건들을 늘 마주한다. 이들은 바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나아가는 어제와 오늘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활양식도 바로 이들 슬로건에 잘 부합되어 있다. '우리식'이란 바로 '조선의 혁명은 조선땅에서 조선사람이 하는 것이다'는 혁명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식'을 유별나게 강조함으로써 '조선 사람의 구미에 맞는' 문화를 건설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여 문화에서도 우리식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문화'란 바로 민족적 전통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를 의미하므로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전통적인 요인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 식민잔재 청산과 민족전통의 복구

오늘날 북한생활에 전통적인 요인이 있다면,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북한지역에 사회주의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무시 할 수 없다. 해방 당시에 우리의 문화구조도 식민지 반봉건 골격의 정치적 기반을 벗어날 수 없었다. 문화에서는 극히 전통적인 요인이 그대로 온존된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다. 일본제국주의는 민족적인 것을 거세시켜 나가면서도 전통적인 골격은 그대로 두는 정체화 작업을 추구하였다. 전통적인 골격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결코 민족적인 풍습을 그대로 온존시키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고도의 식민지 착취를 해나가는 가운데 민중생활의 수준을 식민지 반봉건의

낮은 수준으로 정체화시켜 나가려는 결과였다. 그들은 민족문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별적 방식을 취하였다.

- (1) 억압책 : 민족적인 애국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것의 금지와 청산

(실례) 민족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대동놀이 등을 법으로 엄금함¹⁾

- (2) 호도책 : 민족적인 것 중에서 선별하여 왜곡시켜나감

(실례) 유사종교법, 무녀채취법 따위를 통하여 민족종교를 통제하면서 교묘하게 파행의 길로 유도함²⁾

따라서 해방이 되면서 북한사회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앞의 (1)로 인한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문제와 (2)로 인한 것들을 사회주의건설에 맞게 바꾸어나가는 방식이 요구되었다. 즉 북한의 해방직후사는 반제 반봉건 투쟁시기로 정리된다.³⁾ 대표적인 예를 나열해본다.

(실례 1) 의생활의 경우

복식생활에서 일제말기에는 몸빼 따위의 전시복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를 불문하고 조선옷 차림이 일상복이었다. 양복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부유층과 식자층에서

1) 경찰범처벌규칙(총리령4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조선총독부)시장규칙(총리령136호)

2) 김태곤, "일제가 실시한 조선민간신앙자료의 문제점" 「석주선기념민속논총」, 1971, 270-271쪽.

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편, 「조선로동당략사」, 1979.

주로 많이 입는 옷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조선옷을 입고 살았다. 이는 공장에서 옷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이 직접 만들어입는 것을 의미하였고, 옷의 상품화 단계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였다. 군수산업으로서의 피복공장은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으나 민중의 의생활만큼은 극도로 빈약한 조건에 묶어 두었다. 따라서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의 의생활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조선옷을 그대로 입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례 2) 음악생활의 경우

일제는 일본식 앵가를 보급하여 민족음악을 대처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식 앵가는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음악적 권위를 지니고 이어졌다. 반면에 대다수 농민대중들은 여전히 전승민요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실제로 구연자(口演者)였다. 따라서 해방이 되자 북한음악계가 재빨리 착수한 사업이 대중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전승이 이루어지는 민족음악적인 요소인 민요 따위의 발굴과 전승사업이었다. 동시에 일본식 음악의 청산이 이루어졌다. 서구적 음악전통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족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었다.

일제 식민지문화의 잔재청산이란 시대적 과제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였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고 사회주의 제도 자체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된다고 한다. 이는 “조선인민은 조선혁명을 해야 하며 조선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말로 일찌기 요약되었다. 나아가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말에서 엿보이듯 자신을 잘 알아야함이 강조되었다. 일제식민지 청산이란 과제에 맞물리면서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가시화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요구되었다.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곧바로 전통적인 문화규범이 연연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식민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였음은 바로 민족적 전통성을 회복하였다는 논리와 통한다. 이점은 북한정권에서 누누이 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생활에서 식민잔재인 왜색풍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전통성을 확보하는데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문화적 헤게모니와 전통문화의 공식부분화

해방되던 시기의 북한지역 전통문화적 요소들의 일반적 처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 되고서 남북이 분단되었던 초기였고, 북한에서는 아직 반제 반봉건 투쟁기로 설정되었던 시기인만큼 예전의 전래 봉건적 풍습들이 각 마을단위 생활 속에서 온존하고 있었다. 가령, 명절이나

놀이, 의식주생활, 농기구 등의 민속자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민속’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현실적 조건은 전래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7년 이후의 사회주의 혁명단계로의 이행은 북한의 농촌 곳곳에 낡은 사상과 생활관습에 대한 청산을 요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개혁 실시는 농촌사회 내부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지역 곳곳에는 전통문화적인 유산들이 남아있었고 그만큼 문화적 전통성이 강했던 시기다.

이같은 문화적 조건을 감안할 때, 해방과 동시에 북한사회가 사회주의 건설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생활에서 전통적인 요인들이 그대로 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전통적인 요인이 강한 상태에서 닫힌 사회로 나아갔으니, 오늘날까지 전통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당시 쏘련과 미국을 위시한 냉전구조는 자본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 자체의 냉전도 의미하였다. 따라서 북한에 들어온 문화란 대개 쏘련식, 중국식, 그 밖에 동유럽의 문화들이 거의 전부였다. 당연한 논리지만 미국식 대중문화 따위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다. 미국식 대중문화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은 문화구조에서 전통적인 요인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하였다. 대개 현대자본주의의 대중문화가 지닌 엄청난 대중 장악력을 고려할 때, 어떤 면에서는 ‘온실 속의 화초’로서 잘 자라나온 것이다. 전통문화는 문화창조자와 수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중이 오로지 ‘상품화된 객체’로 서 있기를 요구하는 자본주의 대중문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새롭게 외국에서 곧바로 이입되는 대중문화가 없이 해방 이후의 문화적 연속성이 그대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 만으로도 문화적 전통성이 이어지는 결과로 되었다.

그람씨(A. Gramsci)는 일찌기 자본주의 대중문화 구조에서 민속문화가 지니는 성격을 공식부분과 비공식부분으로 갈라서 고찰한 바도 있다. 그가 주창하는 민속에 대한 패러다임을 차용해본다면, 북한사회에서의 전통문화는 공식적 부분을 대중문화가 장악하는 자본주의식 시장문화 논리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요 같은 전래음악 양식은 결코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었다. 문화적 헤게모니는 팝송이나 뽕작 등의 외래적 대중문화에 내주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민요가 음악의 중심이 되므로서 오히려 문화헤게모니에서 공식부분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식의 강조

우리식 사회주의가 유난히 강조되는 이면에는 오늘날 북한 사회가 처한 국제적 현실과도 무관할 수 없다. 1980년 10월 6차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김일성은 “우리식대로해야 혁명과 건설을 곧바로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전

면적 후퇴와 더불어 우리식 사회주의에 보다 강조점을 찍고 있다. 당기관지 『근로자』는 「우리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방침」이란 글을 전제 하였으며,⁴⁾ 9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은 92년 1월 3일 노동당중앙위 책임일꾼들과의 담화문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에서」에서 “우리 인민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여온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정도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선택과 자체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위업을 확고히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것은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지켜나갈 것을 거듭 강조하고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같은 문건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풍습에서도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전 보다 더욱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 뿌리와 현재적 당위성을 강조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개방이라는 전환을 시도하면서 “바람은 들어오게하나 모기장은 친다”는 원칙이 서있으므로 모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식’의 입장이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내부적 요인과 국제적환경이 맞물리면서 더욱 ‘우리식’의 강조로 나아갈 전망이다.

4) 「근로자」(1989년 1월호).

2.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가. 주체사상에서 바라본 민족문화

주체사상에서 바라보는 민족문화에 대한 관점은,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은 문화이며, 민족의 발전은 바로 문화의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은 주체의 혁명이론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되고 있다. 즉, 문화건설이론은 주체의 혁명이론의 분야별 이론들인 인간개조 이론과 사회개조 이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 주체의 혁명이론이 담고 있는 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 혁명론, 공산주의 건설이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더 나아가 분야별 이론의 내용 뿐 아니라 단계별 이론의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면서, 세계혁명이 승리하려면 아직 멀었고 나라의 민족의 한계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민족문화의 좋은 전통을 옹기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사회주의적 민족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은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되며 사회주의적 성격을 구현한다고 본다. 민족문명은 한편으로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며 다른 편으로 해당한 사회제도의 성격을 반영한다. 민족을 문명화하는 사업으로서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은 마땅히 민족적 특

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민족국가들은 사회역사적 및 자연지리적 조건, 사람들의 체질, 감정과 취미, 생활풍습 등에서 서로 구별되는 것인 만큼 자기의 민족적 특성에 맞는 문명을 건설하여야 민족을 문명화하는 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⁵⁾

따라서,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방략은 바로 주체적인 문화건설을 의미하며, 이는 “주체적인 문화란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나라 혁명의 이익에 맞는 문화이며 인민대중이 그 창조자로 되고 향유자로 되는 문화”를 뜻하게 된다. 나라마다 문화가 발전하는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인민들이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민족문화는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자기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여 문화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문화의 내용과 형식에는 문화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다. 문화의 민족적 형식은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형식이다. 민족적 형식은 오랜 문화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거기에는 민족의 심리적 특성, 민족적 전통과 관습, 민족적인 취미와 기호가 반영되고 응결되어 있다. 따라서 민족적 형식은 그 나라 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고 그 나라 인민이 가장 사랑

5) 박승덕,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사회과학출판사, 1985), 37쪽.

하는 문화적 형식으로 된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인민들의 미감도 발전하고 문화의 내용도 발전하는 것만큼 민족적 형식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혁명과 건설의 이익에 맞게 개조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결국,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과 낡고 반동적인 것을 옳게 갈라내어 낡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살려야 한다.

이는 민족문화를 비판적으로,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려면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민족허무주의는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보고 멸시하며 자기 민족의 우수한 것까지 부정하는 그릇된 사상경향이며, 복고주의는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떠나 지난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인민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이므로 모두 지양되어야 한다.

이같은 주체사상의 일관된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족문화가 문화건설의 기본이 됨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족문화가 강조되는 생활에서 어떤 전통적인 요소가 쉽게 확인됨도 당연한 일이다.

나. 사회주의적 도덕과 미풍양속

북한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생활에서 사회주의적 도덕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는 사회주의 미풍양속의 표본으로 옛 문화에서의 미풍양속을 꼽고 있다.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미풍양속은 사람들에게 높은 긍지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게한다고 본다. 당연히 미풍양속은 민족적 특성을 지니기에 미풍양속을 이어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미풍양속은 사회주의적 도덕과도 깊은 연관을 맺는다.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전통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온 것으로, 전래 미풍양속의 내용과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변화된 사회에서의 사회주의적 도덕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된 다음에라도 일정 기간동안 민족마다 민족적 특성은 남아있기 마련”이라는 북에서의 민족문화건설이론을 인지한다면 북한에 민족생활풍습이 연연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웃간의 상부상조, 웃어른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아끼는 정신,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 조선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한민족의 심성 등이 여전한 이상 민족생활의 바탕은 온존하기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에서 나온 많은 글들을 보면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다”거나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는다”는 식의 언표가 자주 엿보인다.

사회주의 도덕관과 미풍양속이 그대로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몇가지 전통적인 현상이 있다. 이것들은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전통적인 관념들이 생활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가지 실례만 들어보기로한다.

(실례 1) 웃어른과 생활예절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규범에서 웃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는다는 사실은 불고의 진리로 여겨져왔다. 특히 유교사회를 거쳐나가면서 연장자, 특히 노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기풍이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북한사회에서도 바로 미풍양속을 강조하면서 웃어른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예절상의 문제는 바로 전래 미풍양속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실례 2) 주체의 가정관과 가정생활

북한에서 여성의 일반적 처지를 논의할 때,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의 여성들보다 우위에 놓인다. 그러나 실제로 집안에서 여성들의 처지는 여전히 여자가 가사노동의 중심이 되고있다. 이러한 것들도 전래 미풍양속이라고 강변한다면 모르되, 여전히 과거사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식주의와 현대적 미감

여기서 과연 북한에 남아있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들이 고유

의 것들인가에 대하여 엄밀하게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정권담당 초기에 지나친 ‘신식주의’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화계의 모든 곳에서 쏘련식이 선호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즉, 소련식·중국식 사회주의권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사회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전통문화의 온존과는 다르게 나아갈 전망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반종파투쟁을 비롯한 당 내부투쟁을 거치면서 문화에서도 주체노선확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쏘련식, 중국식 따위의 문화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는 어떤 ‘신식주의’가 엄존하고 있다.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도 봉건잔재적 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정작 탈춤 등은 연구는 하되 보급은 시키지 않는다거나 줄다리기·마을굿 따위를 미신적 속성이 있다고 하여 일체 박멸시켜 버린 것 등이다. 이를 방북했던 소설가 황석영은 아예 ‘북한식 신식주의’의 오류였다고 비판한 바도 있다.

신식주의와는 별도로 북한문화에도 어떤 일정한 보수성이 존재함을 감지하게 된다. 그 보수성은 문화적 관료주의라고도 할만한 것들이다. 유일사상에 입각한 주체의 문예이론이 통일된 사회주의 생활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차질 관료주의화·보수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도 변한다는 평범한 논리가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유별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실생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현대적 미감이란 말이 김정일에 의하여 누누이 강조되고 있거니와, 이는 반대급부로 현대적 미감에 뒤떨어진 문화가 대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하면 생활양식이 변하고, 풍습도 변하기 마련이어서 새로운 사회에 걸맞게 전래 풍습도 낡은 것은 버리고 선진적인 것은 이어받는 식으로 변화발전을 거듭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현대적 미감이 유별나게 강조되는 이면에는 개방과 전환이라는 오늘날 북한사회주의의 진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Ⅲ. 각 생활분야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1. 의식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가. 의생활분야

북한사회에서 의생활은 조선옷의 계승과 발전, 양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여왔다.⁶⁾ 해방이후 부족한 옷감과 피복 생산시설은 의생활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

6) 북한에서 양복이란 개념은 남한의 양복과 양장을 모두 합한 용례다. 여자들의 양장도 양복이라고 부르거니와 구별하지 않으며 현대옷이라고 일괄하여 부르기도 한다.

왔으니 기왕에 입던 조선옷을 기반으로하여 양복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작업복이 늘 중요시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사회 옷종류의 골간은 조선옷과 양복으로 가른다.

민족적 형식을 관철하는 입장은 의생활에서도 여전하여 조선옷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세계의 패션계라는 것도 결국은 '서구중심'의 패션산업이 전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자주경제를 표방한 북한 입장에서 이들 외래 복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의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최소한의 1차적 문제해결이 시급했던 처지에 패션 따위의 개념들은 차선으로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탓에 기왕에 조선옷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형식의 양복이 결들여지는 방향으로 의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차츰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의생활에서는 전통적인 요인이 강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통적인 조선옷도 일상복으로 입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옷이 강조된 이면에는 온화한 자연기후적 조건, 인민의 체질과 맑고 우아한 것을 좋아하는 민족적 정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은둔생활을 하는 특성 등을 반영하면서 수 천년 동안 유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의 감정과 취미, 생활기풍에 맞게 입어야 하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조선옷에 담겨진 민족성을 잘 살리는 것이야말로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온 민족옷의 우수성을

빛내면서 인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옷의 특징은 무엇보다 자체의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옷감을 마련하여 지어입고, 자연기후적 조건과 인민의 체질·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 입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작 권장되는 옷은 여자 조선옷에 국한된다.

여자 조선옷은 입고 나서면 깃이 서고 싶이 살아서 맵시가 나며 저고리 깃, 배래들이 잘 조화되고 몸의 움직임과 함께 치마폭의 잔주름이 부드럽게 움직여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고 본다. 따라서 여자 조선옷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결혼식 때와 명절옷으로도 널리 입는다고 한다(「사회주의백과사전」). 김정일은 조선 치마저고리를 평하면서, “조선치마저고리는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이 즐겨입던 고유한 민족옷의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 여성들은 저고리에 긴치마를 입고 여러가지 색깔의 고운 코신을 신고 다녔습니다”는 식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⁷⁾ 말하자면 우리의 풍토 속에서 민족적 품격에 알맞게 만들어진 옷이라는 말이다.

여자 조선옷만 입고 남자 조선옷이 입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 조선옷이 거추장스럽다는 것에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것의 계승도 선별적 선택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7)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옷,” 「조선옷」(1993년 3월호).

“전통적인 남자조선옷은 우리 인민의 생활적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지나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맞게 옷을 만든 것이며 계절적특성에 민감하게 홑옷과 겹옷 그리고 솜옷으로 구분하여 옷을 만든 것 등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그러나 남자조선옷은 전반적으로 품이 넓고 길어서 비활동적이며 겹옷에서와 같이 과거사회에서 계급신분적제약을 심하게 받은 적지않은 제한성도 가지고 있었다.”⁸⁾

옷 자체에서 전통적인 조선옷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옷차림에서도 나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옷차림이 사람들의 품격과 문화수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표징인 탓이다. “깨끗한 옷차림은 사람들의 품격을 높여주며 거리를 밝고 아름답게 해주어 사람들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그 나라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 정치도덕적풍모 등 사회의 여러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이야기된다. 이는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근로자들이 옷차림을 문화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언표로 요약된다. “우리 여성들과 근로자들은 옷차림도 의당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언급도 이루어진다.⁹⁾ 오늘날에는 무엇보다 ‘현대적 미감’이 강조된다.

8) 「천리마」(1993년 2월호).

9) 「조선여성」(1990년 4호).

조선옷을 입는데서도 어떤 일정한 하나의 전통적인 맥락을 강조한다. 조선옷을 맞출 때는 몇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옷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잘 살리자면 옷을 몸의 생김새에 어울리게 잘 맞추어야 하며, 나이에 맞게 맞추어 입는 것, 옷색깔을 나이와 계절에 맞추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한 우선 요건이다.¹⁰⁾ 조선옷 옷차림에서 중시되는 기준치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기준치들은 바로 북한의 의생활에서 전통적인 면모가 엿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 기준치는 여자 조선옷에 국한된다.¹¹⁾

(1) 몸매에 어울리게 위가 짧고 아래가 길게 보이도록 치마저고리의 비례를 옹계 설정하여 미적인 효과를 보장한 것이 특징적이다. 조선옷은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자연풍경에 어울리게 옷차림에서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선과 색갈, 무늬 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민족적 전통을 살려 치마를 길게 해입어야 한다. 치마를 짧게 해입는 것보다 길게 해입는 것이 보기 좋고 민속적인것을 잘 살리는 방도다. 일부 여성들 사이에 조선옷의 민족적인 전통을 잘 모르고 치마를 짧게 입는 현상들은 마땅히 비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흰 저고리에 비로도 치마를 짧게 받쳐 입는 것은 촌스럽고 조선옷의 고유한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는다.

10) “조선옷맞추기,” 「천리마」 (1991년 10월호).

11) 「조선여성」 (1990년 4호), 「천리마」 (1991년 7-8월, 12월호).

(3) 조선옷은 그 형태의 변화로가 아니라 옷감의 재질로 사철 변하는 계절에 맞추어 입을 수 있다. 즉 계절을 맞추어 맞는 옷감이 선택되어야 한다. 계절적인 문제 말고도 옷감의 재질을 잘 선택하여 만듬으로서 조선 옷차림을 혁명하는 시대,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적 요구와 현대적 미감에 맞게 하면서도 민족성이 잘 살아나도록 한다. 조선 옷차림에서 색조화를 잘 맞추는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옷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려 입는데서 색깔맞춤이 대단히 중요한 탓이다. 색조화는 또한 몸매와 얼굴색에 맞아야 한다. 나아가서 나이에 맞게 색을 골라 해입어야 하며, 나이에 따라서 옷짓는 방식도 다소 다르다.

의생활에서 민족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경향은 심지어 머리 단장에서조차 동일하게 나타난다. 머리단장에 대해서도, 시대적 미감과 계절, 그리고 생김새, 나이에 맞게하면서도 아름다운 민족적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적인 패션가발이나 헤어스타일의 명칭과는 무관하게 나름대로 정리된 머리모양으로 헤어스타일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가령, 계절에 따른 처녀들 머리스타일 구분을 살펴보면, 여름철에는 나리꽃머리, 폭포머리, 단발머리를, 겨울철에는 옥류머리, 수국화머리, 들국화머리, 조발머리 등을 권장하는 식이다.¹²⁾ 화장에서도 인삼크림, 동백살물결, 인삼살

12) “여름철 처녀들의 머리단장,” 「천리마」(1990년 8월호).

물결 등 인삼, 동백, 모란 같이 순식물성 성분을 도입하거나 민족적 소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바로 북한의 의생활에서 전통적인 요인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사례들이다.

물론 오늘날의 북한 의생활은 민족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대적인 미감을 넓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민족적인 품모는 여전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한편으로 국제패션산업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불리할 뿐더러 일견 답답한 요인으로 등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사회가 가꾸어온 민족적인 입장을 지켜나가면서 현대적이면서도 국제감각 있는 의복산업으로 이끌어내는 두 가지 문제의 병립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민족자주경제란 입장에서 조선옷을 강조하는 경향을 이어나가므로써 의생활에서의 대외 종속이란 위험성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공업 혁명을 부르짖고 무역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오늘의 북한사회에서 현대적 미감은 사활이 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조선옷을 개량발전시키는 원칙을 고수해나가면서, 동시에 양복에서의 대대적인 현대적 미감개발이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전통과 현대적 미감이란 두 가지 주제는 북한의 의생활을 규정짓는 양대 요인으로 보여진다.

나. 식생활분야

민족음식은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해온 풍부한 민족전통에 입각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민족국가의 경우에는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인하여 음식문화도 다양한 민족음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면 한민족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역사적 전통 속에서 확립되어온 단일적인 음식문화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남북으로 길게 놓여진 자연지리적 여건상 이북의 음식문화와 이남의 음식문화는 각각 나름의 특질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 가령 관서음식, 해서음식, 관북음식 등 각각 나름의 토양에 맞는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왔기에 같은 김치라고 해도 전라도의 김치와 함경도 김치가 같을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단일민족으로서 비교적 좁은 국토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 차이라는 것은 맛이러거나 취향에 따른 약간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음식문화의 전통성을 따질 때, 대략 몇가지가 문제된다.

(1) 음식의 종류가 전통성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전통사회에서 먹던 음식종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사회에서는 여전히 고유음식을 장려하는 편이며, 이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고유한 민족음식을 다 찾아내어 적극 권장하고, 이리하여 인민의 식생활을 다양하게

할 뿐 아니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에 따라, “민족음식의 가치수를 늘리고 음식가공도 늘리는 방도”를 모색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관해서는 북한의 과학계와 요리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³⁾

음식종류의 전통성을 따질 때, 무엇보다 향토성을 중시해야 한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같은 음식이란 없는 것이다. 각 지방마다의 역사와 자연지리, 토양에 알맞게 향토음식이 발전해온 탓이다. 고유한 향토성 짙은 특산음식들은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지방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시된다. 남한사회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특산음식이 동일하지 아니하듯이 관서와 관북의 음식도 다소 다르다. 이들 특색있는 음식들이란 모두 각 지역의 자연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생성된 음식들이다. 이같은 민족음식들이 이제는 “오늘 조선음식은 우리나라 사회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더욱 다양하고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진 음식으로 발전되었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전에 먹던 방식에서 이어지는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의 하나의 실례로 음료문화와 장문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3) 천석근,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1) - 조선음식」(근로단체출판사, 1985).

(실례 1) 술(음료)문화

현재 북한의 술문화는 우리가 보기에는 민속주라고 불릴만한 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의 내부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자립경제노선의 결과이기도 한데 지역특산술들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개성인삼주, 백두산 들쭉술 같은 술들이 대표적인데 각 지역특산물로 만든 특징이 있으며 전통성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음료의 경우에도 수입된 커피문화보다는 오미자차, 들쭉차, 구기자차, 감나무잎차, 결명자차, 보리차, 인삼차, 생강차, 솔잎차, 울무차, 대추잎차, 사과차 같은 향토적인 차가 전승되고 있으며, 식혜·수정과 같은 음료, 심지어 배단물·사과단물 같은 이름의 음료수가 판매되고 있다. 이는 수입된 원료, 가령 오렌지라거나 커피 따위의 수입원자재를 경화로 들여올 수 없는 북한경제의 여건과도 연관된다. 결과적으로는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실례 2) 장문화

북한에서 개별적인 장문화는 사라졌다. 시골에서는 여전히 재래방식으로 장을 담가먹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주종은 역시 공업화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여전히 과거 장종류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극히 전통적인 장

문화에 결들여 새롭게 개발된 장문화가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장은 생산방법에 따라 발효간장, 화학간장, 합성간장으로 나누고 재료에 따라 콩간장, 물고기간장, 덧감들을 넣고 재 가공한 가공양념간장, 특수한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든 말린간장, 소금기 없는 간장 등이 있다. 고추장은 재료에 따라 찹쌀고추장, 밀고추장, 강냉이고추장 등으로, 보조재료에 의해서는 고기고추장, 단고추장, 오미자고추장 등으로 가른다. 된장은 가공방법에 따라 보통된장과 가공된장으로 가른다. 보통된장은 농마질 원료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된장(밀된장, 강냉이된장, 보리된장, 고구마된장) 등과 농마질과 단백질 원료로 만든 된장, 단백질을 기본원료로 하여 만든 된장(콩된장, 북장, 담북장)으로 가른다. 가공된장은 가공원료에 따라 깨잎된장, 고기된장, 오미자된장으로 나눈다. 이밖에 보통된장을 말려서 가루를 낸 가루된장도 있다. 이같이 공업화를 시키면서 오히려 개별적으로 담가먹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장문화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장문화가 전통음식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꾸로 음식문화의 전통적인 요인이 되어주고 있다.

(2) 음식의 입맛이 그대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

북한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일치된 결론은 북한의 음식에서 전래 토속적인 입맛을 느꼈다는 것이다. 우선 강력한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사실 남쪽의 입맛은 서구화의 물결 속

에서 많은 변질을 가져왔다고 본다. 개방사회의 일반적 특징이기도한데, 다양한 서구음식이 들어오면서 입맛 자체를 변화시켰다. 가령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하기보다 피자에 빠져드는 식의 식문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개방의 정도가 극히 낮은 북한사회의 식문화가 그만큼 전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흡사 고향집에서 먹은 음식 같다는 방문객들의 한결같은 소감을 통하여 전래 음식의 입맛이 북한을 통해서나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 북한의 식문화가 지닌 미덕이라고 후한 점수를 주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음식문화에서 전통입맛이 살아있음은 반대로 음식문화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반영한다.

우리 입맛, 혹은 민족음식과 관련하여 단고기(개고기)사례를 들어본다. 북한에서 많이 먹을 뿐더러 대중화되어 있는 단고기는 인민적 식생활 기풍을 잘 말해 주거니와 다양한 민족음식을 통하여 식생활 기풍이 민족생활사의 흐름에 입각해 있음을 알게 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대중적인 음식으로 치고 있거니와, 개고기 요리법에 관한 글이 발표되기도 한다.

입맛과는 다소 무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릇에서조차 민족적 전통을 중시하고 있다. “보기 좋은 그릇이 맛도 좋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입맛을 돋구어주고 음식의 품격을 높여주는 그릇에서도 민족적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전승 민예품 같

은 식기류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상차림에서도 반상기를 권장하고 있다. “오늘 반상기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식생활풍습의 하나로 널리 장려되고 있다”거나 “우리나라에는 반상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다”같은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¹⁴⁾

(3) 식생활에 전통관습이 전해지는가 하는 문제

어느나라나 식사예절과 그에 따른 관습이 있다. 밥상에서 떠들지 않는다는 등의 관습은 바로 우리의 식생활이 지니는 특징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밥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먹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것들을 일컬어 식생활예절이라고 하거니와 북한사회는 나름의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탁문화보다는 둘러앉아 먹는 두리상풍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등 전통문화적인 측면이 강하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손님을 후대하며 이웃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의중계 사는 풍습, 노인들에게 탄상을 차려 식사를 대접하는 풍습, 조용하고 단란한 가정적 분위기속에서 식사하며 부엌세간을 알뜰하고 깨끗이 거두며 규모있게 정돈하는 풍습, 식량을 절약하면서 소박하게 생활하는 풍습, 식생활을 검소하게 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풍습 등이 오늘날의 북한에서도 식생활풍습의 민족적 미풍양속을 살

14) 「조선화보」(1993년 4호).

려나가는데서 귀중한 것들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¹⁵⁾

(4) 외식문화가 미치는 영향관계의 문제

현대사회에서 음식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집안의 음식문화 말고도 외식산업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점에서 볼 때, 북한은 식당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추세는 인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봉사혁명의 방향으로 식당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여름철 길거리에는 아이스크림 장사나 냉차장사가 등장하여 장사질을 치는 모습이나 청량음료점, 요구르트 판매점 등이 속속 들어서는 모습을 통하여 식문화의 확산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음식점들에서 다루는 음식종류에 있다. 평양시 옥류관, 평양시 경흥관, 평양시 창광거리 식당망, 원산시 해안거리 봉사망 등의 메뉴를 보면 불고기백반, 냉면 등이 주종을 이룬다. 광복거리 청춘관의 경우에는 단고기 식사실, 불고기 식사실, 중국요리 식사실, 조선요리 식사실 같은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국요리같은 것들이 선보이기도 하지만 아예 개고기 같은 것들이 공식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북한식 생활문화가 아직은 햄버거나 피자는 물론이고 외

15) “우리 인민의 식생활풍습,” 「천리마」(1992년 1월호),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식생활관습과 예절,” 「조선고고연구」(1986년 2호).

래식 생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단계라는 것을 암시한다.

요리협회의 조직화로 요리가공의 현대화를 꾀하려는 노력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1993년 4월의 제1차 ‘4월의 명절 요리축전’을 살펴보자.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요리축전으로 수도 평양과 지방의 13개도시에서 각도 직할시 지역협회별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참가한 요리들은 주식요리, 고기요리, 물고기요리, 남새요리, 단요리, 음료, 얼음 및 남새조각 등 1만여 점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요리들의 대부분이 전통요리들이다. 가령, 『조선료리』 잡지를 임의로 들추어 보아도 대표적인 음식들로 녹두지짐말이, 밥조개만두, 칠색개피떡, 돼지종다리보쌈, 꿩고기구이, 소고리곰탕, 돼지고기찜, 왕새우자게찜, 가재미만두, 호박게살찜, 무우소박김치, 청포꽃채, 포도단목, 딸기단물 같은 화보를 신고있다.¹⁶⁾ 요리잡지에 실린 음식명에서도 전통성이 강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다. 주생활분야

북한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 주생활의 기본은 집단살림집인 아파트 개념이다. 북한건축의 현재도 대개 아파트식의 공동주거양식을 보여준다. 그러한 공동주거양식을 채택하면서도 온돌 같은 민족적 주거양태만은 여전한 것이다. 건축에서의 민족적 형식이라는 문제는 북한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논

16) 「조선료리」(1993년 2호).

의되어온 과제이다. 일찌기 50년대에 북한학계의 민속학및 건축사분야에서는 민족건축양식과 농촌주택 현실에 대한 일정한 연구가 일어났다.¹⁷⁾ 이들 연구들은 바로 변화하는 농촌 살림집의 과거와 현재를 잘 전해주고 있거니와 민족적 형식이 강조되어야 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건축에서 전통적인 측면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같은 정책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축에서도 주체문제는 중요하다.¹⁸⁾ 건축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설계하고 건설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창조한다는 점을 말한다.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건축,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보장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건축이란 다른 어떤 자기나라의 조건과 자기나라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건축이며 나아가서 주체가 철저히 선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의 건축창조방법이나 민족의 건축형성이 다른나라의 건축에 그대로 맞을 수는 없으며 자기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이익, 자기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자기인민의 생활풍습, 사상감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수단이자 인민대중에게 생산조건과 생활조건, 휴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되므로 인민의 요구와 높은 사상

17) 김용준, “우리나라 건축의 특색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문화유산」(1958년).

18) “위대한 수령님께 창시하신 건축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한 사상,” 「조선건축」(1991년 2호).

예술성, 실용성이 담보된 편리하고 아담하고 견고한 건축이 창조되어야 한다. 즉, 건축가들이 자기나라의 역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인민들의 생활풍습을 잘 알고 그것에 정통하여야 민족적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북한건축에서 전통적인 면모가 엿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건축의 민족적 형식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북한건축에서의 민족적 형식은 “건축에서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리면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형성하는 문제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는 언표로 집약된다. 도시형성에서 민족적 색채가 강하게 안겨오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식 건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형성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된다. 과연 북한건축에서의 전통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세 가지만 들어보기로 한다. 그 하나는 살림집에서의 전통적인 측면, 두번째는 오늘 의 북한이 지니고 있는 고건축 건설역량, 세번째는 공원조성 방식을 하나의 실례로 들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살림집에서 전통적인 면모를 실례로 살펴본다. 주택에서도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합하였다고 한다. 예로 다층주택이 늘었으나 다층에서도 온돌형식을 강조하고 그대로 장판, 도배, 합각지붕 풍습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온돌문화는 한민족의 특특한 문화구조로 남한의 경우에도 아파트에까지 온돌문화적인 성격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거실 같은 서양식 주택문화를 받아들

이면서도 온돌 같은 전통적 요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한결같다.

둘째로, 북한의 민족건축유산에 대한 관심은 일찌기 1950년대 전후 복구건설 시기로 올라간다. 전쟁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중에는 문화유산 피해도 상당히 컸다. 이에따라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격이나 화재로 폐허가 된 민족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 사업은 이 시기에 시작되어 오늘날에 까지 지속되는 사업의 하나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래 건축유산에 대한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이는 민족건축양식을 현대건축에 도입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전통건축양식을 복원하면서 일정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전문기술자가 양성되었으니, 그 자체가 충분히 전통적인 요소를 간직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평양시복구는 1958년 하반기에 새로 설치된 문화유물보존사업소에 의해 내각결정 제83호 「민주수도 평양시를 보다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설할 데 대하여」란 지침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기본 건설대상인 고건물들의 특징을 살리는 과학적인 실측도와 단청미술에 대한 문양도 작성이 이루어졌다. 둘째, 조선건축의 특색을 가지는 건축적 양식과 구조형식 및 조각기술들이 복구할 건물에 그대로 발현되게 하기 위하여 목공기술자들이 설계도면을 연구하였고 와공기술자들이 기와를 제작하였다. 세째로 단청공예사들은 대상건물에 대한 문양 복사사업을 현지에서

진행하였다. 즉 기본사업은 목공부분과 기와부분, 단청부분에 집중되어 실시되었으며 복구수리사업에서 과학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술 및 기술적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한다.¹⁹⁾

민족적 형식과 관련하여 참고로 고려할 사항은 현재 북한의 전통건축기술의 수준문제다. 왜냐하면 전통건축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건축기술 수준은 바로 오늘날의 민족건축을 형상화시키는데 본 바탕을 이루는 까닭이다. 전통건축 복원기술은 대단히 치밀한 연구를 요구할 뿐더러 까다로운 공정과 자재준비, 숙련된 장인을 필요로 한다.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온 북한의 전통건축 복원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로, 근년에 만도 복원공사 3년여를 끝내고 1993년에 북한 최고 사찰 정릉사가 완공되었고 개성에 있는 고려태조 왕건왕릉 개축공사, 동명왕릉 복원공사, 단군릉 복원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세째로, 공원및 녹지시설을 실례로 살펴본다. 북한의 도시들은 가히 공원의 도시라고 표현될 만큼 녹지면적이 많은 용적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들도 자연과의 조화, 전래 민족정원 방식을 발전시킨 방식을 취하였다. 즉 공원은 “사상교양적내용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생활감정에 맞는 우리식 현대식 공원”이라고 표현되고 있다.²⁰⁾ 북한의 공원의 특징을 요약

19) “평양시내 고건물 복구수리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문화유산」(1960년 1호).

20) “우리나라 공원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건축」(1991년 1호).

하면, 첫째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자연에 대한 산지식을 주는 교양장소로 쓰여지는 것이고, 둘째로 인민의 민족감정과 생활풍습에 맞는 휴식터로 되어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는 단능화되고 특색 있는 공원건설, 세째로 관상적 가치가 높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여러가지 키 나무들과 떨기나무들이 공원의 지형적 특성에 맞게 심어지는 방식, 네째로 공원조성에 여러가지 장식 시설물과 함께 조각품들, 여러 모양의 분수들 등이 널리 도입되는 방식 따위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도 민족적 형식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원 자체의 나무뿐 아니라 가로변의 나무들이다. 이를 수림풍치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에서 현재 쓰이는 가로수는 은행나무, 풍향나무, 들메나무, 방울나무, 풍향나무 따위의 토종나무를 쓰고 있다. 오늘의 북한사회는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현대화'란 명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에서도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 미감을 지녀야 한다는 명제로 압축된다. 기왕의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일관된 과제에 덧붙여 현대적 미감이란 과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의 총화들이 '주체건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생활분야에서 전통적인 면모가 엿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명절풍습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명절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려지고 있다.²¹⁾

1) 나라와 민족의 융성발전에서 매우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

2) 사회의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

3) 국제노동계급과 인민들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전투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4) 음력설을 이르는 말

사전적 정의를 재정리하면, 사회주의적 명절과 민속명절로 요약될 것이다. 여기서 전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속명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속명절은 연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새삼 강조되는 분위기다.

해방 이후의 북한 명절풍습은 이전 시기와 차이가 없었다. 농촌 하부 단위의 실생활까지 전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되기에는 아직 요원했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래 민속명절은 여전히 명절풍습의 중심을 이루었다.

북한사회에서 명절풍습의 일대 변화는 전쟁이후였다. 본

21)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81).

격적인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로 접어들면서, 특히 농촌 생활이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생활에서 사회주의적 협동화로 바뀌면서 농촌에서의 가치관과 생활의 물적기반이 뒤바뀌고 북한사회의 많은 전통적 명절들은 사라졌거나 축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인민의 생활풍습을 개조’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요구에서 의도된 것이다.

1967년 5월에 “봉건잔재는 뿌리뽑아야한다”는 김주석의 교시에 의하여 민속명절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사라졌다. 그러나 이는 당시 상황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부각시킨 것이며 긍정적인 면을 완전히 묻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몇년 뒤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풍속유산의 하나인 과거명절 그 자체는 계승할 가치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 명절행사를 모조리 내버리는 경향으로 나간다면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매개 명절행사 안에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명절행사에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과 함께 얽혀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가려내어 이를 오늘의 근로자들의 구미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조건하에서 종래의 낡은 사회경제제도하에서 생긴 명절들은 그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되는데 수 천년동안 풍습으로 지켜온 과거의 명절들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새로운 풍습으로 바

뛰어지게 된다.²²⁾

“과거 명절을 모조리 내모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식은 민족허무주의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명절풍습이 그대로 온존되는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청산시켜내는 방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풍습이란 워낙 장기 지속적인 것이라 북한사회에서 그대로 온존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 하였지만 기본 정서는 저변에 깔린 상태로 연연이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도시보다는 농촌,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전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은 물론이다(이점은 현재의 남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명절, 즉 이후에 사회주의적 명절이라는 새로운 명절들이 다수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족명절인 추석에 조상에 대한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차례나 제례는 순소비적인 행사이며 제사를 빙자하여 원거리에 있는 가족이 작업장이나 협동농장을 떠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빚게 될 것이며, 또한 한 장소에 가족이 모이게되면 김일성, 김정일 개인숭배에 저해요인이 되는 종파주의를 형성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족명절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22) 엄영찬, “18-19세기 우리나라의 민간명절행사,” 「고고민속론문집」(1973년 5집).

본다.²³⁾ 많은 증언들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명절만을 강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민속명절날을 즐기고 차례도 지냈고 민족음식으로 명절을 즐겼던 것이다.²⁴⁾ 새로운 명절이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민족전래의 명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일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²⁵⁾

여기서 북한명절의 위치를 가늠하는 한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이는 북한사람들의 생활정서적 측면들이다. 북한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많은 최근의 기행문 보고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의 예의바름과 친절은 그 어느 곳 보다 두드러지고, 가정내 가족관계에서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살아있고, 또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 역시 남한사회 못지 않다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쩔 ‘중세사회의 봉건성이 가장 잘 남은 사회’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도 있다. 또 하나는 이와같은 잠재의식이 성묘를 조상에 대한 최대의 효도로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고 가능한한 조상의 묘소를 자주 찾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우애도 비록 떨어져 살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명절을 매개로한 우애로운 생활정서는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주의 사회에 알맞은 방향으

23) 「북한총람」, 1066쪽

24) 김진계구술,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현장문학사, 1990), 250쪽.

25) 김영규, “북한의 세시풍속 어떻게 달라졌나,” 「동아일보」, 1989. 4. 1.

로 그 성격과 명절شم이 변했다고 보아야한다.²⁶⁾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전통명절은 간소하게 지켜진다. 사회주의명절이 북한사회 최대의 명절로 자리잡고 있는 탓으로 민속명절은 민속적인 차원으로 쇠고 있다. 가령 한식날은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한다든지, 사회적으로는 ‘애국열사’의 무덤을 찾는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간 민족고유의 명절들이 지금까지는 작은 규모로 잔존되어온 것으로 알려졌을 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못하다가 8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권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남북회담을 계기로 추석 같은 명절이 매우 중요한 ‘고리’로 인정되어 내부적으로 묵인되었다는 관측도 있으며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다가 88년에는 추석, 89년에는 설날과 단오가 각기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와서는 민속명절을 대하는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의 설명절도 구정에서 민속명절로, 다시금 설날로 복권되는 절차를 밟았음을 고려할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93년 설을 보내고나서 부교수 리제오는 「음력설과 설날」이라는 글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되어온 우리 인민의 설맞이풍습은 오늘도 계승되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 인민들은 해마다 설명절이 오면 집안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름다운

26) 「조국: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467쪽.

웃차림을 한 다음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드리고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들에서는 물론 친척들과 이웃의 얼굴을 찾아 세배를 하며 혁명동지들 사이에는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나누며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다”²⁷⁾고 하였다. 여기서 명절풍습을 사회주의적인 풍습과 결합시켜나가는 방식을 볼 수 있다.

김정일비서는, “민속놀이를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 속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를 장려하면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줄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서도 좋습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삼국사의 회소곡과 결부하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추석명절이 근로인민들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석놀이들이 비록 소박하지만 마을사람들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데 기여하였음을 내세우고, 햇곡식으로 송편, 떡, 노치, 단자 등을 만드는 풍습도 강조하였다. 동시에 민속행사로서 조상들의 무덤을 돌아보는 것도 중시하였다.²⁸⁾

즉,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의 민속명절은 이전 시기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다 민속명절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속명절의 나쁜점을 비판

27) 「천리마」(1993년 2월호).

28) “추석의 유래와 민속,” 「조선여성」(1991년 5호).

하자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가운데 민속명절을 이어나 갈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민속명절에서도 변화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3. 혼상제풍습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전통생활 가운데서 가장 오래도록 변치 않는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혼상제, 특히 상장례 풍습일 것이다. 혼상제 풍습은 실로 오랜 전통을 지녀온 우리 생활과 풍습의 전형성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우리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나름의 풍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우리민족의 혼상제 예법은 상당히 완강한 편이다. 유교적 문화에 익숙한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교문화의 영향이 오늘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북한사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명절이나 놀이와 마찬가지로 가족 및 사회생활 풍습의 전형인 혼상제의 가장 큰변화는 1950년대의 농업협동화 운동과 관련된다. 즉 8.15 해방후 북한정권이 창출된 후 10여년이 넘는 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래의 가족 및 사회생활 풍습의 전반적인 모습이 오늘날과 같다고는 볼 수 없다. 비교적 전래의 전통들이 완강히 살아있었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전쟁이후 사회주의 집단경리과정은 농민들의 삶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다. 당시 북한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니 협동화과정은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풍습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방이후의 가족제도가 가족중심의 경제활동 유지와 봉건적 유습의 청산, 혼인과 이혼의 자유보장 등이었다면, 전쟁이후의 가족제도는 가족중심의 소농경영에서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적 경제활동의 강화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적 인간관계의 제고, 가정 자체의 혁명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는 혼상제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여전히 ‘낡은 잔재’가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거꾸로 읽어볼 때,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전반기까지는 전래 혼상제가 나름의 모습으로 온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이래 협동화농장이 거의 완성되어 나가면서 60년대 중반을 접어들면 이같은 문제는 대개 해결을 보게 되고 이른바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서의 혼상제가 정착되는 것이다. 협동농장의 생활은 개인경리에서 공동노동으로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는 마을생활의 단위가 집단적 경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공동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탁아소 신설은 여성들을 해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가족관계에서도 봉건적 가족관계는 붕괴되고 보다 집단경리에 알맞는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에 뿌리를 둔 생활풍습들도 필연적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물자가 부족한 북한사회의 경제적 여건으로 미루어보아 혼상제의 과도한 지출을 제어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가령 1955년에 “허례허식을 없애고 물질낭비와 시간낭비를 방지한다”면서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을 벌인 것이 그것이다. 이점, 남한사회에서도 오늘날에까지 허례허식이나 호화혼수 등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은 세계 어느 곳이나 비슷하여 혼상제 때 무언가 크게 벌이려고 하는 심정이 비슷한 까닭이다.

이러한 변모의 결과는 70, 80년대가 경과하면서 더욱 고정된 정착화를 가져와서 오늘의 혼상제를 규정하게 된다. 더우기 주체사상의 전면적이고도 유일사상으로의 확립은 생활양식상에 있어서도 규정성을 지니게된 것이다.

그러나 혼상제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북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과 비공개시키는 부분의 편차가 존재함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개적으로야 제사 따위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실상 제사풍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보고가 여러 증언을 통하여 확인된다. 가령 한식 같은 날에 대대적으로 성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조상모심의 전통이 완강한 것이다. 최근년에 북한중국 국경을 현지답사한 김국후 기자의 보고는, “아직도 상당수 주민들 사이에는 조상과 웃어른을 섬기는 정신 등 유교적인 예의범절 등이 중국보다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²⁹⁾ 이같은 전통은 북과 남이 동일한 것이며, 민족풍습은 단시일내에 변화될 수 없음을 잘 설명해 준다.

성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장례법에서 화장보다는 무덤을 선호하는 우리 민족의 풍습에서 유래한다. 남한사회에서 좁은 국토에 묘지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되고 있거니와, 북한사회에서도 묘지 대신에 화장을 원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정작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덤이 중시되는 풍습은 남과 북이 같거니와 성묘풍습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 강한 조상숭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민속놀이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북한사회에서는 전래 민속놀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시각의 일단을 살펴본다.³⁰⁾

첫째, 민속놀이에는 풍부한 '인민성'이 담겨져 있다.

둘째, 민속놀이에 담겨진 건전한 취미와 높은 문화성이 있다.

셋째, 민속놀이는 민족의 낙천적인 기상과 풍부한 정서로 가득 차 있다.

즉 탁월한 인민성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유구한 민족의 삶

29) 「중앙일보」, 1993. 11. 5.

30) 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조선의 민속놀이」(1964).

속에서 갈고 닦여져 온 문화유산이므로 민속놀이는 민족적 형식을 세우는 데서 중심이 되고 있다. “자기의 고유한 문화 가운데서 우수한 것은 계승하고 낙후한 것은 극복하며 선진 국가들의 문화 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 것들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는 주장이나, “문학예술이 인민의 심장을 울리며 인민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형식을 옹계 결합해야 한다. 찬란한 우리 민족 예술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선조들이 남겨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하겠습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자체를 잘 드러내주고 있거니와 민속놀이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나라마다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사람들의 체질과 함께 민족의 전통과 풍습, 취미와 관습, 민족적 의식과 심리 등 민족적 특성이 모든 문화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주체의 문화건설이론에서는 바로 민속놀이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관찰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이들 입장이 바로 전래 민속놀이를 변화시키는데서도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의 전승 현주소를 살펴보는데서도 판단 기준점을 제시한다. 실상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민속놀이 그대로는 존속할 수가 없다.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문화 역시 변하기 마련인 탓이다. 과거 농촌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민속놀이가 변화된 사회주의 현실에 그대로 부합되지

도 없다고 본다. 이는 북한의 문예정책에서 누누히 언급되는, 북고주의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나 맹목적으로 들어온 것을 숭상하는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함이다. 민속놀이 역시 사회주의 생활양식이 정착해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된 것이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생활양식 속에서 민속놀이의 현주소는 과거 전통 가운데 긍정적인 것은 보존하면서 낡은 것은 청산하는 관계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민속놀이 분야에서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현실의 편차는 유심히 보아야 한다. 가령, 아이들의 놀이들도 다수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는 놀이가 생겼지만 전래 민속놀이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전승된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대막치기, 실뜨기, 산가지놀이, 꽃싸움, 풀싸움, 제기차기, 연띄우기, 가막잡기, 솜박꼭질 등을 놓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자료가 많으며, 실제로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방문기에도 아이들의 전래 놀이가 다수 확인된다. 시대가 변하였다고 소녀들의 공기놀이까지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전통적인 요인이 강한 것인데, 그만큼 전통적인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 미디어에 의한 대중문화예술이 보급되지 않는 사회이기에 전통적인 문화적 기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시에 군중노선에 입각한 군중문화예술의 존재는 바로 문화의 향유자와 창조자가 동일하다는 전래 전통놀이의 예술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가. 춤분야

춤에서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원칙은 분명하다. 이는 춤에서 민족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창작한다는 뜻도 지닌다. 따라서 인민예술인 민속놀이의 정서와 미감은 그대로 민족적인 내용과 형식을 지니고 있는 셈이며 조선춤의 근거가 되어준다.

조선춤이 그대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이른바 양춤이 보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 쏘련식 춤이 일정정도 보급되어 있기는하나 서구 대중문화의 춤이 들어와 있질 않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폐쇄적인 상태인 바,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조선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족적 형식을 일관되게 춤에서 구현하고자 한 북한예술계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춤의 방향을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본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속춤, 민속무용이 부쩍 강조되고 있는 중이다.

(1) 조선춤을 제대로 형상화하여 조선사람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하자면 춤의 주소·성명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족적형식과 내용을 지향하는 주체무용은 으당 예술에서 민족적 풍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민족적 풍격은 무용에서도 하나의 필요조건인 셈이다.³¹⁾ 이는 춤에서의 주제확립으로 간단

31) “민속무용과 민족적풍격,” 「조선예술」(1986년 9월호).

히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애시당초 민속놀이에서 민족무용의 자산을 끌어온다는 문제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민속무용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같은 문건까지 등장하면서 일정한 체계를 잡아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속무용이 지닌 사회적 제한성은 비판되었다. 아무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낡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청산해야만 하는 이유가 시대적 차이에 의해 생긴 탓이다.

(2) 북한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민속무용을 “각 지역의 근로인민들의 창조적인 노동과 생활과정을 그들 자신이 집체적인 지혜로 만들어낸 인민적인 무용유산”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속무용이 오늘날까지 민속무용으로 되는 근거는 그것이 발생발전하여온 합법칙적인 과정에 맞게 지방적인 특징을 살리고 있는 탓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속무용에서는 어디까지나 지방적인 특징을 잘 살려내야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성은 바로 민속놀이의 본령이기도 한 탓이다. 즉, “특징이 있는 민속무용들을 만들어야만 인민의 풍부한 문화적소양과 생활정서, 고상한 정신세계들을 지방마다 고유한 무용형식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다.

(3) 춤은 주소성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속무용은 낙천적인 생활과 노동생활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고 본다. 노동과 생활의 직접 반영이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식을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민속무용에서

는 반드시 생활적인 것, 근로하는 노동생활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주소성명을 분명히 한다는 점은 쉬운일이 아니다. 각 지역현실에 기초한 민속놀이의 뿌리를 밝혀야 한다는 문제와 직결되는 탓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노래와 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을 개발하도록 발굴사업을 적극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북한 무용계에서 민속무용은 민족무용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장르상의 민속무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무용의 전범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민속무용은 민족무용을 발전시키는데서 의거해야할 원천입니다”는 김정일의 말을 기초로 삼고 있다고 한다. 민속무용의 줄기에는 민속놀이의 ‘인민예술’로서의 전통이 깔려 있는 탓이다. 민속무용의 뿌리가 그대로 전통적인 춤문화에 기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나. 음악분야

(1) 주체확립과 주체음악

북한생활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막중하다. 실상 1인1기로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루도록 교육체계가 잡혀있는 탓으로 음악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체사상의 전일적 지도가 확립되어나간

상황에서 음악이 담당한 역할이 지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음악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미학적 원리로 삼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으로 정리된다.

춤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고유한 정서적 특질을 반영한 민족음악으로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유산을 이어받는 문제는 음악이라고 예외가 아니며 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가요, 기악곡, 민족악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민요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근로인민들의 지혜와 인민들 속에서 나온 가수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불리어 온 노래인 탓으로 민족음악의 핵심적 장르로 인정된다. 다만 민요만을 민족음악유산으로 삼지는 않는다. 즉 민속악은 물론이고 궁정음악인 아악도 민족음악의 유산으로 본다.³²⁾ 주체음악에서 주장하는 이론적 측면을 살펴본다.

주체음악은 내용이 혁명적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그것을 핵으로 하는 당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충성심은 주체음악의 혁명성을 규정하는 기본내용으로 된다. 주체음악은 형식이 인민적이다. 음악이 사람에게 고상한 정서를 안겨주고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자면 선율이 아름답고 유순하여야 한다. 민족악기와 서양악기의 배합편성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악기를 위주로하고 민족악기의 역할을 적극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편곡을 우리식으로 한다는 것은

32) 김최원, “민족적인 것과 우리식의 노래 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조선예술」(1978년 10월호).

리듬본위가 아니라 선율본위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연주는 악보로 표기된 음악작품과 실제적인 울림으로 재현하는 예술창조의 한 형태이다.³³⁾

본래 북한의 민족음악은 민족전통음악과 이 음악을 현재적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민족전통음악이 그 바탕이 되고 이 바탕이 주체가 되어 서양음악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북한의 노래나 음악사에서 고유의 음악전통과 서양음악이 양대산맥으로 형성되어오다가 6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고유의 음악전통에 더욱 강세를 두고 있는 중이다. 음악에서 전통적인 면모가 강조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음악에서의 주체확립과 연관이 된다.

(2) 노래의 중심인 민요

북한에서 민요가 강조되고 전통성이 전승되는 측면을 살펴본다.

1. 북한의 모든 노래들이 정치성과 혁명성을 담고 있지는 않다. 가령 「90 송년통일음악회」에서 평양민족음악단은 ‘평양영변가’, ‘바다의 노래’, ‘배따라기’, ‘양산도’, ‘산천가’, ‘신고산타령’, ‘박연폭포’, ‘정방산성가’, ‘도라지’, ‘자진난봉가’, ‘중모리와 안땅’, ‘옹헤야’ 등을 공연하였으며 새로운 노래로 ‘해당화’,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하지’, ‘창성은 좋아’ 같은 극히

33) 황영민, “자주시대 인류 음악발전의 진로를 밝힌 대강령,” 「천리마」(1993년 2월호).

비정치적인 노래를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이들 노래의 상당 부분이 민요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공전의 히트를 한 해당화 같은 노래는 이른바 신민요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해당화’ 같은 새로운 민요가 박제화된 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북한사회 대중가요의 하나라는데 있다.

2. 민요를 대중화시키는 것은 바로 창작에서 통속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민요를 바탕으로 하되 통속성을 살리는 것을 중시한다. 민족성과 통속성은 음악예술이 사상미학적 교양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된다.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 통속성은 높은 사상성과 함께 주체적인 노래가 갖추어져야 할 기본징표이며 노래의 교양적 역할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노래는 민족적 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으며 통속적으로 되어야 대중교양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³⁴⁾

3. 민요를 부르는 방식도 민족적 풍격을 지키면서 현대적인 미감으로 불러야함이 강조된다. “민요도 계급사회에서 발생하였던 것 처럼 시대적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노동계급적 입장과 현대성의 견지에서 우리시대 인민의 미감에 맞는 민요선률을 적극 살리고 맞지않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김정일의 말이 자주 인용되곤 한다.

34) 방선영, “민요를 바탕으로 통속적인 노래를 만든 것은 우리당의 일관된 방침,” 「근로자」(1988년 10월호).

(3) 악기개량

민족악기를 적극적으로 개량함으로써 과거 시기의 악기를 현대에 맞게 적응시킨 것도 전통성을 보존시키는 좋은 예가 된다. 가령, 성능은 좋으나 악기를 배우기 어렵고 음정이 불안정한 ‘장새납’(호적)같이 풍물패의 대표적인 야외용 악기를 개조하여 실내연주용으로 가능하게 개조시킨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장새납이 가지고 있는 약점, 즉 지나치게 음량이 크므로 해서 합주에서 조화가 잘 되지 않는 점, 음역이 좁고 음공이 제한되어 기술적 기능성이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개량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한다. 통소곡인 ‘신아우’는 바로 민속악기가 어떻게 무대음악으로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잘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고음단소, 고음저대, 대피리, 저음피리, 대비파, 저비파, 장새납 등을 개조하였는 바, 이는 “예술에서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복고주의를 부수기 위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전통국악기인 와공후를 가야금처럼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한 옥류금을 자랑하기도 한다. 90년 남북한민족 음악교류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옥류금은 70년대초에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위해 만들어졌다고하며 오늘날 북한음악에서 ‘주체적 관현악’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다.

북한에서의 악기문제 역시 전통 그대로의 계승보다는 현대적 미감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통시대의 민속놀이에서 이루어지던 놀이방식으로서의 악기 연주가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과학화된 음악반주로 인정된다. 이를 두고 남한음악계에서는 전통악기의 개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판단에서부터 민족악기의 변질이라는 비판까지 두루 존재하고 있는 상이한 견해차를 보여주기도 한다.

(4) 우리식 전자음악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아마 전자음악단의 출현일 것이다. 부패하고 부르조아적인 제국주의음악이라고 비판해 마지않던 음악일 수도 있는 전자음악을 받아들이는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북한음악계 변화의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는 이 같은 경음악단의 본격적인 출현은 여러모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과연, 북에서는 전자음악도 ‘우리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들어오면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식 경음악에 대한 창작문제가 거론된다.

우리 경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민대중들 속에서 널리 알려진 민요를 발굴하여 편곡하는 것과 함께 영화음악에 나오는 가벼운 노래를 편곡하여 형상화하는 것이다. 민요를 소재로 하는 것은 우리 경음악의 확고한 민족적 바탕 위에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다른 모든 예술과 함께 경음악도 민족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인민들의 취미

와 정서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³⁵⁾

전자음악을 받아들이는데서도 “절대로 남의 풍에 놀거나 남의 뒤꼬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것의 우점과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인민들이 즐겨하고 혁명에 필요한 참다운 예술, 우리식의 독창적인 전자음악을 창조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1985년 6월 5일에 전자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보천보전자경음악단이 등장한 것이다. 보천보악단은 전문기량을 갖춘 연주가·가수·작곡가로 구성된 북한최초의 현대판 팝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다. 신췌사이저 같은 전자악기 뿐 아니라 양악기와 전통악기를 혼용하고 있다. 음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악·무용의 전속배우와 합창단도 두고 있다.

‘우리식 전자음악’의 기본특징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생활감정에 맞는 진실로 아름답고 고상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음악”이라는 데 있다고 한다. 조선식 전자음악이 시대의 지향에 맞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음악으로 되는 것은 선률이 철저히 민족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본다. 노래란 민족의 녀이고 숨결이므로 어느 나라의 어떤 음악이든지 민족적 선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천보경음악단의 공연이 대중들에게 높게 평가되는 것도 민족적 바탕에 기초를 둔 뛰어난 예술적 형상

35) 서태석, “경음악의 특성과 우리식 경음악 창작의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1982년 3월호).

수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보천보경음악단의 레퍼토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리듬보다는 가사를 중시하는 북한식 음악을 지향으로 하고 있으나 팝송 등 세계 각국의 대중음악 레퍼토리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경음악과 민요를 시대적 미감에 맞게 재형상한 ‘양산도’, ‘도라지’, ‘룡강타령’이 유명하다. 이는 보천보전자경음악단의 전자음악도 “민족적향취와 조선음악의 감미로운 향기가 그윽하게 풍기는 새로운 조선식 전자음악”을 지향해야 하며, 가능한한 “민족적정서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유순한 선률과 민족적향취를 돋구는 조선장단을 적극 살려쓰면서 전자악기들의 이용에서 될수록 민족적 색깔에 가까운 음색을 골라쓰고 악기 편성에 새납과 팽과리 같은 민족타악기도 효과있게 넣어 거기에서 우리의 맛, 조선맛이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민족장단을 독특하게 살리고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한 반면에 고티가 나지 않게 현대적 미감을 살려함을 강조한다.

경음악창작에서 민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노동민요, 서정민요, 생활풍속민요 등 극히 다양한 민요들에서 나타나는 흥겹고 낙천적인 정서, 가볍고 경쾌한 특성은 경음악의 특성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본다. 민요가 지니는 아름답고 유순하며 우아하고 부드러운 점들을 잘 살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민요가 가지는 우수한 특성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문제가 우리식 경음악에

서도 요구된다고 본다.

오늘날 북한의 보천보관현악단 같은 전자경음악단의 음악성도 민족적인 형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체확립의 강조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악에서의 전통문화적 측면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하다.

다. 교예분야

교예는 북한사회에만 있는 독특한 예술형식이자 군중오락물이다. 이는 써커스의 일종이면서도 보다 예술적 속성이 강한 군중오락물이다. 써커스는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으나 유독 북한사회에서는 교예라는 명칭으로 글자 그대로 ‘巧’와 ‘藝’를 결합한 교예 예술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교예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교예에 근접한 예술형식의 사적 맥락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는 오늘날의 북한교예가 주장하는 바, 민족교예로서의 지향점이 바로 역사적 전통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던 까닭이다. “교예의 개별적 속성들은 오래전부터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 보다 현대적인 종합예술로 출현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학계에서는 교예의 출발이 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고대발생설을 일찌기 주장하면서 이의 발전적 형식이 후대에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근현대사회에 이르는 시기의 교예는 보다 후대의 유랑예인 집단에서 근거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유랑 예인집단은

조선후기 민중예술사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족교예’라는 지향점은 오늘날 교예종목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 즉 교예는 그 자체 단순한 구경거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예를 흥미본위적인 것이나 엽기적인 것으로 되지않게 해야 합니다. 교양적 가치가 없는 교예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는 원칙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교예를 많이해야 하겠습니다. 민족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교예예술을 다양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예예술은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비위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형식을 옹계 결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주체가 철저히 서고 사상성과 예술성이 밀접히 결합된 다양한 교예종목들을 창조공연하게 되었다”고 주장되는 것이다.³⁶⁾

즉, 문화예술은 민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은 일정한 역사적 시대와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북한 사회주의 문학예술론의 일반원칙을 따르는 것이다.³⁷⁾ 그리하여 북한의 교예는 전래의 민속놀이 중에서 널뛰기, 그네 같은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민족적 정서에

36) “참된 교예가 태어나던 나날에,” 「조선예술」(1986년 9월호).

37) 「사회주의문학예술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526쪽.

젖어있고 그 자체 교예적 속성을 지니는 놀이를 개발하여 민족교예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같은 원칙에서 널뛰기, 그네뛰기 같이 민속놀이를 교예화한 교예종목들은 민족교예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민족교예 역시 주체사상의 전면적 요구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귀착된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일 전범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문예의 일반원칙에서 교예 역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문학예술이 인민의 심장을 울리며 인민들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 형식이 옹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찬란한 우리 민족예술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선조들이 남겨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하겠습니까”는 원칙이 교예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다(김일성선집 3권: 130). 민족교예로의 지향점을 강조하고 실제로 교예종목 중에서 민족적 형식을 차용한 종목들이 보다 높게 평가받는 것도 이러한 민족제일주의의 강조와 유관한 것이다.

이들 교예는 대중의 예술적 욕구와 오락적 욕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연종목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연 자본주의사회처럼 복잡다단한 오락과 예술의 사회적 기능 문화에 비하여 보다 집체적이며 균중적인 오락과 예술을 지향하는 북한사회의 필연적 요구에 의하여 교예가 발전되어온 것이다. 균중의 예술오락적 지향점을 집체적으로 표현한다는

편에서 교예는 어느 예술종목보다 균중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이는 사회체제를 당과 수령, 인민의 체계로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인민의 욕구발산을 집체적으로 묶어내는 일정한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하여 교예 역시 ‘현대화’라는 지향점을 찾아나설 것으로 인정된다. 민족교예로의 지향점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중의 ‘현대적 미감’이 자주 강조되고 변화된 사회에 알맞게 교예의 내용과 형식 역시 ‘현대적 미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요인이 교예에서 엿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라. 체육분야

민속놀이는 그 자체 스포츠이기도 하다. 즉 민속놀이 중에서 경기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들팔매놀이, 쥐불놀이, 차전, 제기차기, 햇불싸움, 장치기, 공치기, 격구, 마상재, 소싸움 등은 그 자체가 민족스포츠였다. 하나의 유쾌한 오락으로서, 나아가서 사람마다의 체력단련을 도모하고 집체적인 기상을 드높일 뿐더러 유사시에는 외침에 대비하는 무술로서의 역할을 도맡아했던 민속놀이 고유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민속놀이를 민족체육종목으로 경기화시켜 정착시켰다. 말하자면, 세세한 경기법칙이 없이 이루어지던 민속놀이들도 경기규칙을 부여하여 민족체육으로 만든 것이다.

민족경기에서도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고구려인민들이 창조하고 즐긴 민속놀이가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판적인 태도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그것은 그것이 봉건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발생발전하였던 만큼 사회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면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견지한다. 무술연마 및 체력단련놀이인 돌팔매놀이같은 것은 당시로서는 의의를 지녔으나 오늘날에는 실용적 의의도 없고 운동으로서도 의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돌팔매놀이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버려야하며 수박 같은 것도 오늘에 와서는 그 기법을 완성하고 과학화해야하며 칼쓰기 창쓰기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에 반하여 민족경기의 하나인 활쏘기나 운동으로서 꽤좋은 씨름은 계속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종목들로 본다.

북한의 체육은 국방·노동·체력이라는 3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대중국방체육과 국방실용체육으로 나뉘는데, 대중국방체육에 사격, 봉체조, 밧줄당기기, 씨름, 그네, 활쏘기 등이 있다. 그네, 씨름, 활쏘기 등의 민속체육 경기종목들로 전국민족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민속체육종목으로는 그네뛰기, 널뛰기 등 10여개 종목이 있다고 한다. 또한 체력교예를 중시하여 교예에서도 밧줄타기, 공중그네비행, 널뛰기 등 전통놀이를 교예화시키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민속놀이를 민족체육으로 정착시킨 사례는 비단 북한에서

만이 아니다. 연변의 동포들도 매년 민족경기로 체육대회를 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사회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 등한시해오다가 88 올림픽 후에 세계한민족체전을 개최하면서 공식 민족경기종목으로 여러 놀이를 채택하여 전승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속놀이들은 하나의 어엿한 민족경기로 남북한 전체만이 아니라 연변의 동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 민족경기에서 전통적 면모를 볼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IV. 민족내부 통합과정에서의 전통문화의 전망

민족분단 이후 남과 북은 상호간에 개별적으로 나름의 사회를 건설해 왔다. 남과 북은 각각의 사회적 조건에 맞게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북한사회의 경우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기본노선을 걸어왔다. 그에 따라 민족적인 형식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뿌리내리기는 북한사회발전의 내재적 논리였으며 전통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생활에서의 전통적인 측면들도 하나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 매스미디어에 의한 총체적 문화환

경 조성이라는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규범들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으나 개방이라는 파고 앞에서 여전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가령, ‘바람은 들어오되 모기장은 친다’는 개방논리 속에는 자본주의의 퇴폐문화 침투를 방어하는 목표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적 문화양식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대중문화는 문화적 우성으로서 자기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으며 각각의 민족적인 문화들은 문화적 열성을 면치 못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전망이 상호간에 가꾸어온 민족문화의 자주적 근거지를 일정정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사회 변화의 축은 두 가지로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국제화 시대로의 진입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제일주의의 강조다. 국제화시대로 들어가는 입장은 현대적 미감이란 표현에서 두드러진다. 80년대를 경과하고 90년대에 들어와서 혁신이 유난히 강조되고 현대적 미감이란 말이 곳곳에 쓰여짐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온존시키면서 보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려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바람은 들어오게 하되 자본주의의 독소는 막아야 한다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의 변화는 그야말로 어려운 과제풀이인 셈이다. ‘현대적 미감’, 이는 오늘날 북한의 변화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어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족제일주의’는 강조된다. 강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앞의 현대적 미감을 담보하는 본 바탕이 된다. 주생활에서 민족건축이 강조되어 초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도 조선식건축을 자랑하고 있다. 민족음식으로 식단을 꾸미는 요리기술이 늘상 소개되며 그릇에서 조차 반상기같은 전통식기를 권장하며 여전히 평양냉면 같은 민족음식을 으뜸으로 친다. 현대감각의 양복을 입으면서도 여전히 조선옷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여자들의 조선옷은 특별옷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널리 입혀지며 전통 옷차림 예절이 높게 평가받는다. 민속명절이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단오, 추석, 설날 등이 모두 공식적 복권을 이루어졌으며, TV에서 민속명절날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전에 없던 풍경을 보여준다. 평양학생축전 때 선보였던 민속놀이장이 대성산에 상설로 개장되어 여러 민속놀이가 공연되며 떡치기 같은 전래풍습도 재현된다. 전래악기를 개량하여 민족악기의 전통을 이어 나간다거나 민요를 중심에 두고 노래를 창작하며 심지어 보천보전자경음악단의 기본 방향도 민요를 중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민족음악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달맞이춤, 칼춤 같은 민속무용이 민족무용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래 그네뛰기·널뛰기 등을 활용하여 민족교예라는 일종의 곡예를 창작하였다. 전국민족경기대회가 매년 열려서 씨름·활쏘기 같은 민속경기가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고구려식 혼례가 재현되어 선보였

으며 웃사람과 아이들을 존중하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관계에서도 민족전래의 미풍양속을 강조하고 있다. 『천리마』 『화보 조선』 『조선여성』 같은 여러 잡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민족음식, 민속무용, 전설, 민요, 조선민속 따위의 시리즈물이 빠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오면 오히려 이전 시기보다 더 강조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물론 이같이 ‘민족’으로 접두사가 붙은 모든 것들도 반드시 ‘현대적 미감’으로 혁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생활양식도 변하기 마련이다’는 구호가 연일 들리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민족제일주의와 현대적 미감의 문제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는 것이다. 세계사적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것과 민족적 특수성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풀어서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오늘의 북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란 바로 민족에 중심을 두고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면서 이를 보다 시대에 맞게, ‘현대적 미감’으로 자기 혁신을 거듭하려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 파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바로 두만강특구를 위시하여 본격적인 개방이란 과제를 눈앞에 두고 북한의 내부준비는 더욱 바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반 백년이 이르는 남북관계의 구도는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2차대전 이후의 냉전구조가 바뀌고 세계 전체가 격동하는 와중에서 한반도만이 “예외없는 법칙 없다”는 식으로 홀로 남을 것인가, 전 세계적 흐름의 일부로 편입

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족생활사란 측면에서는 민족고유의 것에서 가려낸 특수적 가치와 인류보편적 지향을 조화·통일시키려는 슬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처해있는 것이다.

남과 북에서 이루어온 여러 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온전하게 결합될 때 민족적 재부는 엄청난 힘을 얻게될 전망이다. 남과 북이 각기 상이한 체제에서 얻어낸 고귀한 경험과 오류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 변화된 조건조차도 통일된 한 민족의 역사발전에서는 소중하기만한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 통일은 외형적인 체제나 정권의 통합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 곧 사람과 사람, 삶의 통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쪽에서의 의식주 생활, 명절맞이, 놀이를 즐기고, 예술 생활을 향유하기,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고 조상을 모시기, 여가생활 같은 풍습들은 바로 남쪽에서도 이루어지는 풍습들인 바, 훗날 통일국가의 삶 속에서 녹아나는 단일민족생활의 내용물들로, 자랑스런 민족적 재부로 합쳐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생활에서 엿보이는 전통적인 요소들도 훗날 민족적 재부로 온전하게 쓰여질 전망이다.

참 고 문 헌

1. 총 류

『김일성선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_____. 『백과전서』(1-6).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_____.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그 삶의 현주소』. 서울: 박영사, 1986.

내외통신 편. 『북한용어 300선집』. 서울, 1994.

방완주. 『조선개관』. 백과사전출판사, 1988.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1983-1985). 서울: 북한연구소, 1986.

조선노동당 출판사 편.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국토통일원 재발행).

중앙일보사 편. 『북한소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91.

통일원 편. 『남북한문화현황비교』. 서울: 통일원, 1992.

_____. 『북한방문안내』. 서울: 통일원, 1993.

_____.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1-4집). 서울: 통일원,

1988.

2. 단행본

-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강정구·정대화 외. 『북한백문백답』. 서울: 사계절, 1992.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8.
- 공업출판사 편. 『조선건축』. 평양: 공업출판사, 1990.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 강점시기 일제가 감행한 미풍양속말살정책』.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과학원민속학연구실. 『조선의 민속놀이』. 평양: 1964(푸른 숲, 1988, 서울 재간행).
- 김신숙. 「우리나라 협동조합농민들의 가족풍습」. 『북한민속학자료집』.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 김연수. 『들다 손잡지 않은 다른 한손을 내밀어』. 서울: 목문출판사, 1992.
- 김응교 보고. 김진계 구술증언. 『조국: 어느 북조선인민 의수기』(상·하). 서울: 현장문학사, 1990.
-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 김중식. 『생활문화양식(8)』.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0.
-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그 삶의 현주소』. 서울: 박영사, 1986.
- 김호성·김홍규·최정숙. 『우리나라 민속명절』. 평양: 근로단

- 체출판사, 1991.
- 남영일. 『민족음악의 계승발전』. 평양: 문예출판사, 1991.
- 리하림 외. 『해방 후 조선음악』. 평양: 문예출판사, 1979.
- 리화선. 『조선건축사(1)(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 림상중. 『조선문화개관』. 평양: 외국문출판사, 1979.
- 문화보존연구소 편. 『우리나라 역사유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문화성물질문화유적보존사업소. 『우리나라 주요유적』. 평양: 군중문화출판사, 1963.
-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 편. 『조선의 민간오락』. 평양: 조선국립출판사, 1955.
- 사회과학원민속학연구실 편. 『조선민속풍습』.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서동익. 『북에서 사는 모습』. 서울: 북한연구소, 1988.
- 선희창. 『조선의 민속』.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심재호. 『87·88 북한기행 37년 걸린길: 상록수작가 심훈가족 상봉기』. 서울: 죽산, 1988.
- 안동일. 『갈라진 45년 가서 본 반쪽』. 서울: 들베개, 1990.
- 양은식 편. 『분단을 뛰어넘어』. 몬터리: 고려연구소, 1984.
- 유작춘. 『정통과 계승-위대한 인간, 새로운 문명』. 대전: 현대사, 1992.
- 이찬삼. 『평양특파원』. 서울: 중앙일보사, 1990.

- 이채진. 『북한방문기-Journey to North Korea』. 서울: 통일원, 1983.
- 이태영.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1.
- 이태욱. 『북한경제와 주민생활』. 서울: 공보처, 1993.
-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하지요』. 서울: 지리산, 1991.
- 조재길.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 삼민사, 1990.
-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서울: 이론과 실천사, 1991.
- _____.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1994.
- 천석근.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1)조선음식』.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85(『자랑스런 민족음식-북한의 요리』. 서울: 한마당, 1989 재간행).
- 천석근.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2) 옷과 옷차림』.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1.
- 최종고. 『북한법』. 서울: 박영사, 1993.
- 통일원.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 서울: 통일원, 1978.
- _____. 『북한의 생활실태』. 서울: 통일원, 1971.
- _____.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연구』. 서울: 통일원, 1984.
- _____.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통일원, 1986.
- _____. 『북한이질화 실태조사결과의 재분석』. 서울: 통일원, 1980.
- _____. 『북한주민의식구조 변화실태』. 서울: 통일원, 1988.
- _____. 『북한풍습의 변질상과 전망』. 서울: 통일원, 1973.

황석영. 『사람이 살고 있었네』. 서울: 시와사회사, 1993

3. 잡 지

「고고민속」

「근로자」

「등대」

「문화유산」

「조선고고」

「조선여성」

「조선예술」

「천리마」

「조선」 화보 등.

최근 북한 문예정책의 비판적 연구

- 「주체문학론」을 중심으로 -

김재용*

- I. 『주체문학론』의 구성과 특징
- II. 문학유산의 재평가
- III. 창작 방법으로서의 주체사실주의
- IV. 최근 북한문예정책의 문제점

* 연세대 교수

빈 면

I. 『주체문학론』의 구성과 특징

김일성 사후 북한의 문학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남한문학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곧 진행될 것이고 그럴 경우 남북한간의 문학교류도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전 어떤 시기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향후 북한문학의 방향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의 북한문학예술이 갑작스런 변화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1967년 이후 김정일은 문학예술 부문에 대한 전일적인 지도체계를 확보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의 문학예술이 이루어져 왔기에 김일성이 죽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문학예술은 이전의 북한문학의 연장선 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문학의 추이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것은 현존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인 1990년대 북한의 문예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향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주로 1990년대에 이미 나온 문예정책에 기반을 두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990년대에 들어와 김정일이 발표한 여러 가지 문예정책에 관한 담화는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된다. 그 중에서 1992년 7월에 나온 『주체문학론』은 1967년

이후 북한에서 전개된 주체문학론의 대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책이다.

1967년 이후 김정일이 북한의 문학예술을 지도해오면서 여러가지 글을 발표하였지만 문학에 대해 이처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전의 문학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재구성하여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문예정책의 골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전부 7장 32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시대와 문예관’에서는 주체문학이 그 이전의 사회주의 문학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전의 맑스-레닌주의 문학관이 물질중심이었다면 주체문학은 사람중심이라는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주체문학론의 문예관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핵심 내용이다. 제2장 ‘유산과 전통’은 혁명적 문학예술전통도 민족문화유산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유산과 전통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특히 그동안 문학사와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여러 분야를 역사주의적 시각을 살려 새롭게 평가하려고 하는 지향이 이 장에서 중요하게 논의된다. 제3장 ‘세계관과 창작방법’은 주체사실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사이의 차이를 밝히고 특히 우리식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특징을 논하고 있다. 제4장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문학’에서는 주체문학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수령형상창조 문

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5장 ‘생활과 형상’에서는 작품 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종자론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6장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에서는 시·소설을 비롯한 문학의 다양한 종류와 그 각각의 특징을 논하고 있다. 제7장 ‘당의 령도와 문학사업’에서는 당과 문학예술 행정기구 그리고 작가동맹이란 사회단체 사이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이상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은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1967년 이후 부분적으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기에 1990년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근의 새로운 문예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중심의 문예관, 수령형상창조, 종자론, 당의 영도 등은 술하게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내는 방법은 이러한 논의들 중에서 최근에 와서 특히 부각된 사안을 찾아내어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책의 제2장과 3장은 그 원칙의 구태의연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카프와 실학과 문학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2장의 내용과 주체사실주의를 새롭게 내세우는 3장의 내용은 최근에 변하기 시작한 북한 문예정책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물론 2장과 3장처럼 내용 전반이 새로운 것 말고도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뜻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다른 언어로 부연설명해 놓은 것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행간에 아주 새로운 지침이 들어있는 대목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6장인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에서 소설문학을 논하는 다음 부분이 그러하다.

소설문학의 사회적 가치는 인민대중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을 비롯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인민들이 우리 작가가 쓴 소설을 다 즐겨 읽는다고 말할 수 없다. 작가는 자기가 써낸 일부 소설이 어떻게 되어 인민들 속에서 널리 읽히우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부 소설이 인민들 속에서 널리 읽히우지 못하는 것은 작품에 펼쳐진 생활과 현실 생활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작품에 펼쳐진 주인공의 생활에서 무엇인가 생활적인 친근감을 느낄 때 그 세계에 끌려가게 된다. 우리의 일부 소설이 친숙감이 덜하고 사람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인물이 대체로 리상화되어 있는데 있다. 현실의 인간보다 비할 수 없는 높이에 올라있는 인물의 형상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소설은 마땅히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을 초월한 인물을 꾸며내면 인간과 생활을 리상화하는 결과를 빚어낸다.¹⁾

인물의 이상화 경향이 북한소설이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

1) 김정일, 『주체문학론』(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36-237면.

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라는 이상의 지적은 1980년대 이후 북한소설문학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판단이라 생각된다. 이전에도 인물의 도식화에 대한 언급이 자주 있었지만 이상화 경향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이상화 경향에 대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북한문학의 주된 특징인 혁명적 낭만주의의 경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직 이 두 원칙 사이의 대립이 이론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실제 창작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²⁾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향후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예정책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책에서 북한의 문예정책 중 최근에 이르러 변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2장과 3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장들에서 이야기된 새로운 문예정책 중 문학유산에 대한 재평가 부분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조선문학선집』 및 『조선고전문학선집』의 출간 그리고 15권으로 된 『조선문학사』³⁾의 서

2) 논쟁적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 문학창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이 중요한 논거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이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논거로 사용된 경우로 조선문학 1993년 10월에 발표된 장정춘의 「평범한 생활의 본질과 미적탐구」를 들 수 있다.

3) 현재 총 15권 중 4권이 발간되었다.

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북한의 일반 대중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서 드러난 새로운 북한의 문예정책 특히 문학유산론과 창작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의 각 장을 부연설명한 북한 평론가들의 논문도 참고하겠다. 이들 글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라 책에서 막연하게 주장되었던 부분이 예시를 통하여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992년 7월 이 책이 발간된 이후 북한의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문학』은 1년 넘게 이 책의 의미를 설명하는 논설 및 평론을 실고 있다. 참고로 그 목록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 리수립, 「자주시대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조선문학, 1992. 10 불멸의 대저작」
- 좌담회,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고」 조선문학, 1993. 1
- 방연승, 「친애하는 지동자 동지께서 『주체문학론』 조선문학, 1993. 2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에 대하여」
- 신경균, 「유산과 전통에 대한 주체적 이해」 조선문학, 1993. 4
- 장형준,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조선문학, 1993. 5 창작방법, 최고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
- 리봉진, 「당의 위대성 형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조선문학, 1993.

6 형사원천」

리수립, 「수령형상문학을 끊임없는 개화발전으로 조선문학, 1993.

7 이끄는 불멸의 사상리론」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문학, 1993. 9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리론에 대하여」

장정춘, 「평범한 생활의 본질과 미적 탐구」 조선문학, 1993. 10

김용부,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의 조선문학, 1993.

11 생명선이다」

II. 문학유산의 재평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민족문학유산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다. 과거의 문학유산 중에서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것은 아예 제외시켜 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다음의 두가지 기준이 동원되었다.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란 딱지였다. 과거의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을 오히려 높이 평가할 경우 복고주의가 되고, 과거의 것 중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경우에는 민족허무주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함정을 피해 과거의 유산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만큼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을 또한 마련하고 있다. 과거의 것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위에서 올바르게 평가할 때 그것은 역사주의적 입장이 되어 복고주의를 피할 수 있다. 하나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복고주의자로 몰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역사주의적 입장을 잘 견지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허무주의와 현대성의 원칙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과거의 것을 평가하면서 단순히 과거를 복원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 현재의 실천적 문제의식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볼 경우에 그것은 현대성의 원칙을 잘 지킨 경우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판단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현대성의 원칙을 잘 지킨 경우로, 어떤 경우에는 민족허무주의로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주의와 복고주의, 현대성과 민족허무주의의 짝은 항상 한 칼의 양날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물에 대한 같은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다른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 학자들의 그러한 판단은 그 자체로 충분한 토론이 따라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국가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한때는 역사주의적 입장으로 우리 유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인정받던 논자가 어느날 갑자기 별 논거도 없이 복고주의자로 몰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것은 전문적 학자의 논의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산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게 만든다. 판소리가 한때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되다가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버려야 할 유산으로 되어버리고 그것을 옹호했던 사람이 복고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과거 카프문학을 전통으로 중요하게 평가했던 논자들이 1967년 이후 주체문학이 확립되면서 갑자기 복고주의자로 낙인 찍힌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은 실학파문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해방 이후 줄곧 중요한 문학유산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1967년 이후에는 부정적 평가가 강하게 곁들여졌다.

『주체문학론』의 2장에서는 과거 문학유산에 대한 평가를 재검토하면서 그동안 부당하게 소외당했다고 판단되었던 것을 재평가하여 복구하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 특히 카프문학과 실학파문학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새롭게 해결하려고 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 장의 제목이 「유산과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암시받을 수 있듯이 이 대목의 핵심적이고 새로운 문제는 유산과 전통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서로 넘나들면서 쓰고 있는 두 용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우선 이 책에서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자.

민족문화유산에는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과 보존해두기만 할 것이 있으며 없애버려야 할 것도 있다. 여기서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바로 전통을 이룬다.⁴⁾

혁명적 문화유산은 전면적으로 이어받아야 할 전통인 반면, 고전문화유산에는 비판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할 것과 그냥 보존해두어야 할 것과 없애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과는 근본적으로 범주가 다른 것으로 보는 태도와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다른 민족문화유산과 질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대등하게 바라보는 태도 이 양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체문학론』의 2장인 「유산과 전통」에서 힘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은 후자 보다는 전자의 경향이다. 즉 그동안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강조하고 그것을 표나게 내세우기 위하여 혁명적 문학예술전통과 그 바깥의 것 사이에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고 혁명적 문학예술전통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다분히 과소평가하였던 경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책 2장 1절인 ‘유산이 있고 전통이 있다’에서 아주 자세하게 강조되어 있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 속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화유산도 있고 그 이전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도 있다. 고전문화유산만 민족문화유산으로 보고 혁명적 문화유

4) 김정일, 앞의 책, 59면.

산을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혁명적 문화유산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것을 민족문화유산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른 개념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리치에도 맞지 않는다. 선조들이 이룩한 재부이든 혁명가들이 이룩한 재부이든 자기 민족에 의하여 마련되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라면 다 민족문화유산으로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과 계선짓는다고 하면서 유산과 전통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갈라놓고 있다.(중략-인용자) 혁명적 문학예술전통도 민족문화유산 속에서 보아야 한다.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 속에서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옳고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의 지위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합리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그 어떤 다른 민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은 다름아닌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우리의 혁명선렬들은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조선 민족의 우수한 아들 딸이다. 공산주의 리념은 결코 민족적 리념을 배제하지 않으며 민족적 리념을 떠난 공산주의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사람들의 생활은 어디까지나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창조되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만 필요한 재부가 아니다.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은 조선민족 모두에게 필요한 재부이며 전체 조선민족이 대를 이어가며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유산이다.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이 조선 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나 민족공동의 재부이라는 의미에서 보나 그것은 반드시 민족문화유산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⁵⁾

5) 김정일, 앞의 책, 59-60면.

이렇게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굳이 민족문화유산 속에 포함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문학의 유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배제시켜 우리문학의 유산을 왜소화했던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7년 이후 북한의 문학사를 비롯하여 모든 유산에 대한 평가작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실태를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야만 왜 1990년대에 들어와서 과거의 태도를 민족허무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새롭게 유산과 전통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은 카프와 실학과 문학이다. 김정일 스스로 “지난날 문학예술부문의 일부 사람들은 복고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실학과나 카프문학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문학예술전통유산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고전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연구와 출판보급사업까지 가로막으려고 하였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실학과와 카프문학을 표나게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들 문학에 대한 평가 문제가 북한의 문학유산의 계승과 관련하여 얼마나 쟁점이 되었던 문제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967년 주체문학이 확립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실학과문학과 카프문학의 평가를 둘러싸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선 카프문학에 대한 평가의 역사를 알아보자. 특히 1967

년 이후 북한에서 유일한 혁명적 문학전통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항일혁명문학과 비교하여 검토하여 보자. 해방직후부터 1967년까지 북한에서 카프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은 시기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해방직후부터 냉전체제가 시작되는 1948년까지의 시기에는 이른바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이란 개념이 없었다. 당시에는 일제하 프로문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그 주된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프로문학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판이 뒤따랐다.

1948년부터 1958년까지는 프로문학이 혁명적 문학예술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시기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프로문학에 대한 비판적 계승이란 태도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고 이어받아야 할 전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북한 내부에 형성되기 시작한 냉전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식의 냉전 이데올로기란 극좌적 반자본주의의 형태를 띠었다. 근대화의 이중적 측면을 무시하고 부정적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극히 맹목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이 냉전 이데올로기는 프롤레타리아적인 것과 부르조아적인 것을 기계적으로 이분하여 사물의 판단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총체성의 고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판단이 일면적으로 기계적으로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모든 문학도 간단히 프로문학과 부르조아문학으로 이분화시켜버리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과거 프로문학에 대한 비판적 계승 대신에 일방적 옹호

즉 프로문학을 혁명적 문학전통으로 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작가동맹의 규약 중 “조선작가동맹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개화발전한 민족문화유산의 진보적 전통과 카프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대목에서 이 시기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59년 이후 1967년 사이에는 카프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 나란히 혁명적 문학전통으로 평가되었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강조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두개가 혁명적 문학전통으로 동등하게 평가되었다. 1920년대는 카프문학이, 1930년대에는 항일혁명문학이 각각 혁명적 문학전통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대립되었던 이 두개의 문학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1967년 5월에 있었던 제4기 15차 당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인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었다. 이로써 북한문학은 주체문학으로 바뀌게 되었고 혁명적 문학전통으로서 카프문학은 무시되었고 항일혁명문학만 평가되었다. 이 시기 김정일은 이러한 문학적 전통을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반당반혁명분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내세울 대신 일부 불건전한 자들을 내세워 ‘카프의 전통’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잡소리까지 치게 하였으며 민족문화유산 계승에 있어서도 당의 로선과 원칙을 어기고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편향을 나타

냈습니다.⁶⁾

반당반혁명분자들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귀중한 혁명적 재부인 항일혁명투쟁 시기의 문학예술작품들을 발굴하여 재현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카프’의 문학예술과 ‘신경향파’문학예술을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에 끌어넣으려고 하였습니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1967년 제4기 1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 김정일의 주도하에 혁명적 문학전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카프문학은 더이상 혁명적 문학전통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항일혁명문학만이 유일한 혁명적 문학전통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반당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런 참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위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많은 문학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반당분자로 쫓겨나야 했고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했던 사람들은 위의 결정을 아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따라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문예학계는 항일혁명문학 이외의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게 되었고 특히 민감한

6) 김정일,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42면.

7)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위의 책, 277면.

카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카프문학을 강조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항일혁명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암암리에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고 그럴 경우 그것은 반당반혁명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67년 이후에 북한에서는 카프문학에 대한 연구가 없게 되어 민족문학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김정일은 상당한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이것은 곧바로 혁명적 문학예술전통과 민족문학예술유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주체문학론』 2장 3절에서 카프문학에 대해 재평가의 절실한 요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카프문학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문학분야에서는 ‘카프’문학에 대한 평가를 매우 어정쩡하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카프’문학을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계열에도 넣지 않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계열에도 넣지 않고 그저 프롤레타리아문학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카프문학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평가이다. ‘카프’의 작품에는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도 있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도 있다. 특히 ‘카프’가 새로운 강령을 내놓은 이후 시기에 나온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중략) 물론 카프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의령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작가의 세계관적 제한성

으로 하여 창작활동에서 이러저러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카프’문학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발전 과정은 매개 나라의 력사적인 조건과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다. ‘카프’작가들은 비록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를 받지 못하였지만 로동계급적 립장에서 조직의 강령을 내걸고 투쟁하였으며 작품창작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더우기 1930년대 ‘카프’문학은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그에 대한 인민의 뜨거운 공감과 지지성원을 반영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어떤 문학작품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사상에 예술적으로 완벽한가 완벽하지 못한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하나의 창작방법에 기초한 작품 가운데는 사상에 예술적으로 완벽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문제는 그 창작원칙과 사상적 경향이 어떠한가 하는데 있다. 카프 재조직 이후의 문학은 비록 이러저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창작경향이 로동계급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 계열에 속할 수 있다. 카프 작가들과 함께 그 조직 밖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한 개별 작가들 속에서도 강경애의 장편소설 『인간문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이 적지않게 창작되었다.⁸⁾

카프문학을 전통이 아닌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김정일의 위의 문예정책에 의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침과 틀 내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8) 김정일, 『주체 문학론』, 77-79면.

기대된다. 이미 1990년에 나온 프로연극에 대한 연구논문에서 이러한 경향의 단초를 읽을 수 있다.

근대문학유산의 재평가에서는 위에서 다룬 카프문학이 주된 대상이지만 그외에도 과거와는 다른 평가를 엿볼 수 있다. 그 예로 이인직, 이광수, 최남선에 대한 재평가를 들 수 있다. 이 세 작가들은 친일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그들의 행한 문학적 업적마저도 무시되어 왔다. 그런데 김정일은 이 책에서 “작가와 문학작품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작가의 출신성분이나 가정환경, 사회정치 생활경위를 문제시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작가의 출신과 사회생활경위가 복잡하다 하여도 우리나라 문학예술발전과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한 좋은 작품을 썼다면 그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대담하게 내세워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인직, 이광수, 최남선을 문학선집에 넣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이것도 문학유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의 승인하에 있었던 경향으로 이 책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그동안 북한문학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용운, 김억, 김소월, 정지용, 심훈, 이효석, 방정환, 나운규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새로운 경향의 징표이다. 물론 이들 작가들도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평가되기 시작하던 사람들이다.

이 책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것 특히 민족문학유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 중의 하나로 위에서 다룬 카프문학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실학과문학을 들 수 있다. 실학과문학 역시 1967년 이전에는 매우 높이 평가되어 오다가 그 이후 주체문학이 확립되면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이 내려졌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바로 이 책에서 김정일은 직접 실학과문학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실학과문학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간의 북한 문예학계 사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학과문학은 해방 이후 북한에서 별다른 변동없이 줄곧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점은 이 시기에 쓰여진 문학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들 문학이 가진 제한성과 한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긍정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주체문학의 확립과 때를 같이한다. 1967년을 전후하여 발표된 김정일의 글을 살펴보면 카프와 더불어 실학과문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주 나온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에 대한 선전은 하지 않고 부르조아 사상과 수정주의 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이색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들을 많이 류포시켰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것을 살리고 주체를 세운다는 구실 밑에 봉건유교 사상을 설교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난날의 낡고 뒤떨어진 것들을 덮어놓고 되살리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계급성이 없고 정치적으로

로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당 문헌과 혁명전통교양 자료를 많이 출판하여 그것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교양할 대신에 실학자들의 책을 많이 출판하도록 하고 정다산의 『목민심서』를 간부들의 필독문헌으로 지정하여 당 조직들에 내리먹인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⁹⁾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에 편승하여 우리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분자들도 혁명적 원칙을 저버리고 우리 문학예술을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잡탕에 끌어넣으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반당반혁명분자들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음으로 양으로 거부하고 이른바 ‘창작적 개성’을 발양시킨다는 구실 밑에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었으며 실학과문학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봉건유교사상을 류포시키려고 하였습니다.¹⁰⁾

이렇게 실학과문학을 폄하하게 되니까 이 시기에 나온 문학사에서는 실학과문학이 극히 간략하게 다루어지거나 다루어질 경우 그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1977년에 나온 사회과학원에서 쓴 『조선문학사』 중에서 실학과문학에 대해 평가하면서 “실학과문학에서의 현실비판의 기백과 개혁적 지향, 애국적 감정 등은 이 문학사조의 좋은 측면들이나 그것이 곧 봉건통치계급의 계급적 울타리를 넘어

9)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1』, 234-235면.

10) 김정일, 「작가 예술인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당사상사업 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 선집 1』, 276-277면.

서서 근로인민의 근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였거나 봉건제도를 부정하고 봉건제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려는 지향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이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처럼 실학파문학은 그 긍정성 못지않게 부정성도 지적되었는데 후자의 경우에 그 비판이 타당함을 벗어나 있다. 즉 실학파문학의 한계와 제한성에 대한 비판은 당시의 역사발전의 전체적 문맥 위에서 판단되어야 할일이지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역사주의를 벗어나 시대착오적 현재성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현재성은 필요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주의적 틀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의미를 갖게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학파문학에 대한 이 시기 북한문학계의 평가는 역사주의를 떠난 현재성의 노예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학계는 시간히 흐를수록 문제를 느꼈을 것이고 이후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김정일은 실학파문학에 대한 재평가를 『주체문학론』 제2장 3절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실학파문학에 대한 평가와 처리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실학파는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실사구시의 구호 밑에 사회적 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박연암과 정다산의 사회개혁리론과 문학작품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전에 나온 것이지만 당시로서

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며 세상에 자랑할만한 것이다. 물론 실학파는 량반계급출신의 계급적 제한성을 말미암아 주로 부패변질된 개별적인 량반과 악질관료들을 비판하는 데 머물고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개혁사상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실학파문학의 제한성은 보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 평가하고 과장하는 것과 같은 편향이 나타났다. 실학파문학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그의 공적을 응당한 높이에서 평가하려 하지 않은 것은 민족허무주의의 표현이다. 그전에는 실학파작가 탄생 몇몇 기념 연구토론회요 뭐요 하면서 실학파문학을 세계에 자랑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내세우고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실학파의 문학작품을 출판하고 세계에 널리 소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연구모임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다.¹¹⁾

실학파문학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한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의해 앞으로 이루어질 문학사에서는 그전과는 다른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판에 있어서도 실학파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전근대문학유산에 대한 재평가에서 가장 중심된 것이 실학파문학인데 이 외에도 민요, 시조 그리고 궁중예술에 대한 재평가도 들어 있다. 시조에 대하여 김정일은 “우리 문학예술 부문에 뿌려놓은 복고주의자들의 사상여독이 철저히 극복되고 사람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조건에서 문학으로서의 시조형식의 긍정적 면을 깊이 연구하여 시문학

11) 김정일, 『주체문학론』, 85-86면

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참고로 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시조의 형상적 특징을 살린 우리 시대의 새로운 단시와 서정시를 창조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조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시가 형식의 창조를 독려할 정도로 과거 무시되었던 유산에 대한 재평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Ⅲ. 창작방법으로서의 주체사실주의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중에서 최근에 이르러 부각된 것 중의 하나가 창작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이 책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행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과 주체문학의 창작방법 사이의 차이이다. 이 책에서는 주체문학의 창작방법을 우리식 사회주의 사실주의 즉 주체사실주의라고 명명하여 이전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피바다』가 주체사실주의의 창작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이기영의 『고향』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거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구분하면서도 주체사실주의를 우리식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주체사실주의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주체사실주의의 작품으로 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일제하 이른바 항일혁명문학을 비롯하여

해방후 지금까지에 이르는 북한문학 전부가 주체사실주의의 작품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한에서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쓰여진 작품이라고 하면 항일혁명문학과 1967년 이후의 북한문학을 말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식의 창작방법은 처음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주체적 문예사상을 사상미학적 기초로 하여 발생하였지만 해방후 우리 문학예술 전반에서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이 철저히 구현된 것은 아니다. 해방후 우리문학예술 분야에서는 복고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적지 않았으며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경향도 심하였다. 이러한 이색적인 문예조류와 창작경향을 철저히 뿌리빼지 않고서는 주체적인 창작방법을 구현해 나갈 수 없었다. 우리 당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것을 쓸어버리기 위한 문학예술혁명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을 더욱 완성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철저히 계승하고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을 더욱 완성하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이 철저히 구현된 새형의 문학예술로 발전시켰다.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 문학예술은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주체적 문학예술로서의 새로운 성격과 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으며 그 독창성과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하게 되었다.¹²⁾

12) 김정일, 앞의 책, 98-99면.

위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해방이후 1967년까지의 북한문학은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이 아니다. 항일혁명문학과 1967년 이후의 북한의 문학 즉 주체문학만이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인 것이다. 이른바 수령형상창조와 관련된 문학만이 주체사실주의이고 그 이외의 것은 주체사실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주체사실주의는 결국 수령형상창조가 들어있는 개인승배의 문학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학만을 주체사실주의라고 해놓고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차이나는 점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그 둘 사이의 차이는 창작방법 형성의 사회역사적 경위와 철학적 기초이 양 면에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우선 사회역사적 경위에 대한 부분부터 따져본다. 이것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정에 오른 역사적 시기에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인류문예사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제기하였던 역사적 과제는 자본의 철퇴와 제국주의 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는데 복무하는 것이었다. 선행한 사실주의를 비판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나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출현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 인류의 진보적문학예술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주체 사실주의는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새로운 자주시대의 요구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복무하는 것을 역사적 과제로 제기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새로운 문학예술은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였다.¹³⁾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 사이의 차이를 이러한 역사적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적 차이의 불분명함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사용된다. ‘자주시대’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정에 오른 역사적 시기’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 규정도 문제이거니와 그러한 역사적 차이가 다른 창작방법을 낳아야 하는 근거도 없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적 사실주의의 차이를 들면서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철학적 세계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3) 김정일, 앞의 책, 93-94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지만 주체사실주의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힘으로써 사람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밝힌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관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주체사실주의가 세계관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여기에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근본적 특징이 있다.¹⁴⁾

여기서 사람중심의 철학이란 것은 주지주의적 관념론에 가까운 것이다. 현실의 객관적 조건과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무시하고 사람 중심으로 할 경우 그것은 관념론이나 형이상학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두 철학적 입장의 차이로 창작방법을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근거를 내세워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를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이미 주체문학이

14) 김정일, 앞의 책, 95면.

라고 불러왔는데 굳이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을 두면서 굳이 주체사실주의를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체문학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통칭해왔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더욱 더 새로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주체사실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자 하는데에는 다른 맥락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은 혁명전통을 둘러싼 논쟁을 유산과 전통의 관계로 새롭게 정리하면서 그것을 사실주의란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한층 더 뚜렷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애써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구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은 주체 사실주의란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해명하고, 프로문학과 같은 문학유산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차이를 미학적으로 특히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어떤 것으로 설정하고 싶은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항일혁명문학의 전통과 프로문학의 유산 사이에 그동안 경계가 분명치 않았고 이로 인하여 문학사 서술에서 야기되었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카프문학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규정하면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에 대한 해석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이다. 우리나라 혁명적 문학예술의 시원으로 되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으로 발생발전하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이며 그 역사적 뿌리도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마련된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우리나라 혁명적 문학예술의 시원으로 되는 조건에서는 카프문학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경향을 인정한다고 하여 유산과 전통의 계선이 모호해지는 것도 아니며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에 카프문학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카프문학은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거문학유산에 속한다.¹⁵⁾

1967년 이후 북한문학계에서는 카프문학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다.¹⁶⁾ 왜냐하면 항일혁명문학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카프문학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부르게 되면 그 둘 사이의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967년 주체문학이 들어서면서 항일혁명문학이 유일한 혁명적 문예전통으로 평가되기 이전에 많은 문학사자들은 1930년대의 항일혁명문학을 192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

15) 김정일, 앞의 책, 79면.

16) 해방 이후 1967년까지 프로문학을 어떻게 평가하여 왔는가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발전론 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북한의 프로문학 연구 비판」(출저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에 수록)을 참고.

성장한 사회주의 사실주의로서의 프로문학의 연장선 위에서 다루었다. 단지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발전시켰다는 부연만 할 뿐이었지 그것 사이에 결정적 질적 차이를 두지는 않았던 것이다. 당시의 한 글에서 “30년대 이래의 우리나라 프롤레타리아 문학에서 다만 항일혁명문학예술만이 이 모든 제한성을 모르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이 허여하는 모든 사상 예술적 가능성을 자유롭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¹⁷⁾라고 말하는 대목이나,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으로서의 우월성의 높이를 가장 뚜렷하게 표현해주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이 문학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그 창작 자체에까지에 관통된 열렬한 공산주의 당성에 있다”¹⁸⁾라고 하는 대목은 당시의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67년 이후 항일혁명문학만이 유일한 혁명적 문예전통으로 자리잡으면서 그것은 계속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불렀고 카프문학은 그 모호한 위치 때문에 제대로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말은 사용하지 않게 되어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된 문학사 정리가 되지 않고 따라서 카프문학과 같은 문학유산이 부당하게 소외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산과 전통의 개념구분

17) 이선영, 김병민, 김재용(편), 『현대문학자료집 7』 (태학사, 1993), 340면.

18) 위의 책, 340면.

속에서 프로문학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에 발맞추어 이를 한층 더 미학적으로 특히 창작방법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뚜렷하게 말해주는 것을 찾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과거의 프로문학은 ‘선행한 사회주의 사실주의’로 그리고 항일혁명문학은 ‘우리식 사회주의 사실주의’로 분류하고 특히 우리식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주체사실주의라 특별히 명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문학인 『피바다』와 프로문학인 『고향』을 각각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그 차이를 설명한 것은 『주체문학론』 속에서는 없지만 그것을 해설한 논문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와 장편소설 『고향』을 대비하여 보면 사람중심의 문예관(주체 사실주의-인용자)과 물질중심의 문예관(사회주의 사실주의-인용자)의 생활력의 본질적인 차이를 심각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농촌현실을 취급한 두 작품을 보면 전자는 일제에게 빼앗긴 자주성을 찾기 위한 조선 인민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항일무장투쟁으로 펼쳐보이면서 그 속에서 무자각한 농촌녀성이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투사로 성장하는 성격발전을 아주 뜻깊고 진실하게 그려보이였다. 후자는 지식인 선각자의 인도하에 농민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지주의 앞잡이인 악질적인 마름을 반대하는 단합된 경제투쟁을 비교적 진실하게 그려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전자는 조선혁명의 본질과 자

주적인 인간의 성격적 면모의 본질을 현실 그대로의 발전과정에서 폭넓고 깊이 그림으로써 사람들,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주체로 교양하는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교과서로 자기의 커다란 위력을 떨치었을 뿐만 아니라 주체시대에 맞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후자는 혁명 발전의 주도적인 흐름 보다는 뒤진 낮은 단계의 계급투쟁과 빈농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계급적 단합의식을 인간과 혁명의 자주적 성격과 바탕과의 결합 속에서 그리지 못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계급적 성격과 계급투쟁을 극히 일면적으로 그 낮은 단계의 면모로 비껴낸 생활화폭으로밖에 되지 못하였다.¹⁹⁾

『주체문학론』의 3장에서 주체사실주의를 표나게 내세운 것은 이 책의 2장인 유산과 전통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차이는 바로 항일혁명문학의 전통과 카프의 유산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IV. 최근 북한문예정책의 문제점

이상에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중 문학유산론과 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된 북한의 문예

19) 방연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3년 2월호, 27면.

정책의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제 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도록 하겠다.

우선 문학유산론부터 살펴보자.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동안 부당하게 취급되었던 카프문학과 실학과문학을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카프문학에 대한 평가는 향후 남북한이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학유산으로서 남북한 문학교류시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카프문학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카프문학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제한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항일혁명문학이 혁명적 문학전통이고 카프문학은 어디까지나 유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하 우리문학의 유산을 평가할 때 그 틀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형태의 문제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책의 한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 속에 포함시켜 본다고 하여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의 가치와 의의가 왜소화되는 것이 아니다.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그 전통의 역사적 지위와 가치를 전민족사적 견지에서 옳게 평가할 수 있으며 민족문화유산의 격도 높일 수 있다. 사실 우리 민족문화유산 속에 항일혁명문학예술과 같은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것

은 참으로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민족문화유산을 고전문화유산으로만 보아도 안되지만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과 뒤섞어 놓거나 민족문화유산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를 다른 유산과 평균주의적으로 대하여서도 안된다.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은 민족문화 유산의 핵이며 중추이다.²⁰⁾

이상의 인용문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처럼 일제하 우리문학의 유산을 평가할 때 항일혁명문학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삼는 것은 현 북한의 김정일 체제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단지 앞서도 말했다시피 그 틀 내에서 다른 문학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항일혁명문학을 가장 최고의 전통으로 두고 있는 한 북한의 우리 문학유산에 대한 평가는 불구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은 김정일 중심의 현 북한 체제가 고수되는 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일혁명문학이 북한의 역사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의 이러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독단이 개입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북한에서의 항일혁명문학 평가의 역사」라는 글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거듭 설명하지는 않겠다.²¹⁾ 항일혁명문학은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위해 침소봉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하여 일제하 문학유산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날이

20) 김정일, 『주체문학론』, 61면.

21)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문학과 지성사, 1994).

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창작방법론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를 구분하는 근거이다. 필자가 판단할 때 주체적 사실주의는 혁명적 낭만주의와 개인숭배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1945년 이후 북한문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자세하기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혁명적 낭만주의의 형성과정과 개인숭배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문학이 혁명적 낭만주의의 강한 영향권 내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47년부터이다. 이 시기에 당의 공식적인 창작 방법으로 제출된 ‘고상한 리얼리즘’은 북한판 혁명적 낭만주의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긍정적 주인공을 형상화하여 그의 고상한 지향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상한 리얼리즘론의 핵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주의의 본령인 현실의 객관적 발전과정을 보여준다거나 삶의 생동한 연관관계를 형상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이다. 이후 혁명적 낭만주의가 북한의 주도적인 창작방법으로 되면서 북한문학은 사실주의로부터 멀어졌다. 1956년 제2차 작가대회 이후 이것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1967년까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다. 물론 이 시기에도 특정한 시기를 빼고는 거의 혁명적 낭만주의가 압도적이었다. 바로 이러한 흐름에 대해 비

관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혁명적 낭만주의의 경향은 1967년 이후 고스란히 이월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문학, 주체사실주의는 혁명적 낭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 개인숭배의 문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스탈린 비판 이후 그 이전에 약간 싹터오던 개인숭배가 어느정도 수그러들었다가 1967년 이후 개인숭배가 절대화 되었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낭만주의와 개인숭배가 합쳐진 것이 주체문학론이고 주체사실주의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주체사실주의는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실주의이지 못한 것이다.

이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근 북한의 문예정책 중 표나게 바뀐 문학유산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주체사실주의로의 규정은 부분적으로 이전의 잘못을 스스로 자기비판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주체문학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항일혁명문학을 유일한 전통으로 삼는 것이라든가, 혁명적 낭만주의와 개인숭배로 차있는 주체사실주의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 등에서 이러한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김 영 준*

- I. 문제의 제기
- II. 남북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III. 남북문화 교류·협력의 추이와 실태
- IV. 남북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이념적·
체제적인 구속성
- V. 통일문화의 창조와 그 역사성
- VI. 통일문화의 창조과정과 그 방향
- VII. 결 론

* 전 강원대 교수

빈 면

I. 問題의 提起

우리 민족에게 있어 統一이 近代民族國家 건설의 자기완결을 의미하니 만치 그것은 우리의 近代民族史나 유럽 近代史의 主流에서 보아 민족적인 當爲이며 業원이기도 하다. 고로 통일을 위한 접근은 70년대 이래 시도돼 왔으나 기실 따지고 보면 실천적인 의미에선 노력에 비해 이렇다할 可視的인 성과는 산출되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의 핵문제가 비단 남북관계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걸림돌로 제기됨에 따라 남북간에 대화의 통로마저 막혀 버림으로써 그 전망을 가늠하기란 主觀아니면 速斷의 愚를 범하기 쉽기도 하다. 인간의 판단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물론 통일이 늦게 올 수도 있으나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통일이 우리의 예측보다도 앞당겨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잘은 몰라도 아마 동독의 붕괴가 없었더라면 독일이 그렇게도 급작스럽게 統一되리라고 사전에 판단한 독일문제 전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인류역사의 미래발전과정을 도식적으로 미리 단정한 것은 칼 마르크스였으나 그것은 빗나간 독단이었다. 어쨌든 우리의 통일이 독일의 경우와는 달라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만은 배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 급작스런 통일을 이룩한 것은 더 말할

나위없이 민족적으로 다행한 일이었으나 통일 후의 사회문화적인 갈등으로 여러모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적 통일 이후 동·서독주민간의 문화통합을 위해서 말이다.

통일이란 위로 부터의 체제·이념의 제도적 통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해 줄 밑으로 부터의 주민간의 생활양식·행동방식·가치체계의 통합, 다시 말해서 문화통합이 이룩됨으로써 비로소 완결된다.

물론 東·西獨과 南·北韓은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도 있기는 하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값어치 있는 체험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論理的인 맥락에서 本稿는 우리의 統一文化 창조와 실천적인 方向모색을 위한 노력이기는 하나 문제 그 자체가 지니는 방대성에서 보아 小見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2장에서 대내적 및 남북관계의 두 차원에서 문화예술과 종교분야에서의 문화교류를 위한 制度的 장치들 먼저 개관하고 제3장에서 문화교류의 실태와 限界性, 제4장에서 문화교류에 대한 理念·體制的인 拘束性을, 예술단 교환공연, 기본 및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측의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새로 창조할 統一韓國의 文化의 歷史性을 규명하기 위해 文化交流·政治的 統一·文化統合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후에 우리의 近代民族史와 유럽 近代史와의 관계에서 統一文化의 역사적인 性格의 의미부여를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統一文化의 創造過程과 그 方向의 모색을 위해 통일 문화의 개념과 性格을 새삼 정리·규정한 다음 統一을 過程으로 보고 政治的 統一 이전의 文化交流단계와 그 후의 文化統攝의 두단계로 나누어 통일문화 창조의 問題點과 打開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II. 南北文化交流·協力を 위한 制度的 장치

1. 政策的 배경

分斷후 금일에 이르기까지의 南北관계는 여러 단계를 경유해 왔다. 7·4共同聲明이 있기 이전의 60년대까지의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冷戰的인 對決 一邊倒의 적대관계였다.

그러나 7·4共同聲明으로 대변되는 70年代는 냉전적인 대결구조를 선의의 競爭關係로 전환시키기 위해 交流·協力を 타진·모색하는 단계였으나 이 때만 하더라도 남북간의 不信과 對決이 국제적인 냉전구조와 서로 맞물려서 교류·협력이 진전되지 못했다. 그 후 80년대 중반에 한때 人的·物的 교류의 계기를 포착키는 했으나 북한이 政治協商 전술에 집착함으로써 진전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말은 남북관계를 和解·交流·協力の 단계로 진입케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전기로 되었다. 88년 7·7선언

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안으로는 남북간에 交流를 통해 信賴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밖으로는 對決關係를 지양하여 선의의 同伴者關係를 설정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盧대통령의 제43차 유엔연설(88. 10. 18)이 7·7선언의 내용을 재강조하고 東北亞의 평화정착과 민족통합을 위한 제안을 천명한 것이라면 89년 9월 11일 정부에서 천명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7·7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통일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을 전후하여 동구공산제국과의 修交를 바탕으로 한·소수교 및 한·중수교가 이루어져서 점차 北方外交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南北關係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 예비회담이 89년 2월 부터 개최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統一을 위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긍정적인 여건성숙과 더불어 90년 1월 22일 통일원과 문화체육부가 공동으로 「南北文化交流의 5大原則」을 발표했다.

그 內容은 ① 분단 이전의 民族 純音樂의 교류, ② 승부 및 경쟁력 분야의 배제, ③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훼손하는 표현양식의 지양, ④ 쉽고 작은 일에서 부터 시작, ⑤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다.

이 「南北文化交流의 5大原則」의 발표와 더불어 같은 해 7

월 20일에 우리 정부는, 8월 13일 부터 8월 17일 사이의 5 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판문점을 통해 남북의 동포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우리 정부의 民族大交流의 목적은 불문가지의 일이거니와 제한된 기간이나마 남북동포들의 자유왕래를 실현시켜 남북 교류·협력관계를 정립하여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개방을 유도 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상투적인 전제조건을 붙여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91년 7월 12일 에 우리 政府는 “가능한 일부터 추진해 나가자”고 촉구하면서 8월 15일을 기하여 남북의 동포 및 젊은이들이 光復節 경축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과 白頭山에서 한라산까지 統一大行進을 실시하자고 북한당국에 제의했다. 그리고 7월 15일 에는 통일원장관이 대북성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8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남북 각계각층과 해외동포를 망라한 2천명이 참가하는 광복절 경축행사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과 국토종단 대행진의 실시,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통일기원제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우리 정부의 統一大行進 제의는 당장 가능한 일부터 交流·協力を 추진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코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북한은 거부했다.

그러나 인적교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적극적 제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92년 7월 7일 정월식총리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및 왕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과 이를 위해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상투적인 거부반응으로, 북한에는 본의 아니게 북에서 사는 남측 사람이 한명도 없으며 정총리의 제의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적나 나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거부하면서 이인모송환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정착시킨다”는 공약아래 출범한 새 문민정부는 지난 30여년간 군사정권 하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치적 正統性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南北交流·協力を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新經濟 5개년계획」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 부문계획을 수립하여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교류문제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하여 매체개방,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남북공동문화학술사업, 3·1절과 8·15 그리고 추석 기간에 음악회·미술전 공동개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출전 등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코져 하고 있다.

2. 南北文化交流·協力を 위한 國內的인 制度的 장치

그 간 우리 정부는 南北交流·協力の 증진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交流·協力 추진기구의 설치·운영과 더불어 관련 法規를 제정·시행하여 교류·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대내적인 노력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對北관계에 있어 南北交流·協力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적인 틀로서 南北基本合意書를 채택하고 또 그것의 원활한 이행과 준수를 위해 별도로 10여개의 세부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包括的인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國內的인 制度的인 틀과의 관련에서 南北文化交流·協力を 위한 우리정부의 제도화의 노력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南北交流·協力 推進協議會의 창설과 운영

7·7선언을 계기로 南北交流·協力の 증진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우선 南北交流·協力 推進協議會의 창설로 나타났다.

政府는 남북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내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기능을 制度化하기 위해 89년 3월 31일 大統領令의 「南北交流協力 推進協議會」를 발족시키고 90년 8월 1일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法律」을 제정 하였다.

政府는 그래서 89년 부터 남북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그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원 장관을 委員長으로 유관부처 차관급 14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經濟·社會·文化 등 제반분야에 걸쳐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다각적으로 실시하되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협의하기 쉽고 실천이 용이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交流의 分野·內容·規模를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협의 조정
- ③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 ④ 협력 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 ⑤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 ⑥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 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여기에서 남북교류·협력이라 함은 同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文化·體育·學術·經濟 등에 있어서 교류·협력을 가리킨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창설 이후 92년 10월말 현재 까지 총 20회 개최되어 31件的 議案을 처리 하였다. 그중에

서 文化交流와의 관련에서 보면 90년에 남북한 전통음악단의 교환공연에 관한 건등을 처리 하였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과 관련, 사전에 분야별 전문적인 타당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부처로 구성되는 남북경제교류협력 조정위원회와 사회문화부처로 구성되는 남북일반교류협력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나. 南北交流·協力 관계법규의 制定·施行

大統領令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발족(89. 3. 31)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90. 8. 1)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89년 6월 12일 부터 시행했으며 또 같은 해 7월 21일 「남북교류협력 세부 시행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이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90. 8. 1)되기 몇달 전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원과 문화부가 공동으로 「남북문화교류의 5대원칙」을 90년 1월 22일에 발표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지는 다음과 같다.

- 1989. 2. 1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특별법안 國務會議의결
- 1989. 2. 13 제145회 임시국회 제출
- 1989. 5. 15 남북교류촉진법안 발의(평민당)
- 1989. 5.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

회 개최(국회의무통일위원회)

1990. 3.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민자당)

1990. 7.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의무통일위)

1990. 7. 14 국회본회의 통과

1990. 8.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 제4239호)

1990. 8. 9 동 법률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3071호)

1990. 11. 9 동 시행규칙 제정(총리령 제371호)

南北交流協力 관련법규는 위에 언급한 것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포괄한다.

- ① 南北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 ②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③ 남북협력 기금법
- ④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⑥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이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관련법규의 주요내용은 1) 南北韓 住民의 접촉, 2) 남북한 往來, 3) 남북한 交易 그리고 4) 남북한 協力事業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 남북한 協力事業이란, 남북한 住民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文化·藝術·體育·經濟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하며 협력사업은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협력사업자의 능력으로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하게 되어 있다.

이들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규에서 본다면 文化분야는 非政治的 분야에 있어서 학술·체육·교역 및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가리키고 있다.

다. 文化交流·協力を 위한 南北관계의 규범적인 틀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92. 2. 19 발효)의 채택은 평화통일을 위해 南北관계 制度化의 기본적인 規範的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부적인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기 까지 몇개의 단계를 거쳤다. 즉 제1단계가 基本合意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제2단계는 包括的인 基本合意書의 도출단계였고 제3단계는 세부적인 합의서의 도출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제1단계는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90. 9. 4~7, 서울)에서 제3차 南北高位級會談(90. 12. 11~14, 서울)까지의 기간이다. 제2단계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91. 10. 22~25, 평양)에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 2. 18~21, 평양)까지의 기간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92. 5. 5~8, 서울)에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 9. 15~18, 평양)까지의 기간이다.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에 남북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 남북총리가 각각 서명한 후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本文교환과 더불어 발효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그 동안 8회의 예비회담과 6회의 남북고위

급회담 및 13회의 관련 實務代表접촉 등으로 도출해 낸 합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는 南北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적인 規範적인 틀인 바 基本合意書인 그것의 구체적인 이행과 준수를 위해 11개의 세부합의서 또는 부속합의서를 후속조치로서 채택했다. 이들 11개의 세부 합의서 또는 부속합의서는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이행과 준수를 軸으로 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暫定的 特殊관계로 제도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 基本合意書 외에 11개의 세부 또는 부속합의서 중에서 內容上 文化交流와 관련된 것은 ① 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③ 南北高位級會談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이다.

기본합의서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序文과 함께 南北和解(제1장), 南北不可侵(제2장), 南北交流·協力(제3장) 그리고 修正 및 發效(제4장)로 구성돼 있다. 기본합의서가 기본적인 규범적인 틀인 만치 章 설정에 있어 經濟·交流·協力和 文化交流·協力を 각기 독립시키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을 하나의 장으로 묶어 설정하고 있다. 다만 經濟·交流·協力を 규정한 조항과는 별도로 문화교류·협력의 분야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92. 9. 17 발효)는 經濟交流·協力(제1장), 社會文化交流·協力(제2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제3장), 그리고 수정 및 발효(제4장)로 구성되어 있어 經濟交流와 社會文化交流가 각기 독립된 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2장이 사회문화교류·협력(제9조)으로 되어 있어 通念的인 文藝交流보다는 개념적으로 포괄적이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 5. 7 발효)는 기본합의서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즉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와 더불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해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음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 2. 19 발효)에 관한 것이다. 이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는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 및 남북군사분과 위원회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대책문제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에서 협의기로 한 것이다.

위에서 본 바 사회문화교류와 관련,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목적과 그 사업의 大綱을 규정한 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여러분야와 그의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공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南北 고위급회담 分科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설정을 규정한 것이다.

Ⅲ. 南北 文化交流·協力の 推移와 實態

1. 南北 文化交流·協力の 推移

60년대 말에 이르기 까지 南北關係가 국제적인 미소냉정의 구도속에 전개된 대결 일변도의 관계였다면 南北 交流協力の 시도는 국제적인 긴장완화와 더불어 70년대에 진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대 부터 시도된 南北 交流協力の 시도는 금일에 이르기 까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개 段階를 경유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제1단계 : 타진·모색기

70년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南北 文化交流·協力を 타진·모색하는 始動期였다.

70년 朴大統領은 8·15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 무모한 대남적화 폭력노선을 포기하고 「開發과 建設과 創造를 위한 善意의 競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60년대의 經濟的 近代

화작업을 바탕으로 經濟成長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어 71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 최두선總裁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 8월 14일 북한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하여 분단 26년 만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후 72년에 7·4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두개의 채널을 통해 南北對話가 전개 되었다. 즉 人道的 차원에서의 南北赤十字會談과 병행하여 政治的 차원에서의 南北調節委員會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그러나 赤十字會談은 71년 8월 20일 판문점에서 양측 파견원이 처음으로 접촉한 후 77년 12월 9일 제25차 南北赤十字 實務會談을 끝으로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 되었다.

그리고 政治的 차원에서의 南北調節委員會는 自主·平和統一, 民族的 大團結의 3대원칙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으나 75년 3월 14일 副委員長會議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대화중단은 80년대 전반기까지 이어졌다.

나. 제2단계 : 중단 속에서의 여건 조성기

80년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 재개가 시도됐다.

84년 8월 20일 우리 정부에서 南北韓物資交易 및 經濟協力を 제의하면서 북한주민을 위한 生必品の 무상원조를 제의한 바 있었다. 그러자 9월 8日 북한은 이것을 거부하고 역으로 南

韓地域 水災民에 대한 구호물자 제공을 역제의해 왔다. 그래서 우리 大韓赤十字社는 그들의 정치선전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수용하므로써 南北赤十字本會談의 재개를 가능케 했다.

이것을 계기로 중단됐던 南北赤十字本會談(85. 5~)이 재개되었다. 즉 제8차 본회담에서 남한이 8·15를 기해 離散家族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을 교환할 것을 제의한데 반하여 북한이 藝術公演團의 교환을 주장하다가 결국 우리 측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85년 9월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되었다. 이것으로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실현된 것이다.

물론 결국 중단되기는 했으나,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협의하기 위한 제11차 本會談을 86년 2월 26일에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한 것도 이 때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85. 10)에서 었다.

이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경기대회와 86년 아시아 경기대회 및 88년 서울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 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참가하기 위한 제1차 南北體育會談이 84년 4월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또 88 서울올림픽과 관련, 85년 10월 1차로 로잔느 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84년 10월 북한의 수재물자인도를 계기로 우리의 經濟企劃院長官이 경제회담을 제기한데 대해 북한이 수락함으로써 판문점에서 5차에 걸쳐 경제회담이 개최됐다.

85년 4월 9일 북한이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國會會談의 개최를 제의함에 우리 측에서 의제를 「통일헌법 협의기구 구성문제와 평화통일 기반조성문제」로 수정 제의하여 2차에 걸친 접촉이 이뤄졌다.

위에 언급한 바 80년대 중반기에 개최·중단되었던 회담 가운데서 일부는 80년대 말경에 다시 개최되게 되었다. 예컨대 南北國會會談은 우리 측의 제의에 의해 그 준비접촉이 88년 8월에서 90년 1월에 이르기 까지 10차에 걸쳐 이뤄졌다.

그리고 적십자 본회담 재개 및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이 89년 9월 부터 90년 11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8차에 걸쳐 이뤄졌다.

또 89년 2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부에 있어 여러 회담이 남북간에 개최 → 중단 → 개최의 악순환을 반복했으나 文化交流·協力이 주요의제나 내용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화·접촉에 있어서 文化交流가 주요의제나 내용으로 다뤄지게 된 것은 90년대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3단계 : 文化交流의 制度化 시도기

90년대 이전의 남북대화의 시기를 정치적 名分찾기의 임의적인 간헐적 대화와 그 중단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시기라고 한다면 90년대의 진입은 대화의 日常化와 交流增進의 制度化

를 시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와 통일원은 90년 2월 11일 통일민속잔치인 정월 대보름 답교놀이를 개최하여 남북문화교류·협력 5原則을 발표했다. 그 5原則은 ① 분단이전의 우리민속 전통문화의 우선적 교류, ② 승부 및 경쟁적인 분야의 배제, ③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경, 훼손하는 표현방식의 지양, ④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의 시작, ⑤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경주 등이다.

南北文化交流 5원칙은 단속적인 문화교류의 추진을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文化交流의 추진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文化交流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정부는 문화교류 5원칙이 발표되기 이전인 89년 3월 31일 남북교류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부내 협의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5원칙이 발표된 후 남북교류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6개월 만인 90년 8월 1일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부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했다. 또 곧 이어 그것의 관련법규를 제정·시행했다.

이러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적인 制度化 시도와 더불어 南北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적인 틀을 북한과 더

붙어 만들었다. 기본합의서는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91. 12)에서 채택되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92. 2. 19)되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基本合意書의 채택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기대보다는 우선 남북사이에 합의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制度的 장치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92년 2월 19일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됨에 따라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3개의 부속합의서 및 和解共同委 構成·운영 합의서가 채택·발효케 되었다.

文化交流와의 관련에서 본다면 기본합의서의 이행·준수를 위해 구체적 대책의 협의를 위하여 南北高位級會談의 테두리 안에서 南北政治分科委員會·南北軍事分科委員會와 더불어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92년 2월 19일 채택·발효됐다. 남북교류협력 공동분과위원회가 발족케 된 것이다.

92년 5월 7일에 기본합의서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交流·協力을 실행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해 南北交流·協力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됨으로써 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와 더불어 南北社會文化交流·協力 共同委員會의 구성·운영을 위한 南北交流·協力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됐다. 文化交流·協

力을 위해 南北社會文化交流·協力 및 共同委員委員會가 발족케 된 것이다.

이리하여 文化交流·協力の 추진을 위한 남북간의 共同機構로서 南北交流·協力共同委員會와 南北社會文化交流·協力共同委員會가 발족케 됐다.

이들 共同機構의 발족과 더불어 92년 9월 17일에 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케 되었다. 동 부속합의서 제2장에서 社會文化交流·協力の 증진을 위해 그의 각 분야의 사업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文化交流 5原則의 천명과 더불어 남북간에 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토대로 文化交流를 위한 필요한 공동기구의 설치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文藝交流면에서 한 때 활기를 보여 주는듯 하기도 했다.

2. 南北文化交流·協力の 限界性

앞에 그간의 남북문화교류·협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적인 작업으로서 3단계 추이과정을 개관하였다.

이번에는 文化交流의 현황·한계를 검토키 위해 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의 범주를 원용치 않고 편의상 문예와 종교분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가. 남북문화예술교류·협력의 현황

(1) 直接交流·協力

文化交流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한것은 제1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예술공연단 고향방문이었다. 그 간의 합동공연실적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85. 9. 20~23, 평양)

나. 범민족 통일음악회(90. 10. 14~24, 평양)

다. '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90. 12. 8~13, 서울)

이처럼 남북의 전통예술단이 평양과 서울의 교환방문으로 한 때 문화교류의 확대가 예상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전통음악단의 교환방문과 때를 같이 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특별공연도 이뤄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특별공연(90. 9. 5, 서울)

나.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특별공연(90. 12. 11, 서울)

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특별공연(91. 12. 11, 서울)

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특별공연(92. 5. 6, 서울)

(2) 제3국을 통한 간접交流·協力

제3국에서 개최된 남북 문화예술행사는 다음과 같다.

- 가. 제1회 「뉴욕 남북영화제」(90. 10. 10~14)
 - 나. 동경 「한겨레 올림」(91. 3. 31)
 - 다. 일본 「후쿠이 국제예술제」(9. 5. 2~5)
 - 라. 북경 「남북코리아 서화전」(91. 5. 27~29)
 - 마. 사할린 「'91 남북통일 전통무용풍속제」(91. 8. 17~18)
 - 바. 사할린 「'92 통일 예술제」(92. 8. 16)
 - 사.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40주년 경축 기념행사
(92. 8. 23~9. 3)
 - 아. 뉴욕 「한겨레 음악회」(92. 9. 26)
 - 자. 「동북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국제학술회의
(93. 4. 15~17)
 - 차. 동경 「한겨레 음악회」(93. 4. 26)
 - 카. 「고구려 문화」 국제학술회의(93. 8. 11~14, 중국 집안)
 - 타.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세미나(93. 8. 28~3,
중국 북경)
 - 파. 「코리아 통일 미술전」(93. 10. 12~23)
- 위에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남북 직접 및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협력상황을 개관했다. 이것을 다시 분야별 추진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分野別 南北 文化交流 推進現況

(1989. 6. 12~1992. 10. 31)

區 分	音 樂	美 術	文 學	出 版	映 畫	기 타	計
件 數	42	26	13	13	19	20	133
比 率	32%	19%	10%	10%	14%	15%	100%

출처 : 통일원, 「통일백서」(1992), p. 286.

위의 도표에서 보면 문화교류에 있어서 음악과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교류를 다른 분야의 교류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2〉 分野別 北韓住民 接觸申請 現況

(1989. 6. 12~1992. 10. 31)

區 分	이산가족	학 술	문 화	종 교	경 제	언 론	기 타	計
건 수 (명)	577 (678)	245 (1,269)	133 (677)	101 (411)	400 (975)	81 (237)	212 (911)	1,749 (5,158)
비 율	33%	14%	8%	6%	23%	4%	12%	100%

출처 : 통일원, 「통일백서」(1992), p. 277.

위의 도표에서 보면 북한주민 접촉신청은 건수와 비율면에서 이산가족(1위), 경제(2위), 학술(3위), 문화예술(4위)의 순위로 되어 있고 인원수에 있어서는 학술(1위), 경제(2위), 이산가족(3위), 문화(4위)의 순위로 되어 있다.

이것을 年度別 추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表 3〉 文化交流 北韓住民接觸 申請處理 現況

(1989. 6. 12~1993. 11. 30)

區 分	신 청	승 인	성 사	성 사 율
1989~1991	96	67	12	18%
1992	39	39	2	5%
1993(1~11)	18	18	2	11%
계	153	124	16	13%

출처 : 통일원, 「통일백서」(1993), p. 155.

여기에서 말하는 文化의 개념적인 범주는 경제·학술·종교·체육·대학생·관광 교통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이다.

이 도표에서 보면 89년 6월 이후 93년 11월 까지 문화분야의 교류실적은, 신청 153건에 승인이 124건이며 그 중 16건이 성사되었으며 1993년은 그 전년에 비해 신청과 승인에 있어 저조함을 보여 주고 있다.

나. 南北宗教交流·協力の 현황

宗教분야에 있어서의 南北交流·協力は 처음에는 특정한 목사의 북한방문에서 시작하여 점차 제3국을 통한 종교행사에 공동참가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었다.

처음에는 제일교포 이대경 목사가 89년 7월 20일에 방북한 이래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가 조선기독교도연맹 고기준 서기장의 초청으로 방북하였다. 92년 1월에는 KNCC 권호경 총무가 공동사업 실무협의차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91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KNCC 정기총회에 북측 고기준 서기장 일행의 참석계획이 방문직전에 무산되는 등 본격적인 종교인의 교류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국내 보수교단과 평신도단체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교포사회 및 국내의 공동연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간 제3국개최 남북종교인, 공동행사로서는 「남북교회학자 심포지움」(91. 3. 14~19, 로스앤젤레스), 「평화통일 선교기독교자회의」(91. 7. 9~12, 동경),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CRP)(91. 10. 20, 네팔), 「남북한 불교대표자회의」(91. 10. 29~30,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희년 5개년 공동사업 실무회의」(91. 10. 11~12, 토론토) 등이 있다.

종교별 남북교류 추진현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수와 비율에 있어서 기독교(순위 1), 불교(순위 2)의 순위로 되어 있다.

〈表 4〉 종교별 남북교류 추진현황

(1989. 6. 12~1992. 10. 31)

區 分	기독교	불 교	천주교	천도교	대종교	기 타	計
건 수	56	21	7	6	1	11	101
비 율	55%	20%	7%	6%	1%	11%	100%

출처 : 통일원, 「통일백서」(1992), p. 287.

93년에 접어 들어서는 그 이전에 비하여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승인·성사·성사율에 있어 다 같이 저조하다.

〈表 5〉 宗教分野 北韓住民接觸 申請處理 現況

區 分	신 청	승 인	성 사	성 사 율
1989~1991	66	57	15	26%
1992	38	30	7	23%
1993(1~11)	17	16	1	7%
계	121	103	23	22%

출처 : 통일원, 「통일백서」(1993), p. 156.

이러한 교류의 저조한 추세 가운데서도 남북사이에 종교인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93년만 하더라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 양측이 「'93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8·15)을 위한 남북공동 기도·설교문을 상호교환·작성하는 등 남북기독교인 간의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천도교의 「천일기념일」(4. 5) 행사에 북한 천도교

인사의 초청이 북측사정으로 무산되었다. 또 그동안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해 온 「북미주 기독교학자회」(7. 22~24, 버지니아) 등에 북측이 참석치 않아 남북 종교인 간의 접촉이 무산되었다.

위에 문화예술과 종교를 중심으로 남북문화교류의 현황을 검토 했거니와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90. 8. 1)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92. 2. 19)시키고 또 뒤 이어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들 제도적 틀의 마련으로 政府에선 특히 민간차원에서 대북교류 추진은 남북교류의 추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인 입장에서 그 성사를 권장·지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93년 부터는 이산가족 분야를 제외하곤 인적교류는 전반적으로 감소의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문화예술분야는 직접적 교류는 물론 이거니와 제3국을 통한 간접적 교류도 정치적으로는 체제에 줄 충격과 경제적으로는 재정적 곤란 등 북한측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매우 부진하다.

3. 南北文化交流·協力에 대한 評價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 때 활성화의 표피적인 현상을 보였던 남북문화교류는 조만간 중단의 갈등을 극복치 못했다.

남북체육인의 최초의 접촉은 63년 스위스 로잔에서의 회담

이었다. 이 회담은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협의를 위한 체육회담 이었으나 전후 23차례의 회담을 거쳐서도 단일팀 구성에 합의치 못했다.

그러던 중 최초의 남북체육교류는 90년 10월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서울·평양에서 개최되면서 였다. 그 후 91년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6. 14~30, 리스본), 제41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4. 24~5. 6, 지바) 단일팀 파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유도선수 이창수의 남한 귀순을 구실삼아 91년 하반기 이후 이미 합의된 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 무기연기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거의 때를 같이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교류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로 부상케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92년 11월 26일에 개최예정 이었던 제1차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도 무산되어 남북문화교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들 일련의 경직된 남북관계의 상황진전은 그 간 추진되어 온 남북교류에 대한 평가를 부정과 긍정의 양론으로 차별화하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음이 틀림 없다. 그러나 남북교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원천적으로 첫째로 북한체제의 實體에 대한 인식의 시각과 둘째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기대수준의 반사적인 투영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교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事案別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평가보다는 持續性과 變化의 양면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계시키는 평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남북 문화예술교류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범민족통일음악회(90. 10. 14~24, 평양)와 송년통일전통음악회(90. 12. 8~13, 서울)를 든다. 이 남북 문화교류·협력이 분야예술분야에서 최초로 성립된 민간차원의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방북과 평양민족음악단의 방한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성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면서도 교류의 빈도와 形態面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미미한 성과라고 하고 이런 행사에서 유념할 점을 지적한다.

즉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런 입장의 전문가는 남북 문화예술교류가 상호이해의 구축을 위한다기 보다 행사를 위한 행사, 이른바 한견주의로 끝나거나 행사주최측의 공명심 경쟁으로 치닫고 체제중심주의 그리고 외화내빈의 상업주의적 행사로 전락하기 쉽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따라서 남북 문화예술교류가 장기적인 안목의 문화예술교류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경쟁의식의 발로 때문에 교류협력의 성실한 프로그램 작성과 차근한 추진보다는 일단 접촉하고 보자는 자기선전성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남북문화교류·협력이 통일의 전단계인 和解·協力단계에서, 남북간에 그간 진행되어 온 문화적 이질화의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화에 대한 북한의 理念的·體制的인 拘束性과 그 입장을 조명해 보는 것이 문화교류의 방향설정과 통일문화의 성격규명을 위해 불가결한 하나의 작업이다.

IV. 南北文化交流·協力에 대한 理念的·體制的인 拘束性

南北文化交流·協力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정책적 기본입장과 文化交流·協力에 대한 그의 이념적·체제적인 구속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宣言的인 정책내용에 대한 검토보다는 南北高位級會談과 예술단 交換公演 등 접촉·교류과정에서 표출된 북한의 입장을 경험적으로 터득·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訪北公演의 내용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基本合意書와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보여 준 북한의 정책적 입장을 분석코저 한다.

1. 예술단 交換公演의 내용에 대한 북한의 反應

85년 9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때 우리 측의 평양공연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어떠하였던가? 어느 면에서 남북문화교류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기대했던 바 없지 않았던 때 였으나 우리 측의 공연에 대해 북한 측의 관련잡지들은 동년 11월호 부터 입을 모아 일제히 비난했다(박상천,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문화발전연구소, 93, pp. 66~72.)).

즉 그들은 한국무용과 음악에 대해선, 놈들의 무용이 민족

무용이라는 구실 밑에 복고주의를 설교하기 위한 반동적 공연이며 궁중의 봉건통치배 들의 놀이판에서 기생년들이 구역질 나게 몸짓하는 궁중무용이라고 비난했다. 또 놈들이 온갖 모순과 사회불안에 차 있는 남조선사회가 마치 태평하다는 듯이 무용을 통해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굿이나 불교 등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美帝와 그 식민지파썸독재체제에 대한 반항정신을 무마시키려고 한다고 비난 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한국무용과 그 음악을 이미 시대의 오물로 되어 버린 너절한것들 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우리의 현대무용에 대한 그들의 평가절하도 민속무용에 대한 것과 매 한가지였다. 즉 우리의 현대무용에 대해 그들은 미국식 음악에 맞추어 영뎡이를 휘둘러대며 추태를 부리는 퇴폐적인 반동무용이며 미제침략군을 상대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말하자면 남조선이 지난날의 전통문화를 마치도 귀중히 여기는 듯이 보이면서 복고주의로 나가는 한편 온갖 퇴폐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음악들을 끌어들여 민족음악을 양풍화하기에 날뛰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특별공연(90. 9)때 있었던 위커힐에서의 우리측 공연에 대한 북한측의 비난도 위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

즉 서울에 다녀온후 북한은, 쉐라톤호텔에서 본 민족악기들의 연주와 노래는 멀고먼 옛날 조선에는 이런 음악과 악기

들이 있었다 하는 식의 박물관을 연상시켰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슬기를 모독하는 이자들의 배종행위에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워커히호텔의 가야금 식당 공연을 보고 비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비난은,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 교환방문 시(85. 9) 우리측의 관심이 가야금 독주에 사용된 가야금과 무용의 춤사위에 있었거니와 북한에서는 가야금이 18줄로 개량돼 있었고 무용의 경우도 춤사위가 중국·러시아의 무용을 수용하여 전통이 변질돼 있는데 대한 우리측 인사들의 변질지적에 대한 자기방어적인 대응논리였다.

북한측의 남한측에 대한 대응논리적인 비난은 '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서울)에서의 자기측 공연에 대한 자화자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그들은 <로동신문> (90. 12. 11, 13, 14, 22, 24)을 통해 1) 북한이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음악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2) 그들이 개량한 민족악기들이 민족전통을 살린것이며 3) 발성법은 서양이나 이남에서 쓰는 소리가 아니며 4) 북의 예술인이 이남에 온 것은 이남의 전통음악 발전을 위해 대단한 계기로 되었으며 5) 이북에서 민족전통음악을 없애 버렸다는 이남의 선전이 새빨간 거짓말 임이 판명 되었으며 6) 남조선 인사들이 민족음악을 발전시킨 김일성·김정일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처럼 그들은 문예에 있어 민족전통의 계승을 강조하여 민족정통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북한의 우리측에 대한 비난은 설사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과 레파토리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성 보다는 사상성이 앞서는 북한이 우리와는 다른 이질적인 이념·체제를 표방하는 한 비난의 여지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문화예술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와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북한판 變型인 主體思想을 내세워 문예분야에서는 「主體文藝理論」을 토대로 종래의 문예우위성의 논쟁을 제기하는 단계로 부터 민족문화예술에서의 正統性 논쟁을 제기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권영민, 「북한의 문화예술」 통일원, 90, pp. 31~35.). 북한이 예술단 공연문제에 있어서 혁명가곡인 「꽃파는 처녀」의 공연을 끝까지 고집한 것도 이러한 思想性의 맥락에서 였다.

이렇듯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에서 민족문화예술의 정통성 문제가 쟁점으로 더욱 부각된다면, 남북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이란, 결국 진정한 문화예술의 전통성을 확인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문화예술이 黨性·계급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통합이란, 민족통합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종착점이다.

2. 南北 基本合意書의 채택과정에서 본 북한의 입장

남북문화교류·협력에 관한 것은, 기본합의서(박상천, 「위의 책」, pp. 19~22.)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있어 특히 그 제16조, 제21조 그리고 제23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도 시사한 바와 같이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例示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있어 과학·기술은 經濟와 더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훗날 부속합의서 작성시 경제분야로 이관 되었다. 또 제16조에서 宗教가 빠져있는 것은 예시된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여러분야’의 범주 속에 포함된 것으로 양해 되었다는 것이다.

제16조는 국제무대에서의 남북의 협력과 공동진출을 규정한 것이다. 또 제22조는 기본합의서 발효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한 것이다.

이들 규정에 있어 우리의 분석을 위한 기본대상은 제16조의 규정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북한의 정책적인 입장이다. 기본합의서가 채택케 된 것은 제6차 南北高位級會談(92. 2)에서 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우리측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우선시한데 반하여 북한측이 미군철수를 겨냥하여 정치·군사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하는 등 전략적 입장의 차이로 출발에서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북한측은 정치·군사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교류·협력문제도 해결된다는 입장이었다. 제1차회담(90. 9. 4~7, 서울)에서 강영훈총리는 기초연설을 통해 사회문화교류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案)」에서 자유왕래와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사회개방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제의했다.

강총리는 기초연설을 통해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방안」에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민족명절과 기념일 전후 民族大交流 실현과 문화행사 교환개최 및 각 분야별 남북동포간의 교류협력을 제시했다.

강총리는 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에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의 상호개방을 제시했다.

반면에 북한의 연총리는 기초연설을 통해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에서 문화교류를 위해 문학, 예술, 교육, 과학, 기술, 체신, 보건, 보도 등 각 부문에서의 공동연구, 공동출연, 공동창작의 실현, 문화분야에서의 경험과 성과의 교환, 국제무대에서의 공동진출을 제시했다.

그러는가 하면 연총리는 또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치 않고 각 정당·단체 및 각계각층 사람들과의 자유왕래와 접촉 그리고 국제무대에의 공동진

출·협력을 추상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서 보는 바 우리측은 처음 부터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해 신문,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相互開放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반하여 북한측에서는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에서 추상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치고 또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에서 문화교류방안을 구체적으로 例示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결된 후에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음은 그것에 대해 북한측이 아예 거부적인 입장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90. 9. 4~7, 서울)에서는 그 출발에 있어 쌍방간의 본질적인 입장의 차이를 확인 하는데 그쳤을 뿐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본질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90. 10. 16~19, 서울)에서 북한측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교류·협력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하자고 하면서도 협의와 그 실천방법은 一括合意와 同時執行의 원칙에서 이행하자고 주장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을 군사회담화 하고저 하는 의도를 보였다.

제3차회담(90. 12. 11~14, 서울)에서 우리측은 1, 2차회담에서 쌍방의 제안 가운데서 의견이 접근되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합의, 실천해 나가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문화교류를 위해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의 실시를 제의했다.

이 때 북한측에서는 문화교류를 위해 과학·기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와 경험의 교환 및 협력을 제의했다.

그러나 역시 쌍방간의 기본입장의 차이로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큰 성과라면 고위급회담을 지속시켜야 한다는데 대한 인식만은 같이 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제4차회담(91. 10. 12~25, 평양)에서 그 간의 실무대표 접촉 등을 통해 쌍방간의 입장이 상호 조정되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제4차회담에서 우리측은 「화해·불가침과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案)중 ‘기본사항’ 제2조에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의 실시를 제시하고 또 제8조에서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보도, 체육, 보건, 기술, 종교, 환경보전 등 폭넓은 사회문화교류를 경제교류와 더불어 제의했다.

북한측은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초안)중 「3. 남북 협력·교류」의 제15조에서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보도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와 경험의 교환·협력을 제시했다.

이처럼 제4차회담에서, 종전에 비하면 기본합의서의 명칭 및 내용에 있어서 남북이 많이 접근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문제를 기본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제4차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쌍방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

조정과 문안정리를 위해 판문점에서 네차례의 대표접촉을 가졌다. 그 결과 합의서 서문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끝내고 그 밖의 일부조항들에 대해서도 그 분류와 내용조정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들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컨대 북한측은 교류·협력부문에 있어 교류·협력실시를 위한 통행·통신 및 경제교류·협력기구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 합의서 실천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는 가운데 열린 제5차회담(91. 12. 10~13, 서울)은 처음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두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합의서 내용에 대한 쟁점을 타결한데 이어 문안작성을 끝내고 남북 총리 사이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게 되었다. 북한은 예컨대 교류·협력부문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분야의 협력교류」를 명시하는 등 태도변화를 보였다.

제5차회담에서의 남북 쌍방의 문화교류에 대한 제의를 보면 남한은 제18조에 남과 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예술, 종교, 보건·환경, 체육, 과학·기술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또 반면에 북한은 제17조에 북과 남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 두개의 남과 북의 안이 조정되어 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부속합의서 채택 시 과학·기술과 환경문제는 경제부문에 이관 시켰다. 또 종교는 북한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하는 대신 ‘여러분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단 양해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 남한측에서 제1차회담(90. 9. 4~7, 서울)에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90. 12. 24~14, 서울)에 이르기 까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相互開放과 交流의 실시를 강조하고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91. 10. 22~25, 평양) 부터는 그것에 덧붙여서 교통, 체신,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보도, 체육, 보건, 기술, 종교, 환경보전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의 실시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우리 측의 교류·협력방안의 제시에 대해 북한측이 가장 반대한 것은 종교분야와 언론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종교·언론분야에서의 개방·교류가 이뤄질 경우에 폐쇄적인 북한체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 반면에 북한이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전시, 국제무대에서의 공동진출과 협력,

예술단의 교환, 체육분야의 교류협력 등 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호의적인 태도는 그간 제3국에서 개최된 문화예술행사에서의 남북공동참여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그들 나름의 평가를 반영하는 듯하다.

북한측에서는 우리의 예측처럼 처음에 언론매체의 개방과 교류를 반대하고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각 분야에서의 成果와 經驗의 교환·협력을 제시했다. 그 이유인 즉 자본주의 썩은 문화적 오염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했다. 그러다가 마지 못해 남한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언론매체의 교류·협력에만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의 교류와 언론매체의 개방은 끝내 반대의 입장을 북한측은 굽히지 않았다. 북한측은 민족구성원 전체가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면 언론인의 교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언론·출판분야의 상호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 북한측은 언론과 출판이 같은 분야임으로 굳이 언론을 합의서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반대했다.

남북간의 이들 찬반양론으로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 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6조에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3. 부속합의서의 채택과정에서 본 북한의 입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부속합의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따라서 그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5~21조의 구체적인 이행과 준수를 위한 대책에 관한 것이며 그 중에서 특히 제16, 17, 21조가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것이다.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부분에 대해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기본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들어 낸 기본입장의 연장이며 再演 그대로 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채택을 위해선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1차 회의(92. 3. 18, 평화의 집) 때부터 남북은 기본원칙, 합의서 구성체계의 형식 그리고 교류의 대상 등을 둘러싸고 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하였다.

남한측은 교류·협력을 능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4개 原則으로서 1) 호혜적 입장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 2) 통일지향적인 교류·협력의 추진, 3) 制度的 장치 마련한 바탕위에서 교류·협력의 실시, 4) 件別로 합의하여 즉시실천 할 것등을 제시했다.

附屬合意書 구성체계면에서 우리측에서 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社會文化 등 4개 분야를 하나의 합의서로 포괄하지 말고 4개 분야별로 독립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며 共同委員會도 부분별로 이들 4개의 부속합의서에 맞춰 4개로

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의 절박성을 고려, 이산가족 문제의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기 이전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우선적으로 실현하자고 우리측에서 제의했다.

그리고 우리측에서는 기본합의서의 취지에 맞게 교류대상을 구체적으로 부속합의서의 규정에 명시하자고 제의했다.

즉 우리측은 ‘국토순례, 수학여행, 친선방문, 취재활동을 통해 학생, 교직원, 작가, 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전문가 및 종사자 등 사회문화 분야의 관련인원 간 상호 교류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반하여 북한측은 회담에 임하는 자세로서 1) 민족 자주적인 입장, 2) 민족공동체의 이익과 민족의 통일적 발전의 도모, 3) 서로 이해·양보하며 타협하는 정신의 발양을 제시했다.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구성체제에 대해 북한측은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로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을 제시했다. 또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면서 공동위는 經濟부문과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뉘어서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또 특히 사회문화 교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우리측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측은 추상적으로 ‘여러분야의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

면서 우리측의 주장에 반대했다. 교류대상을 자기측이 요구하는 대상에 한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때 우리측이 공동기념 일이나 민족명절에 문화예술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그 교환의 시기 등의 명기를 기피하면서 추상적으로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종교인·언론인의 교류문제에 대해선 기본합의서 채택 과정에서 처럼 북한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렇듯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1차회의 때부터 서로 평행선을 달리던 남북은 그 후 여러차례의 회의·위원접촉 과정에서 각기 수정안을 제시하여 그 접근을 시도하던 중 부속 합의서의 명칭과 전문, 1·2장 제목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에 합의 하는 등 의견접근을 본 것은 제6차회의(92. 7. 28)에서였다.

한편 북한측은 노부모방문단 전제조건으로 이인모송환을 다시 주장한데 대해 우리측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92. 5. 5~8, 서울)에서 합의 때 북한측이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무조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 「합의한條」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실시, 자유로운 왕래·접촉 실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외공동 진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지원보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대책 강구 등 이었다.

그리고 「합의한 項」은 저작권 보호, 사회문화분야 국제협력 등 이었다.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가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명칭과 전문, 4개 장의 제목 그리고 70개 조항에 완전합의, 문안정리 까지 마친것은 제7차회의(92. 9. 3)때였다.

이 때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 「합의한 項」은 사회문화 분야의 자료교환, 기술협력 등 다각적인 협력의 실시, 인적교류, 공동행사의 개최, 인적교류의 교통수단, 왕래인원의 범질서 존중, 증명서 소지, 왕래자에 대한 편의제공, 왕래·접촉의 실무문제 협의, 대외공동진출, 그리고 이산가족 자유왕래와 재결합 등 쌍방 적십자 단체들의 담당에 관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92. 9. 15~18)에서 채택·발효케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제9~14조인 제2장에 사회문화교류·협력을 규정하고 그 중에서 특히 문화교류·협력을 위해 제9, 10, 11조의 규정이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환경문제는 성격상 경제에 관련된 것이므로 경제교류·협력부분에 이관 시켰다.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 보여준 북한의 정책적인 입장은 한마디로 기본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보여준 그들 태도의 再演이었다. 예컨대 북한은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전시에 대해선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였으나 저작권의 보호나 자료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부정에 가까운 소극적인 태도였고 종교인·언론인의 교류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의 견지는 기본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보여준 기본태도에서 한치의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의 공동진출 문제에 대해선 기본합의서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교환방문 예술단의 공연,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과정 그리고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우리측 제의에 대해 보여준 북한측의 부정적인 태도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그것은 근원적으로 상위문화인 理念·體制가 그 하위개념인 문화·예술에 대해 미치는 구속성에 기인한다.

더더욱 당·정부의 통제권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영역이 거이 없으며 따라서 문화예술이란 정치목적에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 이념·체제의 구속성이 남북문화교류에 설정한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성의 극복은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의 진정한 정체성의 확인에서만이 가능하며 그 이전의 文化예술교류는 오히려 政治的인 의미가 앞선다고 할 것이다.

V. 統一文化의 創造와 그 歷史性

1. 南北文化交流·協力과 文化統合

남북문화교류는 단기적으로는 상호이해증진과 남북문화의 북한에의 유입을 자극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토록 유도하며 또 긴장완화를 조성할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이질성을 줄이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중국적으로는 文化共同體를 형성하려는데 그 목표가 두어졌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경험은 북한의 이념 일변도(一邊倒)적인 논리 때문에 문화적 이질화의 심화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극복치 못했다.

80년대 말 이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문화부는 통일원과 함께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90년 2월 11일, 「남북문화교류의 5원칙」을 발표하여 남북문화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코저 시도했다.

남북문화교류 5원칙은 이미 지적한 바 1) 分斷이전의 民族傳統音樂의 교류, 2)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3) 傳統文化의 原型을 변형·훼손하는 표현양식의 지양, 4) 쉽고 작은 일에서 부터 시작, 5)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다.

이 문화교류 5원칙은 문예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교류 원칙

으로서 정부는 이 정책적 기초를 바탕으로 90년대 초에 몇 차례에 걸쳐 예술단 교환공연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측 프로그램이나 레퍼토리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다.

물론 이들 5원칙에 있어서 예컨대 전통음악이나 전통문화의 원형을 분단 이전의 우리 민족에게 동질적인 것으로 공유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예시한 것까지는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그러나 막상 따지고 보면 전통음악이나 전통음악의 원형이 무엇이나에 대해선 입장과 시각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남한에 있어서도 사회문화가 서구화되는 가운데 전통적 예술의 형식이 변형된데 대해 전문가들도 부정적 않는다. 그러나 더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문예이론이 단순히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계급투쟁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70년대 이래 김정일의 주체문예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그들의 이념적 논리에서 본 전통과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전통은 어느 의미에선 북한 체제의 변질 없이는 단순한 이질화가 아니라 영영 그 괴리를 좁힐 수 없는 양극적인 단절일 수도 있다.

설혹 그렇다고 해도 남북간 문화접촉의 하나의 형태로서 문화교류를 위한 시도는 남북간 긴장완화나 통일을 위한 문화통합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화교류가 반드시 문화통합에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교류가 한정적으로나마 동질성 회복이나 남한문화의 북한에의 유입을 위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통합과 연관된다.

문화체육부는 정상회담 이후의 문화교류를 전망하여 문화공동체계획에 따라 3단계 교류추진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94. 7. 1) 즉 제1단계로서 문헌 자료와 작품교류, 제2단계 문화예술인 교류 그리고 제3단계는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1) 남북공동의 기념일과 민속명절에 예술단 상호교류, 2) 문화재 교환전시, 비무장지대 문화재와 생태계 공동조사, 국어학자회의, 영화제등 공동추진, 3)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남북공동 민속잔치 개최와 합동예술단 해외순회공연, 4) 통일국어대사전 공동편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위와 같은 정부차원에서의 사업과 별도로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이 이미 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악계에서 8월 중 중국에서 남북한과 중국의 민속음악인의 전통공연 개최와 11월경 남북한의 모든 곳을 모아 민속음악의 형태로 '통일성취 굿모임'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

문학의 경우엔 민속문학작가회의가 북측에 88년에 제의한 남북작가회담의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술분야에서는 이미 민예총이 서울에서 남북화가 들의

‘코리아통일 미술전’을 10월에 개최기로 북한측과 합의한 바 있으며 관계당국과 협의중 이라고 한다.

출판의 경우에는 저작권 협상과 북한 기행이 관심사로 되어 있다. 또 계절출판사는 ‘임걱정’을 쓴 홍명희의 손자 홍석중을 내년 광복절에 충북 괴산 홍명희의 생가에서 갖는 문학비 건립행사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放送의 경우는 TV프로그램의 공동제작과 현지로케 등에 대한 상호제작지원, 프로그램의 교환 방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KBS는 90년 교류방안으로서 1) 이산가족방송, 2)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답사와 프로제작과 백두산·금강산의 4계절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3) 교향악단 교류 및 판문점 합동공연, 4) 가수의 금강산 합동공연 등을 제안해 놓고 있다.

물론 이들 다양한 문화교류 방안 가운데서 무엇이 성사될 것이냐는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이 불투명한 작금의 상태에선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 어쨌든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 또한 크게 기대할 것 없다 하더라도 문화교류를 위한 시도만은 계속돼야 한다. 그것은 문화교류·협력이 그 성과의 미미성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의 시작일 뿐더러 또한 異質化의 程度를 확인하는것 자체가 이질화극복을 위한 先行作業이니 말이다.

그러나 성과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행사를 위한 행사개최의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문화예술교류·협력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한상우씨의 말을 인용해 둔다.

‘결국 남북한의 음악적 교류는…… 음악 본래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하겠으며 특히 한국에서 예술단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라든지 그들의 혁명가극과 비슷한 무대를 만들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들이 서울공연에서 혁명가극을 공연한다해서 우리도 그와 비슷한 유의 무대를 만드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우리는 북한주민이 이해하든 안하든 우리가 일상해오던 음악의 형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보다 합당하며……’ (통일원, 「북한의 문화예술」, 1990, p. 84.)

2. 문화통합과 정치적 통일

문화통합과 통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선 먼저 문화통합과 통일의 개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통합이란, 개념적으로 다의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통념적으로 본래 하나였던 우리의 문화체계가 분단과 이질화로 두개의 문화체제로 정립됨에 이 남북한의 두 문화체계를 결합해서 다시 하나의 새문화체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란 넓은 의미에서 언어, 전통·관습 및 제도 등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특정한 인간집단의 삶의 방식에 관한 가치성향이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문화에 있어 전통이란 주관적인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統一이라고 하면 거기에 외형적인 制度的인 측면과 내면적인 文化的인 측면의 두 측면을 포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통일이고 할 적에 제도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한에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체제·제도적인 정치적 통일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도를 문화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외면적인 통일인 체제·制度의 통합은 삶의 방식인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간의 괴리·갈등은 제도의 안정을 기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정치생활방식의 외형적인 체제·제도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정치적 통일은 시민사회의 삶의 방식의 내적 통합인 문화적 통합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통일의 단계를 거쳐 문화통합이 이룩 됨으로써 통일은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통독 후의 독일이 안고 있는 기본문제는 기본조약의 체결(72) 후 더욱 동서독 간에 다각적인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돼 왔으나 문화통합에 앞서 정치적 통일이 이뤄진데서 야기되는 갈등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상위 目標文化 이념으로서 제7全大會(45)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제8전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 60년대 이래 마르크스·레닌주의, 그리고 모택동 사후(76) 등소평의 등장과 더불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설정하고 그것에 조응하는 하위 轉移文化로서 모택동사상, 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의 中國式 社會主義노선을 각각 설정한 것은 체제와 문화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체제와 문화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제3, 4차 당대회(56, 61)에서 目標文化와 轉移文化의

이념으로서 다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설정했으나 제5차 당대회(70)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目標文化 그리고 主體思想을 轉移文化의 理念으로 했으나 제8차 당대회(80)에 와서는 主體思想을 목표문화 및 전이문화의 이념으로 일색화 하였다.

문화통합은 정치적 통일이 이룩되어 남북이 체제·제도적으로 하나의 틀속에 편입되었을 경우에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차이에 기인하여 야기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통일의 단계에 앞서 시도되는 남북교류는 동질성 회복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문화통합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교류는 문화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통합이란, 남북의 각기 다른 2개의 이질적인 문화체계를 단순히 묶어서 하나의 문화단위로 만드는 복고적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되는 새 통일한국의 민족문화에 걸맞는 새 문화단위의 형성을 가리키니 말이다.

더더욱 정치적 통일이 성취되기 이전의 단계에 있어서는 문화에 대한 북한이 이념논리의 경직성 만이 아니라 영토분단으로 인한 지리적 격리 등으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의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라 해서

그것이 정치·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증진과는 동떨어져서 별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교류증진과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통합의 문제는 통일과정에 있어 정치적 통일이 성취되어 이질적인 남북의 문화가 서로 접촉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 創造할 統一文化의 歷史性

앞에서 문화통합은 단순히 남북한의 두개의 이질적인 문화체계를 묶어서 하나의 문화단위로 만드는 복고적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 統一韓國에 걸맞는 민족문화의 재창조를 가리킨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새통일한국을 위해 새로 창조할 민족문화의 성격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

역사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문화란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와 특정단계의 역사적인 조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우리의 민족사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민족성원의 총체적인 활동과 민족사회의 총체발전사를 의미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새 統一文化의 당위적인 성격규명을 위해선 일차적으로 우리의 近代民族史의 맥락에서 본 통일의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대민족사의 역사성이 근대세계사의 외적인 충격에 대한 피동적인 반응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울러 근대세계사와의 관련에서 본 우리의 통일의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듯 우리의 近代民族史와 近代世界史를 두 軸으로 하여 설정되는 통일문제의 좌표상의 位相을 바탕으로 새로 창조할 통일문화의 당위적인 개념적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가. 近代民族史에서 본 統一의 意義

고대 부족사회시대로 부터 단일민족으로 성장할 소지를 갖춘 우리 민족은 신라의 三國統一이래 정치적·문화적 통일을 이룩하여 실질적으로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대적인 성격의 주권민족국가의 건설이 민족사의 당면과제로 등장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근대사는 시기구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아무래도 통설상 19세기 후반기의 개화시대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전반기의 일제식민통치시대 그리고 20세기의 후반기의 민족분단시대에 이르는 기간이라 할 것이다.

개화시대에 우리 민족사의 당면과제로서 주권민족국가의 창건이 제기됐으나 개화파의 사상도 왕권의 제한과 한정된 민권의 신장에 그침으로서 역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식민통치시대에 민족사의 당면과제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서 민족독립을 쟁취하는 일 일수 밖에 없었다. 항일독립

운동과 주권민족국가의 건설은 서로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었다. 3·1운동은 항일운동인 동시에 주권민족국가의 창건을 위한 운동이었으나 항일운동에서는 성공치 못 했으나 臨時政府의 수립으로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한 運動으로서는 성공한 것이었다.

3·1운동은 유럽에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새 시대사조가 전파됨에 따라 우리 민족에게 밀려든 충격을 피동적으로 수용하는데서 시작되었으나 근대민족주의 의식에 의해 자각된 민족으로서 쫓겨난 독립운동 이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일제의 탄압으로 억압되었으나 근대민족국가의 건설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근대 세계사의 주류와 부합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3·1운동은 일제강점 하에서 大韓帝國의 복권을 위한 단순한 항일운동이 아니었다. 3·1운동에 동참한 민중은 지향성에 있어서 의병운동에서의 尊王的인 백성이 아니라 근대민족주의 의식으로 각성된 민족주의적인 항일저항으로서 王朝史의 종말을 의미했다.

3·1운동은 민족적 정체성이 중심이 되고 충성의 대상이 된 것은 군주도 대한제국도 아니고 오직 새로 창조할 ‘대한’이었다. 즉 그것은 국민주권의 새나라로 민주공화국의 ‘대한’을 제시한 것이다.

3·1운동을 단순히 우발적인 事件이 아니라 運動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 우리 민족주의운동의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운동은 19세기 말 이래 자유

민권을 표방한 獨立協會運動을 비롯하여 乙巳義兵運動, 1905년 이래의 興學會運動과 민간사학에 의한 民族教育, 1907년의 新民會運動 등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해 누진적으로 일어난 여러 抵抗的 민족주의운동의 총집결이었으니 말이다.

때문에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는, 항일에 의한 근대민족 국가를 건설하겠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근대국가의 운동법칙이자 이념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처음 확인하면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大韓’의 창조를 표방하여 민족의 생존·발전을 위한 자기논리의 관철을 추구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의의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창조할 새 統一韓國의 문화도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3·1운동의 의의를 역사의식을 갖고 조명하므로써 그 성격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3·1운동에서 잉태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大韓’을 창건할 처음의 기회는 일제가 패망한 1945년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단독으로 수립될 수 밖에 없었던 1948년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戰後에 전개된 미·소냉전의 격화는 남북간에 구조적인 대립을 심화시켜 두개의 이질적인 체제의 정립을 가져 왔다.

3·1운동에서 집약, 표출되고, 근대민족주의의 목표인 자유민권의 근대민족국가의 창건을 위한 민족적 열망은 실현되지 않은 채 3·1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헌법속에 구현되는데 그

쳤다.

정통성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은 점차 정치적 영역에서 부터 역사·문화적인 영역으로 이행,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해 檀君陵을 발굴한데 이어 최근에는 단군릉을 재건하여 平壤이 고조선의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기 까지 그 수도이며 고대문화의 중심지 였다고 강조하여 그 전통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근대민족주의의 최대과제이자 3·1운동의 목표였던 근대민족국가의 건설이 8·15후 주어진 기회에서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사의 맥락에서 계속 추구돼야 한다. 이런 우리 근대민족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 통일이란, 결국 분단을 극복하여 3·1운동에서 미완성으로 그친 통일·통합된 자유민권의 근대민족국가의 건설을 완결하는 일이다.

생각컨대 근대민족주의란, 어떤 민족의 統一·獨立·發展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이자 運動이다. 여기에 있어 통일이 민족통합을 의미한다면 독립은 主權獨立 그리고 발전은 민족의 자기생존능력의 擴大·再生産을 가리킨다. 그런데 유럽 선진국에서의 근대민족주의의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대내적인 측면인 통합(통일)의 과업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민족주의는 植民地 民族主義로서 일본의 식민지통치권력에 대한 抵抗的 民族主義의 성격에서 대외적인 主權·獨立이 제일차적인 과업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민족주의에 있어서 일본으로 부터의 주권·독립이 결코 목표의 전부일 수는 없었다. 우리의 근대사가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으로서 한민족이 근대주권독립국가를 수립하여 근대국제사회의 능동적인 구성단위로서 참여코저 하는 민족적 의지를 표출 하였으니 말이다.

나. 近代世界史의 주류에서 본 統一의 의미

근대국가는 중세 봉건국가와 구별되는 주권·통일·민족국가로서 주권사상, 민족사상, 영토사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근대후기에 있어 국내정치를 지탱하는 이념이 민주주의 였다고 한다면 국제정치를 지탱하는 사상은 민족주의였다.

여기에 있어 주권사상은 統治體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영토사상은 자기민족의 생활공간을 단일 통치권 밑에 통합, 관할하기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 근대국가란, 통일·독립된 민족국가일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유럽 근대사에서 본다면 민족이란 근대유럽의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단위인 근대민족국가의 정치적 명분으로 생성된 근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근대민족국가의 이념이나 운동법칙이 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였다.

민족을 정치적 명분으로 하여 이룩된 근대국가는 밖으로 자유와 독립이라는 외향성과 안으로는 성원 개개인의 균등한 권리라는 내향성이 각기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기반으로 되어 서로 융합하였다.

유럽에서 먼저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영국과 프랑스가 근대유럽의 역사에서 먼저 선진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근대유럽의 역사의 주류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민족국가의 건설로 파악되는 바 근대민족국가의 건설이 민주화·근대화의 관건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세계사의 조류에서 앞선 국가가 선진국이요, 뒤졌거나 낙오된 민족이 후진국이 아니면 식민지로 전락했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럽사의 교훈이다. 이러한 유럽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의 3·1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억압되었으나 근대유럽사의 주류와 부합되는 민족적인 노력이었다.

우리의 통일이 근대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언급한 근대국가의 일반사상에서 보더라도 주권사상, 민족사상, 영토사상을 토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이란, 단순히 민족분열이나 영토분단을 해소하고 주권을 하나로 묶는 것만을 의미치 않는다.

물론 인간은 땅위에서 살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토란 단순히 한 곳에 모여서 경제·사회·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지리적 공간의 뜻만을 지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영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되어 역사의 주체가 둘로 상극하는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영토란, 민족의 생활공간이라는 극히 소박한 의미만이 아니라 自己充足的인 民族發展을 시도하며 세계사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능동적인 단위로서

참여하는, 이를테면 정치적 단위로서의 생활터전 이라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민족이나 영토의 통합성과 그 규모의 크기가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 다하는 역할은 지대하다. 고래로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분단되고도 제대로 민족국가로서 발전한 유례가 없을 뿐더러 영토나 인구면에서 적은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민족치고 강대국의 서열로 낀 예는 없다.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적인 물량발전이 필요조건은 되지만 그것이 곧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경제발전에 못지 않게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민족이나 영토의 통합성과 그 규모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인 물량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이나 부존자원이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치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조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늘 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서열에 낀 국가 중에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국가는 있어도 영토나 인구면에서 적은 규모의 나라는 없다. 예컨대 제2차대전 후에 대영제국의 몰락은 경제력에 있어서 미국이나 소련에 비길 바 아니라는 데도 그 이유는 있겠으나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식민지체제의 와해에 따라 그 통치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규모가, 영토나 인구의 격감이라는 정치적 입지의 변화로 한계상황에 부딪혔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식민지체제의 붕괴에 따른 통치권의 영향력의 한계상황이 거꾸

로 물량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조건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역 작용 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여 특히 중국이 대만으로 부터 중국의 대표권을 승계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격상하게 된 것은 결코 자원이나 경제력면에서의 경제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결국 10억이라는 방대한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거느리고 있어 어차피 중국인을 대표할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과학기술, 부존자원 그리고 경제력과 같은 여러 요인을 국가발전을 위한 經濟的 資源이라고 한다면 영토와 인구의 통합성이나 규모는 국가발전을 위한 政治的 資源이라고 할 수 있다. Ray S. Cline 같은 전문학자가 국력의 분석평가에서 다른 요소에 비해 領土·人口가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물량이라 하여 加重值를 주어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좀 자료가 낡았으나 참고삼아 R. S. Cline의 분석에 의하면 1980년 현재 인구서열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21위, 북한이 35위로 되어 있고 영토와 인구를 합치면 한국이 제25위, 북한이 제35위로 되어 있고 남북한의 인구를 합치면 제15위인 프랑스 다음에 위치하게 된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 통일이란, 근대 유럽사와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 주류에 부합하게 뒤 늦게나마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여 국제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인 政治的 單位로서 행동

반경의 극대화를 위한 민족적인 노력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이란,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그 主流다룬 능동적인 정치적 行動單位로서 民族의 生存·發展能力的 擴大·再生産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近代民族史 및 유럽 近代史와의 맥락에서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미부여를 시도한 것은, 우리의 통일이 내포하는 歷史性을 기반으로 새로 창조할 統一韓國의 文化概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우리의 近代民族史와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적 當爲性을 지니며 따라서 새로 창건할 통일한국의 문화는 그 가치성향에 있어 마땅히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또 유럽근대사와의 맥락에서 본다면 통일한국을 위한 문화는 그 가치성향에 있어 民族國家 發展能力的 擴大·再生産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統一과 民族發展은 서로 별개적인 당위개념이 아님은 통일에 의한 민족발전 그리고 민족발전을 위한 통일이라는 상관관계에서 보더라도 자명하다. 이를테면 우리의 통일 문화의 지향성은 우리의 民族史와 유럽 近代史의 辨證法的 統合속에서 그 역사성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VI. 統一文化의 創造過程과 그 方向

1. 統一文化의 개념과 性格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統一文化는 우리의 근대민족사 및 유럽근대사와의 맥락에서 당위적인 개념이다.

우리의 통일문화는 이미 형성돼 있는 문화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 창조할 文化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위론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이상에만 사로잡혀 실천성이 없는 공리공론이어서는 아니 된다.

80년대 중반기 이래 통일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이 전개되면서 논자에 따라서 통일을 염원하는 문화, 통일촉진에 기여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문화 또는 통일을 위한 문화 등 그 표현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統一指向的인 價値定向, 다시 말해서 통일지향적인 가치관, 의식 및 태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통일원, 「통일문화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86. 10, p. 21.) 정치·경제 등 사회의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협의의 고유의 문화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 ‘統一’이 구체적으로 어떤 形態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통일을 하나의 過程이라고 한다면 제도적 통일인 정치적 통일의 단계를 거쳐 남북 주민이 하나의 문화권에서 더불어 사는 문화통합의 단계에

와서 민족통일이 완결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정치적 통일의 단계와 본격적인 문화통합의 단계에 있어서 통일문화의 지향성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를 것이다.

또 통일문화는 분단현실의 극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단순논리에서 본다면 통일과 분단이 대칭개념으로서 分斷文化의 극복이 곧 統一文化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분단문화의 극복 그 자체만으로 통일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정통적 계승과 새 창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문화의 '미래지향성'은 분단문화의 극복이라는 限時性의 개념이 아니라 극복과 더불어 발전적인 민족문화의 재 창조를 반복하는 역사적 순환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통일이란, 민족사의 당위적 과업을 이룩하며 아울러 민족발전역량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하니 말이다. 이런 까닭에 통일한국의 새 민족문화는 정치적 통일이전에는 통일지향적이며 정치적 통일 후 문화통합의 단계 부터는 민족역량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발전지향적 文化이어야 한다.

통일지향적이며 미래 발전지향적인 우리의 통일문화는 첫째로 우리 民族史의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일관하여 흘러내리는 당위성과 세계사의 주류에서 본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아울러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새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당위적인 통일문화가 지녀야 할 이들 내향적 및 외향적인 성격에서 보아 그것은 단순히 이질화된 남북한

의 두 문화를 결합해서 하나의 문화단위로 만드는 것을 의미치 않는다.

즉 그것은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 확인을 토대로 그것을 여과시켜 민족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발전과 더불어 통일 지향적이며 미래발전 지향적인 보다 높은 차원의 새 민족문화로 통합·창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더더욱 통일문화가 기성문화의 단순한 보완·통합이 아닌 非定形(amorphous)의 문화라는 점에서 그 창조를 위한 시도는 만사지탄이 있으나 통일 후의 독일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직시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을 위한 당면과제임을 제언을 요치않는 자명한 일이다.

2. 統一文化의 創造過程과 問題點

앞에서 분석한 바 통일문화의 지향성을 政治的 통일과정에서 統一지향성과 政治적 통일이 이룩된후 文化統合 과정에서의 未來發展지향성 이라는 논리에서 본다면 통일문화의 창조 과정은 통일 과정과 밀착돼 있다.

따라서 다소 단순화의 폐단이 없지 않으나 분석의 복잡성을 지양하기 위해 통일문화의 창조과정을 政治的 統一의 이전단계와 그 후의 文化統合의 두 단계로 대별하여 검토코저 한다.

가. 政治的 統一 지향적인 통일문화의 창조와 문제점

통일의 形態 및 남북간 이질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정치적 통일 및 그후에 전개되는 통일의 완결상태라고 할 수 있는 문화통합에 대해 獨立變數로서 작용한다.

그러면 먼저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보통 통일논의에 있어서 접근방식의 차이에서 통일형태에 대해 논자들은 입장을 달리하는 바 크게는 독일식 흡수통일론을 비롯하여 예멘식 合意統一論 그리고 收斂통일론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吸收통일은 현실적으로 동독의 급작스런 와해로 인하여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을 그 전형으로 한다. 원래 동·서독은 기본조약체결(72) 이전부터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론의 근거는 게임원칙에서의 完勝完敗(제로섬 게임)의 원칙, 막대한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 후의 극심한 갈등 등을 문제시 하는데서 출발한다. 收斂통일은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반면에 단점을 극소화한다는 점에 그 설득력을 찾고 있다. 또 合意통일은 강제아닌 양자의 계약적인 선택이라는데 그 명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合意통일의 예멘이 겪는 무력대결의 현실을 직시하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收斂통일이 남한(0.5)과 북한(0.5)이 합쳐서

남도 북도 아닌 제3의 統一國家(1)로 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사변으로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존재한 그런 형태의 통일국가의 실례가 없을 뿐더러 앞으로 실현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형태의 선택 모델은 交流·協力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던 급작스런 북한체제의 와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통독방식이 아닐 수 없으며 다만 우리가 통일 후 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비용이나 사회문화적 갈등 그리고 실업문제 등에 미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기본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흡수통일이라 해서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요소까지 흡수하는 반면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장점까지 배제해서는 아니된다. 요컨대 세계에서 가장 낙후적인 북한의 경직된 이념·체제에서 북한주민을 해방시켜 남북한의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라 하더라도 민족통일의 궁극적인 형태인 문화통합은 정치적 통일로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통합은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주민의 접촉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통독의 갈등은 이들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통일이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통독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정치적 통일에 앞서서 문화교류의 단계서부터 거시적인 시각

에서 문화통합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통일정책속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통합의 과정이 정치적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문화통합에 대한 문화교류의 기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다. 그러나 설혹 문화교류의 목적이 문화통합에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능은 문화통합에 대해 긍정적이 아닐 수 없다. 더더욱 우리는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화를 확인하는 한편 동질성의 회복을 시도하면서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니 말이다.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화의 본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차이·차별·괴리·단절 등 보는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화를 문화적 斷絶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우리의 전문화사와의 맥락에서 분단시대라는 한 시대에 존재하는 分斷文化로 보아야 한다.(권영민, 「통일논의」, 민주평통, 92, pp. 336~349.)

설혹 남북이 각기 다른 문화모델에 의해 전통문화의 원형이 변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변형되기 이전의 문화의 뿌리인 전통문화는 하나였고 이 민족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서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민족문화 유산의 기반을 확인하는 작업은 남북의 민족성원에게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내면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과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에서 민족은 근대국가를 창건하

기 위해 독특한 정치형태의 명분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개념상 민족이 먼저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 단일 주권 밑에 통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민족은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개념 이전에 사실상 자연적 實體로서 존재한 自然的 民族으로서 스스로 단일하며 단일민족 이어야 한다는 동질적인 정감이나 전통을 지녀 왔다.

따라서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재확인 은 근대국가의 정치명분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럽의 정치민족과는 판이하게 우리 민족은 근원적으로 實體로서 오랜세월 동안 존재해 온 自然民族이었다는 역사성을 統一지향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민족사에 대한 역사의식에서 본다면, 그간 예술단 교환공연에서 북한의 이념·체제적인 경직성과 구속성이 설정한 문화교류·협력의 한계성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설혹 교류가 통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류를 통한 민족문화의 이질화에 대한 확인은 그것의 극복을 전제로 하는 통일에의 접근을 위해 불가결하다. 문화교류에 대한 이념·체제적인 구속성은 政治的 統一이 이룩됨으로써 制度面에서 비로서 제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일지향적인 새 문화의 창조를 위해 민족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발전이 당면된 당위라고 할 적에, 이미 남북에서 민족적 전통문화가 변형된 이 시점에서 전통문화의

원형이 과연 무엇이냐의 근본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 점에 있어 민족사의 점검을 통해 무엇이 민족적이며 전통적인 것이냐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다. 예술단 교환공연을 통해 익히 경험한 바 있지만 그들은 우리와는 판이하게 민족을 역사적 실체로 생각하지 않고 형식은 민족이로되 그 내용으로서 사회주의적, 계급투쟁을 담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족’을 전제로 한다. 또 고래로 우리 민족이 계승한 전통적인 것을 보수적인 복고주의라고 비난한다.

남북간의 이질화는 단적으로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계급적)인 것을 살려야하며 따라서 민족문화란 사회주의사회에 와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그들의 주장에서 보더라도 미의식이나 미적감정의 변화를 가져왔음은 불문가지이다.(임채욱, 「북한문화연구」(문화발전연구소, 93, pp. 47~96.)

예술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미의식의 변화는 鬭爭이 美를 창조하며 미를 발현하는 最高形態라 하여 가치기준을 계급투쟁과 연결시키는 그들 論理의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미의 범주로서 아름다운것, 숭고한것, 영웅적인것, 비극적인것 등을 다른 나라에서 처럼 포괄하고 있으나 그러한 미의 창조를 계급투쟁과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판이하다. 이처럼 북한의 主體文藝理論이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조하며 따라서 문예가 정치목적에 위한 선전·선

동의 尖兵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한계극복은 정치적 통일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전통문화의 변형이나 미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식주생활에 있어서와 같이 문화적 동질성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 이전의 단계에 있어 새 통일지향적인 민족문화의 창조를 위해 일차적으로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論理의 정립과 더불어 통일문화의 대내적 부분으로서 국민의 통일지향적인 사고방식·행동양식의 가치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나. 未來發展 지향적인 통일문화의 창조와 문제점

정치적 통일 후에 전개될 문화통합은 민족통일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것은 21세기를 겨냥하여 민족역량의 확대·재생산을 통하여 未來發展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통일로서 남북간에 제도적 장벽이 제거되고 남북주민간에 상호접촉이 촉진됨으로써 통일 후의 독일이 겪고있는 것과 같은 예기치 않는 각종의 갈등이 남북주민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문화통합은 남북주민 간의 갈등을 조명·해소하여 민족역량의 손실을 방지하여 미래발전 지향적인 민족역량의 확대·재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이란, 하나의 사회, 하나의 문화단위를 바탕으로 하나

의 체제로서 하나의 民族國家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체제가 이룩 되었다 하더라도 두개의 사회·문화가 공존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통일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

정치적 통일로 남북간에 정치적 장벽이 제거되어 남북주민 간 문화접촉이 본격화되면 문화통합이 어떻게 이뤄질 것이냐는 문제 그 자체가 지니는 복잡성에서 보더라도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 인류학의 개념모델을 적용한 분석(차재호, 「북한문화연구」, 문화발전연구소, 93, pp. 78~100.)이 시사하는 바 크다.

두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방식으로서는 1) 規範化(normalization), 2) 同調(conformity), 그리고 3) 革新(innovation)이 있다.

規範化는 갈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타협점을 모색하여 합의점에 도달하여 갈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두 당사자가 대등할 경우에 흔히 채택된다.

同調는 소수파(약자)가 다수파의 의견을 수용하므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며 통독 후 문화통합과정에서 서독에 대한 동독의 동조가 그 실례이다. 즉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것이다.

革新은 소수파가 일부러 자기의견을 고집하여 갈등을 조성할 경우에 생기는 방식이다. 즉 소수파가 자기입장만 고집하여 긴장을 장기화시킬 경우에 다수파가 갈등의 종식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파가 거꾸로 소수파에 동

조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일 후 본격적인 문화통합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세가지의 갈등대응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언어나 예술분야에서는 규범화가 일어나고, 경제면에서는 북한의 동조 그리고 북한의 장점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수용하므로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더더욱 경제력·인구·기술수준 등 국력의 우위성이 모를지 기 북한문화의 남한문화에의 동조에 의한 문화동화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일 후 취업을 위한 북한인들의 남한으로의 대규모 이동과 친인척과 고향을 찾기 위해서나 기업활동을 위해 남한으로 부터 북한으로의 이동 등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 남한문화의 북한인에의 전파·확산의 전망이 그러한 논리에 가세한다.

물론 우리와는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통독 후의 독일이 겪는 문화적 갈등의 심각성은 통합을 위해 1) 舊西獨의 확대안을 비롯하여 2) 동·서독의 상대적 분리, 3) 동독의 재분리 독립, 4) 동·서독의 동시개혁 등(전우성, 「통일문제연구」, 제5권 4호, 통일원, 93. 겨울, pp. 63~92) 비관적·낙관적 모델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의 문화가 과연 무엇이냐를 한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북한문화의 본질에 대한 전문적인 연

구분식이 필요하지만 다만 여기에서는 사고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틀로서 북한문화의 구성요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북한에는 당의 일원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市民社會나 市民文化란 개념적으로나 실제에 있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다만 북한에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그 변형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면 관념적으로나마 그것을 市民文化 아닌 住民生活文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문화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住民生活文化를 상정할 경우에 이것과 대칭관계에 있는 또 하나의 문화구성요소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官製的 統治文化일 것이다.

북한문화의 구성요소를 이처럼 官製的 統治文化와 住民生活文化의 두개 요소를 설정할 경우에 전자는 후자를 규제하는 상위문화이다. 주민생활문화가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삶의 방식이라 할진대 상위문화인 官製的 統治文化가 규제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능할 수 밖에 없다.

官製的 統治文化는 국민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支配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엘리트文化이자 支配文化이며 體制유지를 위해선 체제문화이며 공동체유지를 위해선 共同體文化이며 또 정치적 통합을 위해선 統合的 文化이다.

정치적 통일로 制度·체제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官製的 統治文化는 ‘制度的’으로 제거된다. 뿐만 아니라 官製的 統治文化가 공산국가에서 대중매체, 교육기관 그리고 기타의 사회

화기관에 의해 촉진되지만 관제적인 가치·지향성·인지가 실질적으로 지배엘리트의 뜻대로 대중을 지배하여 그 목표인 統畝을 제대로 실현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일반론에서 보면 정치적 統일이 관제적 統치문화를 제도면에서 제거하리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50년간 북한에서 官製的 統治文化를 바탕으로 하는 臣民(從屬)的 정치형태 문제는 일단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그 하위 문화체계인 住民生活文化에 미친 가치·지향성·인지성의 영향은 결코 정치적 統일에 의한 관제적 정치문화의 제도적 제거와 더불어 쉽사리 불식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住民生活文化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를 남한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관제적 정치문화적인 잔재와 남한에서 새로 유입·확산되는 자본주의적 문화간의 갈등으로 더욱 내면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동·서독은 급작스런 흡수통일 이전에 각종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동독은 외부에도 어느 정도 열린 상태에서 서구문화와의 접촉이 이뤄져 왔다. 그 반면에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이 앞으로는 몰라도 지난 50년간 부진할 뿐 더러 외부세계에서 완전히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통일이 이룩될 경우에 겪을 문화적 갈등은 불문가지이다. 통독 후 동독지방에 있는 직장에 가는 서독인들이 ‘식민지 간다’고 우쭐 대는가 하면 동독군민들은 자신들을 ‘二等國民’이라고 自己卑下하거나 서독상관에 대해선 ‘식

민지 관리 나으리'라고 불평했다는 것은 민족내적 그리고 문화적인 이질감의 갈등을 반증한다.

통일문화의 창조를 위한 문화통합을 위해선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이 서로 맞물려서 대중매체나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홍보로서 북한 주민을 사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홍보의 기능보다는 실제로 일상생활체험을 통한 同化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그러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그 기간에 제기되는 문화적 갈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들 갈등의 조정에 대해선 대체로 양론이 있는 듯하다. 첫째의 입장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북한주민의 남하를 억제하게 되면 북한주민의 남한문화에의 동화는 그만큼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둘째의 입장은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거이동이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컨대 북한에서의 취업선택의 권장과 재정지원 등 과도기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두개의 입장은 현상적인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통일의 시기와 費用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반영한다. 前者의 논리에서 보면 정치적 통일 후 북으로 부터의 주민의 대량남하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막아서는 동화에 의한 문화통합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지연될 수록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통일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

한 정부·사회차원에서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화를 위로 부터의 의식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경험을 통한 동화는 아래로 부터의 문화통합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통일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통일의 시기문제에 있다기 보다는 급작스럽게 닥쳐올 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 소요되는 統一費用문제를 비롯하여 南下 또는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을 주민의 就業문제 그리고 북한주민이 자아상실에 빠지지 않고 남한주민과 대등한 통일한국의 주체라는 정체성의식을 불러 일으키느냐의 문제 등등의 접근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함으로써 남북주민 삶의 방식에서의 차이를 극소화 해야 한다.

3. 問題點의 打開方案

가. 政治的 統一이전(문화교류) 단계

앞에서 통일을 하나의 過程이자 目標로 보고 政治的 統一이전의 문화교류단계의 統一文化를 근대민족국가 창설의 완결을 위한 '統一지향적인 문화'이며 정치적 통일 이후 文化統合 단계의 통일문화를 21세기를 겨냥하여 민족발전역량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未來發展지향적인 문화'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두개의 統一文化는 그 본질적인 가치지향성에 있어 결코 별개적인 개념이어서는 아니된다. 정치적 통일 이

전의 교류·협력단계에서의 통일지향적인 문화는 정치적 통일 이후의 문화통합단계의 未來發展지향적인 통일문화의 창조를 위한 문화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문화의 궁극적인 발현형태가 未來發展지향적인 통일문화이니 말이다.

이와 같은 새 한국의 창조를 위한 통일문화의 당위적인 본질에서 보아 문화교류를 단순히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성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통일을 중심적인 연결고리로 하여 정치적 통일 이전의 교류와 그 후의 문화통합이 總體的인 統一政策大系속에서 그 가치지향성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종래에 우리의 문화교류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동질성 회복이나 신뢰구축을 토대로 하는 이를테면 平和體制의 管理을 위한 논리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전향적으로 통일지향적이며 문화통일 지향적 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교류를 단순히 고유의 의미에서의 문화적 이질성의 회복이나 신뢰구축이라는 한정적인 시야에서 보지 말고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간의 본격적인 문화접촉에서 야기될 갈등의 조절을 위한 사전노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하나의 준거로 하여 우리의 기본입장이 정립되어야 한다. 문화교류에 대한 우리 입장의 논의는 크게는 1) 북한의 제의에 대한 상응, 2) 체제차이의 부각에 의한 북한에 대한 충격 그리고 3) 북한에 대한 충격적인 자극은 피하되 사회적인 차이의 부각 등(박상천,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교류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93, pp. 116~121)이 있다.

이들 세개의 논리적인 입장에서 문화교류를 위해선 그 중 어느 하나의 입장에 치우치기 보다는 이들 3개의 입장을 통합하는 절충적인 입장의 모색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교류는 그 목적지향성에서 보아 북한에 대한 충격이 필요할 뿐더러 때로는 교류의 성사를 위해선 그들의 제의에 응하거나 또는 남북간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독이 동방정책에서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內部的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화교류에 대한 북한의 경직된 이념·체제적인 구속성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잘은 몰라도 북한에서 체제개혁의 아무런 증후군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미국과 수교하여 서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가속화되면 남한에 대해 더욱 강경자세를 취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미 예술단 교환공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동독과도 달리 관변예술가 외에 순수예술가라는 개념조차 없으며 문예작품이 예술성 보다는 사상성 그것도 개인숭배를 위한 선전·선동의 정치적 도구로 전략한 동토의 완국, 북한이 상대이고 보면 지배집단의 공적인 반응에 신경과민적으로 집착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지배집단과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란, 호사가들의 관념의 세계에 떠도는 망상일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한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대상은 북한의 지배집단이 아니라 전체주의 질곡속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이라는 확고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된 시점에 와 있다. 앞에서 우리의 대북교류의 자세가 대응·충격·자극의 절충에서 모색돼야 한다고 한것도 이런 논리에서 였다. 북한정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북한주민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 대한 논리가 이러 하거늘 대북교류는 위에 지적인 대응·충격·자극의 절충을 원리로 하여 출발해야 한다. 政治的 統一 이전의 문화교류단계에서 문화통합 단계의 민족역량을 확대·재생산을 위한 미래발전 지향적인 문화의 창조를 겨냥하면서 우선 통일지향적인 가치관이 남한에서 먼저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내면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남한주민의 성격구조의 변화를 위해선 물론 학교·사회·가정을 포괄하는 3위일체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실천적인 사회운동의 조직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통일의 궁극적인 주체가 민족성원인 한에 있어 통일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이 성별·직업·세대·계층 등의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성원의 일상의 삶의 밑바닥에 심화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시도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선 정부차원에서의 정치적인 결단과 정책적인 일관적 지원이 앞서야 한다. 통일문화의 창출을 위해선 상부구조로서의 정치문화와 하부구조로서의 시민문화가 서로 조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문화는 다음과 같은 기능(통일원, 앞의 책 「통일문화지향과…」, p. 21.)을 다해야 한다. 즉 통일문화는 첫째 통일목표를 위해 국민의 의지·능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둘째 국가의 모든정책을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수렴하는 정책지도이념으로서, 또 셋째 통일을 위한 제반노력의 내용·성격을 분석·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위와 같은 통일문화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체계면에서 각 분야별 세부계획의 수립·집행, 정치적으로는 형평성과 민주화의 제도적 심화, 사회적으로 다원주의의 확산 그리고 정신문화면에서 퇴폐적이며 향락적인 반사회적인 작태의 정화와 더불어 경제제일주의가 가져온 문화지체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들 대내적인 토대구축을 기반으로 대북교류에 임해야 한다. 물론 동질성의 회복이 문화통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교류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문화통합을 위한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

앞에서 누누히 강조한 바 문화교류는 정치적 통일 이전에

는 이념적 구속성 때문에 이질성의 확인이 고작이므로 한계의 극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화교류는 남북한 주민 특히 북한주민에게 우리 민족은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하나의 뿌리이며 또 통일한국의 창조를 위해 당당하며 능동적인 주체라는, 이를테면 민족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의식을 제고 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문화적 동질성이 남아 있는 전통적 민족문화와 의·식·주의 주민생활문화가 교류의 주요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통일 후 독일에서 동독인들의 자아상실로 인한 집단적 자기비하의 후유증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민족전통문화도 남북에서 그 원형이 변형되었고 또 성격상 절대왕조나 식민지시대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역사성에서 떠난 민족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더욱 우리가 새로 창조해야 할 통일문화는, 전통문화의 단순한 계승·회귀가 아니다. 전통문화의 전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순수한 서구화가 아니라 전통문화의 고유성과 근대성을 조화시킨, 민족문화의 발전적 계승·창조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전통문화의 원형의 보존 그 자체도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 이질화의 실상을 확인하는것 자체가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선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전통문화 유산의 상호교류는 북한측의 부정적인 반

응에도 불구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작업이 적극화돼야 한다. 예컨대 언어분야에서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는 발음, 맞춤법, 어휘, 문법, 문체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부분이 상당하지만 맞춤법은 表現의 差異만 제외하면 같은 原理가 기초로 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본다면 統一 맞춤법을 제정하고 「남북어휘사전」 편찬 등의 사업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들 노력을 통해 전통문화의 공동연구, 자료교환, 예술제 등 공동행사의 개최와 같은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연변학술대회에서 남북간에 컴퓨터 처리 표준안의 공동 연구에 합의(94. 8. 8) 하였음은 앞으로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 정치적 통일 이후(문화통합) 단계

정치적 통일로 북한의 官製的 統治文化는 制度上으로는 제거되지만 분단 50년간 내면화를 통해 일상적인 북한주민생활 문화에 미친 영향은 일조일석에 불식되지 않는다.

정치적 통일로 남북간 문화접촉이 본격화됨으로서 두개의 이질적인 문화갈등에서 야기되는 문화통합 저해적인 병리현상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임은 우리의 상대가 북한이고 보면 자명하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은,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남한에 대해선 統一費用문제를, 또 북한 주민에 대해선 失業問題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統一費用문제와 失業問題의 해결을 위해서 이론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 중 하나는 政治的 統一 우선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過渡期를 설정(김재경,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93. 겨울, pp. 59~62) 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통일을 우선적으로 하되 통일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박봉식, 평통, 「앞의 책」, pp. 233~239.) 하자는 입장이다.

위의 과도기를 설정하자는 입장은 설혹 정치적 통일을 먼저 하더라도 일정기간 남북이 두개의 경제권으로 한동안 남아 있다가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 경제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논리상으로는 ‘주민생활조건을 통일’을 먼저 하자고 주장한 독일사회민주당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단계론은 주민간 생활조건을 우선적 통일을 주장하다 선거에서 패배한 독일사민당의 입장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좀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통일 후에도 북한에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과도기적으로 남겨 둔다면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보다는 되레 그것은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다. 지난 50

년 간에 벌어진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불과 몇년간의 과도기에 줄일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경제외적인 요인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적 통일 후에도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한동안 북한만을 별개의 경제권으로 두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체제상의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장벽없이 정치적 통일 후 남북간에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유독 북한에서 경제만을 남한과 다른 제도하에 둔다면 자칫하면 북한경제는 살아남기 힘들게 되어 와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것인가.

정치적으로 이념·체제를 같이 하지 않는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동질성 회복에 의한 문화통합을 그 만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음에는 그런 대안이 統一費用을 줄이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 통일원이 국회에 제출(93. 3. 28)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시 비용의 70~85%를 남한부담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市場經濟로 전환, 북한경제를 남한에 접근시키며 또 과도기 동안 북한주민의 생계비지원·행정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통일 비용이 분단상황에서 소비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싼 것(한국일보, 93. 9. 29)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우리의 상대가 북한 이라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 물론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된

다는데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집단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이 반증하듯이 군사력의 중강이나 대남적화공작의 강화 등 그들의 정치적 입장의 강화에 악용하는데 대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통일이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바라는 시기에 다가와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통일비용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그 好機를 놓치는 愚를 범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 후 남북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문화접촉을 통해 문화적 동화로서 문화통합을 이룩하여 민족역량의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未來發展 지향적인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문화적 동화로서의 문화통합이란 일상적인 생활체험을 통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의 적응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잠간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동독의 붕괴로 동독인들에게 그동안 길들여진 확실한 秩序體制도 무너졌고 이와 더불어 정신적인 안전이나 사회적 안전도 살아졌다. 자본주의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대중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방출되는 관심테마나 의견도 시시각각 달라짐에 쫓아가면 금방 사라져서 자본주의 사회는 동독인들에게 마치 견잡을 수 없는 신기류처럼 느껴졌다. 이것

은 공산독재가 낳은 부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동독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통일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독인들이 그날 그날 겪는 일상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담책만을 읽게 되었다. 그들에게 생필품을 선택·구입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 졌으나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주어 지지 않았으며 失業이 늘어나 살기만 더 힘들어 졌다. 그들은 통일을 통하여 성취될 것으로 기대했던것 들이 실현 불가능한 환상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통일직후와는 달리 점차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

통일직후 구동독정권 하에서 기만당하며 살아 왔다고 자신들의 지난 날의 삶을 개탄하던 동독인들이 근자에 와서는 통일의 환상에 속았다하며 또 구동독정권을 비난하다 근자에는 통일을 주도한 서독정부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또 서독인들은 統一費用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피하며 통일 후 동독에 대한 투자를 서독지역에 대한 소외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일 후 동독인들에게 부과된 문제는 위와 같은 失業이나 生活苦 등 경제적인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일상생활에의 적응이 가장 급선무였던 동독인들이 우선 생활상담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찌면 그들로서는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책들을 통해 얻는 서독에 대한 지식이란 그들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한낱 표피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서

독인들과 대등한 민족성원의 자격으로 동참코져 했던 통일독일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떻게 돌아 가느냐의 실질적인 메카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동독인들은 이러한 體制外的인 소외상태에서 지난 날 그들이 의지하던 가치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신 서독의 것만을 받아들여야 하며 자신들의 것은 버려졌다는 것 그러면서도 서독인들로 부터 냉대받고 있다는 등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정신적인 갈등으로 정체성에 있어서 자아상실의 증후군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본 바 독일통일은 서독에 統一費用문제를, 또 동독인들에게는 失業문제와 正體性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갈등은 통일 후 독일이 겪고 있는 갈등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공산위성국가 가운데서 가장 優等生에 속했던 동독의 국민이 저러하거늘 가장 落第生에 속하는 北韓의 주민이 정치적 통일 후에 겪을 갈등은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갈등은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이 분담해서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갈등이 두려워서 통일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통일지향적인 민족으로서는 너무 安易한 자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이며 그 기간을 단축하느냐에 있다. 그것은 또 21세기를 겨냥하여 未來發展 지향적인 민족역량의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했느냐의 정치역량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지적한 실업·통일비용·정체성의 문제 등에 대처, 사전에 각 영역에 걸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치적 통일 이전의 교류단계에서 부터 적절이 집행하면서 통일 후의 문화통합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통합에 있어서 남한문화 속에 없는 긍정적인 장점이 북한문화에 있다면 그것의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

VII. 結 論

統一을 하나의 過程이라고 한다면 政治的 統一 이전의 단계에서의 南北文化交流의 限界는 理念·體制의 拘束性에 기인한다. 이 구속성은 政治的 統일에 의해 제도면에서 제거되지만 정치적 통일로 남북간의 문화접촉이 본격화되면 거기에서 야기되는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선 文化統合이 이뤄져야 한다.

統一이란 정치적 통일 후 文化統合으로 완결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南北文化交流의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또 새로 創造할 統一文化의 歷史性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의 近代民族史와 유럽 近代史의 맥락에서 우리의 民族統一의 의미부여를 모색했다. 이런 논리적인 시각에서 정치적 통일 이전의 文化交流단계의 통일문화를 ‘統一지향적인 文化’ 그리고 정치적 통일 이후의 文化統合단계의 통일문화를 民族力量

의 擴大·再生産을 위한 ‘發展지향적인 文化’로서 개념규정을 했다.

政治的 통일과 文化統合이라는 두개의 통일단계를 중심으로 통일문화의 창조를 위해 제기되는 問題點과 打開方向을 추리해 보았다.

설혹 이 분석에서 어떤 작업상의 편의를 위해 統一文化의 개념을 統一지향적인 문화와 未來發展 지향적인 文化로 개념규정을 했다고는 하나, 정치적 통일이후의 文化統合이 어떤 한시적 개념이 아니라 그 때 그 때의 민족의 역사적 發展段階에 조응해야 함으로 未來發展 지향적인 통일문화역시 전향적으로 간단없이 내용의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일 이전의 文化交流단계에서 부터 미리 정치적 통일과 그 후의 文化統合까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交流가 추진돼야 한다.

우리는 적어도 民族統一의 大業의 성취를 위해 접근코저 한다면 南北交流는 현단계에 있어서 예컨대 經濟論理 一邊倒의 경제교류여서는 아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역시 그 자체의 論理만으로 교류에 임한다면 그것은 統一을 위해선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결코 모든 것을 政治論理만 갖고 規制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統一이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政治問題인 한에 있어서 좋든 싫든 그것

과 연관되는 문제는 그것이 經濟이던 문화이던 사회이던 또는 종교이던지 간에 政治論理를 軸으로 하는 기본가치의 領域을 수용해야 한다. 말하자면 정부의 효율적인 조정기능이 불가결 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統一을 성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민족의 저력을 확대·재생산하여 未來發展을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의 상대가 北韓이니 만치 北韓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며 체계적인 분석·평가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政府·民間차원의 연구기관의 활성화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科學的인 사고와 實證的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政策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서는 아니된다. 이번에 核과 경제협력과의 연계가 해제되어 전개될 남북 경제교류가 경제협력의 활성화라는 고유의 의미의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北韓의 실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 문화교류의 실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 문화교류의 촉구 그리고 남북간 정치적 신뢰구축 등 경제외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統一은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와 주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 독일의 경우를 참고 삼아 政治的 統一후 문화통합에서 제기될 가장 큰 문제로서 南韓에는 統一費用문제 그리고 北韓주민에게는 失業문제와 正體性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들 문제는 北韓의 體制代替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 예시한

것이다. 統一費用문제와 失業문제는 經濟문제이지만 正體性 문제는 命令經濟에 길들여진 북한주민에게 자본주의적 競爭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관과 生活方式의 내면화인 文化統 合에 의해서만이 그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일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동독의 사회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치 못하고 따라서 사전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치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西獨이 자국의 經濟力에 대한 과신에서 나온 單純論理的인 문제접근 방식의 귀결이기도 하다.

西獨은 사회주의국가 가운데서 가장 優等生이며 1천만 내외의 인구를 갖는 東獨과 그 住民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국가 중에서도 가장 落第生이며 2천 3백만명의 주민을 갖는 北韓과 그 주민이 대상이고 보면 정치적 통일 후에 제기될 갈등의 개연성과 그 복잡성은 묻지 않아도 자명한 것이다.

자국의 經濟力에 자신감을 갖은 西獨의 접근방식은 統一費用문제의 해결은 물론 서독의 資本과 技術이 東獨의 값싼 勞動力과 결합되면 體制代替過程에서 생기는 사회·經濟문제와 동독주민들의 자아상실로 인한 正統性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낙관한 듯하다. 말하자면 西獨의 접근방식은 마치 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자본·기술을 후진국에 이전하면 經濟的 近代化가 이룩되고 그 결과로서 民主化라는 정치발전이 이뤄진다고 낙관한 서구의 근대화논자들의 접근방식을 방불

케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문제가 통일방식 및 통일 후에 겪을 후유증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논리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산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에게 있어 統一은 민족사 및 세계사와의 맥락에서 보아 당위적인 민족대업이며 민족분단의 극복을 위해서는 통일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처리·관리할 수 있는 민족의 能力과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민족성원 모두가 함께 분담하는 成熟된 민족의지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 文化發展研究所, 「北韓文化研究」, 제1집, 93.
 _____, 「北韓의 文化政策과 南北文化交流의 方向」,
 93.
 統一院, 「民族和合과 統一文化」(統一問題學術會議), 84.
 _____, 「統一文化指向과 言論의 役割」(統一문화심포지움),
 86.
 _____, 「統一文化指向과 文化藝術」, 85.
 _____, 「統一文化指向과 教育界의 役割」(統一文化심포지

- 음), 86.
- _____, 「北韓의 文藝政策과 美術實態」, 89.
- _____, 「北韓의 文化藝術」(北韓의 文化藝術심포지움), 90.
- _____, 「통일백서」, 92. 93.
- _____, 「남북대화」, 51, 52, 53, 54, 56호.
- _____, 「南北韓 分斷狀況 克服方向 研究」, 88.
- _____, 「統一問題研究」, 제5권 4호, 93.
-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제2권, 2호, 93.
- 民主平統諮問會議, 「統一論叢」, 92.
-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88.
-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I, II, 71.
- I. E. S. S. vol. 4.
- Archie Brown & Vack Gray(eds),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 Holmes & Meier Putlishers, Inc., 1979.
- 金永俊, 「毛澤東思想과 鄧小平의 社會主義」(亞細亞文化社, 85)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與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值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
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和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統一文化研究(下)

統一文化시리즈 94-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